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2.11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

발 간 등 록 번 호
11-1090000-000037-14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2. 11

국 무 조 정 실
정책평가위원회

발간에 즈음하여...



오

늘날 국내·외의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 행정 수요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인력의 범위 내에서 정부의 업무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추진되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정책의 집행과 성과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을 시정·보완하도록 하는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기능은 책임행정과 정책의 신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부업무 평가시스템이 도입된지도 40년이 지나 적지 않은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5.16 직후인 1961년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가 도입되어 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시작한 이래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행정조정실의 주요정책평가 제도 등으로 이어져 왔으며 1994년말 심사평가제도로 통합되었고, 특히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각 기관의 경쟁과 책임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평가제도」가 도입되고 2001년 5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까지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짧지 않은 평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간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고 평가결과와 정부정책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어 왔습니다.

이제 「평가기본법」의 시행을 계기로 평가제도의 더 나은 발전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 백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1년 이후 평가제도의 변화, 추진체계, 연도별 평가결과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료수집의 한계로 일부 충분한 정리가 안된 점이 아쉽지만 그간의 각종 평가기록을 종합적으로 발굴·정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이 백서가 우리 정부업무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1월

국무조정실장 김진표

격려사



어떤 사업도 그 목표달성을 위하여서는 꾸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정책도 그 성안과정, 추진과정이 적합한가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정책 수행에 반영하였을 때 정책 목표 달성은 가능해집니다.

정부의 정책수립과정, 집행과정 그리고 정책이 당초 의도한 대로 달성하였는가를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평가사업을 수행하였고 2001년 5월 평가기구가 법제화됨으로써 심의기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학계, 연구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는 제1기(1998), 제2기(2000)를 거쳐 2001년 5월에 제3기 위원회가 정부 정책 평가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의 행정지원을 받아 각 부처가 수행중인 정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수행중에 있으며, 이 같은 평가사업을 통해 정책성과를 제고하고 또 각 부처에 대한 기관평가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부처의 평가계획 수립, 현장확인, 전문가 회의 등 각종 평가활동 수행 등 평가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번에 정부업무평가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사실 정부업무 평가 과정에서 평가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이 보존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컸던 만큼 평가백서의 발간은 추후의 성공적인 평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백서가 국민들이 정부업무 평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정책평가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2002년 11월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조완규

목 차

제1장 정부업무 평가 개관

제1절 정부업무 평가의 의의와 목적 · 3

제2절 평가제도 및 추진체계의 변천 · 4

- I.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1961.9~1981.10) · 8
 - 1. 도입 · 8 / 2. 추진체계 · 9 / 3. 평가방법 · 11
- II.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 및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 · 16
 - 1.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1981.11 ~ 1994.12) · 16
 - 2.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1990.4 ~ 1994.12) · 38
- III.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1994.12 ~ 1998.2) · 49
 - 1. 도입 · 49 / 2. 추진체계 · 49 / 3. 평가방법 · 50
- IV.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1998.2 ~ 현재) · 55
 - 1. 도입 · 55 / 2. 추진체계 · 57 / 3. 평가의 종류 · 60
 - 4. 중앙행정기관 평가 · 61 / 5. 지방자치단체 평가 · 72

제3절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 75

- I. 기본법의 제정 · 75
 - 1. 기본법 제정의 배경 · 75 / 2. 기본법 제정경과 · 76
- II. 기본법의 내용 · 76
 - 1. 기본법의 주요내용 · 76 / 2. 기본법의 기대효과 · 79

제2장 평가실적(1990년~2001년)

제1절 평가실적 개관 · 85

제2절 1990년도 평가 · 88

- I. 평가개요 및 특징 · 88
-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 88
 1. 평가과제 · 88 / 2. 평가방법 · 90 / 3. 평가결과 · 93
- III. 「10.13특별선언」 실천상황평가 · 94
- IV.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 95
 1. 보고대회 개최 · 95 / 2. 결과조치 · 95

제3절 1991년도 평가 · 96

- I. 평가개요 및 특징 · 96
-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 97
 1. 평가과제 · 97 / 2. 평가방법 · 98 / 3. 평가결과 · 102
- III. 제6공화국 4년간 국정운영성과 평가 · 106
 1. 개요 · 106 / 2. 평가결과 · 106
- IV.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 109
 1. 보고대회 개최 · 109 / 2. 결과조치 · 109

제4절 1992년도 평가 · 110

- I. 평가개요 및 특징 · 110
-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 111
 1. 평가과제 · 111 / 2. 평가방법 · 113 / 3. 평가결과 · 115
- III. 국정평가 · 117
 1. 개요 · 117 / 2. 평가결과 · 117
- IV.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 120
 1. 보고대회 개최 · 120 / 2. 결과조치 · 120

제5절 1993년도 평가 · 121

- I. 평가개요 및 특징 · 121
-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 121
 - 1. 평가과제 · 121 / 2. 평가방법 · 122 / 3. 평가결과 · 125
- III. 국정평가 · 126
 - 1. 개요 · 126 / 2. 평가결과 · 127
- IV.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 128
 - 1. 보고대회 개최 · 128 / 2. 결과조치 · 128

제6절 1994년도 평가 · 129

- I. 평가개요 및 특징 · 129
-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 129
 - 1. 1/4분기 주요정책평가 · 129 / 2. 주요정책과제 평가 · 134
- III.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 146

제7절 1995년도 평가 · 147

- I. 평가개요 및 특징 · 147
-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 147
 - 1. 평가과제 · 147 / 2. 평가기준 및 방법 · 156
 - 3. 1/4분기 종합평가 · 157 / 4. 상반기 종합평가 · 159
 - 5. 3/4분기 종합평가 · 161 / 6. 하반기 종합평가 · 162
- III. 수시과제 평가 · 164
 - 1. 개요 · 164 / 2. 수시평가과제 및 평가결과 · 165
- IV.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 168

제8절 1996년도 평가 · 169

- I. 평가의 개요 및 특징 · 169
-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 169
 - 1. 평가과제 · 169 / 2. 평가방법 · 173 / 3. 평가결과 · 174
- III. 수시과제 평가 · 178
- IV.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 180

제9절 1997년도 평가 · 181

- I. 평가의 개요 및 특징 · 181
-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 181
 - 1. 평가과제 · 181 / 2. 평가방법 · 187 / 3. 평가결과 · 188
- III. 수시과제 평가 · 200
- IV.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 201

제10절 1998년도 평가 · 202

- I. 평가개요 및 특징 · 202
 - 1. 기관평가제 도입 · 202 / 2.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3
-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 205
 - 1. 평가대상과제 · 205 / 2. 평가기준 및 방법 · 207
 - 3. 평가결과 · 209
- III. 정책추진 역량평가 · 212
 - 1. 개요 · 212 / 2. 평가분야 · 213
 - 3. 분야별 평가기준 및 방법 · 213 / 4. 분야별 평가결과 · 220
- IV. 특정과제 평가 · 235
- V. 만족도 조사 · 236
 - 1. 조사개요 · 236 / 2. 추진내용 · 237
- VI.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 240
 - 1. 보고대회 개최 · 240 / 2. 결과조치 · 241

제11절 1999년도 평가 · 242

- I. 중앙행정기관 평가 · 242
 - 1. 평가의 개요 및 특징 · 242 / 2. 주요정책과제평가 · 243
 - 3. 정책추진역량 평가 · 248 / 4. 특정과제 평가 · 264
 - 5. 만족도 조사 · 265
- II. 지방자치단체 평가 · 270
 - 1. 평가의 개요 및 특징 · 270 / 2. 평가의 주요내용 · 271
- III.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 274
 - 1. 보고대회 개최 · 274 / 2. 결과조치 · 275

제12절 2000년도 평가 · 279

- I. 중앙행정기관 평가 · 279
 - 1. 평가의 개요 · 279 / 2. 주요정책과제 평가 · 281
 - 3. 정책추진역량 평가 · 288 / 4. 특정과제 평가 · 298
 - 5. 만족도 조사 · 299
- II. 지방자치단체 평가 · 304
 - 1. 평가의 개요 및 특징 · 304 / 2. 평가의 주요내용 · 307
- III.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 311
 - 1. 보고대회 개최 · 311 / 2. 결과조치 · 311

제13절 2001년도 평가 · 322

- I. 중앙행정기관 평가 · 322
 - 1. 평가의 개요 · 322 / 2. 주요정책과제 평가 · 324
 - 3. 기관역량 평가 · 330 / 4. 특정과제 평가 · 340
 - 5. 만족도 조사 · 342 / 6. 종합평정 및 우수기관 선정 · 350
- II. 지방자치단체 평가 · 355
 - 1. 평가의 개요 및 특징 · 355 / 2. 평가 추진내용 · 357
 - 3. 평가결과 및 결과활용 · 361
- III.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 362
 - 1. 보고대회 개최 · 362 / 2. 결과조치 · 363

제3장 정부업무 평가의 성과와 발전방향

제1절 그간 평가의 주요성과 · 379

- I.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1961.9 ~ 1981.10) · 379
- II. 경제기획원 심사분석 및 행정조정실 정책평가제도(1981.11~1994.11) · 380
 - 1. 경제기획원 심사분석 · 380 / 2. 행정조정실 정책평가 · 381
- III. 행정조정실 심사평가(1994.12 ~ 1998.2) · 382
- IV. 국무조정실 심사평가(1998.2~현재) - 기관평가제 · 383

제2절 평가제도의 발전방향 · 385

- I. 중앙정부 평가제도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 385
- II.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402
- III. 정책평가의 활용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 · 422
- IV. 정책평가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 · 434

부 록

제1절 정부업무 평가관련 법령 · 439

- 1.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6143호, 1972.4.14) · 439
- 2. 정부주요정책의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국무총리령제364호, 1990.4.16) · 444
- 3.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531호, 1995.2.24) · 446
- 4.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5774호, 1998.4.15) · 449
- 5.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법률 제6347호, 2001.1.8) · 453
- 6.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제 17220호, 2001.4.30) · 459
- 7. 정책평가위원회 운영세칙(2001.5.4) · 468

제2절 주요 외국의 평가제도 · 471

- 1. 미 국 · 471 / 2. 일 본 · 481 / 3. 호 주 · 502 / 4. 캐나다 · 511
- 5. 영 국 · 529 / 6. 프랑스 · 531 / 7. 독 일 · 540 / 8. 스웨덴 · 541

표차례

- <표 1-1> 정부업무 평가제도 개요 · 7
- <표 1-2> 기획조정실의 업무분장 · 10
- <표 1-3> 변화된 심사분석제도 · 16
- <표 1-4> 심사평가국의 기능 · 17
- <표 1-5> 심사평가국의 인원 · 18
- <표 1-6> 심사분석제도의 유형별 내역(1989년) · 20
- <표 1-7> 분석평가방법의 개요 · 23
- <표 1-8> 심사분석의 대상 · 25
- <표 1-9> 심사분석제도의 내용(1983년) · 25
- <표 1-10> 심사분석과 정책평가의 기능 비교(1994년) · 41
- <표 1-11> 행정조정실 인원현황(1994년 2월) · 43
- <표 1-12> 심사평가 관련 업무분담 및 인력(2000년6월 현재) · 57
- <표 1-13> 국무총리실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영역 비교 · 62
- <표 1-14> 평가기본법의 주요내용 · 78
- <표 1-15> 평가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 80
- <표 2-1> 주요정책과제평가 과제수 · 85
- <표 2-2> 수시과제 및 특정과제 평가과제수 · 86
- <표 2-3> 기관역량(정책추진역량) 평가분야 · 87
- <표 2-4>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책수 · 87
- <표 2-5> 평가대상 기본과제 및 단위과제(1990년) · 88
- <표 2-6> 과제별 자문위원 명단(1990년) · 91
- <표 2-7> 평가대상 기본과제 및 단위과제(1991년) · 97
- <표 2-8> 평가자문위원 명단(1991년) · 99
- <표 2-9> 평가대상 기본과제 및 단위과제(1992년) · 111
- <표 2-10> 과제별 평가자문위원 명단(1992년) · 113
- <표 2-11> 평가대상 분야 및 정책과제(1993년) · 121
- <표 2-12> 과제별 자문위원 명단(1993년) · 123

- <표 2-13> 평가대상과제(1994년 1/4분기) · 130
- <표 2-14> 과제별 평가자문위원 명단(1994년 1/4분기) · 132
- <표 2-15> 평가대상 과제(1994년) · 134
- <표 2-16> 과제별 자문위원 및 총괄 자문위원명단(상반기) · 137
- <표 2-17> 평가반 전문가(하반기) · 138
- <표 2-18> 주요정책과제 선정(1995년) · 148
- <표 2-19> 과제별 평가결과의 주요내용(1995년) · 165
- <표 2-20> 주요정책과제 내역(1996년) · 169
- <표 2-21> 평가자문위원 명단(1996년) · 173
- <표 2-22> 우리나라 관광수지 내역 · 177
- <표 2-23> 수시평가과제 및 주요평가내용(1996년) · 178
- <표 2-24> 총괄(1997년) · 181
- <표 2-25> 평가과제명(1997년) · 182
- <표 2-26> 평가자문위원 명단(1997년) · 187
- <표 2-27> 주요업무 계획미완성사업 결과(1997년) · 192
- <표 2-28> 경제지표 변화추이 · 193
- <표 2-29> 수시평가과제의 주요 내용(1997년) · 200
- <표 2-30> 민간 제1기 정책평가위원 (1998년) · 204
- <표 2-31> 평가대상 핵심과제 (1998년) · 205
- <표 2-32> 평가지표 (1998년) · 207
- <표 2-33> 정책추진역량평가 대상분야 (1998년) · 213
- <표 2-34> 조치시한별 평가대상 · 214
- <표 2-35> 100대 국정과제 추진 노력 평가기준(1998년) · 215
- <표 2-36> 규제개혁 추진노력 평가기준 (1998년) · 216
- <표 2-37> 현안 대처노력 평가기준 (1998년) · 218
- <표 2-38> 부처 자체평가 실시기준 (1998년) · 219
- <표 2-39> 조치시한별 부진과제 현황 · 223
- <표 2-40> 부진사유별 과제현황 (1998년) · 223
- <표 2-41> 부문별 부진과제 현황 (1998년) · 224
- <표 2-42> 기관별 부진과제 총괄 (1998년) · 225

-
- <표 2-43> 과제별 주요 개선조치사항 (1998년) · 235
 - <표 2-44>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차원별 세부평가항목(1998년) · 239
 - <표 2-45> 평가대상영역 비교 · 243
 - <표 2-46> 평가대상 주요정책과제(1999년) · 244
 - <표 2-47> 주요정책과제 공통평가기준(1999년) · 246
 - <표 2-48> 자체평가수행노력 평가기준(1999년) · 249
 - <표 2-49> 목표관리제 운영(1999년) · 250
 - <표 2-50> 행정서비스 현장 운영 · 250
 - <표 2-51> 행정정보공개 청구제도 운영 · 251
 - <표 2-52> Internet 등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 · 251
 - <표 2-53> 부패척결 노력 · 251
 - <표 2-54> 과제별 주요 개선조치사항(1999년) · 264
 - <표 2-55>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차원별 세부평가항목(1999년) · 268
 - <표 2-56> 만족도 향상 추이 · 269
 - <표 2-57>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영역별 우수단체(1999년) · 273
 - <표 2-58> 1999년 지방공공혁신부문(4영역, 6시책, 12지표, 16세부지표) · 276
 - <표 2-59> 1999년 지역경제활성화부문(3영역, 4시책, 17지표, 22세부지표) · 277
 - <표 2-60> 1999년 주민안전관리부문(2영역, 5시책, 7지표, 12세부지표) · 278
 - <표 2-61> 1999년 재정역량부문(2영역, 3시책, 6지표, 6세부지표) · 278
 - <표 2-62> 1999년 정보화역량부문(2영역, 3시책, 7지표, 10세부지표) · 278
 - <표 2-63> 제2기 정책평가위원 구성현황(2000년) · 280
 - <표 2-64> 부처별 주요정책과제(2000년) · 282
 - <표 2-65> 주요정책과제 평가기준(2000년) · 284
 - <표 2-66> 지식기반정부구현노력 평가지표(2000년) · 289
 - <표 2-67> 정책추진의 법제화 평가지표(2000년) · 290
 - <표 2-68> 부패방지노력 평가지표(2000년) · 290
 - <표 2-69> 국정홍보 평가지표(2000년) · 291
 - <표 2-70> 자체평가수행노력 평가기준(2000년) · 294
 - <표 2-71> 과제별 주요 개선조치사항(2000년) · 298
 - <표 2-72> 만족도 상승추이(2000년) · 303

- <표 2-7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명단(2000년) · 306
- <표 2-74> 자치단체 종합평가 부문별 우수기관 현황(2000년) · 310
- <표 2-75> 2000년 일반행정혁신부문(2영역, 5시책, 12지표, 24세부지표) · 312
- <표 2-76> 2000년 복지·환경개선부문(2영역, 7시책, 16지표, 47세부지표) · 313
- <표 2-77> 2000년 지역경제진흥부문(3영역, 10시책, 30지표, 48세부지표) · 314
- <표 2-78> 2000년 지역개발확충부문(3영역, 11시책, 23지표, 45세부지표) · 315
- <표 2-79> 2000년 주민안전관리 부문(3영역, 5시책, 11지표, 28세부지표) · 317
- <표 2-80> 2000년 행정관리부문(2영역, 4시책, 14지표, 24세부지표) · 318
- <표 2-81> 2000년 재정관리부문(2영역, 5시책, 12지표, 23세부지표) · 319
- <표 2-82> 2000년 정보화촉진 부문(1영역, 3시책, 7지표, 22세부지표) · 320
- <표 2-83> 2000년 설문항목 · 321
- <표 2-84> 제3기 정책평가위원 구성현황(2001년) · 323
- <표 2-85> 부처별 주요정책과제 (2001년) · 325
- <표 2-86> 주요정책과제 평가기준 (2001년) · 327
- <표 2-87> 전자정부구현노력 평가지표 (2001년) · 332
- <표 2-88> 조직 및 정책관리 역량평가 지표 (2001년) · 333
- <표 2-89> 깨끗한정부 구현노력 평가지표 (2001년) · 334
- <표 2-90>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기준 (2001년) · 336
- <표 2-91> 과제별 주요 개선조치사항 (2001년) · 340
- <표 2-92> 2000년도 조사방식과의 비교 (2001년) · 342
- <표 2-93> 일반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차원별 세부평가항목(2001년) · 346
- <표 2-94> 인터넷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세부평가항목(2001년) · 348
- <표 2-95> 배점기준 (2001년) · 351
- <표 2-96> 평정대상 및 배점기준(2001년) · 352
- <표 2-97> I 그룹 · 353
- <표 2-98> II 그룹 · 354
- <표 2-99> 종합평정 배점기준(2001년) · 354
- <표 2-10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명단(2001년) · 356
- <표 2-10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부문별 우수기관 현황(2001년) · 361
- <표 2-102> 2001년 일반행정혁신부문(2영역, 5시책, 12지표, 22세부지표) · 364

-
- <표 2-103> 2001년 보건복지·여성부문(7영역, 10시책, 18지표, 44세부지표) · 365
<표 2-104> 2001년 산업경제부문(4영역, 7시책, 14지표, 27세부지표) · 366
<표 2-105> 2001년 환경관리부문(6영역, 6시책, 16지표, 41세부지표) · 367
<표 2-106> 2001년 지역개발부문(5영역, 11시책, 27지표, 36세부지표) · 368
<표 2-107> 2001년 안전관리부문(4영역, 5시책, 16지표, 29세부지표) · 370
<표 2-108> 2001년 행정역량부문(4영역, 7시책, 18지표, 26세부지표) · 372
<표 2-109> 2001년 재정역량부문(3영역, 7시책, 12지표, 12세부지표) · 373
<표 2-110> 2001년 정보화역량부문(3영역, 4시책, 9지표, 21세부지표) · 374
<표 2-111> 2001년 설문항목 · 375

그림차례

- <그림 1-1> 국무총리 기획조정실(1961년) · 10
- <그림 1-2> 심사평가국의 조직도 · 17
- <그림 1-3> 심사분석의 유형 · 19
- <그림 1-4> 유형별 심사분석방법 체계(1981년~1994년) · 23
- <그림 1-5> 심사분석의 대상 · 24
- <그림 1-6> 심사분석의 절차 · 34
- <그림 1-7> 심사분석결과 처리단계 · 36
- <그림 1-8> 제2행정조정관의 업무체계(1994년) · 42
- <그림 1-9> 심사평가의 조직도(1995년) · 50
- <그림 1-10> 주요정책과제 평가체계 · 64
- <그림 1-11> 기관운영혁신노력 평가체계 · 69
- <그림 1-12>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체계 · 70
- <그림 1-13> 국민만족도 조사 체계 · 72
- <그림 1-14> 평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취지 · 75
- <그림 2-1> 정책평가 체계(1991년) · 96
- <그림 2-2> 정책평가 기본방향(1992년) · 110
- <그림 2-3> 5년간 달라진 나라 모습 · 119
- <그림 2-4> 기관평가 개념도(1998년) · 202
- <그림 2-5>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도구개발단계(1999년) · 272
- <그림 2-6> 평가흐름도(2000년) · 305
- <그림 2-7>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도구개발 절차(2000년) · 308
- <그림 2-8> 평가흐름도(2001년) · 355
- <그림 2-9> 지방자치단체 평가도구 개발절차(2001년) · 358



제 1 장

정부업무 평가 개관

제1절 정부업무 평가의 의의와 목적

제2절 평가제도 및 추진체계의 변천

제3절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1절 정부업무 평가의 의의와 목적

정부업무 평가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선택하거나 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는 정부 정책 등에 대하여 그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부업무등에 반영(환류)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평가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능률성, 효과성, 민주성을 확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평가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간 국·내외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국민의 요구도 다양화·복잡화되면서 그에 따라 정부의 역할과 사업도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부의 사업이나 국민의 이해를 가져오는 정책들이 과연 목적과 수단이 적절한지, 시행과정은 효율적인지, 집행결과 도달하려는 목표는 실현되었는지 등의 분석을 통해 정부부문의 경쟁력과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증가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민영화, 규제완화, 행정개혁, 탈 관료화 등 80년대 이후 정부기능의 효율성 중시 움직임과 함께 중요한 행정추세의 하나로 대두되어 미국, 영국 등 OECD국가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이 실정에 맞는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5.16 직후 공공분야에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는 평가업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대한 관심이 낮았고 평가결과와 정부시책의 기획·집행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한 등 평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2001.5.1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제정·시행하게 되어 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있다.

제2절 평가제도 및 추진체계의 변천

우리 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 변천사는 4단계(도입단계, 과도단계, 재정비단계, 발전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도입단계로 기획조정실(1961. 9~1981. 10)에서 심사분석업무를 담당하였다.

- 5.16 직후인 1961년 9월 4일 내각수반하에 「내각기획통제관」을 신설하고 정부부문에 최초로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
- 정부는 매년 정부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결과에 대하여 분석·평가 실시
- 평가교수단을 활용하여 예산사업 중심으로 진도분석 및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 중심의 과정평가 기능을 수행
 -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947호)에 근거
- 1981년 제5공화국 출범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시 그 기능을 경제기획원에 이관하고 폐지(1981.11.2)

둘째, 과도단계로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1981. 11~1994. 12),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1990. 4~1994. 12)로 이원화되었다.

-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 1981년에 심사분석업무를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국으로 이관(경제기획원직제, 대통령령 제8325호, 1976. 12)

- 부처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은 부처 자율로 수행토록 하고, 경제기획원은 각 부처의 심사분석결과 취합·조정 주력
 - 정부의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상으로 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사업진도위주 분석 및 공기업 등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역점을 둠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1990. 4~1994. 12)
 - 전정부적 차원의 국정흐름을 진단하는데 한계를 지닌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를 보완하고, 국무총리의 내각통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평가기능을 행정조정실에 신설(정부주요정책평가및조정어관한규정, 총리령 제364호, 1990. 4)
 - 연2회 정부정책평가보고회를 개최
 - 주요 국정현안과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시책들을 분석·평가하여 정책목표달성 여부를 중시
 - 대상정책의 적합성, 시의성, 정책 추진의 효과성·능률성, 국민만족도 등을 종합평가
 - 정책평가와 심사분석의 비교
 - 정책평가는 국정전반에 걸쳐 주요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차기 각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 심사분석은 개별적 단위사업 및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진도와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해당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도모
 - ※ 행정조정실(실장 : 차관급)은 1998년 국무조정실(실장 : 장관급)로 격상

셋째, 재정비 단계로 행정조정실에서 심사평가(1994. 12~1998. 2)가 이루어졌다.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업무와 총리실의 정책평가업무를 통합하여 심사평가기능의 수행(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어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431호, 1994. 12)

- 정부투자기관평가는 경제기획원에서 계속 수행
- 정부시책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정부시책의 책임성 확보를 목적
- 당해 연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에 대한 정기평가 및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수행

넷째, 발전단계로 국무조정실에서 심사평가(1998. 3~현재)기능을 강화하였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고, 2000년 12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동법에 의한 평가를 본격 실시하였다. 평가에 관한 일반법으로 타 법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의거 평가토록 하였다.

- 기관평가제 도입
 - 기존 심사평가제도는 각 부처업무에 대해서만 평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업무추진력 평가에 한계가 있고 평가가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객관성·전문성 확보가 미흡
 - 평가기능의 혁신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부처의 업무 추진성과와 추진의지 등 기관역량, 그리고 국민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평가제를 도입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정책평가위원회」 및 「평가전문위원」을 구성·운영
 -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대상 분야별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를 추진하고 평가 환류 기능도 대폭 강화
- ※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유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기관평가제의 기본정신임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정
 - 정부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평가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
 -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다음 <표 1-1>에서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표 1-1> 정부업무 평가제도 개요

단계 내용	도 입	과 도		제정비	발 전
담당기관	기획조정실	경제기획원	행정조정실	행정조정실	국무조정실
시 기	1961.9~1981.10	1981.11~1994.12	1990.4~1994.12	1994.12~1998.2	1998.3~현재
내 용	5.16 직 후 1961년 정부 부문에 최초로 심사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기획조정실에서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	1981년 에 심사 분석 업무를 경제 기획원 심사 평가국으로 이관	행정조정실에 정책평가 기능 신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의 심사분석 업무와 행정조정실의 정책 평가업무를 통합하여 심사 평가기능 수행 - 정부투자기관 평가는 경제기획원에서 계속 수행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심사평가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기관평가제도」 도입
근 거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6143호 1972. 4)	정부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0821호 1982.5)	정부주요정책 평가및조정에 관한 규정 (총리령 제364호 1990.4)	정부업무의 심사평가및조정 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531호 1995.2)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법률제6347호 2001.1.8)

I.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1961. 9 ~ 1981. 10)

1. 도입

1961년 정부부문에 심사분석 제도를 도입,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능이 정부조직법상 최초로 신설되었다. 심사분석 제도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부족한 자원으로 국가·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정을 원활히 통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하였다.

1961년부터 1981년 사이에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심사분석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당시 정부는 매년 정부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결과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였다.

- 1961년 9월 4일 내각수반 밑에 「내각기획통제관실」을 신설
 - 내각수반의 기획통제에 관한 사무 보좌
 - 행정 각 원·부처의 정책과 기획의 심사, 분석,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 정원 : 실장(기획통제관 : 차관급) 아래 32명(2급갑 3, 3급갑 13, 3급을 14, 4급갑 2)
-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헌법 공포로 대통령책임제가 채택되어 전면적인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내각수반이 국무총리로 개편되면서 내각기획통제관실을 폐지
- 1963년 12월 16일 기본운영계획 조정제도와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여 「기획조정실」 신설
 - 기획조정실에 정부정책의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업무가 「정부조직법」상에 최초로 부여
 - 국무총리의 기획통제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을 설치
- 1971년부터 평가교수단을 구성·운영
 -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평가교수단을 구성, 운영하였는데 평가교수들로 하여금 대통령 앞에서 보고할 수 있게 하여

각 부처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기능 수행

- 1972년 4월 14일 대통령령 제6143호로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 관한규정」을 만들어 심사분석제도의 활성화
- 1981년 11월 2일 제5공화국 출범 후 대통령령 제10614호에 의거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

2. 추진체계

(1) 조 직

「기획조정실」은 행정관리의 합리화를 위하여 5.16혁명 후에 설치한 「내각기획통제관실」을 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1506호로 개정 공포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폐지하고 신설한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 각 중앙행정기관과 기타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기획의 종합조정
- 시행의 진도파악과 심사분석·평가
- 예산관리의 분석, 비상계획 및 정부간행물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인적구성

기획조정실의 인적구성은 1970년도의 경우 실장 1명, 행정관리관인 차장 1명, 기획조정관(2급) 1명, 심사분석관(2급) 1명, 계획조정관(2급) 1명, 관리분석관(2급) 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획조정실의 조직구성은 <그림 1-1>과 같았다.

<그림 1-1>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1970년)



<표 1-2> 기획조정실의 업무분장

구성	기능
기획조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각 기관의 기획의 조정 ·행정부 기본운영계획의 검토 및 종합조정 ·기획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기획에 관한 사항
심사분석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부전반과 부, 처, 청 기타 국무총리 소관기관의 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심사분석 및 평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심사분석 및 평가 ·기타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심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구성	기 능
계획조정관	·행정부전반과 각 원, 부, 처, 청 기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계획시행의 진도파악과 기록보관 ·기타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진도파악에 관한 사항
관리분석관	·행정부전반과 각 원, 부, 처, 청, 기타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예산관리의 분석에 관한 사항 ·각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예산관리분석에 관한 사항

3. 주요기능

기획조정실의 주요기능은 기본운영계획업무와 심사분석업무 그리고 경제개발계획 평가업무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다.

(1) 기본운영계획업무

기본운영계획(primary program system)은 1962년부터 정책과 기획의 조정·심사분석·평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사업 전반에 도입·실시하였다.

기본운영계획은 행정기관이 기본정책 및 계획을 1년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요기능별로 작성하는 계획으로서 사업운영에 대한 기본지침과 업무시행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이 되는 연도별 사업계획이다. 기본운영계획의 집행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심사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운영계획
 - 기본운영계획을 수행하여 시행결과를 심사분석·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연결된 기획관리방식으로 각 부처가 최초기본운영계획을 작성하며 기획조정실에서 이를 종합 조정
 - 조정된 동 계획에 따라 예산요구 및 예산편성 → 예산확정후 각 부처는 최종기본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 사후조정 및 심사분석의 대상으로 활용

- 동 계획의 조정 및 추진협의를 위하여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 기획조정실장)를 설치·운영
- 시·도의 기본운영계획
 - 시·도가 최초기본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서울시의 경우 기획조정실, 기타 시·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승인을 얻은 동 계획에 따라 예산요구 및 예산편성 → 예산 확정후 각 시·도는 최종기본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보고 → 사후 조정 및 심사분석의 대상으로 활용

(2) 심사분석업무

1) 심사분석 절차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6143호)을 통해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업무 내용 및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분석
 - 국무총리는 매년 다음연도 정부의 기본정책 및 운영계획지침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해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
 - 각 부처는 기본운영계획을 수립집행하고, 그 집행결과에 대하여 그 분기가 끝난 40일 이내에 스스로 심사분석하여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
 - 연도별 심사분석은 그 연도가 끝나는 5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보고
 - 한편, 기획조정실에서도 분기별로 심사분석하고 각 부처가 보고한 심사분석결과와 종합분석
 - 종합심사분석은 동 규정 제8조3항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분석결과와 대통령지시실천사항을 종합 평가하여 분기별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 연4회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분기별 심사분석 보고회의를 운영

- 시·도의 심사분석
 -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은 매년 다음연도의 시·도 기본운영 계획지침을 작성하여 그해 7월 31일까지 시달
 - 각 시·도는 기본운영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에 대하여 그 분기가 끝난 30일 이내에 스스로 심사분석하여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
 - 국무총리는 심사분석 및 평가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분기별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2) 심사분석결과의 처리

-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6143호) 제9조에 의거 심사분석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고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
- 시정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강구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

(3) 경제개발계획 평가업무

1965년 7월 구성된 「정부시책평가교수단」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의 중간평가(1965년) 작업을 한 이래, 연차별 평가 실시 및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평가작업절차는 대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였으며, 평가내용체계는 종합부문과 산업부문별 접근으로 대별하였다.

- ① 평가작업계획 수립
- ② 정책자문위원 부처방문 및 현지확인
- ③ 평가결과 원고 제출
- ④ 평가결과 보고(종합심사분석 보고 시)
- ⑤ 평가보고서 발간
- ⑥ 영문판 평가보고서 발간

그 당시에 실제 수행한 평가방법·계획은 다음의 예시와 같다.

(예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평가

1. 현황

가) 평가분야: 제2차 5개년 계획(1967~1971) 종합평가

나) 평가수행

90명의 평가교수가 각자의 전공분야별로 정부시책 및 사업영역을 담당하여 계획과 집행과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논평(논평 방법: 국제비교를 시도하면서 논평)

다) 평가내용구성

- | | | |
|----------------|-----------------|------------|
| ① 계획의 주요목표와 실적 | ②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 |
| ③ 투자와 저축 | ④ 소득과 분배 | ⑤ 국민생활과 소비 |
| ⑥ 재정과 금융 | ⑦ 생산활동 | ⑧ 기업과 경영 |
| ⑨ 인구와 고용 | ⑩ 물가 | ⑪ 무역과 국제수지 |
| ⑫ 국제경제협력 | ⑬ 과학기술 | ⑭ 국토개발 |
| ⑮ 사회개발 | ⑯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비교 | |

라) 평가보고서의 활용

- 종합평가 후 정책건의 제시
 - 당면과제
 - 제3차 5개년 계획상의 과제
- 미해결된 제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구현에의 활용

2. 평가의 중점과 방법

가) 평가의 목적

- 제2차 5개년 계획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계획의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미친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
- 동시에 제3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아울러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평가의 중점방향

- ① 계획기간중 각 산업부문별 발전 및 동태와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평가

- ② 계획기간중 각 사업별로 착공·추진·완공된 모든 계획사업과 비계획사업의 진도를 총정리하여 분석·평가하고 계획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함과 아울러 각 사업의 완공에 따른 산업, 고용, 수입대체 면에서의 제반효과를 측정
- ③ 계획기간중 완공된 사업의 가동현황을 점검하고 완공 또는 이월 사업에서 야기된 애로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

이와 같은 중점방향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제적 및 경제 외적 현상문제를 부각·적출하기 위하여 대체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기법)을 채택하였음

- ① 제2차 5개년 계획의 제목표를 실적과 비교평가
- ② 총량부문의 평가는 국민경제의 종합적 평가로서 주로 거시적 접근방법에 의함
- ③ 산업부문별 평가는 각 산업별로 계획기간중에 재정자금, 차관 그리고 민간자력에 의하여 신설된 모든 사업체를 포함한 동부문의 생산활동과 제문제를 분석·평가
- ④ 특히 사업별 평가는 모든 계획사업과 중요한 비계획사업에 대하여 별도 조사표에 의하여 사업장을 실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 요령에 의해 분석·평가
 - 자금계획과 집행실적
 - 재정투융자와 외국차관이 민간자본 동원에 미친 영향
 - 원료 및 제품의 수급 계획과 실적
 - 생산, 고용, 수출, 수입대체, 기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 ⑤ 지원시설 부문평가는 경제개발계획 수행과정에서 또는 급격한 국민경제의 성장에서 유발되는 경제 외적 현상 및 문제점을 각 분야별로 유출하여 분석·평가

다) 평가대상사업 조사표

- 사업개요
- 자금계획 및 집행실적
 - 총괄 및 부문별 집행상황
- 사업진도
- 사업효과
 - 고용효과, 생산효과, 국제수지효과, 국민경제에 미친 기타 영향
- 애로 및 문제점
- 전망
- 요시정사항 또는 건의

II.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 및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

1.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1981. 11 ~ 1994. 12)

(1) 도입

1981년 11월 정부의 대폭적인 기구개편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이 폐지되고 심사분석업무는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어 신설된 심사분석국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신설된 심사분석국에서는 1982년 5월 15일에 심사분석업무의 근거법령인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을 전문 개정하여 제도의 개선을 꾀하였다.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준법」 및 「동법시행령」(1984.3.1 발효)의 제정에 따라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국의 기능이 일부 조정되면서 1984년 6월에는 심사분석국을 심사평가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심사평가국에서는 각 부처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행정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핵심시책에 대한 「정책평가제도」를 별도로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된 이후 심사분석제도의 주요개선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변화된 심사분석제도

분 야	종 전(기획조정실)	개선내용(경제기획원)
심사분석의 대상	-기본운영계획 (예산과의 연계를 전제)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의 내용	-기본운영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평가교수단 운영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한 각 부처의 분기별 심사분석 -중점관리 대상사항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평가교수단 폐지
분석결과의 처리	-분기별로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보고후 시정요구 가능	-반기별로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경제기획원장관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예산편성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에 반영하거나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후 그 명을 받아 시정요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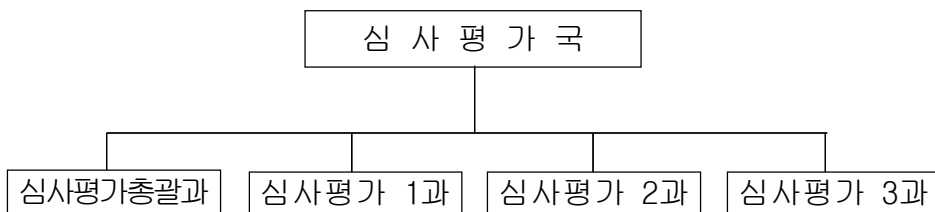
(2) 추진 체계

1) 조 직

심사분석국에는 심사분석총괄과·심사분석 1과·심사분석 2과·투자기관 1과 및 투자기관 2과를 두었다. 그러나 1994년 2월 21일 경제기획원 직제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175호)을 공포하여 일부 조직의 개편이 있었다. 경제기획원 직제를 개정한 이유로는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발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 조직 개편에서 심사평가국은 일상적인 심사분석업무에서 탈피하여 정부의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을 현장중심으로 평가하고, 공기업민 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각 과의 명칭과 기능을 재조정하여 심사평가국에 심사평가총괄과, 심사평가 1과, 심사평가 2과, 및 심사평가 3과를 두었다. 각과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그림 1-2>와 같고, 각과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4>와 같다.

<그림 1-2> 심사평가국의 조직도



<표 1-4> 심사평가국의 기능

부서	기능
심사평가총괄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한 종합심사·분석 -정부의 심사분석제도 운영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 작성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 및 경영평가단 운영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	기 능
심사평가 1과	-정부의 재무·문화체육·보사·노동·교통분야 주요 투자사업의 진도파악 및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의 심사분석 -재정·금융·노동·교통분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목표 조정·경영평가관리 기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심사평가 2과	-정부의 교육·상공·과학기술·환경·공보분야 주요투자사업의 진도파악 및 사업추진 관련되는 주요정책의 심사분석 -교육·상공·에너지·자원개발분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목표조정·경영평가관리 기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심사평가 3과	-정부의 내무·농림수산·건설·체신분야 주요투자사업의 진도파악 및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의 심사분석 -농림·수산·건설·체신분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목표 조정, 경영평가관리, 기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인적구성

심사평가국의 인원(1994년 기준)은 국장급 1명, 서기관 4명, 사무관 18명, 주사 11명, 주사보 2명 그리고 기능직 6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1-5> 심사평가국의 인원

(1994년 5월 기준)

일반직(직급별)	인원(명)
2 급(국 장)	1
4 급(서기관)	4
5 급(사무관)	18
6 급(주 사)	11
7 급(주사보)	2
기 능 직	6
계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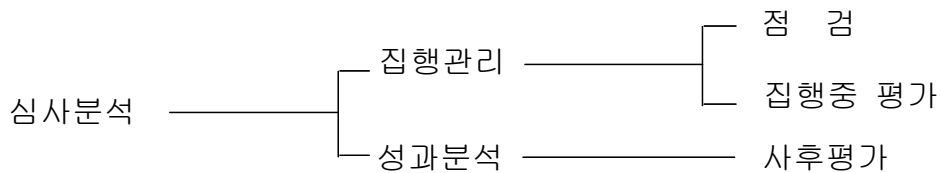
* 소요예산(1994): 4억 5천만원

(3) 평가방법

1) 평가의 유형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은 그 실시목적 및 시기에 따라 집행관리와 성과분석(사후평가)으로 구분되며 집행관리는 다시 실시목적 및 기법에 따라 점검과 집행중 평가로 세분되어 운영되었다.

<그림 1-3> 심사분석의 유형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집행관리

- 연초 수립된 분기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하여 당초 계획에 미진한 사업에 대해 부진사유분석 및 보완대책 수립·시행하는 것으로서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심사분석이 여기에 속함
- 집행관리는 다시 ①점검과 ②집행 중 평가로 세분되어 운영

① 점검(monitoring)

- 시책이나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집행과정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 시책이나 사업이 당초 계획내용대로 집행되는지의 여부가 관심 사항이 됨

② 집행중 평가(on-going evaluation)

- 시책이나 사업의 시행 중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주기적 또는 수시로 그

집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 노출된 경우에는 그 시정방안을 수립·제시하는 활동

- 여기에서의 주요 관심 사항은 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의 여부가 되었고, 만일 문제점이 노출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함

▪ 성과분석(사후평가)

- 특정사업의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당초 사업목표의 달성여부,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추진 효율성의 제고방안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서 중점사업 집중분석, 각 부처 자체 특별분석이 여기에 속함
- 차후 유사한 시책이나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료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 시행결과 발생한 산출·효과 및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는 활동
- 성과분석의 주요관심사항은 시책이나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임

이상과 같이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표 1-6> 심사분석제도의 유형별 내역 (1989년)

구분	심사분석 업무명	대상사업	실시 기관	근거규정
집행관리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 주요사업 심사분석	· 각부처의 주요업무중 심사분석의 필요가 있어 연초에 작성하는 주 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각 부처	· 정부의기획및 심사분석에관 한규정
	· 대통령 지시사항 심사분석	· 제13대 대통령 취임(1988.2.25) 이후 당해 분기까지	각 부처	· 대통령지시사 항관리지침
	· 대통령 선거공약 심사분석	· 제13대 대통령 선거시 제시된 선거공약 중 국무총리실에서 실천계획 확정된 선거 공약	각 부처	· 대통령선거공 약관리지침

구분	심사분석 업무명	대상사업	실시 기관	근거규정
성과분석	-중점사업 집중분석	-각부처의 주요업무중 중점적 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제기획원이 선정 한 사업	경제 기획원	· 정부의기획및 심사분석에관 한규정
	-각부처 자체 특별분석	-각부처의 주요업무중 별도의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각부처가 선정한 사업	각 부처	· 심사분석지침

2) 평가기법

평가기법은 적용단계에 따라 자료수집방법과 분석·평가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료수집방법은 사업시책의 추진실적 또는 성과에 관하여 타당성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분석·평가기법은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양적, 질적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시책) 추진의 정확성, 효과성, 능률성, 균형성, 합목적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은 정기보고체제의 활용방법, 문서조사방법, 현지방문 조사방법, 기타의 조사방법으로 분류된다.

- 정기보고체제의 활용
 - 집행관리(특히 점검)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
 - 주로 사업의 추진상황을 판단하는데 이용
 - 통상 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선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보고 받아 추진실적을 파악

▪ 문서조사방법

- 사업의 담당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조치한 내용을 문서화한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
- 대상사업에 관련된 별도의 문헌을 조사하는 방법

▪ 현지방문 조사방법

- 현지 출장을 통하여 사업의 시행현장에서 사업의 추진상황을 직접 주로 관찰하거나 관련 인사와의 면접 등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 현지 방문 조사방법을 정기보고체제 활동이나 문서조사방법의 보완적 수단으로 실태의 파악과 아울러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해 활용

▪ 기타의 조사방법

- survey조사, 실험조사
- 보통 이러한 과학적 방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따라서 대규모 계속사업이나 주요예산사업 중 문제점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나) 분석·평가방법

분석·평가의 방법은 크게 양적 분석방법과 질적 분석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 양적 분석방법

- 계량화 된 자료 및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
- 정확성, 효과성, 능률성, 균형성을 기준으로 함

▪ 질적 분석방법

- 계량화가 곤란한 규범 및 기준을 사용하여 분석
- 합목적성, 주민의 만족도, 정책부합성, 합리성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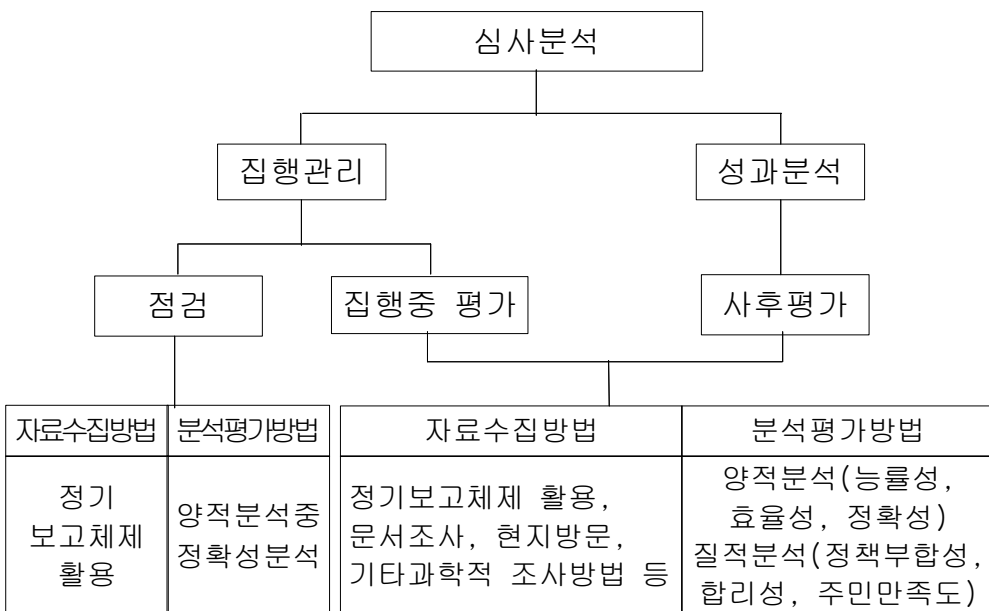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7> 분석평가방법의 개요

방법	내용	기준
양적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수화된 지표를 사용하여 실적 또는 성과를 분석 ·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률성: 산출(편익)/투입(비용) · 효율성: 목표실현치/목표계획치 = 발생된효과/기대효과 · 정확성: 실적/계획
질적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시행과 관련있는 제 활동을 다양하게 검토 · 제반규범 및 기준과의 비교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부합성 · 합리성 · 주민의 만족도

심사분석의 방법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본다면 집행관리 중 점검의 경우 자료수집방법으로 정기보고체계를 주로 활용하며 분석평가방법으로는 정확성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집행중 평가와 사후평가는 자료수집방법으로, 정기보고체제와 문서조사, 현지방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며, 분석평가방법으로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상황에 따라 그 장·단점을 혼합해 사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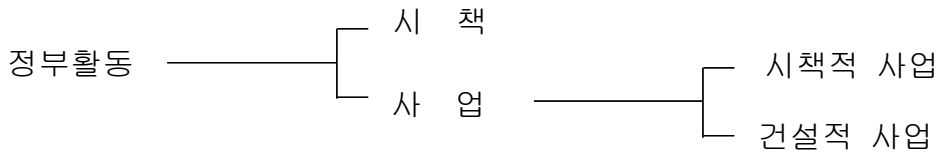
<그림 1-4> 유형별 심사분석방법 체계 (1981년 ~ 1994년)



3) 심사분석의 대상

심사분석은 원칙적으로 정부활동의 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하나의 활동 또는 일련의 상호연관된 모든 활동이 그 대상이 된다. 즉 각 부처의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도 심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각 부처의 기능수행을 위한 업무는 시책과 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은 다시 건설적 사업과 시책적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1-5> 심사분석의 대상



심사분석 대상인 시책과 사업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책
 - 정부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소관업무에 관하여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조치 또는 조치계획
 - 관련계획, 법령, 기타 제도운영방식의 변경조치를 통하여 목표달성을 추진함
 - 경제안정화시책이나 부동산투기억제시책 등
- 사업
 - 시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가 예산·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일련의 활동임
 - 시책사업
 - 예산·인력 등 자원의 투입과 함께 관련계획 또는 법령 기타 제도운영방식의 변경을 병행 추진하여 목표달성을 시도하는 것
 - 가족계획사업이나 기능공 육성사업 등
 - 건설사업
 - 예산·인력 등 자원의 투입운용을 통하여 목표달성을 시도하는 것
 - 도로건설이나 농업개발사업 등

<표 1-8> 심사분석의 대상

구분	시책	사업	
		시책적 사업	건설적 사업
개념	정부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소관업무에 관하여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조치 또는 조치계획	시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처가 예산·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일련의 활동	
특징	예산, 인력 등 사원의 투입보다는 관련 계획 또는 법령 기타 제도운영 방식의 변경조치를 통하여 목표달성을 추진	예산, 인력 등 자원의 투입과 함께 관련계획 또는 기타 제도운영방식의 변경을 병행 추진하여 목표달성을 추진	예산, 인력 등 주로 자원의 투입, 운용을 통하여 목표달성을 추진
목적	시책의 효과적 추진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	
예	경제안정화 시책,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	가족계획사업, 기능공 양성사업	도로건설사업, 농업 및 지역개발사업

4) 심사분석제도의 내용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 및 「심사분석지침」 등에 포함된 심사분석제도의 유형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9> 심사분석제도의 내용 (1983년)

대상	특성	담당기관	기타
주요업무시행계획	일반관리	-심사분석: 각 부처 -종합조정: 경제기획원	각 부처가 분기별로 실시
중점관리대상사업	중점관리	-심사분석: 경제기획원 -협의: 각 부처	경제기획원이 관련부처 협조 하에 수시로 집중적인 심사분석 실시
월별점검대상사업	월별점검	-점검: 각 부처 -종합조정: 경제기획원	각 부처가 월별로 추진실적을 점검
자체특별관리대상사업	중점관리	-심사분석: 각 부처 -종합조정: 경제기획원	각 부처가 수시로 집중적인 심사분석 실시

가) 주요업무시행계획

- 당해년도 개시전까지 각 부처가 수립한 주요업무계획을 심사분석하기 쉽도록 단위사업별 또는 시책별로 분류·작성하는 시행계획
 - 경제기획원이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지침을 시달(1월말)하고, 각 부처가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2월 20일까지 경제기획원에 제출
 - 경제기획원에서 시달된 심사분석지침(2월말)에 따라 각부처가 매 분기마다 소관주요사업 및 시책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 주기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잠재되고 있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기하고 나아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능력을 제고

-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한 심사분석의 경우 각 부처는 매 분기마다 분기가 끝난 후 40일 이내(연도말은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에 제출
 - 심사분석결과의 통보내용은 주요시책과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 심사분석결과 노출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시정조치내용과 시정조치계획 등이 포함됨

나) 중점관리대상사업

- 경제기획원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주요업무시행계획에 포함된 시책 및 국가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중에서 문제가 있거나 예상된 다든지, 국민생활에 과급효과가 크다든가, 중요도가 높거나 하여 집중적으로 집행을 관리 또는 성과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정한 사업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함

-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은 경제기획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각 부처에서도 소관시책 및 사업 중에서 집중적인 심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함

- 목적

- 예산의 절약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관리를 도모
- 경제기획원은 사업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반기별 또는 연중 수시로 집중적인 점검관리 및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방안을 제시하여 계획의 수립 또는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반영

다) 월별점검대상사업

- 주요업무시행계획 중 주무 부처가 중요도에 따라 월별로 진도 및 부진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한 핵심적인 시책이나 사업

- 심사분석의 주체

-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

- 목적

- 부처별 중점사업의 월별진도상황을 점검·관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
- 대통령이 국정외 추진상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분석 및 결과 제출

- 월별점검대상사업에 대하여 각 부처가 월별점검후 다음달 6일까지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에 제출
- 경제기획원은 각 부처의 월별점검결과를 종합 조정하여 월별추진상황, 부진사유 및 보완대책 등을 점검, 매월 10일 대통령에게 보고

라) 자체특별관리대상업무

- 1983년 경제기획원 연초 업무계획 보고시 각 부처가 자체특별관리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하고 1983년도 심사분석지침에 반영하여 각 부처에 시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 자체특별관리대상사업이란 각 부처 소관업무중 중요도가 높은 사업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는 문제가 예상되어 자체적으로 집중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책 및 건설사업을 말함
- 자체특별관리대상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자체특별분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짐
 - 각 부처 자체심사분석의 활성화
 - 각 부처 스스로 집중적인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문제점을 자발적으로 노출하고 시정방안을 강구
 - 심사분석기법의 발전·확산
 - 경제기획원이 개발 보급한 심사분석기법을 각 부처 업무에 적용하여 공통편람의 유용성 및 한계를 검정하여 공통편람을 수정·보완하거나 부처별 편람을 개발하여 심사분석기법의 발전과 확대를 기하도록 하였음
 - 자체심사분석결과를 경제기획원에서 평가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적 분석능력을 높이고 심사분석업무의 조기정착을 유도함
- 결과제출 및 보고
 - 자체특별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의 경우에는 각 부처가 그 결과를 반기별로 경제기획원에 제출
 - 이 결과는 그 시정조치내용과 함께 연2회 실시되는 심사분석결과의 종합보고시 경제기획원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이러한 주요업무시행계획, 월별점검대상사업, 대통령 지시사항, 각 부처 자체특별분석, 중점사업 집중분석으로 나누어 평가한 1987년도의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심사분석제도 운용개요 (1987년)

구 분	심사분석내용	대상사업수
1. 점검관리		
가. 주요업무시행계획	부처별 주요업무계획상의 단위시책 및 사업에 대한 점검·관리	716 개사업
나. 월별점검대상사업	매월 점검관리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관리	75 개사업
다. 대통령지시사항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관리	627 개사업
2. 분석평가		
가. 각부처 자체 특별분석	문제사업 또는 문제예상사업에 대한 각부처의 자체 분석·평가	상반기 14개사업 하반기 14개사업
나. 중점사업 집중 분석	문제사업 또는 문제예상사업에 대한 경제기획원의 집중 분석·평가	상반기 1개사업 하반기 3개사업

·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

- 1987년 34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였던 총 716개 주요업무중 700개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완료 또는 정상추진 되었으며 16개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나타났음
- 총 716개 사업가운데 16개 사업이 부진으로 나타나 부진율은 2.2%로 나타났음

주요업무시행계획심사결과표

계	정 상			부 진
	소 계	완 료	추 진 중	
716 개사업	700	111	589	16

- 부진사업의 원인을 보면 외부여건변화로 인한 부진이 5건, 대민간보상협의 지연이 6건, 사전검토미흡으로 인한 부진이 4건, 관련부처 협의지연이 1건으로 나타났음

- 외부여건변화와 대민간보상협의지연과 같은 원인들은 정책결정자들이 고려 혹은 예측하지 못한 이유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상대자 (국민들에게 보상)들의 문제가 상존해 왔음
- 사전검토미흡이라는 원인은 정책결정자들의 세심한 배려와 그들의 노력에 의해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이었음
- 주요업무시행계획의 부진사업 16개 가운데 사전검토미흡에 의한 부진사업 4개는 총 부진사업 가운데 25%를 차지하였음

부진원인별 주요업무시행계획

부진원인	사업명	기관명
외부여건변화	○중장기연불수출지원금의 확대 ○주택건설 ○부산항 3단계 개발사업 ○인천항 선거내 정비 ○수산업연구단지조성	재무부 건설부 해운항만청 " 수산청
대민간 보상 협의 지연	○전주권지역개발 ○광역 상수도건설 ○공업도시 하수도건설 ○일반도로건설 ○특정유해산업폐기물처리장설치 ○광양항건설	건설부 " " " 환경부 해운항만청
사전검토미흡	○광양공업기지항만건설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첨단연구능력향상 ○아르헨티나 사업진출	건설부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수산청
관련부처 협의 지연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건립	노동부

· 월별점검대상사업관리

- 1987년도 월별점검대상사업은 22개부처의 총 75개사업인바 70개 사업은 당초계획대로 완료 또는 정상추진되었으나 5개사업은 부진으로 나타났음
- 그러므로 75개 사업중 5개사업이 부진으로 나타나 부진율이 6.7%로 나타났음

월별점검대상 심사결과표

계	정 상			부 진
	소 계	완 료	추 진	
75 개사업	70	4	66	5

- 5개의 부진사업중에서 부진원인이 외부여건변화의 경우가 2건, 사전검토미흡의 경우가 2건, 관련부처 협의지연의 경우가 1건으로 나타났음
- 그러므로 5개의 부진사업가운데 사전검토 미흡에 의한 부진사업이 2개로 나타나 40%에 달하였음

부진원인별 월별점검사업

부 진 원 인	사 업 명	기 관 명
외부여건변화	○ 지방국립대학(교) 기숙사 확충 사업 ○ 부산항 3단계 개발사업	문 교 부 교 통 부
사전검토미흡	○ 광양공업기지 항만건설 ○ 대도시 생활보충대상자 지방 이주사업	건 설 부 보건사회부
관련부처 협의지연	○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립	노 동 부

· 대통령 지시사항 심사분석

- 1987년중 34개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한 대통령 지시사항은 총 627개 사업이었으며 이중 5개 부진사업을 제외한 622개 사업이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음

대통령 지시사항 심사분석 결과표

계	정 상			부 진
	소 계	완 료	추 진 중	
627 개사업	622	433	189	5

- 부진사업의 원인을 보면 사전검토미흡이 4건, 외부여건변화로 인한 부진이 1건으로 나타났음
-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부진원인별 대통령지시사항

부진원인	지시사항제목	기관명
사전검토미흡	○역내의 관가복원 및 조정	문화공보부 수 산 부 환 경 부 해운항만청
	○아르헨티나 사업진출 추진	
	○팔당상수원 수질보전대책	
	○군산신항개발	
외부여건변화	○ 부산항 부두건설	해운항만청

· 각부처 자체특별분석

- 1987년도중 자체특별분석을 실시한 기관은 35개 대상기관중 상반기에 14개기관, 하반기에 14개기관이 참여하여 총 28개 사업에 대한 특별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자체특별분석에 대한 각 기관의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났음
- 1987년도 하반기 자체특별분석한 14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문교부의 <연구·실험·시범학교운영> 등 일부과제는 뚜렷한 문제의식하에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일부기관에서는 분석사업대상의 선정이 부적당하거나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에 그침으로서 특별분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문제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자체심사분석을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심사분석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특별

분석제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분석태도가 요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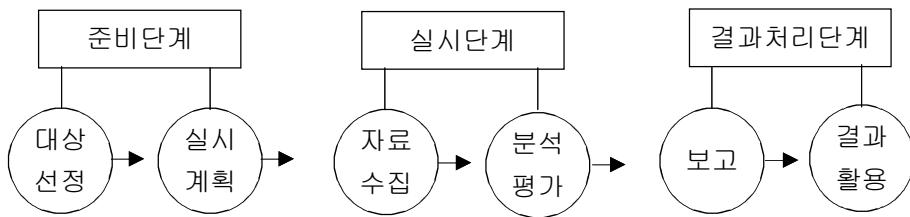
▪ **중점사업 집중분석**

- 각 부처가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 중 1987년에 4개 사업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이 집중분석을 실시하였음
- 먼저 1987년 상반기에는 관광지개발사업의 1개 사업을 분석하였고 하반기에는 노인복지대책, 산업안전 및 직업병관리의 효율화방안,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의 3개 사업에 대해 분석하였음
- 1987년도 각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결과, 극히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초계획대로 완료하였거나 정상추진중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는 각 기관에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면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로 판단되었음
- 그리고 부진사업의 원인은 관련산업의 경기침체와 같은 불가피한 외부여건에 기인하는 사례도 있으나, 대민(對民)간 협의 지연, 충분한 사전검토부족 및 관련부처 협의지연 등 아직도 행정절차상의 개선여지가 상존하고 있었음
- 특히 국민의 권리의식증대에 따라 민간과의 보상문제 협의지연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는 바, 향후 이에 대한 특별한 보완조치가 강구되었음
- 또한 1987년 중 28개 사업에 대하여 각 부처가 자체특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4개 사업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에서 집중분석을 실시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었음
- 그러나 각 부처 자체분석의 경우 일부기관에서는 자체분석을 실시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음

5) 심사분석의 절차

심사분석의 절차는 준비단계, 실시단계, 결과처리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되었는데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 1-6>과 같다.

<그림 1-6> 심사분석의 절차



가) 심사분석의 준비단계

- 심사분석의 대상선정과 실시계획의 수립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상선정을 위하여 먼저 행하여야 할 작업은 대상선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임
 - 대상선정 기준
 - 각 부처 소관업무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시책이나 사업으로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설정하여 심사분석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가능한 사업
 - 정치성 또는 윤리성이 농후하여 심사분석의 결과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나 시책은 제외
 - 대상업무
 - 중요도와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 때로는 상부 또는 외부 요청에 의거하여 추가되는 경우가 있음
- 실시계획의 수립
 - 심사분석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또는 예산 등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심사분석의 적정성을 높이고 심사분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과정

- 사전조사
 - 대상사업이나 시책의 내용 및 배경을 파악하고 심사분석의 방향을 검토하며 비교 가능한 기준지표를 설정하고 추정하기 위함
- 실시계획
 - 심사분석의 목적설정 및 추진, 심사분석의 방향설정, 심사분석의 설계 등의 과정을 거치게됨
 - 이러한 과정에서 심사분석을 위한 투입, 산출, 모형, 실적 또는 성과의 측정을 위한 기준과 지표 및 분석방법이 결정됨

나) 심사분석의 실시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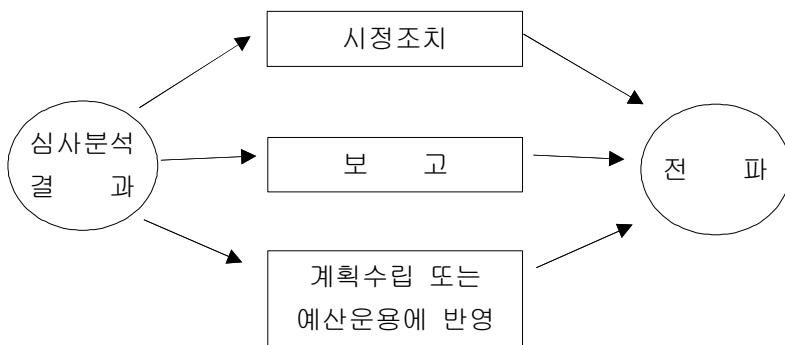
심사분석의 실시단계는 실시계획에 의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이다.

- 자료수집계획의 수립
 - 자료수집의 방법 및 범위를 결정
- 자료의 수집
 - 일반적 자료수집
 - 대상사업이나 시책에 관한 문서, 문헌을 조사하여 자료를 모집
 - 심층자료수집
 - 일반적인 자료수집 결과가 부실하거나 심사분석의 내용상 심층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수집된 자료의 분석·평가
 - 자료의 정리, 자료의 검토, 그리고 평가목적이나 대상업무의 성격에 맞는 분석기법을 선정하여 적용하는 과정
- 대안검토 및 시정방안 건의
 -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문제에 관한 시정방안을 강구하고 연계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안검토 및 시정방안을 건의

다) 심사분석의 처리단계

심사분석의 처리단계에서는 심사분석결과의 보고, 시정조치, 예산운용 및 차기 계획수립에의 반영, 결과자료의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1-7> 심사분석결과의 처리단계



- 보고서로 작성되어 상부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심사분석 요구자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자에게 제출
- 심사분석의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시정방안을 수립한 후에 이를 스스로 시정하거나 연관 부처(기관)에 통보
- 심사분석 결과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편성이나 분기별 배정에 반영하고, 심사분석의 결과 예산수립 상에 문제가 있었거나 계획수립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중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획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차기 계획수립 및 운용에 반영하도록 조치
- 심사분석결과 노출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차후에 다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관 업무담당자에게 심사분석자료를 배포하고 심사분석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교훈 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조치

6) 심사분석 결과 보고

심사분석 결과는 연2회 반기별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보고사항
 - 심의분석업무에 관한 일반사항
 -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대한 자체심사분석 결과
 - 월별점검대상사업의 점검결과
 - 중점 관리대상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
 - 5개년계획의 추진상황 등
- 보고시기
 - 상반기 심사분석결과 제출기한인 8월 10일 이후
 - 당해년도 심사분석결과 제출기한인 2월 20일 이후

7) 심사분석 결과의 처리

보고된 심사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단계에 의해서 처리되었으며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심사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심사분석 결과를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 심사분석의 결과는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지방의 경우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함
- 심사분석결과 그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 경우 그것이 예산관계사항이면 경제기획원장관이 직접 명하여 예산편성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에 반영토록 배치하며 비예산 관계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함

- 시정을 요구받은 기관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지방의 경우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함

2.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1990. 4 ~ 1994. 12)

(1) 도 입

1) 배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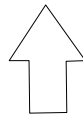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는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제도가 전 정부적 차원의 국정흐름을 진단하는데 한계성을 갖고 있는데 대한 보완적 성격에서 출발하였다.

설치이유는 제6공화국의 중반기를 맞아 국정운영이 가일층 전향적·동적이 되도록 국무총리실이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전정부적 차원에서 점검·평가·조정함으로써 국무총리의 내각통일기능을 강화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능을 착실히 수행하려는데 있으며,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사회 정치적 여건변화 속에서 정부주요정책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대정부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정책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심사평가는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과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로 이원적 체제가 이루어졌다.

- 1990년 4월 16일 총리령 제364호로 「정부주요정책평가및조정에 관한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행정조정실에 평가기능이 신설되어 제2행정조정관실에 정책평가심의관실이 설치됨

<기본 목표>

- 6공화국의 중반기를 맞아 국정운영이 가일층 전향적·역동적이 되도록
- 국무총리실이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점검·평가·조정함으로써,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기능을 강화하여 대통령에 대한 보좌기능을 착실히 수행
-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내 사회·정치적 여건변화 속에서 정부 주요정책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대정부 신뢰 제고



<추진 체제>

- 행정조정실 기본조직 최대활용 및 평가전담반 설치
 -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으로 평가의 민주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정책대안의 발굴에 역점
 - 과제별로 평가자문위원 위촉(비상설)과 여론조사기관의 활용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국민과 이해계층의 의견수렴
 -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정례화하여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
- ⇒ 대통령주재 “주요정책평가 확대보고회”를 반기별로 개최

- 1994년도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1차적 기초자료로 하여 상위평가를 실시하는 종합평가형태를 취하였으며, 상위평가도 부처별로 1~2개 특정정책의 추진상황에 초점을 둔 실적평가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단기적이고 외형적인 평가가 지속됨
 -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기능조정노력과 리더십, 인사 및 조직관리 등의 정책추진체제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제외됨
 - 행정조정실에서는 1994년 공공부문에서 안고 있는 비효율, 저생산성을 타개하기 위한 부처종합 평가제도를 연구·개발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함
 - 이를 토대로 1995년부터 동 제도를 추진키로 하였으나 1994년 1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기능과 통합됨에 따라 무산

2) 심사분석과 정책평가의 기능 비교

199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경제기획원의 심사평가제도는 개별적 특정단위사업 및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진도와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도모하였고, 행정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정책평가의 근본취지는 국정전반에 걸쳐 주요정책과제의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그 개선방향을 각 부처 차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있었다.

양 제도는 대상과제의 선정기준과 평가목적에서 차이점이 있었으나, 정책추진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었다.

< 표 1-10 > 심사분석과 정책평가의 기능 비교 (1994년)

구 분	심사분석(경제기획원)	정책평가(행정조정실)
근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1982) -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령(1990) - 정부주요정책과제및조정예관한규정
대상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요사업 심사분석(각 부처에서 실시) · 각 부처에서 연초에 수립한 주요업무계획 중 심사분석이 필요한 사업 - 1994: 274개 사업(1993: 222개 사업) ② 중점사업 집중분석 · 경제·사회적으로 중요성이 크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선정된 사업 - 1994: 5개 사업 ③ 정부투자기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요국정방향중심 과제를 선정 - 국가경쟁력 강화관련 과제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 · 1994: 44개 과제(1993: 20개 과제)
실시주기 및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국무회의 보고(8~9월) · 하반기: 국무회의 보고(익년도 2~3월) · 1/4분기, 3/4분기는 부진사업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국무회의 보고(7~8월) · 하반기: 연도말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보고(국정평가에 포함)
평가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부처 심사분석 결과보고(매분기별) ②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결과 종합 검토 - 관계부처 심사분석 회의개최(차관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부처 자체평가(연 2회) 보고 ② 총리실의 종합조정평가 - 자문회의 활용
주요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인 특정단위사업이나,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진도를 점검하여 각 사업의 부진원인을 사후적으로 분석하여 당해 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주요시책들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 - 정책집행 과정분석에 중점
인력	국장 1, 서기관 4, 사무관 18, 주사 18	국장 1, 서기관 4, 사무관 6, 주사 1

(2) 추진 체계

1) 조직 및 업무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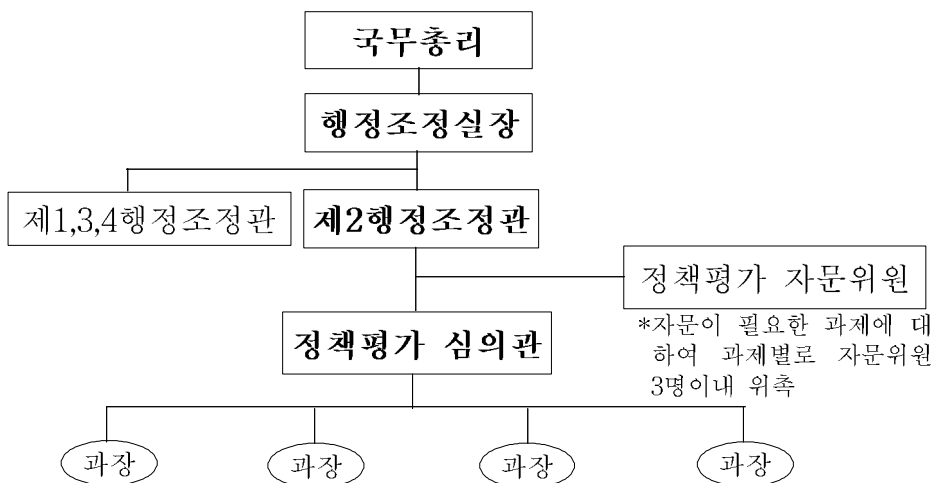
1994년 당시 행정조정실에는 제1행정조정관, 제2행정조정관, 제3행정조정관 및 제4행정조정관 각 1인이 있고, 행정조정관 밑에는 10명의 심의관이 있으며, 각 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였다.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는 행정조정실장 밑에 경제정책조정업무를 맡고 있던 제2행정조정관이 맡았으며 정책평가를 위해 정책평가심의관을 두었다.

- 제2행정조정관
 - 각 중앙행정기관(경제관계부처)의 행정의 지휘·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1990. 5. 7 대통령령 제13003호 신설)
 - 기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실장이 지시하는 경제행정에 관한 사항에 관해 실장을 보좌

다음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조직체계를 나타낸 도표이다.

<그림 1-8> 제2행정조정관의 업무체계 (1994년)



2) 인적구성

초기 정책평가기능을 담당한 정책평가심의관실은 정책평가심의관 1명과 서기관 2명, 사무관 2명으로 출발하였다.

- 실질적 정책평가 수행업무는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이 수행하고 나머지 인력은 당시 상공자원부 등 부처관련 업무를 수행

1994년 1월 평가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담당 인력보강을 도모하게 되어 부처로부터 파견을 받는 등으로 총원하여 14명으로 증가하였고, 서기관 1명 및 사무관 2명이 4개 분야 2~3개 과제를 부여하여 집중검토 평가하였다.

<표 1-11> 행정조정실 인원현황 (1994년 2월)

직급별	정 원	현 원	비 고
계	113	118	+5
정무직	1	1	
1 급	4	4	
2 - 3급	10	10	
4 급	23	25	+2
4 - 5급	4	2	-2
5급이하	71	76	+5

* 제2행정조정관실의 정책평가 담당 공무원 수는 총 14명임

(3) 평가방법

1) 평가사항

정책평가지 역점을 둔 주요평가사항은 첫째, 업무추진의 능률성 분석 둘째, 정책집행의 과정분석 셋째, 정책추진의 성과분석 넷째, 일반적인 사항 이외의 분야에 대한 검토분석(특기사항) 등이 있었다.

- 업무추진의 능률성 분석
 - 시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상태는 충분하였는지 여부
 - 계획된 일정대로의 진척 여부
 - 구체적 사업단위별로 당초 자금 및 인력 투입계획과 집행결과 비교
 -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계획 수립과 추진 여부
 - 시책추진과정에서의 전문성 반영 정도

- 정책집행의 과정분석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과 공개·홍보 정도
 - 대내·외적 협조과정
 -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책수행 여부

- 정책추진의 성과분석
 - 정책추진의 효과가 수혜자(주민, 기업 등)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주고 있는지 여부
 - 정책추진의 효과에 관련된 직·간접적 영향

- 일반적인 사항 이외의 분야에 대한 검토분석(특기사항)
 - 각 개별부처 특수성격의 분야
 - 일상적인 행정관련 사항(인력의 전문화, 행정의 전산화·자동화 정도 등)

2) 평가대상과제

총리실의 정책평가제도가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업무와 관련되는 정부의 주요정책이다.

- 정부 주요정책이란 매년 대통령이 제시하는 국정운영에 대한 주요시책과제와 부처업무보고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 평가가 가능한 구체적 국정운영 주요과제를 국무총리실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하는 것

- 이 시기의 정책평가제도는 전 시대의 심사분석제도에 비해 좀 더 범위가 넓은 정책으로 2개 부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전 정부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임
- 주요 대상 내용상 분류
 - 당해 년도의 국정운영 주요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즉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등에서 제시하는 시책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 중 중점추진과제
 - 국민생활에 직결되어 사회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현제 또는 앞으로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과제
 -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개혁과제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과제
 - 협조 및 조정의 역할이 수반되는 과제, 즉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부처간 업무협업의 및 의견조정 등이 필요한 시책과 집단이기주의, 부처이기주의 등이 표출될 수 있는 과제
 - 대통령공약사업, 대통령지시사항, 각 부처 관심지원사업, 총리실 중점추진 및 관심지원사업, 시정과제 등에서 선정
 - 1993년도 문민정부에 들어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 신경제 5개년계획, 중기재정계획, 각 부처별 업무추진계획 등에서 선정

(예시) 평가과제 선정 (1994년도)

- 각 부처의 종합평가를 위해서는 모든 정책사항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각 개별 부처별로 주요정책과제 2개를 선정함
- 주요정책과제는 1994년도 주요국정방향인 ‘국가경쟁력강화’관련 과제를 위주로 선정함
- 부처별·과제별로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실적평가함

3) 평가 절차

- 「평가지침」을 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시달(정책평가심의관실 주관)

- 각 부처는 평가지침에 근거하여 자체평가 실시 후 총리실에 제출
(각 부처 기획관리실 주관)
- 총리실의 종합조정평가 실시
- 각 담당심의관실별로 평가반 구성(전체 9개 반)
 - 1개 팀 구성인원(5~6명)
 - 각 담당심의관(평가반장)
 - 각 담당심의관실 과장(2명)
 - 정책평가심의관실 과장(1명)
 - 관계 전문가(2~3명)
- 운영
 - 각 부처담당 심의관실에서 부처 자체평가를 토대로 부처별 평가 실시
- 각 부처별 자체평가내용에 부처 자체평가내용 검토를 위해 10개의 평가사항 검토를 위한 점검리스트를 작성(세부실천계획 포함)하여 이에 따른 사실검증에 최대한 집중
 - 정책평가심의관실은 각 평가반에서 평가한 결과를 평가사항별로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평가조정회의」를 운영(행정조정실장 주재)
- 관계 전문가 추천 및 통보
 - 부처담당 각 심의관실에서는 평가반 구성 계획에 나타난 관계 전문가를 선정해 정책평가심의관실에 통보(6월 30일까지)
 - 정책평가심의관실에서 관계 전문가에게 일괄 통보
- 각 부처별 과제에 대한 「평가조정회의」 결과를 각 담당조정관이 국무총리께 보고

(예시) 부처별 평가과제 (1994년도)

- 경제기획원
 - 물가안정
 - WTO 출범에 따른 경제 국제화의 추진
- 통일원
 - 북한정세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외무부
 - 세계화 시대에 맞는 실리외교 추진
 - 해외동포 지원 및 활용
- 내무부
 - 지방자치의 정착발전
 - 4대 질서 운동
- 재무부
 - 금융자유화
 -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 법무부
 - 민생침해 범죄소탕
 - 국제화·개방화관련 법률 검토·지원강화
- 국방부
 - 국방관련 제도 개선
 - 군 전문인력 활용
- 교육부
 - 대학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경쟁력 제고
 - 기술 및 직업 교육 강화
- 문화체육부
 -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대책 추진
 - 청소년 육성대책 추진
- 농림수산부
 -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 농산물유통구조개선
- 상공자원부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기업활동 규제완화
- 건설부
 - 사회간접자본 확충
 - 수도권집중 완화
- 보건사회부
 - 식품위생안전
 - 장애인 복지증진
- 노동부
 - 노사관계 안정대책
 - 산재예방 대책

- 교통부
 - 「1994 한국방문의 해」 사업추진
 - 교통사고 방지
- 체신부
 -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 통신사업 구조개편
- 총무처
 - 정부내 전문가 확보 대책
 -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과 공직사회 활성화
- 과학기술처
 - 첨단과학기술의 진흥정책
 -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추진
- 환경처
 - 수질관리개선
 - 폐기물 적정관리
- 공보처
 - 종합유선방송 추진
 - 국제화·개방화관련 정책홍보 강화(WTO중심)
- 법제처
 - 정부 입법활동의 체계적 추진
 - 법령 심사운영
- 국가보훈처
 - 복지시설 확충

4) 보 고

- 각 부처 자체 평가(연2회) 보고
- 총리실의 종합조정평가
 - 자문회의 활용
- 상반기 : 국무회의 보고 (7~8월)
- 하반기 : 연도말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보고(국정평가에 포함)

5) 평가결과의 처리

- 평가결과에 따라 제도보완, 예산의 효율적 활용, 포상제도 반영 등 필요조치를 강구하되 각 부처를 독려·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
- 평가결과의 피드백(Feed-Back)
 - 차년도 각 부처 업무계획에 반영
 - 중·장기 제도개선에 활용

Ⅲ.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1994. 12 ~ 1998. 2)

1. 도 입

1994년도 국무총리실의 정책평가는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1차적 기초자료로 하여 총리실에서 상위평가를 실시하는 종합평가형태를 취하였으며, 총리실의 상위평가도 부처별로 1~2개 특정정책의 추진상황에 초점을 둔 실적평가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단기적이고 외형적인 평가가 지속되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안고 있는 비효율, 저생산성을 타개하기 위한 부처종합 평가제도를 연구·개발하여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1995년부터 동 제도를 추진키로 하였으나 실패하게 되고, 1994년 12월 23일에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종래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업무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업무가 심사평가업무로 통합하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가 시행되었다.

- 심사평가제도란 정부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정부업무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함
- 심사평가제도의 근거규정은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전문개정 1995. 2. 24, 대통령령 제14,531호)에 의거함

2.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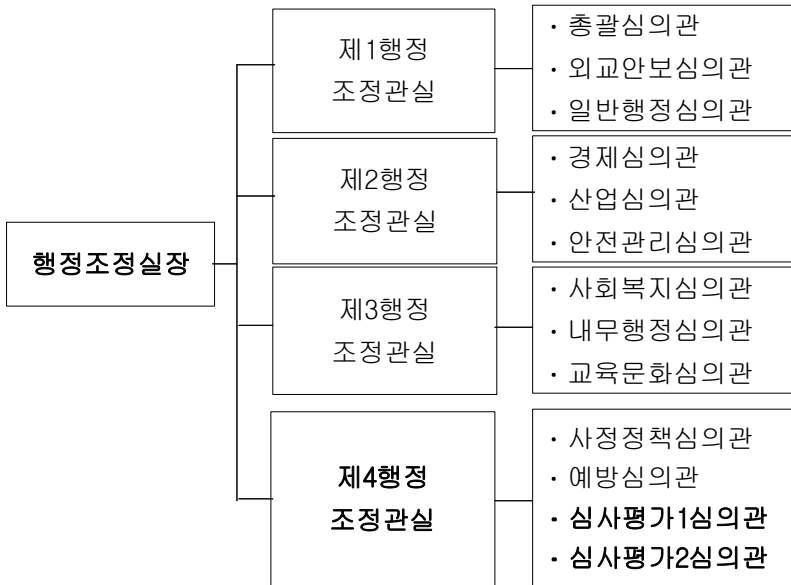
(1) 조 직

1994년 12월 기구개편으로 통합된 심사평가업무는 행정조정실 제2행정조정관에서 제4행정조정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제4행정조정관 밑에 심사평가1심의관과 심사평가2심의관의 2개 심의관으로 확대되었다.

제4행정조정관은 내각 사정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1994년 12월 조직개편으로 정부심사평가업무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심사평가 업무담당 조직도는 <그림 1-9>과 같다.

<그림 1-9> 심사평가의 조직도 (1995년)



(2) 인적구성

- 제4행정조정관실내 심사평가1·2심의관실의 2개국으로 출발하였으며, 과장 7명, 사무관 12명, 주사 2명 등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함(타 부처로부터 파견된 인력 과장 2명, 사무관 4명 포함)

3. 평가방법

(1) 평가의 종류

평가의 종류에는 정기심사평가와 수시심사평가가 있었다.

1) 정기심사평가

업무추진성과에 대한 집중분석 실시시 전체적인 사업목적이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내용의 달성 여부와 당초 기대하였던 정책효과 달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였다.

- 정기심사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 연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총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평가임
 - 공정집행이나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단순비교는 지양함
- 심사평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하는데 있어 총리실내에 관계전문가들로 ‘심사평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심사평가작업 상시 지원체제를 마련함
- 필요시 특정과제의 평가작업을 위해 관련부처 공무원, 자문위원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운영함
 -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대해 조사·연구 및 여론조사 병행
 -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와 사업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인지도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심사평가결과에 반영
 - 기술적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기관에 용역의뢰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평가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심사평가를 실시
- 총리실의 종합심사평가
 - 국무총리는 보고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분기별 자체심사평가의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

- 정기심사평가 대상과제
 - 각 부처 주요사업 위주의 대상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 대상과제 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
 - 중점관리과제는 각 부처의 핵심사업이나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40~60개 정도를 선정하여 국무총리실에서 관리
 -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자체 관리
 - 국가경쟁력강화관련 과제중심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관심도 높은 과제

2) 수시심사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국무총리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심사평가로 현장중심의 구체적 사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 현지 확인·점검을 통한 문제해결 위주의 심사평가실시와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 수시심사평가 대상과제
 - 현안사항 위주의 대상과제 선정·관리하는데 있어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공직부조리나 민원소지 예방을 위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매월 5~10개 선정·평가
 - 시대변화에 따라 정비·개혁이 필요한 시책 및 사업 포함
 - 후보과제를 발굴·축적하여 과제 풀(Pool)을 상시 운영
 - 완료되는 과제가 있으면 그에 대처하는 새로운 과제를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사전평가를 실시함
 - 구체적·현실적 대안제시로 행정형태 및 제도개선 유도

(2) 평가의 기준

- 평가대상
 - 심사평가는 1995년도 중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그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성과는 원칙적으로 1995년도 중

추진된 사업성과 및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

- 분야별 심사평가는 1995년도의 추진상황의 누계개념으로 실시한 것으로 당해 분기까지 추진된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해 파악함
- 평가원칙
 - 개별 평가대상에 대해 그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
 - 각종 조치사항이 계획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더라도 사업목적, 취지 등에 따른 실질적 내용의 달성 여부를 집중 평가
- ‘평가착안사항’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실시
 - 각 평가분야별로 제시된 평가착안사항 및 평가기준의 개별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실시
 - 다만 세부사업의 성격과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평가착안사항의 특정평가항목의 평가는 생략할 수 있으며,
 - 세부사업별로 특정평가항목의 평가가 중복되는 경우는 핵심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당해 항목의 평가실시 가능

(3) 평가결과 보고

- 국무회의등 보고
 - 상반기 : 국무회의 보고(7~8월)
 - 심사평가실시결과는 반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
 - 수시심사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사무조치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기동성 있게 대처
 - 시정을 요구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보고
- 대통령 보고
 - 하반기 : 연도말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보고(국정평가에 포함)
 - 심사평가결과 및 시정조치이행상황에 대해서는 「정책평가보고대회」 등의 형식으로 별도로 대통령에게 보고

(4)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는 정부업무의 추진현황 및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집행과정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예산반영
 - 심사평가결과 예산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예산편성 및 배정시 반영
- 시정조치상황 점검
 - 심사평가결과 요(要)조치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의 이행상황은 분기별로 관리
 - 조치가 미흡한 사항은 관계부처 실무회의, 차관회의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
 -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안건화하여 반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

IV.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1998. 2 ~ 현재)

1. 도 입

1997년도말부터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세계화추진위원회의 대정부 건의를 비롯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종래의 정책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공부문이 공익·공평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한층 높이고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처 유인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평가제도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조정·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조정실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로 격상 확대 개편되면서,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4행정조정관도 심사평가조정관으로 변경되어 심사평가 업무가 강조되었다.

기관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체제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종래의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을 전문개정(대통령령 제15774호, 1998. 4. 15)하여 제5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관평가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과거의 실적평가 중심에서 평가기능에 경쟁요인을 도입하여 각 기관의 경영능력을 증시하는 평가체제로 전환하였다.

기관평가제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경쟁을 통해 책임성을 높이는 유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부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도입 목적·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 작고 능률적인 정부의 구현
 - 세계적 흐름에 따라 모든 국가는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함양에 힘을 쏟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도 공익·공평성을 견

지하는 가운데 효과성과 능률성 제고를 기치로 하는 기업가적 형태로 변모해야 한다는 전제가 무한경쟁 시대의 생존전략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제시됨

- 수요자중심의 행정으로 전환
 - 평가는 행정편의주의에서 고객중심주의의 행정을 이행토록 유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적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평가는 시대적 흐름에 있어 활성화 단계에 진입
 -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계획경제·통제계획이 보다 필요시 되는 시기에는 기획업무가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나 후생복지, 환경문제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시기에는 평가업무가 보다 더 활성화되는 정책순환관계의 변환을 맞게 됨
- 민주화 발전단계와 관련성
 - 주민의식이 높고 사회전반에 보다 더 민주화된 성향이 높은 경우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혜택이 적정하게 받고 있는 혜택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하며 이의 판단은 효과성 평가를 통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평가의 전성시대는 이미 열려 있었던 것임
- 책임행정의 구현
 - 평가는 국정의 흐름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으며,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됨
 - 범부처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제를 갖추는 데 기여하며, 국가경영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도모까지도 평가기능으로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됨
- 기존 심사평가가 주요국정평가를 뒷받침하지 못함
 - 평가업무의 전문성·객관성이 부족하고, 평가결과의 적극적인 활용이 미흡하며, 정책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

2. 추진체계

(1) 조 직

기관평가의 총괄적 주관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며, 국무조정실의 심사평가조정관 밑에 심사평가 1심의관실과 심사평가 2심의관실을 두었다. 각 부서별 구성과 기능은 <표 1-12>과 같다.

- 심사평가조정관은 심사평가업무를 총괄
- 심사평가 1심의관실은 정부업무에 대한 심사평가계획 및 제도발전, 평가기준·지표·평가환류사항 등 평가제도 관련업무와 경제분야에 대한 심사평가를 담당함
- 심사평가 2심의관실은 지방자치단체평가와 정부업무 중 사회문화 분야(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 일반행정분야(통일, 외교, 국방, 행정, 법무 등)에 대한 심사평가를 담당함

<표 1-12> 심사평가 관련 업무분담 및 인력 (2000년 6월 현재)

부서	기능	인력	
심사평가 조정관	-심사평가 총괄	조정관(1급) 기능직	1명 1명
심사평가 1심의관실	-심사평가제도 운영 -정부업무중 경제분야 (재경, 건설, 산자, 농림부등) 심사평가	심의관(2급) 과 장(3~4급) 담당(4~5급) 서무(6급) 기능직(여) 계	1명 4명 12명 1명 3명 21명
심사평가 2심의관실	-정부업무 중 사회문화(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 일반행 정(통일, 외교, 국방, 행정, 법무 등)분야 심사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광역자치단체)	심의관(2급) 과 장(4급) 담당(4~5급) 기능직(여) 계	1명 3명 8명 2명 14명

(2) 정책평가위원회

1) 연 혁

정부업무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제도 발전을 위하여 1998년 4월 17일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의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2001년 5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시행 이후 심의기구로 변화되었다.

가) 제1기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 「정부업무심사평가및조정어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774호) 제8조에 의거 제1기 정책평가위원회가 구성(1998. 4. 17)
- 학계 11명, 연구기관 5명, 민간단체 3명, 언론계 3명, 전문경영인 4명

나) 제2기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제1기 정책평가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제2기 정책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2000. 2. 8)

- 국민입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정부부문에 기업가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단체, 여성, 기업계 참여폭을 확대
- 학계 12명, 연구기관 4명, 민간단체 5명, 언론계 1명, 법조계 1명, 기업 6명(여성위원 4명)

다) 제3기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정부업무평가등에관한기본법」의 시행(2001.5.1)으로 기존의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어관한규정(대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라 동

규정에 근거한 제2기 정책평가위원회도 자동 폐지되고 평가기본법에 근거한 제3기 정책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2001년 5월 1일부로 운영하였다.

- 학계 14명, 연구기관 5명, 시민단체 6명, 기업 2명, 언론 2명 (여성위원 7명)

2) 기 능

평가를 주관하는 인적 요소에 있어서는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예 관한규정」 제9조(평가작업반 구성·운영)에서 정책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민·관 합동의 평가기능 수행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정부업무등에대한평가기본방향및평가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
- 중앙행정기관평가 및 지방자치단체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특정과제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평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

3) 구 성

- 본위원회
 - 3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행정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심사평가조정관이 간사기능을 수행
- 소위원회
 - 본위원회내에 제도·운영, 경제(1), 경제(2), 사회문화, 일반행정, 지방자치 등 6개의 소위원회를 설치

- 전 위원(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 제외)이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4) 운 영

- 정부업무 평가 보고회
 -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평가 결과와 평가결과 처리상황을 반기별로 보고
 -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주재하에 전 중앙행정기관장, 정책평가위원이 참석
- 정책평가위원회 합동 보고회
 - 국정과제 및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을 선정하여 실시한 특정과제 평가결과를 수시로 보고
 - 국무총리 주재하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정책평가위원이 참석
- 정책평가위원회 전체회의
 - 평가지침 등 정부업무 평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및 결정
 - 정책평가위원장 주재하에 국무조정실장, 정책평가위원이 참석
- 정책평가위원회 소위원회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3. 평가의 종류

정부업무등의 평가의 종류에는 기관평가와 특정과제평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평가가 있다.

- 기관평가
 -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함

- **특정과제 평가**

-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과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4.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평가영역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주요정책과제평가, 이를 추진하는 기관역량, 국민만족도 조사를 평가하는 기관평가와 함께 특정과제를 평가하였다.

- **주요정책과제평가**

- 각 부·처·청·위원회의 업무계획 중 가장 중요하고 그 기관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정책 또는 사업)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둠

- 기관역량평가
 - 각 부·처·청·위원회의 정책추진을 위한 의지·노력을 기관 운영혁신노력과 자체평가 수행노력 측면에서 평가

- 국민만족도 조사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 수혜자인 국민 또는 민원행정에 직접 관련되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조사·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의수렴을 최대한 환류시키기 위한 영역임
 -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성과단계의 효과측정을 위해 국민만족도 조사 실시
 - 평가대상기관(부, 처, 위원회, 청)을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1998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영역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표 1-13>과 같다.

<표 1-13> 국무총리실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영역 비교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p>◇ 기관평가</p> <p>①주요정책과제평가 -핵심과제</p> <p>②정책추진역량평가 -국정과제추진 -규제개혁추진 -현안대처 노력 -자체평가수행노력</p>	<p>◇ 기관평가</p> <p>①주요정책과제평가 -국정지표에 부합되는 과제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표적 업무 -정책형성·집행·성과 단계 평가 *단, 주요시책 만족도 조사는 성과평가에 포함</p> <p>②정책추진역량평가 -부처 자체 평가수행 노력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수행노력 ·정부혁신노력</p>	<p>◇ 기관평가</p> <p>①주요정책과제평가 -각 중앙행정기관별 핵심시책·사업</p> <p>②정책추진역량평가 -기관운영혁신노력 ·지식기반정부구현노력 ·정책추진법제화 ·부패방지 노력 ·국정홍보 강화노력 -부처자체평가수행노력</p>	<p>◇ 기관평가</p> <p>①주요정책과제 평가 -매년도 각 부처의 업무 계획중 가장 중요하고 그 부처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 -주요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실효성 확보</p> <p>②기관역량 평가 -평가대상 부처의 정책추진역량과 추진의지를 기관운영혁신노력과 자체평가 수행노력 측면에서 평가</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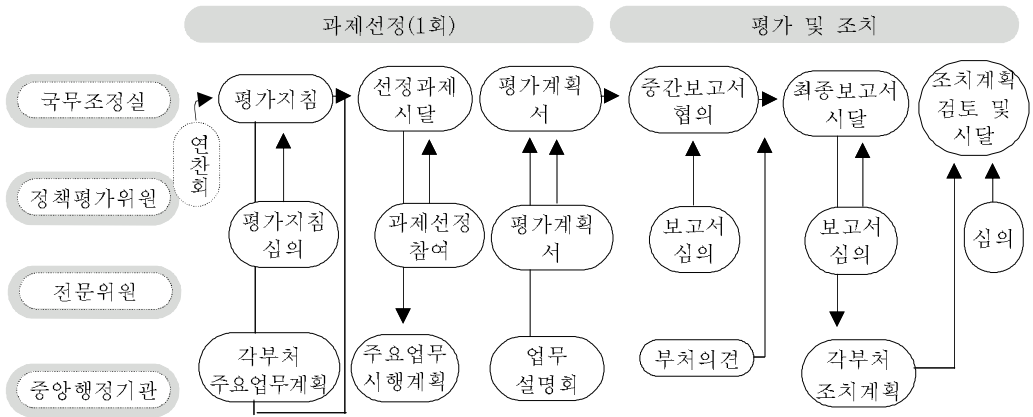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③국민만족도조사 -주요시책 -민원행정서비스	③국민만족도 조사 -주요 시책 -민원행정서비스	③국민만족도 조사 -주요시책 -민원행정서비스	③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비교평가함으로써 민의에 입각한 정책수립·집행을 도모
◇ 특정과제 평가 -국정현안과제	◇ 특정과제 평가 -필요시 선정평가 (예) 제2의 건국과제, 국정과제, 규제개혁, 국정현안과제 등	◇ 특정과제 평가 -「어업구조 개선사업의 효율성 평가」,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실태 평가」 등 5개 과제를 특정과제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	◇ 특정과제 평가 -「신기술 활용 증진방안」,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정책 평가」 등 6개 과제를 특정과제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국무총리 주재 합동보고회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보고

(2) 평가방법

1) 주요정책과제평가

- 각 부처 핵심시책, 사업을 선정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평가(연 2회)하였다.
- 평가대상과제별로 평가주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주관위원 책임하에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주관위원의 평가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가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평가업무의 실질적인 참여와 함께 관계기관 협조, 현지점검 공동수행, 평가관련 소위원회, 검토회의, 평가 전체회의 등 지원기능을 중점 수행하였다.

<그림 1-10> 주요정책과제 평가체계



가) 평가대상 과제

- 각 부·처·청·위원회의 업무계획 중 핵심시책·사업을 대상으로 통상 60~70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음. 이를 각 부·처·청·위원회별로 나누면 각 기관별로 2~3개 과제가 됨
- 과제선정기준
 - 국정운영 목표(국정지표)에 부합하는 과제로서 각 부·처·청·위원회별로 중요도가 높고 그 기관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로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정보화와 지식사회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계획의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는 과제로서 가급적 정책형성 수단이 아닌 집행수단에 진입되어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함
 - 과제선정은 평가주관위원(국무총리위촉, 민간전문가)이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후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며,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미 과제가 선정된 후라고 해도 대통령 업무보고·정책정보보고 등에서 주요현안으로 대두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소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과제로 조정함
- 각 부처는 주요정책과제를 자체평가과제에 포함, 자체평가도 병행 실시

나) 평가절차 및 세부내용

① 평가지침 수립 시달

당해연도 평가지침을 수립 각 중앙행정기관 등에 1월 31일까지 시달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② 평가대상과제 선정

평가주관위원 및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를 선정한 후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으며 또한 각 부처는 업무보고 중심으로 자체평가대상과제를 선정하여 국무조정실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③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제출

각 부처는 선정·통보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한다.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대내외 여건변화 등으로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근거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과 협의하고 사전협의 없이 시행계획이 임의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은 불인정하고 당초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정책목표(전체 및 당해연도 목표) 및 기대효과를 분명히 제시(계량화, 객관화)
 - 정책목표와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을 적절히 선정
 - 사업추진계획(사업내용, 일정, 예산 등)을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④ 주요업무 시행계획 검토·보완

평가주관위원회는 각 부처가 제출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시행계획의 보완 및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이를 수용하여 시행계획 보완 및 평가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주요업무 시행계획 검토사항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의 명료화·구체화 여부
 - 정책목표와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간의 적절성
 -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의 충실성
 - 자체평가계획의 충실성

⑤ 주요업무 설명회 개최

각 부처는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정책평가위원, 자체평가위원, 국무조정실 평가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⑥ 과제별 평가계획 수립

평가주관위원회(국무조정실)은 과제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평가계획 주요내용은 평가방향 및 평가범위, 평가기준별 평가사항, 평가작업반 구성, 평가추진일정, 관련자료 수집계획 등이 포함된다.

⑦ 평가실시

평가주관위원회(국무조정실)은 평가계획에 따라 각 부처의 업무추진 상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하되, 업무추진 현장점검, 전문가 및 정책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각 부처의 자체평가결과를 검토·반영하였다.

- 각 부처는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상·하반기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로 제출

⑧ 평가보고서 작성 및 처리

평가주관위원(국무조정실)은 제시된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주요정책과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되, 각 과제별로 제시된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평가결과는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되, 상반기는 7월말, 하반기는 당해 연도 12월말 또는 1월 중순경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시달하였다.

다) 평가방향 및 평가기준

- 평가방향
 - 상반기는 정책형성(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제대로 연계·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정책집행 상황의 문제점과 대책의 수립여부에 대하여 중점 평가. 정책효과가 발생하는 과제는 효과에 대한 분석도 가능
 - 하반기는 정책의 행정목표 달성도와 이에 따라 국민에 미치는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 효과의 달성정도에 대한 원인분석 실시. 효과를 통하여 집행상황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집행상황의 문제점이 없을 경우 정책목표 설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분석
- 평가기준
 -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단계별로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공통평가기준 설정(6개 평가기준, 10개 평가착안사항)
 - 모든 주요정책과제에 공통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실시
 - 각 부처도 공통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평가착안사항을 설정·평가함

2) 기관역량평가

각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책·사업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장이나 조직구성원의 추진 의지와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영역으로서, 그 구성요소로서는 크게 기관운영혁신노력과 자체평가수행노력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가) 기관운영 혁신노력 평가

▪ 평가목적

- 각 기관의 운영시스템 혁신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정책추진역량 강화 및 정부부문 혁신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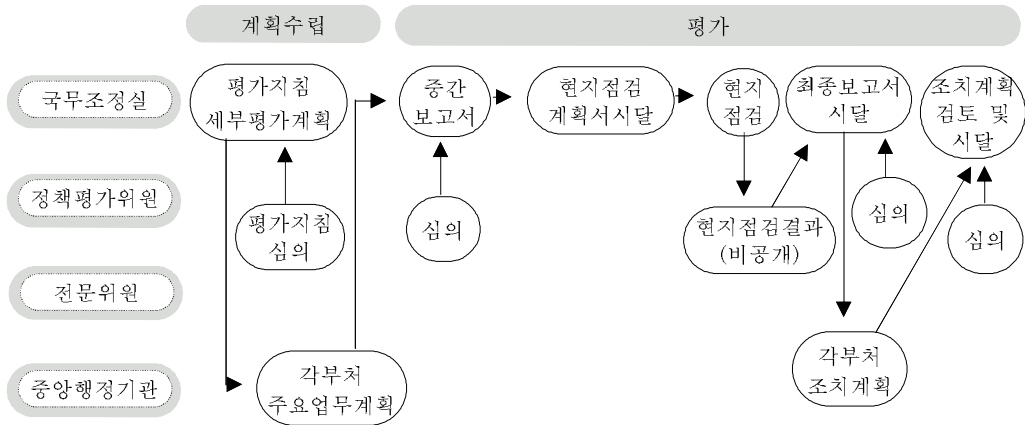
▪ 평가대상분야

- 당해년도의 정부혁신 분야 중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대상분야 선정
 - 1999년 : 목표관리제 운영, 행정서비스현장 도입 운영, 행정정보 공개확대, 부패방지 노력
 - 2000년 : 지식기반정부 구현노력, 정책추진의 법제화, 국정홍보 강화노력, 부패방지 노력
 - 2001년 : 전자정부 구현노력,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 조직운영 역량강화, 정책관리 역량강화

▪ 평가체계

- 각 부처 관리운영 노력에 대한 일정한 지표를 마련하고 각 부처는 평가대상분야의 평가항목별로 평가지표에 의한 추진실적을 작성·제출하여 국무조정실에서 검토·평가(연1회 하반기)

<그림 1-11> 기관운영혁신노력 평가체계



▪ 평가방법

- 국무조정실 평가담당관이 1차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주관위원이 이에 대한 검토 조정
- 각 기관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지출장 등을 통한 현장검증 실시
- 각 평가지표별 배점에 의거 평정 실시
- 관련소위, 전체회의에서 평가결과 심의 확정
-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시 주관부처, 평가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
- 서면평가는 각 기관의 실적이 당초 제시한 자료제출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공통양식에 의거 평가 실시
- 현장점검은 관계공무원 면담, 샘플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인 등의 반응도 조사

▪ 평가지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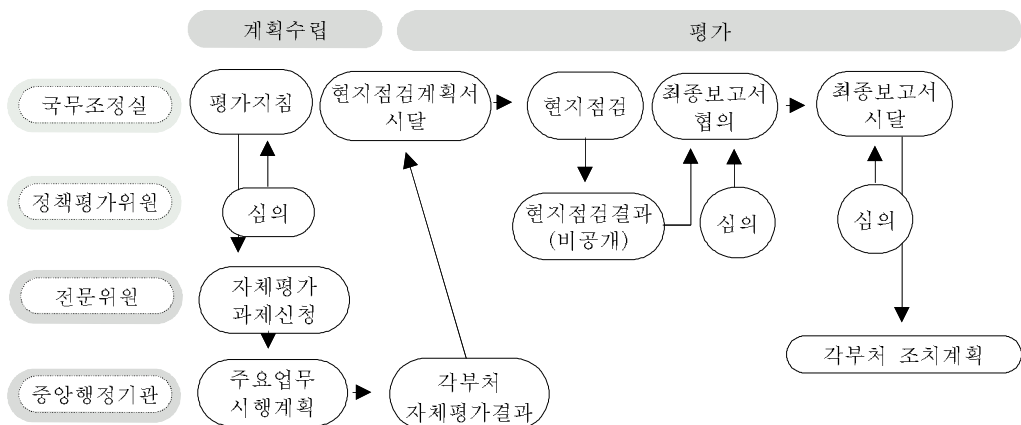
- 주요정책과제와는 달리 평가대상 분야별로 기관간 비교평가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위주로 선정
- 실적 측면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성적 평가지표를 선정하되 전문가 등에 의한 실사 등을 통해 평가

- 평가결과의 처리
 - 각 평가지표별 배점에 의거 평정 실시
 - 평가결과는 정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평가에 반영

나)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 평가목적
 - 각 부처의 매년도 주요시책을 대상으로 부처가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노력에 대해 평가 실시
- 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 각 부처별로 수립한 자체평가계획과 자체평가 추진노력에 대하여 과제선정 및 계획수립, 평가과정, 평가내용, 결과환류 등 4개분야로 구분
-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 평가기준별로 각 부처에서 자체평가결과를 제출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상위평가를 실시

<그림 1-12>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체계



- 국무조정실의 상위평가
 - 국무조정실 평가담당관이 1차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주관위원이 이에 대한 검토 조정
 - 각 기관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지출장 등을 통한 현장검증 실시
 - 각 평가지표별 배점에 의거 평정 실시
 - 관련소위, 전체회의에서 평가결과 심의 확정
 - 서면평가는 각 기관의 실적이 당초 제시한 자료제출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공통양식에 의거 평가실시
 - 현장점검은 관계공무원 면담, 샘플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인 등의 반응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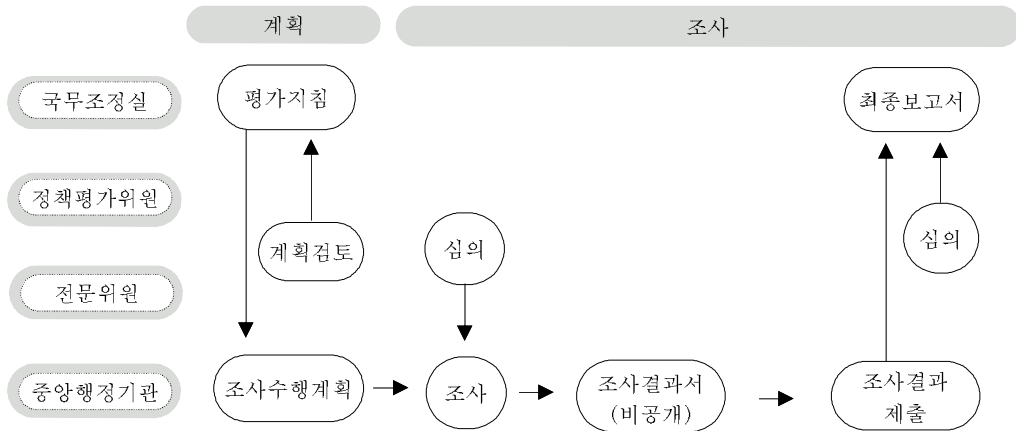
- 평가지표 선정
 - 주요정책과제와는 달리 기관간 비교평가가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위주로 선정
 - 실적 측면 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성적 평가지표를 선정하되 전문가 등에 의한 실사 등을 통해 평가

- 평가결과의 사후관리
 - 부처별로 미흡한 사항은 개선조치토록 조치
 -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후 걱정한 경우 코드화하여 관리
 - 개선조치 이행상황은 상 하반기 정기평가지 점검

다) 국민만족도 조사

국민만족도 조사는 기관평가차원에서 기관의 정책, 민원서비스 등의 최종 수혜자인 국민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1998년 이후 2001년까지는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만족도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그림 1-13> 국민만족도 조사 체계



5. 지방자치단체 평가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또는 국고보조사업등에 대하여 그간 개별법령, 훈령, 지침 등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평가업무를 추진하여왔다.

이러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개별평가를 지양하고 합동으로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개별평가도 이루어졌다.

- 1999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평가(2개 분야 5개 부문 : 주요시책은 3개 부문 5개 영역, 기본역량은 2개 부문 4개 영역) 합동평가를 실시
- 2000년도에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관평가형태의 모델(주요시책은 5개 부문 13개 영역, 추진역량은 3개 부문 5개 영역, 주민만족도 조사 등 3개 분야)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
- 2001년도부터는 「정부업무동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6조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간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실시해오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하여 국무총리는 평가의 효율성과 평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토록 함

(1) 평가대상기관 및 대상분야

평가대상기관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평가대상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밖에 국가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로서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거나 국정지표 및 국정과제와 관련되어 추진중인 시책(사업)이었다.

(2) 평가절차 및 세부내용

1) 평가대상 선정

-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평가가 필요한 시책·사업에 대해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을 3월10일까지 수립·제출 또는 연도 중 추가평가지 평가실시 3개월 전까지 제출
 - 평가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
- 정책평가위원회 검토 및 심의
 - 다른 평가와의 중복여부, 합동평가 또는 개별평가 실시여부 등
- 행정자치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심의결과 통보

2)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의 처리

가) 합동평가

- 계획수립
 - 행정자치부의 합동평가위원회 주관으로 구체적인 대상시책, 기준, 항목, 지표 일정 등 합동평가실시계획을 마련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된 실시계획을 평가실시 3개월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
- 정책평가위원회 심의·확정(국무조정실)
-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행정자치부)

- 평가실시 및 보고
 - 행정자치부, 관련 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하반기 1회 평가
 - 행정자치부의 합동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에 대해 정책평가위원회 심의 및 국무총리 보고

- 평가결과의 처리
 - 중앙행정기관의 기관평가 결과와 같이 처리

나) 개별평가

- 계획수립
 - 해당 중앙행정기관 주관으로 구체적으로 세부평가기준, 항목, 지표, 일정 등 평가실시계획을 마련함
 - 심의·통보된 평가계획의 범위내에서 세부 실시계획 수립
 - 국무조정실과 협의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계획 통보

- 평가 실시
 -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고 및 처리
 - 개별평가 주관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결과를 정리·제출
 - 국무총리 보고
 -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처에서 개선방안 마련 등 조치

제3절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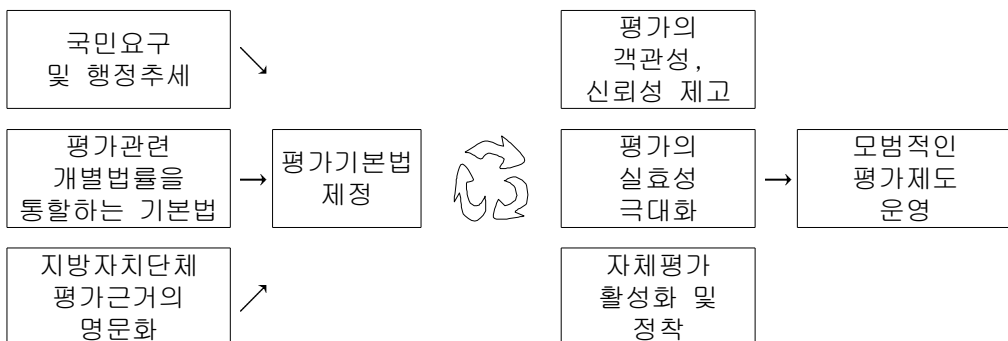
I. 기본법의 제정

1. 기본법 제정의 배경

1990년 이후 프랑스, 미국 등 OECD국가에서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개혁 촉진을 위해 「평가법」, 「실적평가법」을 제정하거나 평가관련 법률의 보완 등을 통해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개혁 차원에서 평가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기본법 제정의 주요배경은 다음과 같다.

- 국민요구 및 행정추세에 부응한 평가제도의 정착
- 평가관련 개별 법률을 통괄하는 기본법 필요
- 지방자치단체 평가근거의 명문화 및 개별평가 부담 완화
-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 평가실효성의 극대화
- 자체평가의 활성화 및 정착 도모

<그림 1-14> 평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취지



2. 기본법 제정경과

- 1999년 11월 국무총리소속 정책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제도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평가추진체계 구축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평가기본법의 제정을 국무총리에게 건의
- 2000년 3월 「정부업무 평가체계 개선 및 평가기본법 제정 추진방안」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위원회 등이 참여한 연찬회 토의를 거쳐 마련하였고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정부정책평가업무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주요 부처와 평가기본법 제정 추진방안을 협의·조정함
- 2000년 5월 기본법(안)은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년 7월 시민단체, 학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공청회와 수차례의 부처협의 과정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의견을 반영함
- 2000년 10월 2일 기본법의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
- 2000년 12월 국회의결을 거쳐 2001년 1월 8일 공포되고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II. 기본법의 내용

1. 기본법의 주요내용

- 평가기본법 대부분의 내용은 대통령령인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에 의거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평가제도들을 법률로 규정한 것임
- 평가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평가제도 변경사항
 - 정책평가위원회가 기존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 심의기구화

- 기존에는 감사와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감사에의 활용을 법률적으로 뒷받침
 - 기존에는 지자체에 대한 평가의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지자체에 대한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
 - 기존에는 중앙부처만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중앙부처 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까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주요내용
-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법 제3조)
 - 평가실시기관은 정부업무등의 평가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13조)
 - 국무총리는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업무등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법 제15조)
 - 국무총리는 제5조 내지 제7조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함(법 제16조)
 - 정부는 평가결과와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개최함(법 제17조)
 - 정부는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함(법 제18조)
 - 평가실시기관은 해당 정부업무등의 평가결과를 공개함(법 제19조)
 - 정부업무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책평가위원회를 둠(법 제21조)
 - 정부업무등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간의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를 둠(법 제25조)
- ※ 이번에 제정된 평가기본법은 평가의 원칙, 평가의 대상, 평가의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등 정부업무 평가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음

이러한 평가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1-14>과 같다.

<표 1-14> 평가기본법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법 적용 범위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법을 적용함
평가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평가의원칙		·평가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평가의 객관성 확보, 평가중복 방지
평가의 종류 및 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
	특정과제평가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를 실시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
	지방자치단체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기타 국가 주요시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국무총리는 필요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부처장관과 협의하에 합동평가를 실시토록 할 수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평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평가를 실시
평가결과의 활용		·국무총리는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국무총리는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 ·국무총리는 평가결과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함 ·평가실시기관은 평가결과를 공개함
정책평가위원회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기본방향 및 평가지침 등을 심의함
정부업무평가 운영협의회		·평가관련 기관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방안 등을 협의·조정함

2. 기본법의 기대효과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정으로 정부차원의 평가추진 체계확립 및 평가제도 정착 기반 조성
 - 개별 법령 등에 의해 운영되는 각종 평가제도가 평가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체계적으로 운영
 - 개별법률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외에
 -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자체평가 의무화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근거 마련
 - 평가실시기관은 평가결과 공개
 -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평가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그 결과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평가기본법 제정을 통해 각 기관에서는 평가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됨
 - 기관역량평가와 국민만족도 조사를 제도화함으로써 각 기관은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고객지향의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됨
 - 평가결과의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평가기본법 제정으로 평가기능이 강화되어 부처 및 일선기관의 평가업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나, 기존의 평가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체계화하고 상호간 기능적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오히려 평가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평가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평가기본법에서는 평가부담을 최소화하고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데, 평가관련 기관간 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한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체평가를 근간으로 하여 자체평가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대상을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그 목적 및 필요성 등을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평가방법도 합동평가를 제도화하고 있음

평가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표 1-15>과 같다.

<표 1-15> 평가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종 전	평가기본법 제정 후
평가의 효율성 제고	·각 평가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기능적 연계가 없어 평가의 효율적 운영에 한계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체계 확립을 통한 평가 효율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각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포함)의 평가가 평가기본법에서 정한 평가원칙 및 평가절차 등에 따라 운영
국정운영의 효율성 · 통합성 확보	·국정운영의 효율성, 통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부처소속기관에 대한 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지자체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	·지방자치단체평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지자체평가 및 소속기관평가가 정부업무평가체계에 따라 이루어져 국정운영의 효율성·통합성 확보
경영혁신 및 고객지향의 행정구현	·제도적 장치가 미흡	·기관역량평가와 국민만족도 조사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기관운영 혁신 및 행정서비스 질 제고
평가의 객관성 · 전문성 제고	·국무총리 소속의 자문기구로 정책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국무총리 소속 정책평가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평가활동의 책임성·객관성 제고

구분	증 전	평가기본법 제정 후
자체평가의 활성화	·각 중앙행정관은 자체평가 실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실시 의무화
평가의 실효성 확보	·평가결과의 예산에의 활용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감사에의 활용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	·평가결과의 예산, 감사 등에의 활용을 법률적으로 뒷받침
평가의 공개 · 투명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평가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나 제도적 장치가 없음	·평가결과의 공개원칙을 법률적으로 뒷받침
평가부담 감소	·평가부담감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 ·지방자치단체평가의 경우 법적근거 등이 미흡한 채로 개별적·분산적으로 평가가 수행되고 있어 평가부담가중 우려	·평가체계 확립을 통한 평가의 효율적 운영으로 평가부담이 감소되고 정부업무평가 운영협의회를 통해 평가의 효율적 추진도모 및 평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안 강구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부담감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평가대상 및 절차의 명확화 -신규평가시 국무총리에게 사전보고 -합동평가 실시 등



제 2 장

평가실적(1990년~2001년)

제1절 평가실적 개관

제2절 1990년도 평가

제3절 1991년도 평가

제4절 1992년도 평가

제5절 1993년도 평가

제6절 1994년도 평가

제7절 1995년도 평가

제8절 1996년도 평가

제9절 1997년도 평가

제10절 1998년도 평가

제11절 1999년도 평가

제12절 2000년도 평가

제13절 2001년도 평가

제1절 평가실적 개관

행정조정실에 정부주요정책평가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정부업무평가는 시기 또는 평가제도의 변화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요정책과제평가, 수시과제 및 특정과제평가, 정책추진역량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이 이루어졌다.

▪ 주요정책과제 평가

각 부처의 주요정책에 대한 과제평가는 1990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왔으며, 과제의 분류단위(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총 558개의 과제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기관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7년까지는 주요정책의 과제를 기관별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과제 위주로 평가되었으나, 기관평가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는 평가대상인 기관을 먼저 정하고 각 기관별로 일정수의 과제를 선정·평가하였다.

<표 2-1> 주요정책과제평가 과제수

(단위: 개)

년도	평가 과제수	조치사항수	평가대상기관수
1990	53		
1991	33		
1992	45		
1993	20		
1994	53		
1995	50		
1996	50		
1997	24		
1998	39	203	17
1999	66	258	40
2000	62	290	40
2001	63	572	40

- 수시과제 및 특정과제 평가

수시과제평가, 특정과제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1994년말 심사 분석기능(경제기획원)과 정책평가기능(행정조정실)이 통합·운영되게 됨에 따라 정기적인 주요정책과제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평가기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1995년부터 수시심사평가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수시평가제도는 1998년도에 「기관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특정과제평가로 변경되었으며,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총 76개의 과제가 수시 및 특정과제로 평가되었다.

〈표 2-2〉 수시과제 및 특정과제 평가과제수

(단위: 개)

년도	평가과제수	조치사항수
1995	23	
1996	15	
1997	14	
1998	7	120
1999	6	72
2000	5	80
2001	6	129

- 기관역량(정책추진역량) 평가

기관평가제도가 도입된 1998년부터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각 기관의 역량 및 노력을 평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평가분야는 매년 달리 구성하였으나 자체평가 수행노력은 매년 계속 평가하였고 그 비중도 높았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정책추진역량으로, 2001년부터는 기관역량평가로 변경되었으나 평가내용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표 2-3> 기관역량(정책추진역량) 평가분야

년도	평가분야·사항	
1998	4개	100대 국정과제 추진노력, 규제개혁 추진실적, 현안대처 노력, 자체평가 수행노력
1999	5개	목표관리제 운영,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행정정보 공개, 부패척결노력, 경영혁신노력, 자체평가 수행노력
2000	5개	지식기반구현노력, 정책추진 법제화노력, 부패방지노력, 국정홍보강화노력, 자체평가 수행노력
2001	5개	전자정부 구현노력, 인사행정효율성, 국정홍보노력, 깨끗한정부 구현노력, 자체평가 수행노력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999년도부터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까지 평가된 시책은 총 133개 였다.

<표 2-4>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책수

(단위: 개)

년도	평가시책수	비 고
1999	21	·시범실시
2000	50	·법에 의한 실시
2001	62	·법에 의한 실시

제 2 절 1990년 도 평 가

I. 평가개요 및 특징

1990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평가로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상황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였고, 이와 별개로 「10.13특별선언」에 따른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정책과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대통령 주제로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평가결과를 환류하였다.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1. 평가과제

대통령연두기자회견에서 제시된 5대 당면과제와 6대 시책을 중심으로 1990년 3월 12개의 평가대상 기본과제를 선정하였고, 각 과제에는 3~6개의 단위과제로 구성하였다.

<표 2-5> 평가대상 기본과제 및 단위과제 (1990년)

기본과제	단 위 과 제	주관부처
1. 부동산투기 억제	1.1 공시지가제도	건설부
	1.2 토지기록 전산화	내무부
	1.3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건설부
	1.4 초과이득세제 실시	재무부
	1.5 기업의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재무부

기본과제	단 위 과 제	주관부처
2. 경제력집중 완화	2.1 주식의 분산 촉진 2.2 대기업의 출자총액 및 상호출자규제 2.3 중소기업 육성	재무부 경기원 상공부
3. 주택2백만호 건설	3.1 주택건설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3.2 택지확보 방안 3.3 소요자원, 자재, 인력의 원활한 공급 3.4 임대주택관리 및 분양제도 개선 3.5 민간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3.6 수도권 신도시 건설	건설부 건설부 건설부 건설부 건설부
4.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추진	4.1 농수산업 구조 개선 4.2 농외소득원 개발 4.3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수요개발 4.4 농어민 부담경감 4.5 농수산물 수입개방 보완대책	농수산 농수산 농수산 농수산 농수산
5. 환경보전	5.1 맑은 공기 보전대책 5.2 맑은물 공급대책 5.3 폐기물관리 5.4 물관리관련 기능 조정	환경부 건설부 환경부 총리실
6. 과학기술진흥	6.1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6.2 과학기술인력 확보 6.3 과학기술 정보유통체계 확립 6.4 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 관리	과기처 과기처 과기처 과기처
7. 산업평화의 정착	7.1 노사관계개선을 위한 근로자 복지증진 7.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7.3 합리적 임금교섭지도 7.4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수습	노동부 상공부 노동부 노동부
8. 민생치안확립	8.1 범죄대응능력 보강 8.2 전과자 재범방지 8.3 자율방범활동 활성화 8.4 범인성 보유환경 개선 8.5 범죄퇴치캠페인 8.6 청소년 건전육성	내무부 법무부 내무부 보사부 내무부 체육부
9. 교육개혁	9.1 교육환경의 개선 9.2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개혁 9.3 대학교육발전 9.4 평생교육체제 확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문교부

기본과제	단 위 과 제	주관부처
10. 도시교통난의 개선	10.1 교통수요의 감축 및 분산	교통부
	10.2 도로시설정비 및 확충	건설부
	10.3 지하철 정비 및 확충	교통부
	10.4 기존 교통시설 및 수단의 효율성 제고	교통부
	10.5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	건설부
	10.6 교통안전 및 질서확립	내무부
11. 남북교류협력 증진 대책	11.1 남북인적 교류	통일원
	11.2 남북경제교류협력	경기원
	11.3 남북일반교류협력(문화·학술·예술·체육 등)	통일원
12. 행정규제완화	12.1 경제행정규제 완화	경기원
	12.2 일반행정규제 완화	총무처
	12.3 부처간 업무관장 조정	총무처

2.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는 각 과제별로 목표대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정상추진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상·하반기로 정상추진 여부 등을 판정·평가하고 개선필요사항을 제시하였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정상추진여부의 판정기준

- 단위과제를 추진단계별로 입안·집행·완료 등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마련된 판정기준의 3개 점검항목 중 2개 이상이 긍정적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상」, 그 외의 경우 「부진」으로 평가하고,
- 단위과제에 세부사업이나 세부시책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중요성이 큰 세부사업(시책) 위주로 정상 추진여부를 평가함

- 단계별 판정기준
 - 정책입안 단계
 - 여건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시의 적절한 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 계획확정 전에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조정과 국민여론 수렴 여부
 -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수단의 선택 여부
 - 정책집행 단계
 - 예산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실적의 달성도 95% 이상 여부, 비예산사업의 경우 세부시책의 추진일정대로 차질없는 추진 여부
 -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여건변화에 대한 신속성 있는 대응조치 여부(관계부처간 원활한 협조 여부 포함)
 - 정책노력 및 정책효과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화 여부
 - 정책완료 단계
 - 세부사업 및 시책의 계획대로 완료 여부
 - 사업추진의 인적·물적·시간적 효율성이 수용할 만한 수준인지 여부
 - 당초 설정된 정책목표의 전반적인 달성 여부(정책성과의 가시화 및 국민의 만족도 향상 여부 포함)

(2) 평가자문위원의 운영

각 과제별로 3~6명의 전문가로 평가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문위원은 정책평가자문위원으로 정식 위촉하지 않았고 비공식 협의기구로만 활용하였다.

<표 2-6> 과제별 자문위원 명단 (1990년)

기본과제	자 문 위 원	
	성 명	현 직
부동산투기억제 (5)	노 성 태	제일경제연구소장
	이 학 용	고려대 교수
	김 태 동	성균관대 교수
	김 중 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 태 일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경제력집중 완화 (4)	이 규 역	KDI 선임연구원
	윤 계 섭	서울대 사회대교수
	어 윤 배	송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
	윤 창 호	고려대 상대 교수

기본과제	자 문 위 원	
	성 명	현 직
주택 2백만호 건설 (5)	이 한 열 김 정 호 김 종 만 하 성 규 강 문 수	주택은행 부행장보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중소주택사업협회 전무이사 중앙대 산업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민생치안 확립 (5)	이 수 성 주 돈 식 함 정 호 김 준 호 이 기 호	서울대 법대교수 조선일보 편집국장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덕성여대 교수 경찰대 교수
도시교통난의 개선 (5)	이 건 영 차 동 득 임 강 원 도 철 용 유 완	국토개발연구원 교통연구실장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육사 교수 연세대 교수
행정규제완화 (4)	김 중 수 전 대 주 곽 병 진 방 석 현	국민경제제도연구원 부원장 전경련 상무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서울대 교수
농어촌개발 종합대책 추진 (3)	고 광 출 이 정 환 강 춘 성	서울대 농대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전국 농어민단체협의회 회장
환경보전 (4)	김 귀 곤 정 진 승 전 상 호 신 항 식	서울대 농대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강원대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과학기술진흥 (4)	이 종 욱 김 지 수 김 광 호 한 민 구	과학기술정책평가센터 책임위원 KAIST 교수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대표이사 서울공대 교수
산업평화의 정착 (3)	이 영 희 박 세 일 이 원 덕	인하대 교수 서울대 교수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기본과제	자 문 위 원	
	성 명	현 직
교육개혁 (5)	윤 정 일	서울대 교수
	장 석 민	KEDI 직업기술교육연구실장
	김 윤 태	서강대 교수
	강 신 응	홍익대 교수
	최 희 선	인천교대 교수
남북교류협력 증진대책(6)	정 용 석	단국대 교수
	안 병 준	연세대 교수
	김 덕	외국어대 교수
	정 종 욱	서울대 교수
	연 하 청	KDI 부원장
	김 진 현	동아일보 논설주간

※ 과제별 자문위원과 별도로 정책평가제도 부문 자문위원으로 허범(성균관대 교수), 노화준(서울대교수), 이달곤(서울대교수) 등 3명을 선정 자문

3. 평가결과

< 총 괄 >

- 53개 단위과제를 진행단계별로 구분하여 48개는 완료되었거나 정상추진중이고, 5개 과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 부진과제 5개를 원인별로 분류
 - 여건변화(2개 과제) : 주식의 분산촉진
폐기물 적정관리
 - 사전검토 미흡(1개 과제) : 교통수요의 감축 및 분산
 - 관계부처 협조미흡(1개 과제) : 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 관리
 - 적극적인 추진노력 미흡(1개 과제) : 대학교육 발전

< 부진과제별 주요내역 >

- 주식의 분산촉진 : 증시침체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공개 부진
 - 50대 계열 기업군 소속회사의 1990년 기업공개 실적 : 5개 (1989년 16개)

- 폐기물 적정관리 : 쓰레기 매립장 건설이 지역주민 반대, 지가상승 등으로 부지매입 애로와 건설중단 사례 발생
 - 수도권(김포) 쓰레기 매립장 공정을 53%(1990년 목표공정을 71%)
 - 마산권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실적 44%(1990년 목표 : 부지매입 완료)

- 교통수요의 감축 및 분산 : 출퇴근 시차제 등 계획수립 단계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 충분한 사전검토 미흡으로 시행을 잠정 보류
 - 당초 계획 : 출퇴근 시차제 9월부터 확대 실시

- 출연연구기관의 효율적 관리 : 관계부처 협조 미흡으로 출연연구기관이사회 운영 개선방안 수립과 법적 근거 마련이 지연
 - 출연연구기관의 이사회 운영개선방안 용역 실시중(1990년도 목표 : 관계부처협의 완료 및 법적 근거 마련)

- 대학교육발전 : 대학교육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사업이 일부 대학의 반발과 적극적인 업무추진노력 미흡 등으로 부진
 - 대학평가 인정제의 최종 시행방안 미확정, 대학교수기준 상향조정과 석좌교수제 도입 지연 등

III. 「10.13특별선언」 실천상황평가

10.13 특별선언에 따른 3개의 과제를 선정, 목표의 달성여부(정상여부, 달성도)에 대한 추진상황과 함께 잘된 사항,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정책과제 평가방법에 준하여 평가하였다.

- 대상과제(3개) : 범죄와 폭력소탕, 불법·무질서추방, 건전 사회 기풍 진작의 국민운동 확산

IV.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1. 보고대회 개최

상반기 주요정책 추진상황은 1990년 8월 10일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제로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보고시에는 민생치안, 교통난 개선, 환경보전, 부동산 투기억제, 주택2백만호 건설, 농어촌발전대책 등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6개 과제에 대한 평가보고만을 실시하였다.

하반기 평가보고대회는 1990년 12월 28일(금) 10:00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무총리, 감사원장, 안기부장, 전 국무위원 및 시·도지사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동보고시에는 「10.13 선언」에 따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상황 평가(3개 과제)와 주요경제현안과 관련된 3개 과제(부동산투기억제, 주택 2백만호 건설,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평가내용을 보고하면서, 상반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였다.

2. 결과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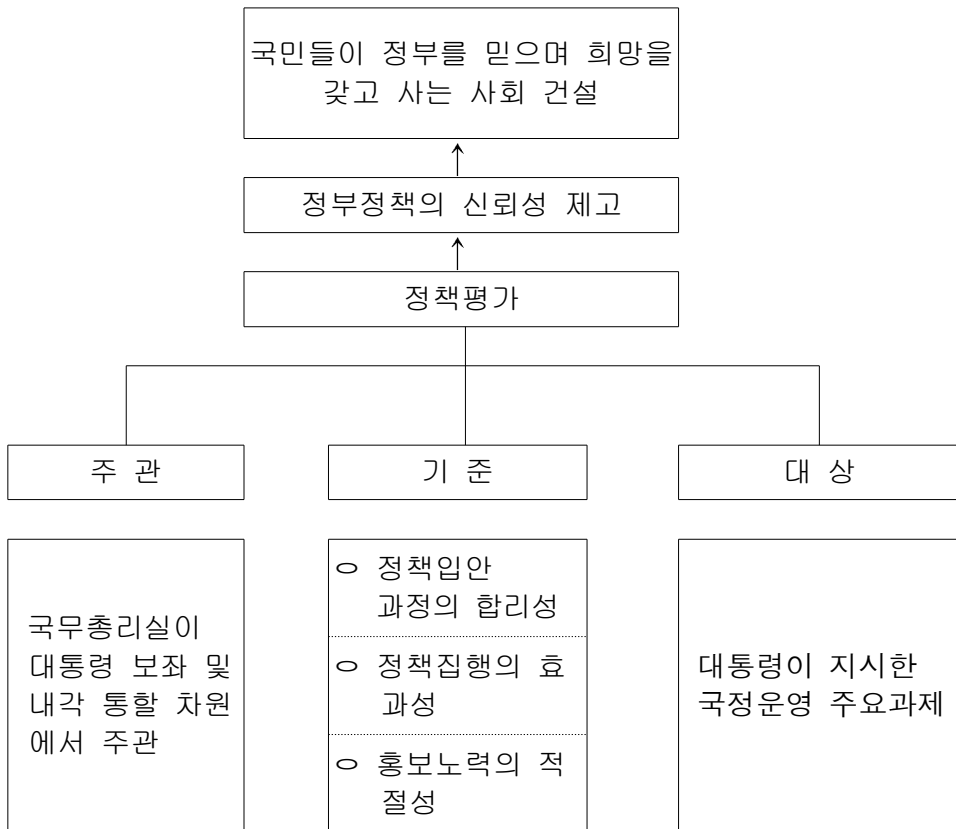
1990년 12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1991년 3월 13일 각 부·처·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였고, 특히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제3절 1991년도 평가

I. 평가개요 및 특징

1991년도에는 제6공화국 후반기의 국정 전반의 행정이완 방지 및 진도과약과 관련된 6대의 주요국정과제를 선정, 심층 평가하였으며, 아울러 제6공화국 4년간의 국정운영성과 전체에 대해 종합 평가하고 1992년에 집중 추진하여야 할 「중점과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2-1> 정책평가 체계 (1991년)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1. 평가과제

1991년 연두 합동보고에서 제시된 6대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1차로 1991년 3월 30개 단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동년 5월 28일 대통령 특별담화에서 제시된 ‘집회·시위문화개선’, ‘행정쇄신’ 등 3개 과제를 추가하여 총 33개 단위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2-7> 평가대상 기본과제 및 단위과제 (1991년)

기본과제	단 위 과 제	주관부처
1. 10. 13특별선언 실천 및 사회 기강확립대책	1.1 범죄와 폭력 소탕 1.2 犯人性 환경개선 1.3 불법·무질서 추방 1.4 건전사회기풍 진작 국민운동 확산 1.5 집회·시위문화 개선 1.6 공명선거풍토 정착 1.7 공정거래질서 확립 1.8 공직기강 확립 1.9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 수습	내무부 법무부 보사부 문화부 교육부 내무부 총리실 내무부 내무부 기획원 총리실 노동부
2. 경제안정과 성 장기반 확충	2.1 물가 및 부동산 가격안정대책 2.2 사회간접시설 확충방안 2.3 통화·금융 및 세제지원대책 2.4 제조업 및 수출활성화 대책 2.5 임금안정 및 생산직 인력난 해소 대책 2.6 에너지 안정확보 및 절약 시책 2.7 과학기술개발 촉진 2.8 정보통신산업 진흥대책	기획원 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노동부 동자부 과기처 체신부
3. 국민생활 및 환경개선 대책	3.1 대도시 교통난 완화 대책 3.2 주택공급의 원활화 대책 3.3 환경개선 대책 3.4 사회복지 대책 3.5 보훈대상자 지원강화 대책	교통부 건설부 환경처 보사부 국가보훈처

기본과제	단 위 과 제	주관부처
4.농어촌대책	4.1 UR협상대응 및 수입개방 보완 대책 4.2 농촌구조개선 추진 4.3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4.4 농어촌 소득향상대책 4.5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기반 조성	농수산부 농수산부 농수산부 농수산부 농수산부
5.교육개혁과 국민정서 함양	5.1 교육혁신 5.2 문화예술 진흥 5.3 청소년 건전 육성 5.4 민주시민의식 함양 홍보대책	교육부 문화부 체육청소년부 공보처
6.행정쇄신	6.1 행정규제의 축소 6.2 행정관리 및 풍토 쇄신	총무처 총무처

※ 당초 평가계획상은 모두 7개 과제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평가시에 10.13특별선언 실천과 사회기강확립대책을 1개의 과제로 통합하여 평가함에 따라 기본과제수를 6개로 구분

2.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및 방법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는 1990년도와 같이 각 과제별로 목표대비 추진실적을 분석하면서 정상추진 여부를 판정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각각 제시하는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평가방법을 다소 변경하여 과제별 추진실적, 잘된 점, 미흡한 점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1990년 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경험부족에 따른 피상적 평가, 사후 문제점 적시위주의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매분기별 1~2개 과제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1992년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주요정책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자문위원을 선정,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였고, 국민여론조사도 실시하였다.

▪ 전문가 평정

- 분야별 10~20개 문항의 설문지를 정책평가 심의관실에서 작성

하여 선정된 전문가에게 미리 송부한 후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설문결과 및 토의사항을 종합하여 정책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함

▪ 국민여론조사

-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부정책 수행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상하반기 2회 걸쳐 실시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함
- 조사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조사기관을 활용함

(2) 평가자문위원의 운영

과제별 추진상황의 종합평가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의 작성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표 2-8> 평가자문위원 명단 (1991년)

대상분야	성명	현직	비고
▪ 10.13 특별 선언 실천 - 범죄와 폭력 소탕 - 범죄성 환경 개선 - 불법· 무질서 추방 (20명)	김동일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김동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박근호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송상현	서울대 사법학과 교수	
	이효선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임희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김홍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금순	한국부인회 회장 (한국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장 겸임)	
	이경여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김두황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오운동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조규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홍성좌	한국무역협회상근 부회장	
	허상령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상근 부회장	
	송정숙	서울신문 논설위원	
	신광식	KBS 보도본부 취재주간	
	신성순	중앙일보 논설위원	
차상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홍의식	신한투자금융(주) 사장		

대상분야	성명	현직	비고
▪ 건전사회 기풍 진작 국민운동 확산 (6명)	김동일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이근희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최종하	에너지관리공단기술이사	
	김경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곽태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기획부장	
	김승진	숭실대 노사관계 대학원장	
▪ 대도시 교통난 완화 (10명)	임광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서울시 교통정책조정위원	교통계획
	차동득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	
	문동주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	
	유완	연세대 공대 교수	도시계획
	임평남	도로교통안전연구소 소장	도로공학
	원제무	서울시립대 교수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 서울시 교통영향심의위원	교통공학
	임성빈	명지대 교수 서울시 교통정책조정위원 서울도시 고속화도로 건설 자문위원	
	장명순	한양대 교수 서울시 교통영향	
▪ 대도시 교통난 완화 (10명)	이인원	홍익대 교수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	교통공학
	이용재	중앙대 교수	
▪ 환경보전(7명)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일반
	윤명조	한국환경기술연구소장	대기
	김수원	계명대 공대 교수	수질
	정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승무	연세대 공대 교수	폐기물
	도갑수	숭실대 공대 교수	
	박원훈	KIST 환경연구센터장	

대상분야	성명	현직	비고
▪ 농어촌 대책 (10명)	강봉순	서울농대 교수	
	김완배	중앙대 교수	
	정찬길	건국대 교수	
	이병오	강원대 교수	
	박진도	충남대 교수	
	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운근	농촌경제연구원 토지경제실장	
	이태희	농수축산신문 편집국장	
	한성희	농협중앙회 이사	
	최병용	후계자 협의회 사무총장	
▪ 교육혁신(5명)	이무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송 자	연세대 철학과 교수	
	박도순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김신일	서울대 철학과 교수	
	김영철	KEDI 교육정책연구본부장(철학)	
▪ 문화예술진흥 (5명)	이춘희	한국도서관 협회장	도서출판계
	한도룡	홍익대 미대 교수	교육계
	박용현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	언론계
▪ 청소년 건전육성(5명)	박명윤	한국청소년연구원 제1연구실장	
	김준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박인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실장	
	차경수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박성수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3. 평가결과

(1)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 총 괄 >

- 걸프전쟁 발발, 지방의회 선거 실시, 민주화 진전에 따른 국민욕구 분출 가속 등 대내 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 부처는 소관정책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정치·사회적으로 안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되는 등 각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일부 분야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전검토와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노력이 미흡하거나, 추진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 6대 기본과제별 주요 성과와 부진내용 >

- ① 「10.13특별선언」 실천 및 사회기강 확립분야 관련
 - 범죄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인력과 조직을 확충
 - 불법·무질서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준법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고통안전표지 등 관련시설을 보완
 - "새 질서·새 생활 운동"을 시민자율 실천운동으로 내실화하여 강력 범죄 등 사회불안 요인이 현저히 감소
 - 따라 폭발하던 근로자들의 불법 노사분규가 대폭 감소하여 산업평가 분위기가 성숙
 -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 및 부녀자 상대의 약취유인 사건 등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치안수준에는 미흡하여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잔존
- ② 경제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분야 관련
 - 사회간접시설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 해외기술인력연수제도, 군보충력의 산업계 투입, 이공계대 정원 대폭 확대 등 기능인력 공급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의 전개
- 주택 2백만호 건설 달성과 전국 주택 전산망 완성 등의 제도 개선에 힘입어 주택가격의 하락세 반전과 토지가격 안정세 실현
- 정부규제의 지속적 개선으로 경쟁촉진과 국민불편을 해소
- 건설경기의 과열, 서비스 요금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경제안정기조를 저해
-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안정은 미흡하여 물가 불안과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내수용 소비재 수입확대, 수출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국제수지 적자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

③ 국민생활 및 환경개선대책과 관련

- 영구임대주택의 본격적인 입주개시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노력이 가시적 성과
- 김포의 대단위 쓰레기 위생처리장 1단계 완공으로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해소
- ‘폐놀’ 유출사건과 골프장 건설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환경 정책에 대한 불신이 증대
- 급격한 차량증가, 교통안전시설 부족, 교통규칙 위반행위 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인적·물적 손해가 막대
- 수도권 전철의 잦은 고장발생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의 미흡으로 국민불편 초래

④ 농어촌 대책과 관련

-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착수하는 등 수입개방확대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노력
-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불안과 도시·농촌간 소득 및 생활환경 격차 등에 기인한 농민의 불만이 상존

⑤ 교육혁신과 국민정서 함양분야 관련

-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기능인력 공급확대시책은 가시화
- 실험실습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은 미미하며, 일반대중의 건전 휴식 공간 부족, 비디오·만화 등 대중오락물의 저질화 경향 등 문제

⑥ 행정쇄신 분야 관련

- 민원절차 간소화 및 행정전산화로 대민서비스가 개선
- 국민들 입장에서는 행정간소화가 아직 미진하고 개방 확대, 지방자치제 실시 등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대응 능력 강화 필요
- 수서사건, 예·체능계 입시 부정 등으로 정치인, 교수, 언론인, 공무원 등 우리 사회의 구심점이 될 존경받는 계층이 상실되고 사회전반의 도덕성 위기를 초래

(2) 국민여론조사결과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성공적으로 추진된 과제는 공산권과의 경제교류 확대, 주택 2백만호 건설, 행정규제 완화로 나타났고, 물가안정, 도시교통난 해소, 농어촌 발전대책은 미흡한 과제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안정과 민생치안 확립은 추진성과도 컸으나, 아직도 만족스럽지는 못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노력을 희망함
- 국민의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새 질서·새 생활 운동”의 정착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국민의 자발적 실천의지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들었고, 공명선거실시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당 및 후보자의 솔선수범과 금전 등에 유혹되지 않는 유권자의 태도로 응답함
- 쓰레기 처리장 등 환경시설이 자기주변지역에 들어서는데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국민 스스로의 책임을 중요시하는 건전한 태도와 함께, 개인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집단이기주의 심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1992년 중점 추진과제 제시

1) 중점과제

-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의 교류 및 협력증진
-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로 민주질서의 정착
- 경제안정 및 활력회복에 총력 경주
- 행정쇄신 및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통하여 도덕성 회복

2) 주요 추진전략

- 통치권 차원에서 경제안정 및 활력 회복을 독려
 - 대통령주재의 경제동향보고 및 정책점검 회의를 확대
 - 현정 확인 감독 및 모범근로자·기업가 격려
- 정부 및 공공부문의 슬선수범
 - 경상경비예산 10% 절감 등 재정의 긴축운영
 - 정부 고위직 및 정부투자기관 임원 임금 동결
 - 공공부문의 비능률 제거를 위한 공직자에 대한 기업가정신 교육 실시
-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새질서·새생활운동」 강화
 - 정치인·기업가·언론인 등 사회지도층의 선도적 참여
 - 언론기관, 종교 및 사회단체 등과 협조하여 자율적 국민운동으로 정착 유도

※ '92년 새질서·새생활 운동의 5대 중점시책 :

「범죄와 전쟁 지속」, 「호화·사치·낭비추방 및 일 더하기 풍토 조성」, 「비능률·불합리 추방」, 「교통사고 줄이기」,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

- 주요정책의 착실한 실천 및 성과의 극대화
 - 새로운 시책발표보다는 공약사업과 기 추진중인 시책의 마무리에 중점
 -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등 기추진 시책의 보완·발전
 - 공약사업의 기간내 완료 또는 가시적 성과 거양
 - 사정활동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및 행정누수현상 예방
 - 정부추진노력 및 성과에 대한 홍보강화로 국민신뢰 제고

Ⅲ. 제6공화국 4년간 국정운영성과 평가

1. 개 요

제6공화국 4년간 국정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정책평가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잘된 점 위주로 평가하였으며, 문제점이나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제시하지 않은 점이 특징이었다.

2. 평가결과

4년간 국정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권위주의적 체제를 청산하고 각 분야에서 민주화를 정착함
 - 30년만에 지방자치제 및 교육자치제를 실시하여 민주주의 기반을 확립
 - 신문·잡지의 등록개방 등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현
 -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제고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등 근로자 권익 신장
 - 농축수협 및 농지개발조합자의 직선제를 도입하여 농어민의 자치역량 제고

- 전 방위 외교의 추진으로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남북한 평화 정착의 계기를 마련함
 -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위신장
 - 소련 및 동구권 국가와의 수교 및 협력 확대
 - 남북한 UN 동시가입 실현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명
 - 연평균 9.2%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 지속으로 소득향상 및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이룩
 - 4년간 1인당 국민소득 2배 향상(3,110\$ → 6,320\$), 주택 2백만호 건설목표의 조기달성으로 주거안정 도모
<주택보급율 : 1987년 69.2% → 1991년 74.0%>
 - 자동차 보급대수 2.6배, 전화 보급대수 1.7배 증가
 - 해외여행 자유화 실시 등 생활의 질 개선 실현
 - 환경처를 승격시키고 환경부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점증하는 환경개선 욕구에 적극 대처

- 농어촌의 활력 회복 및 농어민 부담경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함
 -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추진, 농공단지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등 농어촌 문제의 근원적 해결노력 경주
 - 농어촌 부채경감 및 농어가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
 -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완화
 - 냉해 등 재해에 따른 복구 지원 제도화 등

- 권역별 개발사업과 지방에 대한 투자확대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함
 - 서해안고속도로건설 등 서해안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 지방금융기관의 확충을 통한 지방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거점 도시의 육성
 - 도로포장률의 제고로 지역간 교통소통의 원활화 도모
<도로포장률 : 1987년 79.5% → 1991년 95.0%>

- 산업사회의 수요변화에 맞춰 교육체제를 개편하고, 문화예술육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함
 -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교의 기술교육 확충으로 산업인력 양성을 확대
 - 독학 학위제 도입과 교육방송의 독립으로 평생교육체제 확립
 - 문화부 창설과 “문화발전10개년 계획” 추진으로 문화예술의 발달을 위한 체제를 확립

- 다양한 사회보장 시책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함
 - 최저임금제 시행,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및 전사업체 국민연금제 도입으로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를 완비
 - 국가유공자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생활안정을 도모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 영세민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저소득 계층의 자활능력을 제고

-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법령 및 기구를 정비함
 - 민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여성의 재산상속 및 고용상의 차별을 철폐
 - 여성복지국, 가정복지과를 신설하고 여성개발연구원을 설립

- 행정쇄신과 공약사업의 착실한 실천으로 국민신뢰를 제고함
 - 비민주적인 행정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민주화·자율화·지방화에 부응
 - 공약사업 459건의 98%인 448건이 완료 또는 정상 추진됨으로써 대부분의 공약사업이 착실히 이행중

IV.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1. 보고대회 개최

상반기 주요정책 추진상황은 1991년 8월 20일 10:00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감사원장, 전국무위원, 서울시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보고대회를 개최하였고, 동 보고대회에서는 심대평 행정조정실장이 정부의 1991년 6대 주요정책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정부의 1991년 하반기 역점추진과제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하반기 평가보고대회는 1991년 12월 26일(목) 10:00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국무총리, 감사원장, 안기부장 및 전국무위원 등과 서울특별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동보고시에는 6공화국 4년간 국정운영 성과, 1991년 6대 정책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1992년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2. 결과조치

상반기 평가결과 지적된 개선·보완 필요사항과 부진과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부처간 이견이 있을 경우 총리실에서 적극 조정토록 조치하였다.

하반기 평가결과와 함께 제시된 이듬해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업무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며 총리실에서는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필요한 정책조정을 실시하였다.

제4절 1992년도 평가

I. 평가개요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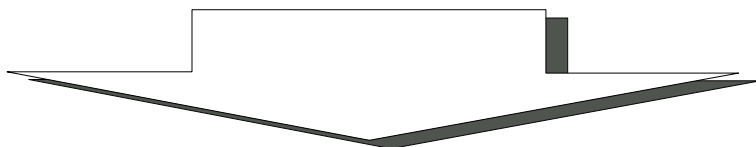
당초 1992년 평가는 1991년 평가체계를 대부분 적용하여 상·하반기 평가보고대회를 실시하고, 주요정책과제와 심층분석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에게 발표한 주요시책의 실천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평가를 위해 월별 심층분석과제를 선정하여 총리실에서 매월 2개 과제를 선정하여 분석·평가하는 평가계획을 예정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라는 특수사정상 당초 평가계획대로 평가는 진행되지는 못하였고, 상반기평가 이후 하반기에는 상반기 정책평가지 제시된 “20대 역점추진시책” 등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6공화국의 종합 국정평가를 실시하고 주요정책과제에 평가는 생략하였다.

1992년 평가보고대회는 제6공화국 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냉철한 회고를 통하여 차질 없는 정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정운영에 대한 종합평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그림 2-2> 정책평가 기본방향 (1992년)

- 1992년 주요정책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 실시
 - 정부가 발표한 주요시책의 실천상황에 대한 심층 분석 및 평가 병립
- 추진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정책조정 실시
- 평가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외부전문가의 적극 활용



- 정부의 주요정책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실천되도록 하여 정부의 신뢰성 제고
-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기능의 충실한 수행 및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의 내실있는 마무리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1. 평가과제

1992년 대통령 연두보고내용과 총리실 선정 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8대 기본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총 45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세부과제별 주관 부서 및 협조 부서를 지정하였고,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접수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한편, 하반기에는 제6공화국 5년간 평가관계로 기본과제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2-9> 평가대상 기본과제 및 단위과제 (1992년)

기본과제	단 위 과 제	주관부처
1. 경제안정 대책	1.1 물가안정	기획원
	1.2 임금·노사안정 및 산업인력 수급원활화	기획원 노동부
	1.3 금융·세제의 효율적 운영	재무부
	1.4 주택의 안정공급	건설부
	1.5 부동산투기 억제 및 토지이용효율화	기획원 재무부 내무부 건설부
2.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제수지개선	2.1 설비투자 지원확대	상공부
	2.2 기술개발 지원 및 생산성 향상	상공부
	2.3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기획원
	2.4 산업구조조정 및 중소기업 활성화	상공부
	2.5 무역수지 개선대책	상공부
	2.6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	동자부
	2.7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	과기처
	2.8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체신부

기본과제	단 위 과 제	주관부처
3. 민주사회 질서확립	3.1 공명선거 실천	내무부 법무부
	3.2 민생치안 확립	내무부 법무부
	3.3 범인성 유해환경 개선	교육부 문화부 보사부
	3.4 불법·무질서 추방	내무부 법무부 건설부 환경처
	3.5 일하는 풍토 조성 및 호화사치 낭비 추방	국무총리실
4. 국민생활 환경개선	4.1 대도시 교통난 완화 대책 4.2 지역간 교통소통 원활화 4.3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대책 4.4 전국 상수원 및 하천수질 개선 4.5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4.6 대기보전 대책 4.7 사회복지 향상 대책 4.8 국민 식생활 문화 개선 4.9 보훈대상자 예우시책 강화	교통부 교통부 교통부 교통부 환경처 환경처 보사부 보사부 국가보훈처
5. 농어촌 발전대책	5.1 농수산업 구조 개선 5.2 농수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5.3 양곡관리제도 개선 5.4 농어촌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5.5 농어촌 투자 확충 및 지원체제의 정비	농수산부 농수산부 농수산부 농수산부 농수산부
6. 교육개혁 및 문화창달	6.1 교육혁신 6.2 고교교육체제의 개혁 6.3 대학교육 개혁 6.4 문화예술 창달과 국민문화 향수기반 확충 6.5 청소년 건전육성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문화부 체육청소년부
7. 공직사회 안정 및 행정 쇄신	7.1 공직사회의 안정과 활력 제고 7.2 행정민주화를 위한 제도개선 7.3 사무관리의 혁신 7.4 재정의 건실한 운용	총무처 총무처 총무처 기획원
8. 남북교류 확대 및 통일기반조성	8.1 남북합의서 이행기구 구성·운영 8.2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비태세 확립 8.3 남북교류협력 확대 8.4 남북군사회담 대비태세 확립	통일원 통일원 통일원 국방부

2.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및 방법

각 부처의 세부계획 및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1991년도와 같이 주요 정책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 및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문제사업이나 과제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의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향을 도출하도록 하였고, 정부합동특감반과 협조하여 특감결과를 평가에 활용하였다.

(2) 평가자문위원의 운영

정책평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 구성분야를 구체화하고 위원수도 소수화하였다.

자문위원 구성분야는 직접평가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상 지적 사항에 관련된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2명 이내에서 엄선하였다.

아울러 적극적인 자문위원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자문위원 운영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문위원은 연중 지속적으로 해당분야에 평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정책평가 자문위원은 총 24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2-10> 과제별 평가자문위원 명단 (1992년)

기본과제명	구성분야 및 자문항목	성명	현직
1. 경제안정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인력수급 원활화 - 인력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방안 - 여성인력 및 중고령자 활용방안 	조우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김장호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투기 억제 및 토지 이용 효율화 - 양도세, 종합토지세 등 토지관련세제 - 토지공개념 제도 발전 방안 - 토지이용규제 등 각종 규제정책의 합리화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손재영	KDI연구위원

기본과제명	구성분야 및 자문항목	성명	현직
2.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국제수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술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제도, 기구 및 방법 - 지원규모의 적정성 - 지원효과(세제, 금융, 기구) - 기술의 산업화 지원 방안 (기술-개발연계) 	박준경	KDI선임연구위원
		양희승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관리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적인 중소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성방향 및 수준 - 육성방법(대기업과 역할분담, 연계 등) 	이남주	서강대 경영대 교수
3. 민주사회 질서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하는 풍토 조성 및 호화, 사치, 낭비 추방 	이근희	한양대 산업공학과 교수
		오인식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자료개발 실장
4. 국민생활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권 교통체증 완화 - 교통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 	임성빈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
		임평남	도로교통안전연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맑은 물 공급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수수질 관리체계 및 시설의 현황, 문제점, 대책 - 정수와 급수체계 및 시설의 현황, 문제점 대책 	이상은 *하수, 폐수분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5. 농어촌 발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업 구조개선 	강봉순	서울대 농대 교수
		설광언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연구위원
6. 교육개혁 및 문화창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및 고교교육 체제 개혁 - 일시위주 교육의 시정 	이종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창달 및 청소년 건전 육성 - 청소년 정서함양 대책 추진 - 청소년 건전 육성 대책 	함병수	청소년 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성수	YMCA 프로그램 부장
7. 공직사회의 안정 및 행정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혁신 운동 - 사무관리 효율화 - 행정전산화 촉진 	정일주	한국전산원 연구위원
		박세정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규제 완화 - 정부규제 완화 촉진 - 민간자문기구 기능 활성화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3. 평가결과

(1)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상반기 평가는 추진실적 위주로 평가되었으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경제의 고도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고임금, 물가안정, 수입급증 등 경제체질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성장속도를 낮추는데 따른 고통 속에서도 경제안정 기조를 구조적으로 정착함
 -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경제활력이 회복되고, 경제구조가 내실화 되는 등 효과가 나타남
- 사회안정 분위기 확산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범죄와의 전쟁” 추진을 통해 민생치안 사범을 척결함
- “새질서·새생활 운동”을 범국민적 실천운동으로 확산 전개하여 자율적인 민주시민 질서 확립을 유도하여 집단민원 및 폭력시위가 현저히 감소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
- 6공화국 출범이후 정치·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례가 드물게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고 평화통일의 디딤돌을 마련
 - 30년만의 지방자치제 실시, 언론출판의 자유 실현,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사법부의 독립성 제고 등으로 국민의 자치와 자율이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기틀을 마련
- 국민소득의 배가, 고용의 증진, 주택 2백만호 건설,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완비, 생활편의시설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 추진 등으로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사회의 기반을 구축

-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남북한 UN동시가입과 남북대화의 적극 추진, 북방 외교의 과감한 전개 등으로 민주적 외교의 새 지평을 열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
- 일부정책의 경우 내용과 강도, 시기선택, 홍보측면에서의 미흡
 - 대도시 교통난완화를 위해 도로, 지하철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교통수요 유발억제노력이 저조하여 성과가 제약
 - 행정규제 완화 조치가 개발사안 위주로 되고, 관련사안이 일괄 개선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에 미흡
 - 핵폐기물 처리장, 원자력 발전소, 쓰레기 매립장 등의 입지 확보 및 건설 차질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및 시간제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한 노동법 개정 추진 지연, 실시설계 변경 등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의 조달문제로 신도시 전철 건설지연
 - 범죄발생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한 체감치안이 현실화되지 못하여 불안감이 상존

(2) 국민여론조사결과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1992년 6월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6월의 조사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대륙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의 18세~65세 남녀 15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생활수준 개선정도에 대한 평가 및 전망과 관련해서는 5년 전과 비교하여 생활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41.3%로 나빠졌다는 응답인 19.5%의 2배 가량 되며 5년 후 생활수준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56.4%로 나빠질 것의 10.6%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992년 상반기 정책성과와 관련, 경제분야중 성공적으로 추진된 과제는 부동산 가격안정, 노사관계 안정,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미흡한 부문은 소비자 물가안정, 농어촌 발전대책, 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나타남
- 사회분야중 성공적으로 추진된 과제는 남북교류 확대, 정부규제 완화, 과소비 추방 등 “새 질서·새 생활운동”이고, 미흡한 부문은 도시교통난 해소, 민생치안 확립, 환경오염 방지·단속인 것으로 나타남

Ⅲ. 국정평가

1. 개 요

1992년 하반기 평가는 6공화국 마지막 해로서 당해년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 대신에 국정평가 종합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6공화국 5년간의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점이 특징이었다.

2. 평가결과

< 평가종합 >

- 종합적 측면에서는 제6공화국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유례없이 민주발전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고, 평화통일의 디딤돌을 확고히 함
- 선진복지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특히 9.18결단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이룩함으로써 출범당시의 6.29선언이 민주주의완성으로 귀결되어 21세기 선진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분야별 주요내용 >

- 민주 발전의 새로운 장을 개막
 - 기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가 완비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혁 실시
 - 언론 출판의 자유가 실현되고, 노동 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증진
 -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체가 30년 만에 부활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과제의 자율적 추진 뒷받침
 - 제도 민주화에 상응하는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사회질서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14대 대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뤄짐으로써 선거문화를 혁신
- 국제적 위상 제고와 민족통일의 전기 마련
 - 전 방위 외교를 통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 수교를 통해 우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확고히 조성
 - 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새로운 국제정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 동북아에 화해와 개방의 분위기를 가속화
 - 남북한 UN동시가입으로 남북한 사이의 반목과 대결관계가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되었으며, 남북한간의 「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 발효 등 역사적인 성과가 가시화
- 선진경제사회로의 도약기반 구축
 - 안정기조 회복과 경쟁력 향상에 전력 경주함으로써 물가, 금리, 임금, 부동산 가격이 동시에 안정되어 경제운용의 안정고리가 정착
 - 수출이 회복되어 국제수지적자가 축소되고 전국민 의료보험, 국민연금제 등을 도입하여 선진형 사회보장 제도를 갖추
 - 주택 2백만호 건설과 부동산 투기의 근절로 주택가격이 하락 및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앞당겨짐
 - 농어촌 생활환경도 향후 10년간 42조원을 투입하는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의 수립 추진으로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기반을 마련
 - 교육환경의 개선,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등으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이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의 마라톤 세계제패 등을 통하여 국위선양과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
-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실천
 -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실천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실천한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
 - 공약사업 총 459건 중 57%인 260건을 완료하고 191건은 대부분 정상 추진중이고 사업비는 1992년까지 48조 6,960억원(54%)을 투자

<그림 2-3> 5년간 달라진 나라 모습

	1987년	1992년	비고
◇ 경제규모			
·국민총생산(억\$)	1,289	2,940	2.3배
·1인당 GNP(\$)	3,110	6,700수준	2.2배
·무역거래 (억\$)	883	1,585	1.8배
◇ 물가수준			
·소비자 물가(%)	6.1	4.5	
·생산자 물가(%)	2.6	1.6	
◇ 사회질서			
·주요5대범죄 발생(천건)	279	251	10%감소
·노사분류 발생(건)	3,749	235	94%감소
◇ 생활여건			
·주택보급율(%)	69.2	74.5(1991)	
·상수도 보급률(%)	70	81	
·국도포장률(%)	79.5	97.0	
◇ 생활의 질			
·의료보험 수혜률(%)	61.7	100.0	
·자가용보급대수(만대)	72	326	4.5배
·전화시설(만회선)	1,022	1,902	1.9배
·쇠고기소비량(kg/인)	3.6	5.1(1991)	1.4배
◇ 노동여건			
·노동소득 분배율(%)	52.8	60.3(1991)	
·실업률	3.1	2.4	
◇ 교육 환경			
·중학교 의무교육율(%)	6.6	12.3	
·학급당학생수(국교,명)	42.5(1988)	39.9	
·학교 급식율(%)	8.9(1988)	16.3	
◇ 농어촌 모습			
·농림수산 예산(억원)	13,211	36,867	2.8배
·농지정리 면적(천ha)	488	623	1.3배
·수도작 기계화율(%)	48	88	
·농공단지(지정누계)	77	256	3.3배

IV.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1. 보고대회 개최

상반기 주요정책평가보고대회는 1992년 7월 21일에 개최하여 정부의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추진성과와 제6공화국 정책추진 성찰에 대해 보고하고 정부의 1992년 하반기 20대 역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하반기 국정평가보고대회는 1993년 1월 14일 대통령 주재로 전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감사원장, 안기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평가종합보고」라는 형식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2. 결과조치

국정평가 종합보고 및 「20대역점추진시책」의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제6공화국 주요국정평가 및 향후과제」를 발간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이후 정부정책추진에 활용하였다.

제5절 1993년도 평가

I. 평가개요 및 특징

1993년에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주요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상황 위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김영삼정부 첫해로 국정전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기 위한 국정평가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주요정책과제 평가를 국정평가에 포함시켜 함께 평가결과를 작성하고 국무총리 및 대통령 주재 보고대회 등을 개최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였다.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1. 평가과제

국민의 관심대상인 현안정책과제, 정부가 제시한 국정운영 주요과제, 「신경제100일계획」 및 「신경제5개년계획」을 중심으로 3개 분야 20대 주요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2-11> 평가대상 분야 및 정책과제 (1993년)

분야	20대 정책과제	주관부처
1. 부정부패 척결 과 사회기강 확립	1.1 공직사회 부패 추방과 기강확립	내무, 법무부 , 총무처
	1.2 민생치안 확립	내무부 법무부

분야	20대 정책과제	주관부처
2. 경제활성화	2.1 중소기업 지원육성	상공부
	2.2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촉진	상공부
	2.3 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과기처
	2.4 정보통신산업 육성	체신부
	2.5 사회간접시설 투자 확충 및 내실화	경제기획원
	2.6 기본생활품 1%수준 안정	경기원, 건설, 상공, 교통부
	2.7 농어촌 구조개선	농수산부
	2.8 양곡관리제도 개선	농수산부
	2.9 행정규제완화	경기원, 상공, 건설, 총무처
	2.10 금융자율화	재무부
	2.11 국토이용관리체계 개선	건설부
	2.12 경제력 집중완화 및 공정거래질서확립	경기원, 상공부
	2.13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건설부
3.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3.1 환경보전	환경처
	3.2 위생 및 보건 향상	보건사회부
	3.3 노사제도 발전과 근로자 복지 향상	노동부, 건설부
	3.4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생활체육 향상	문화체육부
	3.5 교육제도의 개혁	교육부

2.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과제별 주관 부처에서 제출한 추진실적(6월 및 11월)을 토대로 목표대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현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각각 제시하였다.

단계별 판정기준 등 평가기준의 경우 1992년도 평가기준과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2) 평가자문위원 운영

문제사업 또는 부진사업 13개 과제에 대하여 각 과제별로 1~2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총 22명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문위원별로 해당 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에 참고하였다.

<표 2-12> 과제별 자문위원 명단 (1993년)

20대 정책과제	주요 평가 항목	성 명	현 직
1. 공직사회 부패 추방과 기강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 - 기강확립과 부조리 제거 - 직업공무원 제도 확립 · 인사, 보수 등 사기진작 	이필상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석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2. 민생치안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불법, 무질서 추방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3. 중소기업 지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구조개선 추진 - 특별자금 지원 - 기술개발 촉진 ▪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협력증진 ▪ 중소기업 인력지원 - 외국인 노동자 취업지원 - 병역특례 지원 	백낙기	KIET 중소기업 연구실장
4.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화 개발 추진 - 국산화 개발품목 핵심기술 집중개발 ▪ 국산개발품 사용 확대시책 	송기재	KIET 일반기계 산업연구실장
5. 기술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예산중 과학기술 예산비중 확대 ▪ 정부출자연구기관의 연구능력 확충 - 연구개발 체계의 개선 - 보육기술의 기업화 촉진 ▪ 산업기술개발 촉진 	김영우	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 관리연구소장
6. 정보통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분야 개발 기술투자 확대 ▪ 국산통신기구 보급확대 ▪ 정보통신인력의 양성 지원 	-	집행단계에 있어 필요성 적음

20대 정책과제	주요 평가 항목	성 명	현 직
7. 사회간접시설 투자 확충 및 내실화	▪ 수송시설의 확충 및 배후수송시설 연계개발	엄성직	국토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대중교통난 완화	강승필	교통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물류시설 확대 -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 물류시설 설치위한 제도정비 및 자금 지원	김정환	물류관리협의회 전무이사
	▪ 에너지의 안정공급 - 발전기술 확충 - 천연가스 전국공급망 구축	류지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부실공사의 사고관리대책 - 대형사고예방대책 -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박철립	대우건설 기술연구소장
8. 기본생활품 1% 수준 안정	▪ 국민생활안정은 위한 물가동향 특별 관리 - 기본생활품 20개(쌀, 쇠고기등)에 대한 가격관리 - 생활물가와 주거가격의 안정 지속	-	실무적 관리업무 이므로 필요성 적음
9. 농어촌 구조개선	▪ 농업생산기반 조기 완비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이정환	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10. 양곡관리제도 활성화	▪ 민간유통기능 활성화 - 미곡종합처리장 설비지원등 ▪ 수매제도의 개선	-	양곡유통위원회 등의 활용
11. 행정규제완화	▪ 각종 인·허가등 진입제도의 완화 ▪ 공장입지공급 원활화 및 설립절차 간소화 ▪ 국민생활 편의제도를 위한 일반행정 절차간소화	-	행정쇄신위원회 활용
12. 금융자율화	▪ 금리자율화 추진 ▪ 금융산업 개편 ▪ 금융기관 내부경영 자율화	-	금융산업발전 심의회 활용
13. 국토이용관리 체계 개선	▪ 토지이용 원활화 촉진 - 실수요 토지에 대한 규제완화 ▪ 토지관련제도의 정비 ▪ 가용토지 공급 확대	-	사업이 사실상 완료
14. 경제력 집중 완화 및 공정 거래질서 확립	▪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관리 ▪ 경쟁촉진정책의 강화 - 기업경영의 전문화 유도 - 기업투자의 선별기능 강화 ▪ 경제 각분야에 공정거래질서 확산	유승민	KDI 산업조직연구부 부연구위원

20대 정책과제	주요 평가 항목	성 명	현 직
15.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간 균형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와 산업의 지방유인책 강화 ▪ 수도권내 지역격차 완화 ▪ 중소도시의 지역거점 육성 ▪ 지방경제 활성화 	-	수도권정비 심의회 활용
16.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물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 수질 및 하천수질 개선대책 -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 정수 및 급배수 과정 개선 ▪ 대도시 대기오염 개선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등 정착 	정진승	한국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원	계명대학 교수
17. 위생 및 보건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 관리 강화 ▪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 	이철호	고려대 농대교수 교수
18. 노사제도 발전과 노동자 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장제도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 확충 - 보험급여단위 확충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례 제도의 개선 ▪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추진 ▪ 노동행정의 전문적 서비스 제고 	김영중	동국대 법정대학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주택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금융 확충 - 임대주택 육성 	권구민	대한주택공사 조사연구실장
19. 지역문화의 균형발전과 생활체육의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 활성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공간 확충 - 문화시설 사회교육기능 내실화 - 향토문화 발전 육성 	이종인	문예진흥원 문화발전 연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향상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체력단력시설 균형 설치 -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정성태	서울대 사대 체육학과 교수
20. 교육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 개선 ▪ 대학교육의 자율성 신장 ▪ 직업교육제도 확립 	이종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3. 평가결과

주요정책과제를 국정평가에 포함시킴에 따라 과제별 평가결과를 별도로 발표치 않고, 과제별 평가결과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하여 국정평가의 종합보고 부문에 포함하였다.

- 전반적인 평가
 - 신정부는 최우선적으로 과거 권위주의와 군사문화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
 -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확인과 과거 민주화운동 정신의 재조명으로 민족정기 양양과 민주사회의 기반을 확고히 함

- 미흡했던 점
 - 개혁성과의 전반적 확산 미흡
 - 한약 조제권 분쟁 등 개인적 이해 등으로 국민 개개인이 개혁의 주체로서 자율적 참여가 부족
 - 각종 대형사고(서해 훼리호, 아시아나 항공사건)에 대한 예방태세가 미흡하고 부처간 의견대립 등으로 적극적 제도개선이 제약
 - 경제활력의 회복 지연
 - 높은 생산비용과 투자심리 위축,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실질적 개선미흡, 노사관계 갈등 등으로 본격적인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대외개방에 대한 대응자세 미확립과 구조조정 노력 미흡
 -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전략체계가 확립되지 못하고 금융·서비스·농업 등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집중적인 구조조정노력 미흡

Ⅲ. 국정평가

1. 개 요

1993년 신정부 출범후 국정전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향후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국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국정평가를 실시하였다.

국정평가는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1단계는 분야별로 각 부처 장관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 주재 하에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단계는 분야별로 각 부처장관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주재 보고회에 보고하였다.

2. 평가결과

- 경제활성화 노력과 경제개혁 추진
 -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확대시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경제 100일 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
 - 금융실명제를 단행하여 공평과세를 통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부정부패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이를 조기정착 시킴
 - 경제활성화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하반기에는 경제성장 회복세가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무역수지는 4년만에 흑자 기록

- 국가기강의 확립과 건강한 사회 구현
 - 각 분야의 고질적인 부정과 비리를 성역없이 척결하고, 비합리적인 제도와 잘못된 관행, 그리고 해이해진 사회기강 확립
 - 도덕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의식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농어민 연금 조기실시 준비 등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와 「많은물공급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

- 능동적 통일·외교 추진
 - 문민정부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화해와 협력을 수용한 3단계 3기조의 통일정책을 수립·추진
 -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APEC정상 회담의 주도적 참여 등 외교협력을 강화
 - 국방정책과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완화 등 민·군 관계 개선을 통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

- 행정쇄신 추진
 -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불편의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행정제도, 관행의 개선과 규제완화작업을 추진
 - 정부 11개 경제부처도 경제분야 행정규제완화 노력(966건의 과제중 584건 개선 : 11월말 기준)

IV.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1. 보고대회 개최

1단계 국정평가보고회는 1993년 9월 11일(토) 09:00~18:00 전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동보고회에는 국가기강확립분야, 경제분야, 사회·교육·문화분야, 통일·외교·안보분야 등 4개 분야별로 각 부처 장관이 보고하고 주무부처에서 종합평가를 보고하였다.

2단계 국정평가보고회는 1993년 12월 27일(월) 09:30 청와대 세종홀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청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동보고회에는 분야별로 주무장관이 종합보고, 경제·사회 분야, 통일·외교·안보 분야, 국가기강확립 분야, 행정쇄신 추진실적을 보고하였다.

2. 결과조치

1993년 국정평가 결과는 1993년 12월 29일 각 부·처·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 1994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였다.

제 6 절 1994년도 평가

I. 평가개요 및 특징

1994년도에는 2차례에 걸쳐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평가대상 과제선정 등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일부 변화가 있었다. 즉 1차 제도개선에 의해 분기별 정책과제평가를 새로 도입하였으나 1/4분기에 그치고, 2차 제도개선에 따라 평가 시 역점을 두어야 할 평가사항을 새로이 제시하고 전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부처당 2개의 주요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1. 1/4분기 주요정책평가

(1) 평가과제

각 부처 업무보고 내용 중 중점추진과제와 국민생활에 직결되어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1994년 3월 8일 총 9개의 주요과제를 선정하였고 각 과제를 2~5개의 세부평가과제로 분류하였다.

<표 2-13> 평가대상과제 (1994년 1/4분기)

평가과제	세부평가과제	주관부처
1. 민생치안	1.1 자율방범체제 구축	내무부
	1.2 4대 중점단속 대상범죄 척결	내무부
	1.3 경찰인력 및 장비보강과 이의 효율적 활용	내무부
2. 수질관리개선	2.1 환경 기초시설 설치 확대	환경처
	2.2 수질감시체제 확립	환경처
	2.3 취·정수장 시설확충 및 운영개선	내무부
	2.4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건설부
3. 식품, 위생 안전	3.1 식품생산단계의 안전성관리	상자부
	3.2 소비자 감시기능 강화	경제기획원
	3.3 유통관리체계 감시	상자부
	3.4 식품검사체계 개선	농수산부
4. 교통사고방지	4.1 교통안전시설 확충 정비	내무부 건설부
	4.2 교통지도단속의 체계화, 과학화	내무부
	4.3 교통안전교육 강화	내무부 교육부
	4.4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	노동부
	4.5 수송장비의 안전도 향상	상자부
5. 기업활동 규제완화	5.1 기업활동 규제법령·제도 개선	상자부
	5.2 각종 규제완화 조치의 운용실태	상자부
6.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6.1 중소기업 구조개선 추진	상자부
	6.2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협력증진	상자부
	6.3 중소기업 인력지원	상자부
	6.4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	상자부
7.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7.1 농·수산물 물류센터 설치	농수산부
	7.2 산지 유통시설 확충 및 공영도매시장 건설	농수산부
	7.3 표준규격 품질 인증제 확대	농수산부
	7.4 품목별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농수산부

평가과제	세부평가과제	주관부처
8. 기술개발 및 도입촉진	8.1 산·학·연 협동연구체제 활성화	과기처
	8.2 민간 연구기술개발지원	과기처
	8.3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	과기처
	8.4 기술도입 촉진	과기처
	8.5 외국인 투자 활성화	재무부
9. 공무원 복무 자세 확립과 공직사회 활성화	9.1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	총무처
	9.2 국제화에 대비한 공직능력 배양	총무처
	9.3 공직사기를 위한 근무여건 개선	총무처

(2)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과제별로 해당 주관부처에서 제출한 연간 추진계획 및 분기별 추진실적을 토대로 목표대비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였으며 해당기관 의견을 공식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평가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았다.

그러나 평가기준은 기존의 평가기준과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2) 평가자문위원의 운영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9개 평가과제 중 8개 과제에 대하여 총 10명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시 자문 및 협의기구로 활용하였다.

<표 2-14> 과제별 평가자문위원 명단 (1994년 1/4분기)

분야	과제명	자문위원
생활 개혁	1.민생치안	이황우(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수질관리개선	이상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3.식품위생안전	송인상(한국식품연구소 수석연구원)
	4.교통사고 방지	설재훈(교통개발연구원 안전연구실장)
국가 경쟁력 강화	5.기업활동 규제완화	이승철(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6.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백낙기(산업연구원 중소기업 연구실장)
	7.농산물 유통구조개선	허길행(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8.기술개발 및 도입촉진	유신상(농협 유통기획부장) 이희열(산업기술진흥협회 책임연구원) 이원영(과학기술정책연구소 연구단장)
기강 확립	9.공무원 복무자세 확립 과 공직사회 활성화	-

(3) 평가결과

선정된 과제의 대부분이 장기간 누적된 현안사항들이었기 때문에 1/4분기는 과제 전반적인 현황진단과 제도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과제별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 민생치안 확립
 -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및 가정파탄범, 마약사범 등은 전년 대비 증가세로 체감치안은 낮은 수준
 - 최근 범죄의 조직화, 흉포화에 대비하여 일선경찰의 방법·순찰 기능강화 방안 검토 필요(대단위 파출소제도 도입 등)

- 수질관리개선
 - 최근 계속된 수질오염사고 발생으로 수질관리 행정의 신뢰성 저하
 - 다만, 수질관리 개선대책(1994년 1월) 및 재원대책 발표로 수질개선에 대한 기대 및 정부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

- 식품위생 안전
 - 식품오염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수집과 조사연구를 통한 체계적·장기적인 위해 발생 예방계획 미흡
 - 수입식품의 산지정보 수집기능 취약으로 과도한 정밀검사 유발
- 교통사고방지
 - 교통사고방지 홍보효과에 대한 사후평가 미흡
 - 도로교통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 및 법규정비 필요(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행방법 개선 등)
- 기업활동규제 완화
 - 짧은 기간 중에 상당한 외형적 완화실적이 있었으나, 핵심적 사항에 완화 부족 및 지연으로 체감 규제완화는 낮은 상태
 - 개별과제 위주로 추진하여 동일법령의 빈번한 개정 등 그간 규제완화 추진상의 문제 보완필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지원 재정·금융제도의 다기화, 중복화, 소액화 등으로 지원제도의 효율성 저하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대금 결제시 현금결제 비중이 낮은 등 실질적 협력 미흡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 당초 계획한 권역 도매시장 건설 계획이 지연
 - 표준규격 및 품질인증제 조기정착 및 확산 필요
-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추진
 - 협동연구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관리체계 미흡
 - 기술 개발 정책 결정시 범정부적 우선순위 종합고려 미흡
 - 정부출연기관 및 연구관리기관간 공식 정보교류체계 부재
 - 산·학·연 협동연구지원 및 유인제도 미흡 (실질적 우대내용은 각 개별법에서 단편적, 소규모로 지원, 대학의 수탁연구에 대한 효율적 관리 시스템 미흡 등)

-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과 공직사회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복감사 사례 빈발
 - 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과정 개발 필요
 - 후생복지시설의 경우 균등한 혜택부여에 한계가 있으므로 연금축소가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복지시설 신설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2. 주요정책과제 평가

(1) 평가과제

1994년 6월 2차 제도개선에 따라 각 부처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해 각 부처별로 주요정책과제 2개 과제를 선정하되, 1994년도 주요 국정방향인 국가경쟁력 강화관련 과제(40개 과제)를 위주로 44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2-15> 평가대상 과제 (1994년)

부처별	정 책 과 제	비 고
경제기획원	· 물가안정 · WTO 출범에 따른 경제국제화의 추진	40대과제 40대과제
통 일 원	· 북한정세분석 및 대응방안 ·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40대과제
외 무 부	· 세계화시대에 맞는 실리외교 추진 · 해외동포 지원 활성화	40대과제 40대과제
내 무 부	· 지방자치의 정착발전 · 4대 질서운동 추진	40대과제 40대과제
재 무 부	· 금융자유화 ·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40대과제
법 무 부	· 민생침해 범죄소탕 · 국제화·개방화관련 법률 검토·지원강화	40대과제 1994년 정책평가
국 방 부	· 국방관련제도 개선 · 군 전문인력 활용	40대과제

부처별	정 책 과 제	비 고
교 육 부	· 대학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경쟁력 제고 · 기술 및 직업교육 강화	40대과제 40대과제
문화체육부	·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대책 추진 · 청소년 육성대책 추진	40대과제
농림수산부	·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40대과제 1994년 정책평가
상공자원부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기업활동 규제완화	40대과제 1994년 정책평가
건 설 부	· 사회간접자본 확충 · 수도권 집중 완화	40대과제 40대과제
보건사회부	· 식품위생안전 · 사회복지시설 확충	40대과제 1994년 정책평가
노 동 부	· 노사관계 안정대책 · 산재예방 대책	40대과제
교 통 부	· 「1994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 추진 · 교통사고방지	40대과제 1994년 정책평가
체 신 부	·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 구축 · 통신사업 구조개편	40대과제
총 무 처	· 정부내 전문가 확보구축 ·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과 공직사회 활성화	40대과제 1994년 정책평가
과학기술처	· 첨단과학기술의 진흥정책 ·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추진	40대과제 1994년 정책평가
환 경 처	· 수질관리개선 · 폐기물 적정관리	40대과제 1994년 정책평가
공 보 처	· 종합유선방송 추진 · 국제화·개방화 관련정책 홍보강화(WTO중심)	40대과제 40대과제
법 제 처	· 국가경쟁력 강화 입법지원 · 법령 심사운영	년초 업무보고
국가보훈처	· 민족정기 선양사업추진 · 보훈 복지시설 확충	년초 업무보고

(2)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및 방법

진도분석 위주의 주관적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평가시 역점을 두어야 할 주요 「평가사항」을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사항」과 각 부처의 고유성격을 갖는 「특수사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부처의 자체평가와 총리실의 종합 평가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새로운 평가방식에 의해 상반기 평가는 시범적으로 10개 부처의 10개 과제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였고, 하반기 평가는 22개 부처의 44개 과제 모두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 일반사항 : 10개 사항
 - 업무추진의 능률성 분석
 - 시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 상태는 충분하였는지 여부
 - 계획된 일정대로의 진척여부
 - 정책과제의 세부사업 단위별 추진현황 분석
 -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계획수립과 추진 여부
 - 시책추진과정에서의 전문성 반영정도
 - 정책집행의 과정분석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과 공개·홍보 정도
 - 대내외적 협조과정
 -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책수행 여부
 - 정책추진의 효과분석
 - 정책추진의 효과가 수혜자(주민, 기업 등)에게 어느 정도 만족을 주고 있는지 여부
 - 정책추진에 투입된 경제적·사회적 비용과 정책추진 결과 나타난 경제적·사회적 이익의 비교 분석
- 특수사항
 - 일반적인 사항이외의 분야에 대한 검토 분석(특기사항)
 - 각 개별 부처 특수성격의 분야
 - 일상적인 행정관련사항(인력의 전문화, 행정의 전산화 등)

- 「일반사항」은 구체적 내용을 평가지침으로 작성하여 사전제시하고
「특수사항」은 평가자가 사후분석 정리함

2) 평가자문위원의 위촉 및 활용

상반기 평가시에는 과제별 자문위원 10명과 총괄 자문위원 4명을 위촉하여 평가에 대한 자문 및 협의기구로 활용하였다.

<표 2-16> 과제별 자문위원 및 총괄 자문위원명단(상반기)

분야	과제명	자문위원
생활개혁	1. 민생치안	김안제(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조병인(형사정책연구원 기획운영실장)
	2. 수질관리개선	이상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3. 식품위생안전	송인상(한국식품연구소 수석연구원)
	4. 교통사고 방지	설재훈(교통개발연구원 안전연구실장)
국가 경쟁력 강화	5. 기업활동 규제완화	이승철(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6.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승철(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7.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주봉규(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8.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안종길(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9. 산학연 협동연구활성화	이원영(과학기술정책연구소 연구단장)
기강확립	10.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 과 공직사회 활성화	민진(국방대 교수)
총괄자문	송대희(KDI 선임연구위원, KDI 연구조정실장) 김신복(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명수(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이원영(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하반기 평가시에는 과제대상 부처별로 1인의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선정하여 각 담당심의관실의 평가반(9개 반)에 참여시켜 과제별 평가에 대한 자문을 하였다.

<표 2-17> 평가반 전문가(하반기)

부처별	성명	현직
경제기획원	김정수	중앙일보 전문위원
통일원	하용출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외무부	길정우	민족통일연구소 정책실장
내무부	김안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재무부	안종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법무부	조병인	형사정책연구원 기획운영실장
국방부	한용섭	국방대학원 교수
교육부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문화체육부	이종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
농림수산부	주봉규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상공자원부	이승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건설부	박창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보건사회부	송인상	한국식품연구소 연구부장
노동부	정연양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교통부	설재훈	교통개발연구원 안전연구실장
체신부	조신	통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총무부	민진	국방대학원 교수
과학기술처	이원영	한국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정책연구단장
환경처	이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부원장
공보처	홍기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법제처	이재후	변호사
국가보훈처	양승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3) 평가결과

1) 상반기 평가결과

< 총괄 >

- 10개 과제를 추진능률성 평가, 추진과정 평가, 정책성과 평가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총 63개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지적사항을 원인별로 분류
 - 추진능률성 평가(부처협조 미흡 등) : 10개 과제, 40개 지적사항
 - 추진과정 평가(홍보미흡 등) : 10개 과제, 17개 지적사항
 - 정책성과 평가(현장평가미흡 등) : 5개 과제, 6개 지적사항

< 과제별 부진사항 주요내역 >

- 민생치안확립 : 11개 사항 지적
 - 범죄소탕 특별기간 설정 등 특별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직 폭력·가정과괴 등 4대 중점 척결대상 범죄발생 증가
 - 경찰서간 인력이 적정배치 되지 않아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등 수사기능 강화 및 사기 진작 지원 미흡

- 수질관리개선 : 5개 사항 지적
 - 하수처리장 등 일부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지방비 확보 미흡 등으로 추진지연
 - 수질오염사고발생시 정부가 신속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대처방법 및 협조사항을 알리지 못함으로써 막연한 불안감 지속

- 교통사고방지 : 4개 사항 지적
 -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위한 현장조사 및 시설물 개선대책 수립시 관련기관간 협조체제 미흡(도로관리청 관계자 참여배제)
 - 1994년 상반기 중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년대비 7.3% 감소하였으나 사고건수와 부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

- 식품위생안전 : 10개 사항 지적
 - 수입식품 검사장비는 확보하였으나, 활용할 전문인력 보강지연으로 장비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
 - 유통기한제도 선진화 추진 등 식품관련 민간업계의 애로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사례가 미흡

- 기업활동규제완화 : 10개 사항 지적
 - 기업활동규제완화 개선과제 선정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 미제시 등으로 사업추진 애로(34개 기관중 13개 기관 의견 미제출)
 - 기업활동 규제완화 관계법령 개정 지연 및 중요사항 계속규제 등으로 30~44%의 기업이 규제완화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10개 사항 지적
 - 지방중소기업 육성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사업시행이 지연
 - 불법체류자 동향과악과 법적 처리 원칙 명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원칙 설정을 위한 부처간 협력이 미흡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 5개 사항 지적
 - 의원입법에 의한 농안법 개정과정에서 정당과 적절한 사전협의 부족과 시행준비 미흡으로 사회적 혼란초래
 -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립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추진 지연

-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 2개 사항 지적
 - 외국인 투자절차 간소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지대하나, 계획수립과정에서 일선 시·도의 의견수렴과정 생략
 -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인적자원 교류 등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증대 필요

-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 : 3개 사항 지적
 -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이 시행되었으나, 산·학·연 협동연구촉진 기본계획의 미수립으로 본격적인 업무추진 지연
 - 산·학·연 협동 석·박사 과정은 업계 호응 부족과 전문과정별 입학정원의 경직적 운영 등으로 총 정원의 36%만 재학생확보

-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과 공직사회 활성화 : 3개 사항 지적
 -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국고대여 사업추진은 예산확보 미흡으로 차질 초래
 - 민간연수기관 공무원 연수 등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동의 및 합의를 구하는 노력 미흡

2) 하반기 평가결과

< 총 괄 >

- 22개 부처의 총 44개 과제를 추진능률성, 추진과정 및 정책성으로 나누어 평가한 결과 총 166개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과제별 미흡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물가안정(경제기획원) : 3개 사항 지적
 - 농산물에 대한 사전적 수급분석체계, 부족물자 적기적량 수입 대책, 유통불공정거래 방지대책 등이 미비
- WTO출범에 따른 경제국제화 추진(경제기획원) : 4개 사항 지적
 - 경제국제화추진 41개 세부과제별 추진실적이 1994년 11월 당초 일정계획보다 지연
- 북한정세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통일원) : 2개 사항 지적
 - 북한실태의 분야별 점검 분석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준비와 대국민 홍보 병행 필요
-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통일원) : 3개 사항 지적
 - 통일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는 보다 국민공감대 형성을 높일 수 있는 자료 개발 필요
- 세계화 시대에 맞는 실리외교 추진(외무부) : 4개 사항 지적
 - 대외경제정책 조정·실무협상 등에 있어 관련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미흡
- 해외동포지원 활성화(외무부) : 4개 사항 지적
 - 교육부 등 관련부처의 해외동포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 필요

- 지방자치의 정착발전(내무부) : 4개 사항 지적
 -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 업무가 중복되어 명백한 구분이 필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보강대책 마련 필요

- 4대질서운동 추진(내무부) : 8개 사항 지적
 - 질서의식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심야영업소 객실구조 무단변경 사례 증가등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자는 의식개혁의지는 미흡

- 금융자율화(재무부) : 4개 사항 지적
 - 금리자유화를 제외한 자금운용과 경영·관리 분야에서 자율화 내용과 속도는 미흡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재무부) : 3개 사항 지적
 - 원-스톱 서비스 제도 예행연습중인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실적도 없으며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민생침해 범죄소탕(법무부, 내무부) : 8개 사항 지적
 - 전국적인 공조수사 미흡으로 강력사건 해결이 지연되고 관할권 다툼으로 신고접수 지연 및 초동수사 소홀

- 국제화·개방화관련 법률 검토·지원 강화(법무부) : 2개 사항 지적
 - 국제통상 분규 법률자문, 법무 서비스 개방요구에 대한 대응책 강구를 위한 통상관련 정보입수 등의 대책 미흡

- 국방관련 제도개선(국방부) : 4개 사항 지적
 - 국방산업 중장기전략 등 주요정책과제와 세부추진사업 등 상하 계획과 목표간의 연계성 확보 필요

- 군 전문인력 양성(국방부) : 4개 사항 지적
 - 전문인력 장기교육계획과 관련, 소요직위 판단 등에 있어서 전문성·실효성 제고가 필요하고 인사관리와 연계성 확보 필요

- 대학교육의 자율성 신장과 경쟁력 제고(교육부) : 6개 사항 지적
 -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의 차등지원시책은 지원규모가 미미하여 실효성이 적음
- 기술 및 직업교육 강화(교육부) : 3개 사항 지적
 - 현장기술과 인력양상과의 연계를 위한 공업고교 2.1체제 실시가 현장훈련이 아닌 단순노무 종사 등 사전준비가 미흡
- 우리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 추진(문화체육부) : 5개 사항 지적
 - 세계화추진 문화교류 촉진을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기반 확대 필요
- 청소년 육성대책 추진(문화체육부) : 5개 사항 지적
 - 입시제도 개선과 청소년 유해 환경개선에 대한 부처간 협조체제 미흡
-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수립·추진(농림수산부) : 2개 사항 지적
 - 농어촌 발전대책 수립·추진 과제중 농어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등이 부처간 협의부족으로 지연
-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농림수산부) : 3개 사항 지적
 -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간 유통정보 공유체계 구축 미비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상공자원부) : 3개 사항 지적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판로 지원강화 정책이 관련부처와의 협의부족으로 지연
- 기업활동 규제완화(상공자원부) : 5개 사항 지적
 - 개별법령 반영과제가 개선권고 조치계획에 맞춰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대상과제 198건중 27건 개선 완료)
- 사회간접자본 확충(건설부) : 6개 사항 지적
 - 국도의 간선기능 저하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고 일부지역(영산강 수계 및 영천댐 지역)의 용수부족 해결 미흡

- 수도권 집중 완화(건설부) : 3개 사항 지적
 -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이 실질적인 규제에 제약(심의대상 건축물 48건중 47건 허용)
- 식품위생안전(보건사회부) : 7개 사항 지적
 - 수입식품 검사장비는 확보하였으나 활용할 전문인력 보강 지연으로 장비의 활용도가 낮음(1명이 4명의 역할 수행)
- 사회복지시설 확충(보건사회부) : 7개 사항 지적
 - 사회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시설설치를 위한 시설별·지역별 실제 수요조사가 되어있지 않음
- 노사관계 안정대책(노동부) : 3개 사항 지적
 - 일선 노사지도 관련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 및 책임해결 의지가 미흡
- 산업재해 예방(노동부) : 2개 사항 지적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점검과 개별법에 의한 분야별 점검이 중복되어 불필요한 부담 가중
- 1994 한국방문의 해 사업추진(교통부) : 5개 사항 지적
 -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이 지연되고 서울 600년 행사 등의 세부계획이 늦어져 연계추진이 미흡
- 교통사고방지(교통부) : 4개 사항 지적
 - 교통사고로 인한 청소년 가장 발생현황 및 장기치료자 현황 등의 실태파악이 되지 않아 효과적인 대책수립 제약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체신부) : 5개 사항 지적
 - 초고속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추진이 부처이해대립, 추진위원회 규정 미비 등으로 지연
- 체신사업 구조개편(체신부) : 2개 사항 지적
 - 유무선 사업의 구분과 유선사업의 지분제한 등으로 기본 통신산업의 다자간 협상에 대비한 경쟁력 기반 마련이 늦어질 우려

- 정부내 전문가 확보 대책(총무처) : 2개 사항 지적
 -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공무원 규모의 적정성과 대상 국제기구의 실태파악이 미흡
-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과 공직사회 활성화(총무처) : 6개 사항 지적
 - 공직자 의식개혁 운동이 지속적 운동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1회성 행사로 그침
- 첨단과학기술의 진흥정책(과학기술처) : 3개 사항 지적
 - 투입재원, 지원체제 미흡,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등 재원활용의 적정운영 노력 부족
- 산·학·연 협동연구 활성화(과학기술처) : 4개 사항 지적
 -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기관별 세부기준 마련 미흡(대상기관 126개중 43개 기관이 세부기준 마련 못함)
- 수질관리개선(환경처) : 1개 사항 지적
 -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하·폐수 처리율 향상에도 불구하고 하천오염도 악화추세
- 폐기물 적정관리(환경처) : 4개 사항 지적
 -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 불법 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이 미흡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회수·처리 대책 미흡
- 종합유선방송 추진(공보처) : 2개 사항 지적
 - 유선방송프로그램 공급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국내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경쟁력 제고대책 필요
- 국제화·개방화 관련 정책홍보 강화(공보처) : 1개 사항 지적
 - WTO 홍보대책위원회의 구성에 민간전문가 참여방안 강구 필요

- 국가경쟁력 강화 입법 지원(법제처) : 3개 사항 지적
 - 국내외 법령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공급시스템 필요

- 법령 심사운영(법제처) : 1개 사항 지적
 -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활동에 대한 지도와 교육강화가 필요

- 민족정기 선양사업 추진(국가보훈처) : 4개 사항 지적
 - 유족반대, 합동묘 등으로 봉환이 불가능한 현지 단장 희망묘소(27위)의 단장사업이 관련국의 협조미흡으로 추진 지연

- 보훈 복지시설 확충(국가보훈처) : 2개 사항 지적
 - 상이군경복지회관 건립시 운영비 조달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당초 건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비 조달 목적으로 시설 임대

Ⅲ.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1/4분기 주요정책 평가결과는 1994년 5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고, 평가결과를 1994년 6월 7일 각 부처에 통보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하였다.

상반기 평가결과는 1994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994년 8월 31일 각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조치를 강구하였다.

하반기 평가결과는 1994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994년 12월 29일 각 부처에 통보하여 1995년도 업무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였다.

제 7 절 1995년도 평가

I. 평가개요 및 특징

1995년도에는 심사평가기능(경제기획원)과 정책평가(국무총리실)기능이 행정조정실로 통합된 첫 해의 평가로서, 경제부처만 대상으로 하였던 경제기획원의 심사평가와는 달리 전 부처로 평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심사평가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1995. 2)하여 심사평가를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주요정책과제평가(정기평가)와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하였다.

또한 국무총리에게 심사평가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요구권을 인정하며, 심사평가결과 예산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심사평가결과는 반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심사평가결과와 그 처리상황을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추진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1. 평가과제

대통령 시정연설, 국정목표,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토대로 국정목표인 ‘세계화’에 대한 기반조성에 주력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되는 사업,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사업, 국민생활치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기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 4개 기준에 의해 각 부처 주요사업 168개 과제를 선정하고, 그중 중요도가 높은 50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관리하며, 이에 대해 5대 부문별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 5대부문 :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경제의 안정과 경쟁력 제고, 국민생활의 안전확보와 생활의 질 향상, 통일·외교 및 안보역량 강화

<표 2-18> 주요정책과제 선정 (1995년)

<총괄>

구 분	중점관리 대상과제	기타 정책과제	계	구 분	중점관리 대상과제	기타 정책과제	계
<경제>	26	68	94	<통일외교안보>	5	13	18
공정거래위	-	2	2	통 일 원	2	3	5
재정경제원	5	8	13	국 방 부	2	3	5
통 계 청	-	3	3	병 무 청	-	3	3
관 세 청	1	2	3	외 무 부	1	4	5
국 세 청	1	2	3	<행정>	7	17	24
조 달 청	1	2	3	총 무 처	2	3	5
건설교통부	2	6	8	공 보 처	1	2	3
철 도 청	1	3	4	내 무 부	2	5	7
항 만 청	1	3	4	경 찰 청	1	-	1
농림수산부	2	5	7	국가보훈처	-	1	1
농 진 청	-	2	2	법무부(검찰청)	1	3	4
수 산 청	1	2	3	법 제 처	-	2	2
산 림 청	1	2	3	정 무 1	-	1	1
통상산업부	2	6	8	<사회문화>	12	20	32
공 진 청	1	2	3	교 육 부	3	5	8
특 허 청	1	2	3	문화체육부	3	3	6
정보통신부	2	5	7	환 경 부	2	6	8
과학기술처	1	4	5	보건복지부	3	6	9
기 상 청	-	4	4	정 무 2	1	-	1
노 동 부	3	3	6	계	50	118	168

<경제>

구 분	과 제 명
공정거래위	1. 공정거래질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제한적인 법령·제도 및 관행의 정비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정착
재정경제원	1. 세정개혁의 지속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지원제도의 조정 ○ 관세율의 조정 및 품목분류 변경 • 부동산실명제 추진 ○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시행 준비 2. 경제행정 규제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행정 규제완화 추진 3. 금융·외환개혁의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제도의 선진화 여건 조성 • 외환제도 개혁의 단계적 추진 ○ 금리자유화의 확대 4. 세계화를 위한 경제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협정 이행을 위한 법령 및 제도정비 마무리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5.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및 정책연계성 제고 ○ 정부공사 계약 및 발주제도 개선
통 계 청	1.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통계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주택 총 조사의 실시 ○ 지방화에 따른 지역통계 개발 및 지원 ○ 통계정보서비스 공급 확충
관 세 청	1.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세협력 사업 확대 ○ 통관자동화시스템 구축 • 수출입 화물유통체계 개선
국 세 청	1. 세정의 선진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신고 위주의 세정기반 조성 ○ 무자료거래 근절 및 재산과세 자료처리 개선 • 과세기준 선진화와 해외과세 능력의 향상

구 분	과 제 명
조 달 청	1. 세계화를 지향하는 조달행정개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한 조달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화에 대비한 조달업무 위임확대와 계약제도 개선 ○ 불공정행위 및 부실시공 대책 마련·시행
건설교통부	1.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체계 개선 ○ 수자원 및 공장용지의 확충 개발 2. 국민생활의 불안과 불편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가격의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공사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개선 3. 세계화·지방화에 대비한 행정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개방대비 건설관련 제도개선 ○ 국토개발 추진체계의 재정비
철 도 청	1. 철도수송능력 확충 및 안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수송능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안전 확보 2. 철도공사 전환 준비 및 장기발전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공사 전환을 위한 준비 ○ 철도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해운항만청	1.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항만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를 위한 신 해운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체제 확립 2. 해상교통환경개선 및 연안해운의 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교통안전 확보 및 해양오염방지 ○ 연안해운의 현대화 및 해상수송 활성화
농림수산부	1. 농업의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 경영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화의 효율성 제고 • 품목별 경쟁력 강화 2. 농어민의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건설 ○ 공영도매시장 건설 3. 농림수산물 수출진흥과 수입관리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 동·식물 검역기능 강화

구 분	과 제 명
농업진흥청	1.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대비 첨단농업 기술 개발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농촌지도사업 혁신
수 산 청	1.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종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기반시설 확충 ○ 수산물 유통개선과 가공산업 육성
산 림 청	1. 임업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산림개발 확대 및 국제산림환경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도시설 확대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통상산업부	1. 산업의 세계화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발전 계획 수립 ○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2.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지원 ○ 지방중소기업의 현지 완결적 지원체제 구축 3. WTO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관련 제도·절차 개선 ○ WTO 후속협상 및 새로운 통상의제 논의에 대응 4.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산업의 경쟁기반 조성 ○ 에너지 수급안정 및 안전관리 강화
공업진흥청	1. 산업의 품질·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경영체제 확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표준 및 측정의 선진화 지원 2. 안전위해 상품의 관리 강화 및 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위해 공산품 관리
특 허 청	1. 특허행정 정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심판업무의 전산화 ○ 대민 특허정보공급체제 구축 ○ 산업재산권 법제의 재정비

구 분	과 제 명
정보통신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 정보통신관련 시범사업 추진 2.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정보센타 확충, 컴퓨터 교육 등을 통한 지역정보화 추진 3. 정보통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티미디어산업의 전략적 육성시책 추진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체 지원 ○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도입 확대
과학기술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기술개발 활동의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원천 기술의 전략적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계 효율화 ○ 해외 우수과학기술자 활용 강화 2. 원자력 기술의 자립과 안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추진 ○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의 추진
기 상 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상기술 혁신 및 기상서비스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기상관측시스템 구축 ○ 자동기상관측망 보강 ○ 항공기상지원 확대 ○ 자동음성응답시스템 구축
노 동 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사제도 개선 및 장기고용안정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 • 고용안정 종합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산업구조에 대응한 산업인력체제 구축 2. 산업재해감소 및 재해근로자 지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의 선진국 수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험서비스 향상 3. 고용차별 개선 등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근로참여 확대

<통일외교안보>

구 분	과 제 명
통 일 원	1. 남북관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경수로 지원 • 남북경협 추진 2. 통일대비태세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대비요원 양성 ○ 북한정보자료 활용 제고 ○ 통일교육 활성화
국 방 부	1. 전투준비 태세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전능력 향상 • 국방현대화 추진 2. 국책사업 추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지원 ○ 국민 편익사업 추진 ○ 장병 기능인력 양성
병 무 청	1.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소요인력 충원 ○ 징병검사 및 병역처분의 공정성 제고 ○ 산업인력 자원의 내실화
외 무 부	1. 「신 외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강화 ○ WTO 참여 대책 ○ 인권 등 범세계적 문제처리에 적극 참여 ○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포괄적 협의체제 강화 2. 외교정보자료 관리 및 활용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 정보자료 관리 및 활용체제 구축

<행정>

구 분	과 제 명
총 무 처	1. 공직의 세계화 역량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자 해외훈련 확충 및 개선 • 전문행정가 양성관리 대책 마련 2. 행정의 생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업무의 전산화 및 행정정보의 활용 ○ 행정의 비능률·낭비요인 제거 3. 공직사회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사회의 활성화 대책
공 보 처	1. 국정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홍보 강화 2. 뉴미디어 시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TV 방송 확충 ○ 국제위성방송 기반 구축
내 무 부	1. 4대 지방선거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명선거 관리대책 2. 지방의 세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세계화 시책 추진 3. 지방자치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기능의 지방 이양 확대 ○ 지방재정력 확충 ○ 지방행정의 부조리·민원소지 척결 ○ 저개발지역의 균형개발 촉진 4. 재난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 예방과 대응체제 구축
경 찰 청	1. 국민생활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침해사범 소탕
보 훈 처	1.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활성화
법 무 부 (검 찰 청)	1. 사회기강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명선거 저해사범 엄단 • 공직 및 사회비리 척결 ○ 국제범죄 대책 ○ 범법자 재범방지 대책
법 제 처	1. 정부입법 추진의 효율화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입법 추진 지원 강화 ○ 국민에 대한 법적 봉사기능 확대
정 무 1	1. 국정협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협조 강화

〈사회문화〉

구 분	과 제 명
교 육 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 외국어 교육 강화 • 우수대학 중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서 제도의 개선 2. 과학·기술 및 직업교육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과학교육 진흥 ○ 고등학교 직업교육 내실화 ○ 전문대학·이공계 대학 확충 3. 학원설립 및 운영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설립 및 운영제도 개선
문 체 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관광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산업 중점육성 지원 •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관광종합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적의 발굴 보수 2. 국민생활체육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체육의 확산 3. 청소년의 건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수련시설의 확충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환 경 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진환경기술 개발 및 개방화 대응대책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 개발 및 연구기반 조성 ○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활성화 2.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의식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상수원수의 안정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및 상수원수의 수질개선 • 폐기물 위생처리 통합시스템 개발 및 처리시설 확충 ○ 대도시 공단지역의 대기 개선 ○ 환경보전의 생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환경 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구 분	과 제 명
보건복지부	1.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는 한국형 복지시책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 노인복지시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보육사업 확충 2. 보건의료 수준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적극 추진 ○ 의료보험제도 개선 ○ 보건의료 과학기술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 3.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의약품 공급기반 구축
정 무 2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2.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기준은 예산 및 인력투입의 적정성, 행정규제완화·지방화 등 상위정책과의 일관성, 관련시책 및 사업과의 연계성, 정책목적과 관련한 사업내용의 적합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적응성,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공개 정도, 기타 정책추진의 효과성과 능률성 등을 제시하였다.

평가는 과제에 대하여 매분기 평가를 원칙으로 하여,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자체심사평가 결과를 분기별로 국무총리실에 보고(매분기 익월)하고,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 자체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대 부문으로 과제를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실제 분기 또한 반기별 평가시에 과제를 일부 조정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으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기관의 조사·연구 및 여론조사를 병행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도 하였다.

3. 1/4분기 종합평가

(1) 평가과제 및 방법

1/4분기는 총 168개 과제를 선정하고, 중점관리대상과제도 중요도가 높은 핵심과제 50개(10개 핵심분야)로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핵심과제 50개는 청와대와 협조하여 행정조정실에서 직접 평가하고, 나머지 과제는 각 부처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평가계획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자체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점관리대상과제를 10개 분야로 나누어 집중적인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0개 분야별 평가대상과제는 다음과 같았다.

-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 조직, 예산운영 및 조달제도 개선(재경원, 총무처, 조달청),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총무처), 국민여론의 정책반영 체계 확립(공보처)
- 지방자치의 기반조성(내무부) : 4대 지방선거의 철저한 준비와 공명선거 실현, 지방자치 역량 강화, 지방의 세계화 시책 추진
- 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재경원), 과세기준 선진화와 해외과세 대응능력 향상(국세청), 외환제도 등 금융제도 개혁추진(재경원), 부동산실명제 추진(재경원)
- WTO협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 WTO관련 각종 법령 및 제도 정비(재경원), WTO 후속협상 및 새로운 통상의제 논의에 대응(통상산업부), 무역관련 제도·절차 간소화(통상산업부), 농업구조조정 촉진(농림수산부)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건설교통부), 철도시설 확충(철도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정보통신부), 물류체제의 개선(건설교통부)

-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통상산업부), 정보화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제도 정비(정보통신부), 정부출연 연구기관 관리체계 효율화(과기처), 산업표준 및 측정의 선진화 지원(공진청),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노동부)
- 국민생활의 안정과 위해 요인 방지 : 민생침해 및 부정부패사범 척결(법무부, 문체부, 경찰청), 재난발생 예방과 대응체제 구축(내무부), 부동산가격의 안정(건설교통부), 고용안정종합대책 추진(노동부), 식품안전관리 강화(보건복지부), 산업안전의 선진국수준 개선(노동부)
- 국민생활의 질 향상 : 하천 및 수자원의 수질 개선(환경부), 폐기물 위생처리 통합시스템 개발 및 확충(환경부), 국민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보건복지부), 생활체육 확산 및 관광종합대책 추진(문체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정무2)
- 교육의 세계화 지원 강화(교육부) : 초·중등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외국어 교육 강화, 우수대학 중점 육성
- 외교·안보역량 강화와 남북관계 개선 : 대북 경수로 지원과 남북 경협 추진(통일원),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능동적 역할 수행(외무부), 국방 현대화 추진과 작전능력 향상(국방부)

(2) 평가결과

1/4분기 평가결과, 각 부처는 「세계화추진」을 위한 신속한 사전준비 체계 및 기반 조성에 특기할 만한 노력을 집중한 것으로 평가됨

- 금년도 주요핵심 사업의 2/3를 세계화 관련 사업으로 구성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대부분 차질없이 추진
 -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의 창의적 구상을 기본계획에 수립·반영

- 세계화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조정이나 국민 계층간 합의형성에 과다한 시간소요로 진행속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일선기관의 업무추진의지나 근무자세가 예년보다 못한 사례가 있었음
- 당면 주요현안인 4대 지방선거, 각종 재난, 극심한 가뭄 등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민생안정 도모

4. 상반기 종합평가

(1) 평가과제 및 방법

상반기에는 전체 168개 과제에 대해 부처로 하여금 자체심사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이중 50개 과제를 집중평가 하였다.

(2) 평가결과

상반기 주요정책과제의 분야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
 - 행정기관의 간소화와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고, 「국제전문직위」의 신설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외부전문인력을 공공부문에 끌어들이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공직내부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하며, 법률 공포 후 그 이행을 위한 시행령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병역법·산업안전보건법 등 8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필요
-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 정부의 강력한 공명선거 의지표명과 「공명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엄격한 운용으로 역사상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지방선거가 치루어졌으며, 군과 시를 통합한 군농복합시(40개)설치 등 지방조직의 합리적인 정비,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의 정비노력도 병행함

- 향후 지방자치제도가 내실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민선 지자체 실시에 따라 지자체간의 분쟁은 기존의 분쟁조정기구를 활성화하여 적극 해결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 광역단체와 중앙정부간의 분쟁은 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행정체제로 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중앙정책 차원의 적극적 협조·지원 노력 필요
- 경제의 안정과 경쟁력 제고
 -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이 9%를 상회하는 등 경제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WTO협정 이행을 위한 관계법령정비 및 산업지원제도 개편과 3단계 금리자유화 및 외환제도개혁 일정의 조기 추진 등을 통해 경제 운영의 틀을 선진화시켜 나가고, 교통난 해소 및 물류 체제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노사협력분위기 조성 및 공정경제질서의 강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함
 - 중소기업, 영세도소매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개선시책 및 지원시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며,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축산물위생처리법」 등 WTO관련 법령 등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특세사업, 농업구조개선 등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중점·평가기능을 강화할 필요
- 국민생활의 안전확보와 생활의 질 향상
 - 작년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라 금년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분야별로 안전점검체제를 재정비하는 등 사고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최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근본적인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재난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신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쓰레기 종량제의 전국확대 실시, 「21세기환경비전」의 제시 등 사회복지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함

- 재난관리대책의 확실한 이행, 교육개혁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교육재정확보, 하반기 과제의 입안 등 후속조치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21세기환경비전」을 위한 연도별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수립이 요구되고, 멀티미디어 시대가 급격히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음반 등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소관부처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함
- 통일·외교 및 안보역량 강화
 -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대북경수로 협상에서의 중심적 역할 확보, 대북 쌀 제공을 통한 남북교류노력 분위기 조성 등 남북체제의 실질적 개선을 노력함
 - OECD가입 추진 및 UN평화 유지활동을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능동적 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국방현대화 사업의 추진, 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군조직 개편, 군기강쇄신 등을 통해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함
 -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에 대한 미·북한간의 합의 이행의 확보를 위해서는 미·일등 우방국과의 공조체제 강화와 함께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내용 중 양국간 우호체제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지적된 부문에 대해 적극적 개정을 추진하며, 대북 쌀 지원문제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향후 남북경협은 민간업체간의 상호협조 강화를 유도할 필요

5. 3/4분기 종합평가

(1) 평가과제 및 방법

3/4분기에도 정기심사평가과제로 선정된 총 168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조정실은 50개의 중점관리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아울러 상반기 심사평가결과 보완·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이행사항도 점검하였다.

(2) 평가결과

- 문민정부의 후반기를 맞아 변화와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동산실명제 시행, 재난관리법 제정,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공공부문의 정보화 추진, 지방자치에 따라 지역발전 및 주민위주행정 추진 등 전반적으로 성과가 가시화됨
- 각 부처의 주요정책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당초 방침의 변경 또는 유보 등으로 정책신뢰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증가되었고, 경기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등 정책의 보완이나 적극적 추진의지 강화가 필요할 부문이 있음
- 상반기 평가결과 이행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보완사항이 3/4분기 중 완료되고, 법령정비 등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시정사항은 추진이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이행노력이 요구되었음

6. 하반기 종합평가

(1) 평가과제 및 방법

하반기 평가도 50대 중점관리대상과제를 경제분야 등 4대 분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2) 평가결과

< 총 관 >

- 대부분의 대상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었고, 특히 각 부처가 「세계화」 관련시책 및 주요개혁 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금년도 국정운영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였다고 평가

- 다만, 환경기초시설, 도로 등 일부 건설사업이 지역주민과의 합의형성 또는 지자체와의 행정협조 부진으로 다소 지연되었고, 일부 시책의 경우에도 추진과정이 비효율적이거나 사업성과가 당초 기대에 미흡한 사례가 발생

< 부문별 평가결과 >

- 경제분야
 - 건설한 성장세 및 물가안정 기반 위에서 세제·금융·외환·수출입 등 경제 각 분야의 제도개혁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 경제체제의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부동산실명제」의 시의 적절한 실시 및 체계적인 애로요인 해소노력으로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시책의 경우 대체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지원대상자 선정시 경제적 타당성 보다 지역안배를 우선하는 사례도 있어 사업성과가 낮아질 우려가 있음
- 일반행정분야
 - 공직 및 사회비리척결과 함께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직자의 해외훈련, 전문성 강화, 지방의 세계화 등을 적극 추진함
 - 공직자 「해외훈련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훈련대상 국가나 기관에 치중하는 경향이 아직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 행정수요에 따른 체계적 훈련계획 조정이 필요하며, 각종 대형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련 법령정비 및 조직개편, 안전문화 정착운동 전개 등 국민생활 안전확보 노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건설부조리와 관련한 조직적 부실요인을 근절하기 위한 꾸준한 제도 개혁노력이 요청됨
- 사회문화분야
 -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 교육개혁과 아울러 문화관광 산업의 연계, 국민생활체육의 확산 등 사회복지 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에 부응하여

- 국민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식품안전관리 강화, 상수원 수질개선, 폐기물 위생처리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구함
- 최근 청소년 약물남용, 학교주변 폭력 등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정책추진이나 관계부처 협조 미흡 등으로 청소년 문제에 종합적·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수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투자 재원 부족과 지역주민과의 합의 형성 지연으로 부진하고, 가동중인 시설의 비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지속되어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함
- 통일·외교분야
 -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거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실질적인 진전을 도모하고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인도적 차원의 쌀 지원 및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등에서 적극적 자세로 임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활발한 정상외교와 함께 UN, APEC 등에의 다자간 국제문제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
 - 대북한 쌀 지원시 표출된 바와 같이 대북지원정책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시각도 있으므로 국민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수렴과 홍보노력이 필요함

Ⅲ. 수시과제 평가

1. 개 요

1994년말 심사분석기능(경제기획원)과 정책평가기능(행정조정실)이 통합·운영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분기별로 실시되던 정기평가를 보완

하고 심사평가기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수시심사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시심사평가과제는 국정운영상 현안 및 정기심사평가결과 문제가 발생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평가는 현지 실태점검, 이해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후 제도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심사평가의 적응대응 능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차관회의에 보고하거나 부처에 통보하여 기동성있게 처리하였다.

2. 수시평가과제 및 평가결과

1995년에는 공직부조리 및 민원소지 예방, 시대변화에 따라 정비·개혁이 필요한 시책 및 사업 등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총23개의 수시과제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차관회의 등에 보고하였다.

수시과제의 현황과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9> 과제별 평가결과의 주요내용 (1995년)

과제명	주요 평가결과
수도권 소규모 가내공장 일반폐기물처리 개선방안 (환경부)	○가내공업폐기물을 생활쓰레기 등과 엄격히 분리수거 전담차량으로 반입 ○다량배출업체 폐기물의 불법·위장반입 금지를 위한 대책강화 등
건설신기술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건설교통부)	○건설신기술제도에 대한 적극적 보급·확산노력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신기술 지정 검토기능 이관방안 검토 등
유흥업소 단속의 실효성 제고방안 (보건복지부)	○화장실, 탈의실 관련규정 등 일부 비현실적인 시설 기준을 현실화 ○1차 처분된 업소를 별도관리하여 지속적인 추가 단속 실시 등

과제명	주요 평가결과
병역미필 대학생 국외여행 허가제 도 개선(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사문화된 병무청훈령 개정·삭제 ○대학에서 추천서 발급시 요구하고 있는 해외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폐지
농어민후계자 육 성사업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농림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 확립 ○농어민 후계자 선정방식 개선
공익근무요원 운 영의 효율화 방안 (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인력자원과 연계된 배정계획을 수립·추진 ○공익근무요원 필요분야의 실태조사를 재 실시하여 차년도 배정계획 조기수립 등
자동차 정비서비 스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급 자동차정비업 외에 3급 정비업제도 신설 ○책임정비제도 도입
우리국민의 건전 한 해외여행 유도 방안(문체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여행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실시 지원 ○여행업계의 건전육성을 위한 지도·지원 강화
음식물쓰레기 관리 실태점검 및 개선방안(환경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관계부처 협조체제 구축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퇴비의 건증기준 마련
공동주택 재건축 제도 개선방안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건축대상주택의 안전진단 기준 및 수수료 등을 규정화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결의요건 명확화 등
선박폐유 등 연안 오염원 방지대책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유저장 처리시설의 설치 의무화 ○폐유처리업 관리 일원화 등
건축행정의 전문성 제고방안(총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특별채용 확대방안 검토 ○기술수당 인상 및 지급체계개선 종합검토 추진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영향평가대상의 합리적 조정 및 주체의 변경 ○교통영향평가서 작성의 내실화 등

과제명	주요 평가결과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방안 (건설교통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의 입지허용 확대 ○ 재활용촉진 제도개선 ○ 건설폐기물 관리개선
불법옥외광고물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내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현실적인 규정 현실화 조치 ○ 불법광고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활성화방안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 시설허가 및 입주자 모집허용 ○ 입주보증금 보험부담의 경감
징병검사대상자의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병검사 수검대상자의 해외여행 규제완화
청소년약물남용 대책방안 (교육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의 약물남용 예방교육 실시체계 구축 ○ 약물남용 조기진단 및 치료 재활체계 구축
의료보호제도 관리운영내실화 방안(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호 업무체계의 개편 ○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진료기피 요인의 근원적 해결 ○ 의료보호대상자의 기타 불편사항 및 위화감 해소
일반계고교 직업 교육개선방안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이수자에 대한 계속교육기회 확대 ○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진로 및 취업지도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개선방안(문화체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수련시설 설치기준의 조정 ○ 수련시설운영의 전문성 제고 및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유인책 강구 등
낙도 보조항로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항로 지정방법상 경쟁제도 도입 ○ 운항선사 통폐합 유도 등
무단방치차량 감소방안 (내무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단방치차량 전용보관소 등의 확보 ○ 무단방치행위에 대한 벌금의 대폭 상향조정 등

IV.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분기별 심사평가 결과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후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반영하고, 예산관련사항은 재경원에 통보하여 예산편성 및 배정시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심사평가결과 및 시정조치상황은 반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부처간 협조를 기하고, 심사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상·하반기 년 2회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국정에 반영하였다.

상반기 평가결과는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고, 보완사항 등에 대한 추진실적은 규정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체심사평가하여 제출토록 조치하였다.

하반기 평가결과는 제53회 국무회의(대통령 주제)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시달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1996년 제6회 차관회의에 보고하여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였다.

제 8 절 1996년도 평가

I. 평가의 개요 및 특징

1996년 국정지표의 달성을 위한 정부시책의 효율적 집행지원, 국민생활의 실질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과정의 효율성과 사업성과 분석, 심사평가제도의 활성화와 발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정기심사평가인 주요정책과제 평가와 수시과제를 선정하여 수시심사평가를 실시하였다.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1. 평가과제

1996년 국정지표를 구체화한 시책 및 사업중 각 중앙행정기관이 127개과제를 자체심사평가과제로 선정하고, 국무총리실은 이중 50개 시책 및 사업을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하여 주요정책과제로 집중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2-20> 주요정책과제 내역 (1996년)

부처명	자체평가과제(77개)	중점관리과제(50개)
공정거래위	○경쟁제한 법령·제도·관행의 정비	○불공정 거래행위의 시정 강화
재정경제원	○물가 안정의 지속적 추진 ○소비자 보호시책 강화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 정착 ○OECD가입 추진 및 이에 따른 국내제도 정비 ○민자유치제도 정착	○규제완화의 지속적 추진 ○세계개혁의 지속적 추진 ○금융산업 개편 추진 ○외화제도개혁의 착실한 추진

부처명	자체평가과제(77개)	중점관리과제(50개)
조달청	○조달시장 개방 대비 조달 체계 완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적기공급체계 확립
국세청	○튼튼한 경제를 위한 세정 지원 확대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정 전개
관세청	○수출입 물품통관 자동화 시스템 구축	○수출입 통관제도 개선
통계청	○각부 소비실태 조사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도 개편	
건설교통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발전 추진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부실공사방지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 및 산업입지 지원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철도청	○철도기반시설의 확충 ○철도안전 확보 ○철도경영체제의 정비	
해운항만청	○항만시설의 확충 ○항만서비스 질과 운영효율 증대 ○해상안전 확보대책추진	
산림청	○임업의 산업화 촉진	○산촌 종합개발 및 산림 휴양 시설 확충
농림수산부	○쌀의 자급기반 확충 ○수출농어업의 육성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농외소득 개발	○농어업인의 경쟁능력 배양 ○농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유통체계 확립
농촌진흥청	○환경보전형 농업기술개발 ○축산의 산업화 기술개발	
수산청	○바다정화와 수산자원 조성 ○어업기반 시설 확충 ○어촌종합개발 및 어업인 지원강화	
통상산업부	○무역 및 산업활동의 선진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에 능동적 대응 ○산업경쟁력 기반의 강화 ○에너지 수급 안정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육성기반 확충

부처명	자체평가과제	중점관리과제
특 허 청	○발명진흥사업 기반 확충	○특허 행정서비스 기능강화
정보통신부	○정보산업의 전략적 육성 ○우정서비스의 품질향상	○공공부문의 정보화 추진 지원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정착
과학기술처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연구 사업 실명제 도입·운영 ○창조적인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기술의 고도화 및 원자력 안전 행정의 내실화	○연구기술개발의 추진
기 상 청	○기상과측시스템의 개선 ○기상예보 기술개선 및 민간 기상사업 제도기반 마련	
노 동 부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 ○취약사업장 증대재해 예방 강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지원 및 복지증진 ○산업인력의 경쟁력 제고 ○고용보험제 조기정착
통 일 원	○한반도 통일문제의 국제협력체제 구축 ○남북대화 재개시 대비책 마련 ○대북 정보역량 강화	○남북관계 개선
국 방 부	○민·군 관계개선 및 신뢰 회복	○군사대비태세 유지 ○국방현대화 추진
병 무 청	○징병행정의 개선 ○군소요인력 충원의 효율적 관리	
외 무 부	○주요 우방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재외동포 정책의 적극화 ○외교체제의 변화와 개혁 추진	○국제기구 등에서의 활동 강화
총 무 처	○열린정부 구현 및 국민권의 보호 ○공직자의 능력배양 ○활기찬 공직풍토의 확립	○공직우호개방 및 전문인력 확보 ○행정의 생산성 향상
공 보 처	○국민의식개혁 홍보 강화	○선진방송체제 구축

부처명	자체평가과제	중점관리과제
내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개혁 추진 ○ 세계화·정보화에 부응하는 선진행정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발전 역량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조성 ○ 재난대비 역량 강화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정기 선양과 국민 애국심 고취 ○ 영예로운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정책 확충 ○ 참전군인 명예 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치안 확립
법무부 (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 사회복귀 능력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강 확립 ○ 출입국 관리 역량 강화
법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와 개혁을 위한 국정과제의 법제화 추진 ○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강화 ○ 세계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법제의 조사·연구와 해외홍보 강화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력 및 인성교육 강화 ○ 실업교육의 확충 및 특성화 ○ 대학의 자율성 확대 ○ 세계화 대비 교육의 강화 ○ 교육규제의 전면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 교육수요자의 선택기회 및 참여 확대 ○ 어린이 건전육성대책 추진
문화체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의 발전여건 조성 ○ 생활체육의 확산 및 내실화 ○ 민족문화 유산의 원형보존과 유적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간의 확충 ○ 관광산업의 육성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관리 체계의 개선 ○ 폐자원의 재활용 및 폐기물의 안전관리 ○ 자연환경의 보전 및 시민환경운동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수원 오염 관리 강화 ○ 대기오염의 개선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 ○ 국민의료서비스 체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국민복지시책 추진 ○ 의료공급능력 확충을 위한 기반 구축 ○ 식품·약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
정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평등의식의 확산 ○ 여성정책 추진기능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2.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및 방법

자체심사평가과제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총리실은 이중 50개 시책 및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집중평가를 실시하였다.

(2) 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어관한규정」 제7조 제1항에 의거 종래 과제별로 구성하던 자문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위원회의 기능은 심사평가제도 운영·발전 전반에 대한 상시자문, 심사평가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 중요한 정책사항, 심사평가지침 심의 등 공통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개최되었으며, 전체 회의(3회), 분기별 심사평가결과 심의 등 분야별 소위를 개최하였다.

<표 2-21> 평가자문위원 명단 (1996년)

분야	성명	직위
정책평가	김명수 김신복	외대 정책분석학과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제	김정수 성소미 이원형 최승희	중앙일보 전문위원 KDI 부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단장 KDI 선임연구위원
외교·통일·안보	박영규 박재완 유병화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장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고려대 법대 교수
사회·문화	김영철 도갑수 이은재 조재국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송실대 환경공학과 교수 건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행정	김현구 심영희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3. 평가결과

주요정책과제를 크게 4개 분야 즉, 통일·외교 및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복지분야, 교육·문화·행정분야로 나누어 결과를 도출하였다.

- 통일·외교 및 안보분야
 - 추진성과
 - 수년간 추진해 오던 OECD 가입을 실현함으로써 선진사회에의 참여가 촉진
 - APEC 공동체 주도,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 및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활동강화 등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착실히 수행
 - 한반도의 평화공존체제 구축을 위해 4자 회담을 제의(1996년 4월) 북한의 참여를 촉구하고, 잠수함 사건(1996년 9월)으로 조성된 긴장 국면 속에서 일관성 있는 외교노력으로 북한의 사과를 받은 후 실질적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 평가의견 및 과제
 -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시 경비사각지역 발생 등 부분적으로 취약점이 노출되어 해상·해안 등 취약지역 경계력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보강과 비정규전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엄정한 군기강확립 등을 통한 경계력 보강 필요(국방부)
 -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주민의 탈북자 증가에 대비한 주변국과의 외교적 문제에 대한 대응, 대내적으로 이들의 정착에 관한 체계적 준비 필요(통일원, 외무부)

- 경제분야
 - 추진성과
 - 물가안정과 경기연착륙, 고비용-저효율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정책역점을 두어 성장과 물가면에서 비교적 견실한 실적을 보임

- OECD 가입에 대비한 금융·세제 및 외환제도의 개혁, 신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평가의견 및 과제
 - 수출부진 및 소비재 수입증가 등으로 1996년 경상수지 적자가 당초전망(50~60억불)의 4배 수준인 230억불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외채도 1천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므로 경상수지, 외채문제 등 경제전반에 대해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정부와 민간간의 협조체제를 강화 필요(재경원)
 - 경제규제완화 관련 위원회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민간 건의내용이 부처협의 과정에서 축소됨으로써 금융 등 핵심분야의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미흡하다는 기업인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금융·토지 등 핵심분야의 규제개혁 중점추진 필요(재경원, 총무처, 건교부 등 모든 부처)
 - 경부고속철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기본계획 및 설계의 잦은 변경, 각종민원 및 인·허가 지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됨으로 계획수립시 기본조사설계,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필요(건교부)
 - 농·어업 구조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에 의한 사업량 및 지원자금의 안배, 사업성 심사부족으로 설치된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는 등 투자효과 미흡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하여 투자부실화 요인을 사전예방하는 한편, 투자 부분도 종합적인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농림부, 해양수산부, 건교부, 환경부)
- 사회복지분야
 - 추진성과
 -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확정(1996. 2)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 장애인 복지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분야중점투자계획」을 마련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이 크게 진전

- 「식품안전품질안전본부」설치를 통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관리법 및 소방법 개정 등을 통한 설치물 안전 관리의 강화 등이 추진
- 그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점검·보완하여, 물관리 종합대책(1996. 8)을 마련함과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
-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는 노동관계법 개정노력이 진통 끝에 마무리됨으로써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 평가의견 및 과제
 - 1996년 하반기에 시범실시하기로 한 주치의제도와 의료보험포괄수가제가 이해당사자의 반발로 인하여 실시되지 못하였고, 「응급의료체계확립방안」(1994. 7)도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응급환자신고체계의 일원화 사업추진이 미흡하므로 정책수립시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거치고, 정책수립후에는 강력한 집행 필요(복지부)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중 출산유급휴가 급여의 사회적 분담재원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계획에 있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극히 부진(목표대비 12.3%)하므로 출산유급휴가 급여의 사회적 분담재원 조기확정 및 직장보육 시설 확충계획의 재검토 필요(재경원, 복지부, 노동부)
 - 매년 불법체류 외국인인 증가하여 1996년 11월 12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불법취업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미흡함으로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외국인력 도입 및 불법체류자 단속의 효율적 추진 필요(법무부, 노동부, 통산부, 내무부)
- 교육·문화·행정분야
 - 추진성과
 - 교육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교육개혁방안에서 제시된 102개 과제 중 72개 과제가 본격 추진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교육재정의 GNP 5% 수준확보, 교육규제완화 및 규제일몰제를 도입하고, 학교주변환경정화와 어린이 보호대책을 중점추진

-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유치하고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 도서관, 문예회관 등 다양한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
- 정책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개방형 전문직위를 선정하였고, 국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정보의 공개와 행정절차의 개선 등을 추진
- 평가의견 및 과제
 - 광범위한 교육개혁 과제를 단기간내에 추진함에 따라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혼선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그간 추진하여온 개혁 과제에 대한 교육현장의 반응 및 적용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보완(교육부)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진흥 10개년 계획(1996년~2005년)」을 수립(1996년 7월)하였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실행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해외관광은 급증하는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감소추세로 반전되고 관광수지 적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의 분야별 세부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 필요(문화체육부)

<표 2-22> 우리나라 관광수지 내역

	1999년	1996년 (1월 ~ 11월)	1995년 (1월 ~ 11월)	1995년
외국인 관광객(만명)	296	338	346	375
내국인 국외여행(만명)	156	428	346	385
관광수지(백만불)	393	△1,365	△209	△316

-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시행으로 지역의 자율성은 크게 신장된 반면 지자체의 규제·단속업무 소홀, 국책사업의 지연·표류 등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간의 업무분담이 불명확함으로 지방자치제도 시행성과를 객관적·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국정의 통합성 확보 및 업무분담의 명확화 등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필요(내무부)

- 직무관련 기구·단체와 국내·외 교육훈련기관등에 파견된 인력이 크게 증가하는 등 별도정원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하므로 별도정원 운용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력 관리 필요(총무처, 각부처)
- * 별도정원(5급이상 기준) : 1993년말 677명 → 1996년 11월, 1,190명(연평균 25.3%증가)

Ⅲ. 수시과제 평가

1996년에는 국정운영상 대두된 현안 및 정기심사평가결과 문제가 발생한 과제를 중심으로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상황 평가”등 15개의 과제에 대해 수시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정기심사평가와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수시평가과제 및 주요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23> 수시평가과제 및 주요평가내용 (1996년)

과제명	주요평가결과
쓰레기소각장 건설 활성화 방안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지원 강화 ○ 기초자체단체 중심의 소각장 건설 및 시설확충 촉진방안 강구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보완 ○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강구
학교컴퓨터교육 지원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교대·사대 컴퓨터 교육과 설치를 권고하고, 신규학과설치에 따른 필요지원방안 강구 ○ 교과서 개편시 컴퓨터 관련내용을 확대하고,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위주로 개편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 상황평가(총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채 자격요건 및 절차의 개선 ○ 국외훈련의 방향을 양적확대에서 질적수준 향상으로 전환필요 ○ 조직운영의 자율권 확대

과제명	주요평가결과
자동차배기가스 점검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단속대상 우선순위 설정필요 ○ 정기검사업무의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부실예방 대책 강구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실태 및 개선방향 (통상부, 건교부,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관리체계 개선방안 수립시 각 부처의 지하수관리 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 검토 ○ 대규모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제 도입
상이군경 복지 회관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회관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내실화 유도 ○ 상이군경 복지회관 운영비보조에 대한 근거규정 명확화
정부산하기관의 시험·연구과제 보완관리실태 점 검(29개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인원보안의 강화 ○ 자체보안규정 등 보완 및 보안의식 강화
특수교육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 조기 특수교육기관의 양성화 방안 마련
영유아 보육사업 확충대책 점검 및 개선방안 (복지부, 건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별 설치여건 감안 현실에 맞게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수정 ○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설용지중 근린생활시설용지에도 보육시설 설치 추가허용
문화재 관리실태 점검 및 개 선방안 (문화재관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행중 매장문화재 발견시 공사시행자 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운영 관련 제도상 미비점 보완·개선
서울의 동북아 지역 정보 및 연구 중심지화 방안 개선 (재경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연구개발센터 조속발족 및 지원강화 ○ 민간차원의 지역연구 활성화방안 강구

과제명	주요평가결과
지자체의 해외 통상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외무부, 내무부, 통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통상업무 추진지구 체계화 지향유도 ○ 국제자문대사 활동 촉진 방안 협의강구
도선사관련 제도운영 개선 (해운항만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선사 자연총원 및 도선자 자율계약제가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시행
상수원 수질 보전대책 개선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허가 등에 대한 효과적 규제방안 강구 ○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사업개선 (농림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산단지 생산제품의 품목별경쟁력 여부에 대한 전면 재조사

IV.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1/4분기 평가결과는 행정조정실장의 내부보고에 그쳤고, 상반기 평가결과는 제30회 국무회의(1996.7.30)에 보고하고, 38개 중앙행정기관에 시달(1996.8.1)하였으며, 3/4분기 평가결과는 제47회 국무회의(1996.11.18)에 보고하고, 38개 중앙행정기관에 시달(1996.11.19)하였다.

그리고 1996년도 종합 평가결과는 제3회 국무회의(1997.1.14)에 보고하고, 38개 중앙행정기관에 시달(1997.1.15)하여 환류토록 하였다.

제9절 1997년도 평가

I. 평가의 개요 및 특징

「문민정부」 주요개혁과제의 성공적 마무리와 1997년도 국정운영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부시책의 효율적 집행 지원, 국민생활의 실질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과정의 효율성과 사업성과 분석에 역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또한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면밀히 작성하고, 사업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심사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평가는 정기적인 주요정책과제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1. 평가과제

「문민정부」 주요개혁과제와 1997년도 국정지표를 구체화한 시책 및 사업중 각 중앙행정기관이 173개 과제를 「자체심사평가과제」로 선정하고, 국무총리실은 이중 24개 핵심시책 및 사업을 중점심사평가과제로 선정하여 집중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2-24> 총괄 (1997년)

분 야	자체심사평가과제	중점심사평가과제
- 경제	88	11
- 통일·외교·안보	18	2
- 사회·문화	34	7
- 일반행정	33	4
계	173	24

<표 2-25> 평가과제명 (1997년)

부처명	자체심사평가과제 (173개)	중점심사평가과제(24개)
공정거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제한법령 등의 정비 ○독과점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시책 강화 ○대규모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조사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표시·광고기준 제정 및 표준약관 보급 확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의 정착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적인 물가안정기반의 구축 ○소비자 보호시책의 강화 ○공기업 경영효율화와 생산성 제고 ○금융개혁의 추진 ○조세제도의 발전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실효성 제고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의 정착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행정규제완화의 실효성 제고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물자 품질 향상 ○조달물자 책임공급체제 확립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조달제도 개선 및 정보 제공 	
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의 성실한 자진납부 이행 유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세정대응 강화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신고제 조기 정착을 위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지원 ○수출입통관 자동화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 통관 자동화시스템 구축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이동 특별조사 ○1997년 고용구조 조사 ○1996년기준 광고업 통계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과학기술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일류화 ○기초과학의 육성 ○원자력 기술개발의 고도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지기상예보능력 제고 ○지진 분석능력 향상 	

부처명	자체심사평가과제 (173개)	중점심사평가 과제(24개)
농 립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 자급기반의 지속적 확충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실용기술개발과 농업정보화의 촉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조기 완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쟁력 강화 추진 ○농촌 투자사업의 효율성제고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보급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농촌지도사업 지원 ○국제농업기술 교류 협력 및 북한농업연구 강화 	
산 립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의 자원화 추진 ○산림재해 예방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수지 적자의 획기적 감축 ○산업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강력한 추진 ○에너지 소비의 과감한 절약과 수급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소비 절약 시책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특 허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심판 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노력 전개 ○특허행정 선진화를 위한 행정쇄신 ○특허행정의 대민서비스 향상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의 추진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추진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통신사업의 경쟁 확대 및 공정경쟁체제 구축 ○방송 및 위성사업의 활성화 ○전파이용 환경의 선진화 ○우정사업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국제협력 활동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및 이용 촉진
노 동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노사관계제도의 조기 정착 ○고용안정과 원활한 산업인력 수급대책 ○근로자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지원 ○산업안전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안정과 원활한 산업인력 수급대책

부처명	자체심사평가과제 (173개)	중점심사평가 과제(24개)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가격의 안정 ○국책사업의 추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고지가-고물류비 구조 개선 ○지역균형발전 촉진 ○도시교통난 완화 ○교통안전문화의 선진화 기반 구축 ○선진 도시환경의 조성 ○시설물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 방지 ○시장개방에 대응한 건설산업 체질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물류비 구조의 개선 ○대형투자사업의 진도관리(건교·해양·농림·통산부, 철도청)
철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수송력 확충 ○철도안전수송 확보 ○고객중심의 서비스 향상 ○경영개선의 추진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사실의 확충과 운영 전산화 ○세계 5대 해양강국 도약기반 구축 ○수산자원 조성과 해외어장 확보 ○어업인 복지증진 및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해양안전 확보와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 ○해양산업발전 기반 조성과 해양문화 창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운영의 효율화
해양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상안보태세 확립 ○해상안전역량 제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민생치안활동 강화 ○조직발전기반 구축 ○교육훈련 강화 및 사기진작 촉진 	
통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주도적 노력 경주 ○남북공동 발전 및 교류협력 기반 확충 ○문민정부 정통성에 입각한 인도적 사업 추진 ○통일준비태세 확립 ○남북합의 이행체제 정상화 노력 경주 ○대북 정보역량 확대 강화 ○통일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준비태세 강화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태세 확립 및 평화통일기반 구축 ○부정부패 척결 및 기강 확립 ○국가경제 체질개선 지원 ○민생안정 및 「삶의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국방정책 추진

부처명	자체심사평가과제 (173개)	중점심사평가 과제(24개)
병 무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징병검사 실시 ○봉사행정의 구현 	
외 무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화 정착 외교 ○안보 및 평화통일기반 구축 외교 ○경제·통상진흥외교 ○재외동포 보호·육성 ○외교체제 정비·개선 	
국가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민족정기 선양과 애국정신 함양 ○참전 제대군인 지원체제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교 육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현장 혁신운동 확산 ○대학교육의 질 향상 ○교육복지 구현 ○조직사회의 활성화·자유화 ○교육 행·제정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수준 향상 ○내실있는 사회보험제도의 정착 ○국민보건·의료수준 향상 ○안전한 식품·의약품 공급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수준 확대 ○국민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정 무 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기 여성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남녀평등을 위한 법제 및 관행의 선진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교육 강화 	
공 보 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민개척 5년의 마무리 홍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국정 홍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홍보 ○언론의 세계화 지원 ○국정홍보체제와 홍보기법 개선 	
문화체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확산 ○우리문화의 세계화 추진 ○문화예술의 창작력 제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문화산업의 지원 육성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체육의 균형적 발전 ○미래를 향한 바른청소년 육성 ○건전사회를 위한 종교문화 육성 ○통일문화기반 조성 ○종합문화정보시스템 구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부처명	자체심사평가과제 (173개)	중점심사평가 과제(24개)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맑고 깨끗한 수자원의 유지·공급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저감 및 자원화체제 구축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창조 ○유해물질의 안전한 관리체제 구축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 ○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시책
내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 ○공명정대한 제15대 대통령 선거 관리 ○21세기에 대비한 선진행정체제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 ○민방위·재난대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의 정착 및 능력 향상
총무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조직·기능의 혁신 및 규제개혁 ○우수인재 확보 및 공직의 전문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활력 제고 ○공직자의 복무기강 확립 ○전자화된 서비스정부 구축 ○국민권익 보호기반 구축 ○국가상징 선양 및 의전제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의 능률성 향상
법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입법 총괄·조정기능의 강화 ○「국가경쟁력높이기」를 위한 법제활동 강화 ○행정심판의 입법지원활동의 내실화 ○지방자치 입법지원활동의 내실화 ○대국민 법적 봉사활동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쟁력높이기 활동 강화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통제를 위한 수사활동 강화 ○교통안전과 소통개선 대책 ○확고한 국가안정 유지 ○세계적인 치안활동 강화 ○치안의 질을 높이는 경찰 운영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민주체제 수호 ○엄정한 사회기강 확립 ○범죄예방 기능의 강화 ○공명한 대통령 선거 실현 ○세계화 지속 추진 ○국민 위주의 법무행정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의 국제화에 대비한 역량 강화

2. 평가방법

(1) 평가기준 및 방법

173개 자체심사평가과제에 대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이 분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총리실은 이중 24개 핵심시책 및 사업을 중점심사평가과제로 선정, 과제별 세부시행계획과 평가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장확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상·하반기로 점검·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분기(1/4분기, 3/4분기)에는 대상과제 중 일부 과제사업을 선정(1/4분기 60개사업, 3/4분기 5개과제)하여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2) 평가자문위원의 운영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 제7조 제1항에 의거 분야별로 평가자문위원을 선정하였다.

위원회의 기능은 심사평가제도 운영·발전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 심사평가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 중요한 정책사항, 심사평가지침 심의 등 공통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운영하였으며 전체 회의, 분기별 심사평가결과 심의 등 분야별 소위를 개최하였다.

<표 2-26> 평가자문위원 명단 (1997년)

분야	성명	직위
정책평가	김명수	한국외대 정책분석학과 교수
	김신복	서울대 교무처장
경제	김정수	중앙일보 전문위원
	성소미	KDI 부연구위원
	이원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단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분야	성명	직위
외교·통일·안보	박영규	민족통일연구원 부원장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유병화	고려대 법대 교수
사회·문화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도갑수	송실대 화학공학과 교수
	이은재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제도연구실장
행정	김현구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심영희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3. 평가결과

(1) 상반기 평가결과

< 총 관 >

정부는 금년도 국정과제를 ①경제활력 회복 ②안보태세의 확립과 평화통일기반 구축 ③민생안정 및 삶의 질 향상 ④공정한 선거관리 등으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금년 상반기중 각 부처 주요업무(173개 과제)는 대부분 정상 추진된 것으로 평가

▪ 주요성과

- 경제분야에서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을 위해 금융 개혁, 경제행정 규제개혁, 국제수지 개선대책 등을 추진
- 외교·안보분야에서 식량지원·경수로 건설 준비 등 남북한 교류 협력확대 및 민관군 통합방위체제 구축
- 사회분야에서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 확대와 교육개혁방안의 후속조치 시행, 학교폭력 근절대책 및 수질개선노력 강화
- 일반행정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추진체계 정비, 정부조직 및 인력 감량화, 지방자치의 자율성 제고 등의 성과가 있음

- 일부 사업은 관계부처·자치단체간 협의지연, 지역주민의 반대, 사전준비 미흡 등으로 부진한 사례가 발생함
 - 생산설비 리콜제, 수도권 경량전철 건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 등

< 분야별 추진실적 >

- 경제활력 회복과 경제의 체질개선
 -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금융개혁의 추진
 - 「기업재무구조개선방안」 마련,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추진
 - 금융개혁 단기과제 세부추진방안 및 2차 과제 추진안 마련 등
 - 벤처·중소기업의 육성 및 새로운 노사문화의 정립 추진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벤처캐피탈 활성화
 - 새 노동 관계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관련기구 정비 등
 - 주요 국책사업의 추진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경부고속전철, 인천국제공항, 항만·다목적댐 등
 - 초고속정보통신 기반 구축과 농어촌 발전대책 추진
- 평화통일기반 구축 및 안보역량 강화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및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추진
 -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다단계 조치 강구 : 단순보호→정착지원
 - 국가총력전에 입각한 군사대비태세 강화
 - 통합방위법시행령 제정, 한·미 연합공동 대응방안 수립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신교육체제 정착을 위한 교육개혁의 추진 : 4차례 제도개혁
 - 학교폭력 근절에 범정부적 대처 및 「청소년보호법」 제정
 - 생활보호 확대 및 의료개혁 추진
 -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액 인상(최저생계비의 80→90%)
 - 의료개혁위원회의 27개 개혁과제 추진중, 노인특별대책 추진
 - 식품위생 관리 강화와 생활환경개선 지속 추진
 -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강화,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 등

- 4대강 상수원·수질개선대책 추진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수질개선기획단」 설치·운영
 -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호소수질관리법」 제정·추진
- 민생치안 확립과 범죄예방기능 강화
 - 조직·성·학원폭력 등 3대폭력 및 불법총기류사범 지속 척결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지진방재대책 추진 등
- 관광산업 육성대책의 추진 : 「관광진흥회의」 정례화 등
-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지방자치 정착
 -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
 - 규제개혁추진회의 및 경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추진, 「행정제도개선종합계획」 수립
 - 지방자치 정착 :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 추진
 -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 행정지원인력 1,777명, 경제부처 6·7급 221명 감축
 - 일선행정기관의 통합 : 과출소 43개소, 소규모 44개 학교폐지 등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정·추진, FAX 발급대상 민원 확대

< 평가의견 및 과제 >

- 경제분야
 - 일부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이 보상비 증액, 사업계획 변경 등 차질
 - 주관부처의 철저한 사업준비와 보상기준 시점 조정 등 개선
 - 초고속 정보통신가입자망의 기존 CATV 활용방안 제기(한전)
 - 기존 CATV망 활용여부에 대한 정부방침 조속 확정
 - 「농업경쟁력 강화 10대 핵심시책」등 실효성 제고 필요
 - 농촌인력대책 보완, 전업농 육성 목표조정, 지자체 재량제고 등
 - 새로운 노사관계제도의 조기 정착
 - 제3자 개입 악용사례 방지 등
- 통일·안보분야
 - 북한체제의 급변대비 → 범정부적 통일대비계획 수립, 요원양성 등

- 사회분야
 - 학교폭력의 근절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필요
 - 「청소년보호법」 및 「학교폭력근절대책」 엄격 시행
 -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 미흡 → 「한강환경감시대」등 현장감시 강화
 - 사업장 폐기물의 지속적 증가 → 발생량 감량화, 재활용 촉진
- 일반행정·기타분야
 - 성인범 보호관찰제도의 형식화 우려 → 보호관찰 담당인력 증원 등 보완
 - 정보공개법 시행 대비 → 제공 정보의 부적정 사용 처벌규정 신설 등
 - 지방재정 운영 개선 → 선심행정 억제, 지자체 기구·인력 감축

< 대형투자사업 진도 점검결과 >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형투자사업 14개 사업(사회간접자본 및 물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진도점검 결과 1997년도 상반기 계획 대비 11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3개사업은 부진
- 정상추진사업 : 11개 사업
 - 인천국제공항 건설, 고속도로 건설, 철도 건설, 도시철도 건설, 공항 건설, 항만 건설, 산업단지조성·공급, 광역상수도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LNG전국 공급사업, 다목적댐 및 수도사업
- 부진사업 : 3개 사업
 - 경부고속철도 건설 : 주요계획의 변경
 -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 :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착공 지연
 - 농수산물공용도매시장 건설 : 위치선정 곤란, 토지소유자 반발 등

(2) 하반기 평가결과

< 주요업무 추진실적 >

각 부처의 1997년도 주요업무(173개 자체평가과제)에 대한 자체 심사평가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정상 추진중이었다.

일부사업의 경우 당초 추진키로 계획된 사업이 보류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 또는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표 2-27> 주요업무 계획미완성사업 결과 (1997년)

계	부진·미흡	추진 지연	추진 보류
31건	10건	18건	3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주요 요인은 사전준비 미흡, 관계부처 또는 자치단체간 협의 지연, 지역주민의 반대, 법령 제·개정 지연 등이었다.

- 추진되지 않은 주요요인
 - 사전준비 미흡 또는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업무지연 또는 부진
 -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보완,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수립, 항만요율체제 개편, 지정진료제도 개선, 경지정리 등
 - 자치단체간 이견 또는 민원발생
 - 수도권 경량전철 건설, 환경기초시설 설치,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등
 - 법령 제·개정 지연으로 인한 업무지연
 -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 강구(접경지역관리법 제정),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 「도시계획법」 개정 및 「도시개발법」 제정 등
- 경제분야 추진성과
 - 1997년 경제운용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적자 축소에 중점
 - 금융개혁과 기업채무구조 개선, 신노사관계의 정착 등 경제개혁 노력

- 고물류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 과학기술개발 및 정보화 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국제수지적자 개선이 미흡한 상태에서 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급증, 관련정책에 대한 대외신뢰도 저하 등으로 인하여 금융 및 외환위기가 발생
- 금융·외환부문의 불안이 실물경제 부문으로 과급되면서 경제성장 둔화와 실업증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

<표 2-28> 경제지표 변화추이

	1996년	1997년	1998년 전망
·경제성장률(%)	7.1	6.0 (전망)	(1~2)
·실업률(%)	2.0	2.6	(5.0)
·소비자물가(%) (전년말 대비)	4.9	6.6	(9.0)

- 통일·외교·안보분야 추진성과
 - 경제파탄·식량난 등으로 북한체제의 불안이 증대되고 북한주민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노력과 돌발사태에 대비한 안보태세 확립을 지속적으로 도모
 -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본회담이 처음으로 성사되었고, 북한 핵(核)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이 본격 착수
 -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의 유지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임
- 사회복지·교육분야 추진성과
 -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수준 인상, 치매요양시설 설치 지원 등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의 복지를 확대하고, 의료보험 급여기간 연장 등 의료개혁방안을 추진
 -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기준·규격을 강화하고 불법유통에 대한 감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4대강별로 「환경감시대」를 설치하여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 청정연료 보급 확대 등 대기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 시책을 추진
-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선복수지원 후추첨제」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한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교육규제일몰제 등 교육규제개혁을 추진
-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세제·금융지원을 강화
- 국민생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민생치안을 강화하고 각종 폭력범죄와 마약류·불법총기류 사범을 중점 단속
-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추진하고,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제정·시행
- 일반행정·기타분야 추진성과
 - 제15대 대통령선거는 정부의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고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제도를 통하여 관권시비 없는 역사상 가장 공정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 및 공명선거문화 정착의 계기
 - 다양한 규제개혁기구를 통하여 5,7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향후 대응과제 >

- 물가안정대책의 적극 추진
 - 1997년 12월중 환율급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한데 이어, 금년 1월 들어서도 한달새 2.4%나 상승
 -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금리·공공요금·세금인상 등의 요인이 현 재화될 경우 큰 폭의 물가상승 예상

-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철저한 물가안정대책 추진 필요
- 매점·매석행위 단속, 수입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지원, 부당·편승인상 방지 및 환율하락시 인상분 환원노력 등
- 정보통신서비스 활용기반 확충
- 초고속정보통신 기간망과 공중망(가입자망)의 적극 활용을 추진중이나, 수요자의 필요성 인식 미흡 등 서비스 이용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해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등이 지연될 우려
 -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신망 구축사업 참여조사 결과 희망기업이 없는 실정
- ⇨ 이용기반 확충을 위한 응용서비스(홈쇼핑·원격교육·전자상거래 등) 적극 개발과 정보화 교육·홍보노력 강화 필요
- 과학기술 기자재의 공동활용 촉진
- 산·학·연 기자재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정(1994. 1)」 및 공동이용 조장·지원기관 지정 등 추진
 -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에는 공동활용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나, 민간기업이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정보제공 등 미흡
- ⇨ 정부출연연구소 장비를 기업에서도 활용가능토록 지원 필요
-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영농안정대책 신속 추진
- IMF 경제위기로 농정지원예산 감축(1998년 1조 2,240억원), 농업경영비 증가, 농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농업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
- ⇨ 시설원예·축산 등 특히,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영농안정화 대책 마련, 추진 필요
- 농가부담 최소화방안 다각 강구, 농업구조조정 투자예산 일부를 경영안정화에 지원, 주곡 생산기반 확충 등
- 환경기초시설 경영의 효율화 방안 검토
-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등으로 그 동안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운영

- 현재 전국에 1,38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가동 중에 있으며, 그 중 1,362개소를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
 -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을 각 지자체 별로 공무원이 직접 관리함에 따라 전문성 미흡, 운영 조직의 경직성, 관리비 과다소요 등 문제 발생
 - ⇒ 지자체는 지도·감독업무를 전담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직접 운영은 점진적인 민간위탁을 추진하며, 수계별 시설 통합운영 등 효율화방안 모색 필요
- 사업장폐기물의 감소대책 적극 추진
 -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대폭 감소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증가
 - 1996년 중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130,648톤/일(1994년 대비 46.9% 증가)
 - 사업장 폐기물 증가는 원천적인 감량화 노력 미흡, 재활용 부진, 대형사업장의 자율적인 감량화계획 추진 미흡 등에 기인
 - ⇒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한 「쓰레기종량제」 확대 시행, 감량화 우수업체 지원을 통한 자율감량제도의 조기 정착 등 획기적인 감량화시책 추진 필요
- 쓰레기 소각처리대책 보완
 -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율은 현재 5.5% 수준에서 2001년까지 20%로 제고할 계획으로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중
 - 1997말 현재, 9개 소각장(2,900톤/일 처리규모)이 가동중이며, 16개 소각장(5,200톤)은 공사중
 - 의정부 소각장(폐쇄) : 다이옥신 과다 검출, 성남 소각장(가동중단) : 다이옥신 과다검출, 목동소각장(일부시설 가동중단) : 지역내 쓰레기만 소각함에 따라 소각물량 부족
 - 최근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시기 지연, 시설투자비(지방비) 확보 곤란 및 주민민원 발생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소각 목표율 달성에 차질발생 예상

- ⇨ 경제여건과 폐기물 감량·재활용 목표를 감안 소각목표율의 합리적 조정 등 쓰레기 소각처리계획 보완 필요
- 대도시 2~3개 구 단위의 광역처리시설 설치 유도 및 소각시설 운영관련 다이옥신과 소각재 관리 강화 등
-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규격 강화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공전」을 개정, 식품의 관리기준·규격을 강화하였으나, 농약 등 환경오염물질과 수입식품 관련 신종세균 및 중금속 오염물질에 대한 「식품공전」상의 관리기준·규격 일부 미비
 - 콩나물 등 부패방지농약(카벤다짐 등)에 대한 규제규정 미설정
 - 담수어·패류 등의 중금속성분(수은·납)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등
- ⇨ 식품의 국제화 추세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기준·규격을 국제기준 등에 맞게 조속 보완 필요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기능의 확충
-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공교육 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흡한 실정
 - 초등학교의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율(40%) 저조, 초등학교 부설 공립유치원의 도시지역 학생수혜 저조, 위성교육방송의 실질적인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대한 의문제기 등
- ⇨ 공교육 체제에서 사교육 수요를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기 추진중인 시책의 조속 보완 등 필요
- 방과 후 교육활동 내실화 지원 확대, 도시지역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설립 확대, 위성교육확대 개선방안 마련 등
- 재외공관 및 근무인력의 내실있는 정비 추진
- 북한과 경쟁적으로 확충해온 재외공관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舊공산권국가와의 수교 등으로 공관 수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1989년 이후 공관폐쇄 19개소, 32개소)
 - 저비용·고효율의 내실외교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공관과 근무인력을 실리 위주로 정비할 필요 제기

⇨ 소규모 재외공관 및 일국내 다수공관의 합리적 정비와 해외주재관의 직급 및 인원조정 추진 필요

- 지방이양 대상사무 확대 및 이양확정사무의 조기이양 추진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점진적으로 추진키 위해 1991년 이후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1,174건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확정
 - 1997년말까지 824건(70%)은 이양완료하였으나, 350건(30%)은 여건의 변화, 관련부처와의 이견, 범리상 문제 등으로 미 이양
- ⇨ 중앙·지방간 합리적인 기능 재배분을 통한 자치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방이양대상 사무를 계속 확대하고, 이양 확정사무는 조속한 이양조치 필요

- 지방행정 구조정비 및 지방조직 감량화 추진
 -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지방행정계층 구조는 고비용 구조개선 및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비판이 제기
 - 전국 3,741개 읍면동 공무원은 75,201명(자치단체 공무원의 26%)으로서 행정전산화 비중 증대,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조정 필요성 증가
 - 자치단체의 60%가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지속 증가(1995. 6 ~ 1997. 12까지 4.1% 증가)
- ⇨ 지방행정계층 구조조정방안 강구, 자치단체의 기구·인력감축 등 조직 경량화 추진 필요

- 생계형 범죄증가에 대비한 민생치안 대책 강구
 - 기업 부도 및 실업 증가로 생계형 강·절도 등의 범죄가 증가되어 민생치안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 확산
 - 최근 은행 다액 도난사건(부산), 금은방 도난사건(화성) 등 대형 강·절도사건 발생 등 강·절도사건 증가 추세
- ⇨ 서민생활 안전보호 차원에서 민생치안 업무강화 필요
- 방법 기동순찰 강화, 범죄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순찰·검문 강화, 주민 자체방범활동 조직 지원 등

- 국내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 외환위기 등 경제난으로 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산업연수생,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 증가하여 내국인 고용기회를 잠식
 - 1997년 12월 불법체류자는 148천명(1992. 12 불법체류자 31천명)
 - ▷ 내국인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필요
 - 불법체류자 자진출국기간을 설정, 자진 출국 유도와 미출국자에 대한 특별단속반 운영 등 철저한 단속

< 대형투자사업 진도점검 결과 >

- 추진경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SOC확충사업 등 대형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매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을 점검·관리
 - 대상사업 :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및 물류시설 확충 등 14개 사업
 - 진도관리방법 : 1997년 추진계획 대비 사업진척도 점검·관리
- 추진실적 점검결과
 - 1997년 계획대비 추진실적 점검결과 14개 대형투자사업중 9개 사업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3개 사업은 일부 부진 또는 지연되고 있으며, 2개 사업은 사업추진이 부진
 - 정상추진사업(9개) : 인천국제공항건설, 고속도로건설, 철도건설, 도시 철도건설, 항만시설 확충, 사업단지 조성·공급,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LNG 전국공급사업
 - 일부 부진 또는 지연사업(3개) : 공항건설, 다목적댐건설, 광역상수도건설
 - 부진사업(2개) : 경부고속철도건설, 대규모물류단지건설

Ⅲ. 수시과제 평가

1997년에는 「골프장건설 추진실태 점검」, 「응급의료체계 확립방안 평가」, 「군 환경관리실태 및 개선방향」 등 14개 과제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과제와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29> 수시평가과제의 주요 내용 (1997년)

과제명	주요 평가결과
공업계 고교 「2·1체제」 운영실태평가 및 보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2·1체제」 정착을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현장교육훈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학생안전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 보상수준 실현 및 안정적 재원확보방안 강구 ○교원 신분보장방안 강구 등
민원행정실태 및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관련제도의 종합적·체계적 개선노력 배가 ○민원관련 제도개선내용의 적극적 전파 ○민원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견제기능 강화
골프장 건설 추진 실태 점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기한내 준공이 불투명한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점검결과 재해예방조치가 미흡하거나 추가보완조치가 필요한 골프장에 대해 특별관리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시책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우수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 지원등 구체적 지원방안 강구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분리수거·처리 등 적정관리방안 강구 등
응급의료체계 확립 방안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상황실과 응급환자정보센타간 유·무선 통신망 연계를 통한 통합효과 달성방안 강구 ○응급의료 전문인력 수급조정대책 수립·추진
군 환경관리 실태 및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전담추진체계의 정비·보강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분담방안 조속 마련 ○군과 지자체간의 협조체제 구축

과제명	주요 평가결과
수출입통관 자동화사업 추진상황 평가 및 보완방향	○수입통관시스템의 관계부처간 협조 및 표준화 ○관세환급시스템 보완
정부입법 추진실태 및 개선방향	○입법과정에서의 관련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입법과정의 공개와 국민여론 수렴기회 확대 등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 개선방안	○보상기간 단축으로 사업비 절감 ○영농보상의 투기화 방지 등
소년원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소년원의 직업교육 내실화 도모 ○약물남용 소년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등
민원쇄신과제 이행실태 점검결과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관련 유관기관간 협의촉진 및 협조이행 강제방안 강구 ○자동차 등록 관리검사제 개선 등
에너지절약 관련 제도 및 운영실태 평가	○건물의 신축이나 유지·관리시에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사용토록 각종 에너지절약 관련제도 개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강화 및 공공건물의 저효율 에너지기자재 개체 추진
항만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부두운영회사제 시행 보완방안 마련 ○입·출항 관련서류 제출 간소화방안 마련 등

IV.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1997년에는 별도의 보고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시달하였다.

상반기 심사평가 결과는 1997년 7월 29일 국무회의에 분야별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평가의견 및 개선방향 제시하여 보고하고, 각 부처 주요업무계획중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항은 조속히 정상 추진되도록 독려하였으며 향후 주요업무 추진시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계부처간 협조 및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촉구하였다. 하반기 심사평가 결과는 1998년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아울러 1/4분기 60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결과는 1997년 4월 17일 차관회의에, 3/4분기 5개 과제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결과는 1997년 11월 18일 국무회의에 각각 보고하였다.

제10절
1998년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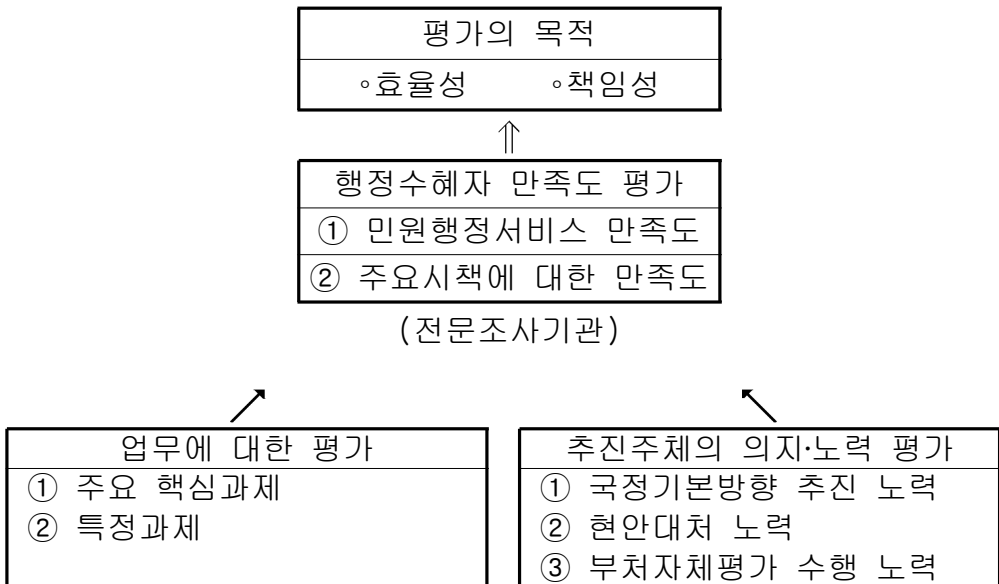
I. 평가개요 및 특징

1998년도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종래 평가제도를 보완한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 기관평가제 도입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1998년도 정부업무의 심사평가는 경쟁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그간의 단편적인 정책과제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기관의 포괄적인 역량까지도 평가하는 「기관평가제」를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그림 2-4> 기관평가 개념도 (1998년)



기관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추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는 것으로, 평가영역은 크게 ‘추진되는 일’에 대한 평가인 「주요정책과제 평가」, ‘추진주체’에 대한 평가인 「정책추진역량 평가」 ‘일’과 ‘주체’에 대한 종합평가인 「국민만족도 평가」로 구분되었다.

아울러 정기적인 평가 외에 시급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현안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특정과제 평가도 실시하였다.

1998년도 평가는 기관평가제도의 시행 첫해로 중앙행정기관중 17개 부(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제난 극복과 국정전반의 개혁추진상황을 주된 평가대상으로 삼아 각 부처가 주어진 일을 솔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2.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998년 4월 15일 개정된 「정부업무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5,774호)제8조에 의거하여, 정부업무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무총리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하였다(1998.4.17)

정책평가위원회는 민간위원 26명과 당연직인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2년으로 하였다. 정책평가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본위원회, 평가제도 등 분야별로 이루어진 6개 소위원회, 구체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별로 구성되는 평가작업반으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표 2-30> 민간 제1기 정책평가위원 (1998년)

	성 명	직 위
위원장	이세중	변호사
위원	허 범	성균관대 행정대학원장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신영철	한국능률협회 상근부회장
	이종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박환구	한국노동연구원장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이헌출	LG카드 사장
	문희화	경희대 교수
	이건영	교통개발연구원장
	박한규	연세대 공과대학장
	정영일	서울대 교수
	심옥진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연하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종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한준상	연세대 교수
	임연철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 형	이대 교수
	김명수	외대 교수
류장희	이대 국제대학원장	
이상우	서강대 교수	
김주일	조선일보 논설위원	
서정우	연세대 교수	
김일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II. 주요정책과제 평가

1. 평가대상과제

주요정책과제 평가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실현하였느냐에 주안을 두고 평가대상기관별로 1~3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과제의 선정은 업무의 중요도가 높으면서 각 부처를 대표하는 주요 핵심과제를 시책성 과제와 단위사업과제로 구분하여 1차적으로 선정하고, 주요 핵심과제만으로는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추진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10개 내외의 특정과제를 별도로 선정, 평가하였다.

- 시책성 과제 :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중 부분계획 또는 부분별 자원배분 등 정책목표 또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등이 함축되어 있고 사회적 파급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나 그 대상이 단위사업보다 광범위한 과제
- 단위사업과제 : 일반적으로 예산 집행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사회적 파급이나 그 미치는 영향이 1차적으로는 그 지역이나 대상에 한정되어있는 과제

<표 2-31> 평가대상 핵심과제 (1998년)

부처명	핵심과제
재정경제부	1. 금융산업 구조조정 2. 기업 구조조정 3. 외국인 투자 활성화
통일부	1.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2.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외교통상부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통상외교 활동 강화 2.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및 자조노력 지원

부처명	핵심과제
법무부	1. 외국인 투자활성화 2. 교정의 현대화
국방부	1. 방위력 개선사업 전면 재조정 2. 군수조달 집행체제 개선
행정자치부	1. 능력과 실적중심의 인사관리 혁신과제 2. 중앙권한의 지방 및 민간이양 촉진과제
교육부	1. 사교육비 경감대책 2. 실직자를 위한 교육지원 확대
과학기술부	1. 국가과학기술연구사업의 효율성 제고 2. 연구시설 확충과 공동활용 지원
문화관광부	1. 지식과 문화산업 육성 2. 청소년 육성기반 구축
농림부	1.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2. 양곡관리제도 개선
산업자원부	1. 무역수지 흑자기반 구축 2. 에너지 수급안정 3. 벤처기업 육성
정보통신부	1. 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우정사업 경영체제 개선
보건복지부	1.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2. 보건의료제도 개선사업 3. 보건의료산업 육성 지원
환경부	1. 맑은물 공급 개선 2. 환경기초시설 확충
노동부	1. 고용안정대책 2. 실업자 직업훈련 3. 산업안전 및 노동자 복지사업 확충
건설교통부	1. 부동산 제도 개선 사업 2. 교통·물류난 완화
해양수산부	1. 효율적인 해양보전과 자원관리 2. 수산업 구조조정

2.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의 기준은 시책·사업이 이룩한 성과의 정도 및 문제해결의 정도에 초점을 두는 효과성 시책·사업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경제적 최적화로 수행되었는가에 관심을 두는 능률성, 추진과정에서의 보완이나 평가결과의 사후관리와 활용여부인 환류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지표를 구성하였다.

평가는 정책형성, 정책집행과 정책성과 등 모든 과정을 영역으로 하였으며, 먼저 집행단계와 추진결과에 대한 범주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형성 관련부분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다음 <표 2-32>과 같다.

<표 2-32> 평가지표 (1998년)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주요 기술사항
정책 형성	정책목표 체계	정책의 타당성	- 정책목표는 국정지표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충분한 세부 실천계획을 갖추고 있는가
		정책의 실현성	- 정책추진에 필요한 인력·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법등은 적정한가
	정책기획 체계	정책대상고객의 의견수렴	- 정책대상고객의 의견수렴 방법과 절차 는 적정한가 - 정책대상고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가
		관련부처와의 협의·조정	- 타부처 추진정책과 일관성·차별성이 유 지되었는가 - 관련부처(일선 집행부서 포함)와의 협 의·조정 및 의견수렴은 충분히 이루어 졌는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주요 기술사항
정책 집행	집행의 계획적관리	추진일정의 계획 일치성	- 정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추진요소의 계획 일치성	-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투입되고 있는가 - 인력이 계획대로 적시에 충분히 투입되고 있는가
		지원체계의 계획 일치성	- 법률 및 제도의 정비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관련부처 및 부서의 지원은 계획대로 충분히 이루어지는가
	상황변화의 관리	대응의 체계성	- 정책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가 - 변화된 상황에 대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였는가
		환류성	- 정책집행과정에서 환류체계는 적정히 마련되어 있는가 - 정책추진 과정상의 성과는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집행의 민주적 관리	공개성	- 정책추진과정에서 산출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 되었는가
수용성		-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내용과 성과에 대해 국민들의 의식은 어떠한가	
정책 성과	효과성	정책목표의 달성도	- 정책목표는 국정지표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충분한 세부실천 계획을 갖추고 있는가
		사회적 영향	- 당해정책이 일반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정책추진에 있어서 예상되지 않았던 효과(긍정적/부정적 효과 및 역효과)는 무엇인가
	능률성	정책의 경제성	- 정책추진에 투입된 비용과 발생된 효과는 어떠한가

3. 평가결과

주요정책과제 평가의 기관별 주요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정경제부
 -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업구조조정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성과를 거둔 반면, 금융기능 정상화와 대기업 구조조정의 실질적 이행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실물경제의 회복이 지연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통 일 부
 - 새 정부의 「대북 3원칙」 기조하에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새 지평을 연 성과를 거둔 반면, 경험진전 등 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상존하는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보의식 이완을 방지하는 대국민 홍보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외교통상부
 - 새로운 조직개편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포괄적 안보체제구축 외교와 함께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통상교섭활동에 외교역량을 결집한 성과를 거둔 반면, 현장중심의 통상외교 내실화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법 무 부
 - IMF외환위기로 우려되는 사회불안에 적극 대처하고 인권보호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 지원활동을 강화한 성과를 거둔 반면, 민생침해사범 등 범죄증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미흡하였고, 중하위직 등 공직자의 고질적인 부정·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척결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국 방 부

- 북한의 위협·미래전장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 전문야에 걸친 「국방개혁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성과를 거둔 반면, 방위력 개선계획의 효율적 연계추진이 미흡하였고, 무기도입·병무비리, 군기사고 빈발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행정자치부

- 정부조직의 대폭적인 감축 등 「작지만 생산적인 정부」구현을 추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둔 반면,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강화가 필요하고 정부사업의 민간위탁 촉진을 위한 추진체제가 미비한 것으로 평가

▪ 교 육 부

- 21세기 지식사회를 대비한 「교육입국」과 교육부문의 적폐일소를 위해 교육개혁을 역동적으로 추진한 반면, 대학입시 개혁에 부응하는 공교육의 정상화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반면,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였으며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중심 운영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문화관광부

- 문화복지 구현 및 문화유산의 보존과 아울러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산업의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한 반면, 문화산업 육성계획의 차질이 우려되어 이에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

▪ 농 립 부

-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여건에 대처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시장기능을 가미한 새로운 양곡관리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반면, 농산물 유통개혁을 위한 기본여건 조성이 미흡하고 경제성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투자로 정부지원 주요농업시설의 부실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

▪ 산업자원부

- IMF위기극복을 위해 당면한 수출증대, 벤처기업 육성, 에너지 절약 및 수급안정을 중점 추진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수출시장별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수출증대 노력의 강화가 필요하고 LNG수요감소에 대하여 LNG 도입물량 및 시기 조정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벤처기업의 창업자금 지원이 부족하여 벤처기업 특성에 맞는 자금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정보통신부

- 21세기 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육성,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우정사업 경영효율화를 적극 추진한 반면, 초고속정보통신 이용활성화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

▪ 보건복지부

- 전국민 연금실시 준비, 의료보험통합일원화 등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수입감소에 따른 대비책이 미흡하고, 형평성있는 부과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여건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

▪ 환 경 부

-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과 쓰레기 감량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반면, 종합적 대기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환경기초 시설 설치의 투자우선순위 및 지원체계가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

▪ 노 동 부

- 대량실업사태에 대응하여 광범위한 실업대책을 적기에 마련하

여 실업발생 억제와 실업자 생활안정을 도모한 반면, 많은 수혜 인원에도 불구하고, 일부대책의 실효성 부족으로 실업대책의 가시적 성과가 저하되었으며 실업대책의 성과가 미흡한 것은 단기간에 대책을 수립·시행함에 따른 체계적인 준비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건설교통부

- 토지·주택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시책추진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지표가 3/4분기부터 예년수준에 근접하고 수도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공사(SOC)의 조기발주가 미진하고 민자유치 사업도 부진하였으며 도시교통정책의 기본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교통정비계획 불비로 일관성있는 교통정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해양수산부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해양환경보전과 수산업 구조조정, 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등을 추진하고, 한·일, 한·중어업협상 타결로 동북아 신해양질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해양투기·해양쓰레기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고 어선감척사업의 부진으로 수산업 구조조정 시책의 가시적 성과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Ⅲ. 정책추진 역량평가

1. 개 요

정책추진역량 평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의 의지 또는 추진노력을 주된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그 기관이 추진한 시책·사업의 추진성과는 물론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추진과정에서의 추진주체

의 의지와 노력정도, 현안에 대한 대처노력 등을 추진주체의 역량의 관점에서 국정추진노력을 평가하였다.

2. 평가분야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국정의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시책·사업을 구체화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며, 각 부처 스스로 지속적으로 자체진단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제고키 위한 검토·보완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역량의 평가대상을 국정기본방향추진노력, 현안대처노력, 부처 자체평가수행노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2-33> 정책추진역량평가 대상분야 (1998년)

평가분야	평가사항
▪ 국정기본방향 추진노력	▪ 100대 국정과제 추진노력 ▪ 규제개혁 추진실적
▪ 현안대처 노력	▪ 언론인, 민원인으로부터 제기된 현안에 대한 대처노력
▪ 부처 자체평가 수행노력	▪ 자체평가노력과 그 결과 이행 여부

3. 분야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국정기본방향 추진노력 평가

1998년도는 새정부 출범 초년도로서 새정부가 제시한 국정기본방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시화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새정부가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였다.

1) 100대 국정과제 추진노력

가) 평가범위 및 대상

1998년도는 국정지표로 제시한 4가지 과제중 「국정전반의 개혁」에 중점을 두어 이의 추진을 위해 제시된 「100대 국정과제」만을 평가범위로 한정하였다.

상반기에는 기관평가대상인 17개 부(部)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국정전반의 개혁성과를 총점검하는 차원에서 평가대상기관을 총 37개 전체 추진기관으로 확대(처·청·위원회 등 20개기관 추가)하여 총 910개 실천과제 전체(일부과제 기관 중복으로 총 1,097개)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였다.

하반기의 주요 평가내역은 「1998년 조치완료과제(356개)의 추진진도», 「중장기(1999년~2002년) 과제(201개) 및 계속 추진과제(353개)의 1998년도 추진진도», 「상반기 평가시 세부추진계획 수립 미흡과제(32개)의 보완여부 및 적정성」이었다.

<표 2-34> 조치시한별 평가대상

(단위 : 개)

구분	합계	1998		1999		2000년 ~ 2002년	계속
		상	하	상	하		
합계	1,097*	68	346	52	78	115	438
17개부	898	53	270	47	64	103	361
기타기관	199	15	76	5	14	12	77

* 기관별 중복과제를 포함한 수

나) 평가체계 및 방법

각 부처는 기획예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정과제추진계획」을 수립, 국무조정실에 송부하고 반기별로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였다.(상반기 7. 15일까지, 하반기 11. 15일까지)

국무조정실은 제출된 계획과 추진실적을 근거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평가실시 시점에서 계획으로 구체화된 과제와 계획 미확정 과제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확정된 계획과제에 대해서는 「① 계획대로의 추진여부(추진계획 대비 실적) ② 당초 의도한 목표대로의 달성여부(추진성과) ③ 국정지표중 국정전반의 개혁차원에서 계획의 내용상 미진하거나 부족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미확정 과제에 대해서는 「가시화된 계획으로 확정시키고자 하는 준비상태와 노력정도」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상·하반기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결과 추진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기획예산위원회(국정과제기획관리단)에 통보하여 보완토록 하였다.

<표 2-35> 100대 국정과제 추진 노력 평가기준 (1998년)

평가항목	평가요소	주요 고려 사항
정책의제 관리	개혁성	- 국정과제의 추진계획 내용이 개혁사항을 포괄하고 있는가 - 과제의 세부실천계획간의 우선순위는 적정한가
	관련부처 협조	- 과제 추진을 위해 사전 관계부처와의 협의 조정을 거쳤는가
	국민설득	- 과제 수립시 국민의 의견수렴은 이루어졌는가
추진체계와 집행관리	준비성	- 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인력등의 추진체계는 갖추어져 있는가
	계획의 진척도	- 과제의 추진내용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국정 전반의 목표관리	추진 방향의 타당성	- 100대 과제의 추진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국정지표의 달성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 100대 과제간 우선순위는 적정한가

2) 규제개혁 추진실적

각 부처가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비지침에 의거 수립·제출한 규제정비추진계획과 이에 의한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각 부처는 매반기별로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국무조정실(심사평가조정관실)에 제출토록 하였다.

- 추진실적 제출대상
 - 평가대상기간 중 각 부처가 추진한 규제개혁 실적으로서 당해 기간 중 규제개혁 방침이 최종 확정되었거나, 시행된 과제
- 제출시한 : (상반기) 1월~6월까지 추진실적을 7월 15일까지 제출
(하반기) 10월까지 추진실적을 11월 15일까지 제출

평가는 제출된 실적을 근거로 평가기준에 입각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상·하반기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결과를 규제개혁 담당부서에 송부하여 향후 규제개혁 추진업무에 활용토록 조치하였다.

<표 2-36> 규제개혁 추진노력 평가기준 (1998년)

평가항목	평가요소	주요 고려 사항
정책의제 관리	개혁성	-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규제개혁 내용이 절차 또는 형식의 완화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협조성	- 사전에 관계부처와의 협의 조정을 거쳤는가 - 이해집단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추진체계와 집행관리	준비성과 대응성	- 추진체계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 집행과정상의 대응은 적절하였는가
추진성과	효과성	-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2) 현안대처노력 평가

각 부처 업무추진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여건·환경의 변화가 시책 추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1) 평가대상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거나, 정책 추진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여건 또는 환경에 대한 대처노력 및 언론에 집중 보도되거나, 국회·각종연구기관·관련사회단체·민원인 등으로부터 정책적인 제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대처노력을 평가하였다.

2) 현안의 포착 및 관리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당면한 행정여건·환경의 변화 또는 제기된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의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주요한 정책관련사항으로서 상당기간에 걸쳐 확인점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와 일회성 확인점검으로 총괄 평가될 수 있는 과제를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각 부처에서도 현안 문제를 스스로 발굴·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에 현안과제로 의뢰하기도 하였으며, 현안으로 파악된 과제는 매월단위로 정리하여 종결처리 또는 지속관리 여부를 결정하였다.

3) 평가기준 및 방법

현안으로 채택된 과제는 우선 국무조정실 심사평가담당관이 자료수집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시의성있게 부처의 대응노력을 확인·점검하여 평가의견을 정리하였으며 국무조정실 평가결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심층분석이 필요한 과제는 정책평가위원중 주관위원을 지정하고, 주관위원의 평가의견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최종평가에 반영하였다.

현안과제에 대한 평가기준은 대처노력의 시의성·적절성과 대처결과의 효과성 등으로 평가하였으며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37> 현안 대처노력 평가기준 (1998년)

구분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주요 고려 사항
정책의제 관리	상황 변화의 인지	인지의 체계성	- 상황 변화를 상시적으로 파악 대처하기 위한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가
		상황의 포착	- 행정 외부에서 발생한 문제상황을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가 - 행정내부에서 예견하는 문제상황을 충분히 포착·관리하고 있는가
	상황 대응의 적절성	대응의 단계	- 상황 포착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이 이루어 졌는가
		대응계획의 수립	- 현안과 관련된 이해집단과 부처간의 이해와 협조 노력은 적정한가 - 대응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정책의 조정·관리	추진 체계	체계구축 및 가동	- 대응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과 예산등의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집행과정 관리	집행의 효율성	- 대응한 내용의 효과가 당초 의도한대로 나타나고 있는가 - 집행과정상에 나타나는 성과는 제때에 반영되고 있는가
성과 관리	사후관리	환류성	- 부진 또는 문제점으로 야기된 사안에 대한 대응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 - 새로운 정책에 반영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4) 평가결과의 처리

평가결과는 상·하반기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필요시 중간평가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토록 하였다.

(3) 자체평가수행노력 평가

정부정책의 성과는 기본적으로는 부처자체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내실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자체평가의 노력정도를 정책추진 역량평가의 한 분야로 평가하였다.

1) 평가체계

국무조정실은 먼저 17개 부처의 자체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처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스스로 평가토록 하였다. 이러한 부처별 자체평가 실시결과를 상·하반기별로 제출받아 자체평가 실시기준에 적합하게 평가하였는지 그 수행노력을 상위평가하였다.

부처별 자체평가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표 2-38> 부처 자체평가 실시기준 (1998년)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주요 고려 사항
자체 평가 노력	평가 체계	평가체계의 적정성	- 정책평가체계(조직, 인력, 예산 등)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 정책평가에 외부전문가가 충분히 활용되는가
		평가책임자의 전문성	- 평가책임자의 정책에 관한 인지도나 전문성은 충분한가
		평가기법의 개선	- 평가기법은 과거의 경우에 비해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 졌는가
	평가 과정	평가대상과제 의 적정성	- 선정된 평가대상과제는 적정한가
		평가책임자의 자율성	- 평가책임자는 자율적·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가
		관련부서의 협조	- 평가과정에 있어 부처내 관련부서의 협조는 충분한가
	평가 결과	평가환류체계 의 적정성	- 정책평가 환류체계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결과의 활용	- 정책평가 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가 - 평가결과는 신규로 수립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평가결과의 책임과 보상	-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적정히 이루어졌는가

2) 자체평가수행노력 상위 평가기준 및 지표

부처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는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졌느냐 여부와 「평가결과의 활용」의 적정성 정도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였다.

- 자체평가 주체의 적정성
 - 평가수행 참여와 노력정도
 - 외부전문가 활용여부와 부처내부 조직간 협조여부 등
- 평가 대상과 내용의 적정성
 - 자체평가 대상과제 선정의 적절성 여부
 -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위주의 평가 실시 여부
 - 평가기법 적용 여부
- 평가결과 조치의 적정성
 -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시정조치 및 시책 제반영 여부

4. 분야별 평가결과

(1) 국정기본방향 추진노력 평가결과

1) 100대 국정과제 추진노력

가) 상반기 평가결과

① 평가총괄

- 국정과제
 - 부·처·청·위원회 등 37개기관이 경제·사회·정부·미래부 문 등 4대 부문별로 100 대과제 ⇒ 297 중과제 ⇒ 910 실천과제로 확정되어 있으며, 추진시기별로 1998년까지 356개, 1999

년까지 109개, 2000년~2002년까지 92개 과제를 조치완료하고, 353개 과제는 계속 추진할 과제로 구분

▪ 국정과제의 주요 목표

- 참여 민주주의적 국가경영, 자율·경쟁·수요자 중심 시장경제, 개방적인 공동체 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으로 선정하여 개혁성이 높으며, 대과제, 중과제, 실천과제별로 구분하여 국정 과제 추진에 있어 체계성을 갖추
-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과제를 1998년·1999년까지 추진토록 하는 등 우선 순위가 잘 설정되어 있고, 국무총리실에서 910개 실천과제별로 「카드화」 관리함으로써 점검·평가체계(환류성)를 갖추
- 국정과제가 단계별로 완료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비전제시가 다소 미흡한 실정임

② 실천과제의 세부추진과제 수립실천 평가(17개부(部) 소관 899개(중복 포함) 실천과제 대상)

17개부(部)의 총 899개 과제 모두는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었음. 다만, 이중에서 32개과제는 재원확보 곤란, 내용의 구체성 결여 등으로 계획수립내용이 불충실한 상태임(버스 등 대중교통의 육성방안 마련, 금융업무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및 투명화 추진, 교원양성기관 구조조정 등)

③ 1998년 완료과제의 추진상황 평가(17개부 소관 323개 실천과제 대상)

- 1998년 상반기까지 조치완료토록 한 과제는 총 53개로서 대다수의 과제는 완료 또는 정상추진함
- 3개 과제는 추진여건 미흡, 입법지연 등으로 추진진도가 다소 부진한 실정(「기업구조조정기금설립을위한법률」 제정 등)

- 1998년 하반기까지 조치 완료해야 할 과제는 270개로서 대다수의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
 - 7개 과제는 관계부처 이견, 입법지연 등으로 연내 완료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우정사업 경영체제개선, 통합방송법 제정 등)

④ 후속조치사항

- 국정과제 추진 소요재원의 차질없는 확보
 -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우선 순위에 따라 1999년 예산부터 반영함
 - 중장기 과제는 「중기재정계획」에 최우선 반영토록 함
- 부진·미흡과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관리 강화
 - 부진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함
- 현장중심의 점검·관리
 -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부진·문제 사항을 적시에 발굴, 보완대책 마련함
- 대국민 홍보 강화
 - 과제별 추진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적극 홍보함

나) 하반기 평가결과

① 평가결과

- 하반기 평가결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경제」·「정부」·「사회」·「미래」등 4대부문에서의 당초 전략목표가 차질없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중 57개(6.3%)과제는 추진상황이 다소 부진함
 - 이를 조치시한별로 살펴보면, 1998년 완료과제 356개중 26개(7.3%), 1999년 완료과제 109개중 5개(4.6%), 2000년~2002년 완료과제 92개중 9개(9.8%), 계속과제 353개중 17개(4.8%)

<표 2-39> 조치시한별 부진과제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1998년		1999년		2000년 ~ 2002년	계속
		상	하	상	하		
합계	910	64	292	46	63	92	353
부진	57	1	25	3	2	9	17
부진율	6.3%	1.6%	8.6%	6.5%	3.2%	9.8%	4.8%

- 부진사유별로 살펴보면, 자원부족·재정여건으로 인한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기인하는 경우가 19개(33.3%),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과의 협의지연이 15개(26.3%), 추진노력 부족 및 입법지연이 각각 5개(8.8%), 기타 13개(22.8%) 등

<표 2-40> 부진사유별 과제현황 (1998년)

구분	계	재정 여건등	협의지연	추진 노력부족	입법지연	기타
부진과제수	57	19	15	5	5	13
구성비(%)	100	33.3	26.3	8.8	8.8	22.8

-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중 상당수가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경제상황에 기인하여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긴요함
 - 전체 부진과제 57개중 자원확보 곤란, 어려운 재정여건 또는 경기불황 등에 직접적으로 연유하는 과제는 19개이며, 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도 2개로 이를 포함할 경우 총 21개로 파악되며 이는 전체의 36.8%임

(예시) 자원부족 :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등 11개 과제
 재정여건으로 인한 관계기관 협의지연 : 연안해운의 활성화 등 3개 과제
 경기침체 관련 : 한국통신 주식의 해외매각 추진 등 7개 과제

- 부진과제 4대 부문별로 분석
 - 총 910개 실천과제중 경제부문이 23개, 정부부문이 8개, 사회부
문이 18개, 미래부문이 8개 등이며, 비율상으로는 예산관련사업
이 많은 사회·경제부문의 부진율이 다소 높음

<표 2-41> 부문별 부진과제 현황 (1998년)

(단위 : 개)

부문별	합 계	부 진	부진율
합 계	910	57	6.3%
경제부문	338	23	6.8%
정부부문	205	8	3.9%
사회부문	216	18	8.3%
미래부문	151	8	5.3%

※ 부분별 과제의 주요내용(참고)

- 경제부문 : 구조조정, 재도약 기반구축, 산업경쟁력 제고 관련
- 정부부문 :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외교, 국방관련
- 사회부문 : 복지, 청소년, 의료, 안전, 환경, 문화관련
- 미래부문 : 과학기술, 해양, 정보화, 교육, 통일 관련

- 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 17개부(部)의 경우 전체 898개(중복과제 포함)과제중 52개(5.8%)
가 부진하며, 처·청·위원회 등 기타기관의 경우 199개 과제
중 10개(5.0%)가 부진하고(부진과제 합계 62개는 중복지적과제
5개를 포함한 숫자) 17개부(部)중 추진상황이 우수한 부는 산
업자원부(부진율 0.0%), 법무부(2.2%), 행정자치부(2.9%)등이며,
반면 부진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는 보건복지부(10.7%), 해양
수산부(10.5%), 문화관광부(8.7%)등임(채원부족 또는 입법지연
으로 인한 부진과제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기인).
 - 청단위 기관의 경우 관세청(33.3%), 병무청(20.0%), 중소기업청
(5.9%), 경찰청(4.3%)이 관계부처 협의지연, 국제적 여건 등으
로 인해 부진

- 처·위원회중에서는 여성특별위원회(25.0%), 금융감독위원회(11.1%), 국가보훈처(7.7%), 공정거래위원회(7.1%)등이 타기관의 협조부족, 재정여건 등으로 다소 부진

(예시) 입법지연 : 통합방송법 재정지연 관련 과제
 경제여건 :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사업 추진 등
 타기관 : 정부위원회 등 공공분야의 여성참여 확대 협조부족
 국제적 여건 : 세관상호지원협정체결국가 확대 및 세관협력회의 개최 등

<표 2-42> 기관별 부진과제 총괄 (1998년)

* 중복과제 포함

(단위 : 개)

기관명	과제수	부진(%)	사 유				
			재정 여건등	협의 지연	입법 지연	추진노력 부족	기타
계	1,097	62	21	17	6	5	13
보건복지부	56	6(10.7%)	4				2
해양수산부	38	4(10.5%)	2	1			1
문화관광부	69	6(8.7%)		1	4	1	
농림부	61	5(8.2%)	1	1		2	1
환경부	37	3(8.1%)		2		1	
노동부	68	5(7.4%)	3	1			1
국방부	57	4(7.011%)	3	1			
외교통상부	32	2(6.3%)				1	1
정보통신부	56	3(5.4%)	1	1	1		
과학기술부	21	1(4.8%)		1			
건설교통부	64	3(4.7%)	1	1			1
재정경제부	65	3(4.6%)	1	2			
교육부	65	3(4.6%)	3				
통일부	28	1(3.6%)					1
행정자치부	70	2(2.9%)		1			1
법무부	46	1(2.2%)			1		
산업자원부	65	0(0.0%)					

기관명	과제수	부진(%)	사 유				
			재정 여건등	협의 지연	입법 지연	추진노력 부족	기타
여성특별위원회	4	1(25.0%)					1
금융감독위원회	27	3(11.1%)	1				2
국가보훈처	13	1(7.7%)	1				
공정거래위원회	14	1(7.1%)		1			
감 사 원	6	0(0.0%)					
기획예산위원회	35	0(0.0%)					
국무조정실	8	0(0.0%)					
관 세 청	3	1(33.3%)					1
병 무 청	5	1(20.0%)		1			
중소기업청	17	1(5.9%)		1			
경 찰 청	23	1(4.3%)		1			
식품의약품안전청	2	0(0.0%)					
철 도 청	3	0(0.0%)					
국 세 청	3	0(0.0%)					
특 허 청	3	0(0.0%)					
농촌진흥청	4	0(0.0%)					
해양경찰청	4	0(0.0%)					
산 림 청	7	0(0.0%)					
예 산 청	8	0(0.0%)					
대검찰청	10	0(0.0%)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정과제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며, 재정여건·전망, 과제의 비중·시급성 등을 감안한 중장기 과제의 투자 우선순위 설정 필요하였음 (중기재정계획이 1998년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나, 향후 중장기 과제를 비롯한 국정과제 전반적인 투자우선순위 설정필요)
- 일부 과제의 경우 금년도 추진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토대로 재조정 필요함

첫째, 추진여건변화 또는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등으로 계획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

-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화(교육부)
- 병역필자 경력인정대상·범위 확대(국방부)
- 외국인 임대단지 조성(건설교통부) 등

둘째, 조치시한, 주관기관 등의 조정이나 중복과제의 통·폐합 등이 필요한 과제 등

② 보완 및 개선대책

- 부진·미흡과제의 철저한 관리·추진
 - 관계기관·이해관계인 협의지연, 추진노력 부족 등에 따른 부진과제는 기관장 책임하에 최대한 조속 추진토록 조치하고, 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협조
 - 재원부족으로 추진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1999년 예산에 추가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중장기과제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있는 재원확보대책 마련
 - 기타 부진과제에 대하여는 기관별로 부진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국무조정실에서는 필요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운영하여 부처간 이견·협의사항 조성)

- 실효성 평가 중점 실시
 -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추진기관별로 현장위주의 추진상황 자체점검·평가를 통해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부진·문제사항을 발굴

- 국정과제 추진의 실효성 제고
 - 국정과제의 원활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대책 마련 및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향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위원회와 협의
 - 추진여건 변화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과제는 보완하고 중복과제 통합 등 조정필요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 계획 재수립이 필요한 과제와 조치시한, 과제명, 주관기관 등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위원회 「국정과제기획관리단」에서 조정토록 협의
 - 국정과제 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천과제별로 명확한 세부추진방침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조치(추상적·일반론적 계획을 지양하고 연도별·세부 프로그램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위주로 보완)

- 향후 평가시 과제별 구체적 방침이 미흡할 경우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평가할 방침을 정함

2) 규제개혁평가

가) 상반기 평가결과

규제개혁은 시장경제의 발전과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정부의 기본 방침인 1998년도에 「기존규제의 50%이상 정비」와 상반기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① 기존 규제의 정비계획 평가

정부는 전 부·처·청의 기존 규제 10,802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1998년도에 기존 규제의 50%이상 정비를 목표로 삼고 이중 시급한 15개분야 62개 과제를 핵심규제로 선정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도하에 정비를 추진하는 등 규제정비의 폭과 수준이 어느때보다도 과감하고 획기적이었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 분야,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분야, 금융·유통·무역·건설 관련분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야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 1998년도 부처별 자체정비계획을 잠정집계한 결과
 - 총 규제건수 10,802건중에서 금년도에 4,439건(41.1%)을 정비할 계획(이중 폐지는 1,841건이고, 규제완화는 2,598건)
 - 기관평가 대상인 17개부(部)의 경우, 총규제 7,959건중 1998년도에 3,508건(44.1%)을 정비할 계획
 - 50%이상 규제개혁을 목표로 추진중인 부는 노동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7개 부이고, 외교통상부(14.3%), 법무부(10.9%) 등 안보상의 문제나 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일부 부는 정비계획 목표에 크게 미달

② 상반기 규제정비 실적평가

- 1998년 상반기 규제정비 확정건수는 570건(17개 부 정비계획 목표 대비 16.2%)에 불과하여 부진한 실적
 - 정비실적 10%에 미달한 부는 보건복지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통일부·교육부·국방부·문화관광부 등 7개 부
 - 상반기에 정비방침이 확정된 570건중에서 현재 시행에 들어간 과제는 269건(47.2%)이고, 나머지는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효력이 나타나게 됨. 따라서, 실제 정비한 노력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 국무총리실에서는 금년중에 기존규제의 50%이상(5,401건)을 정비목표로 삼아, 각 부처 규제정비계획의 철저한 심사·조정과 질적인 면에서도 중요과제를 중점적으로 개혁하고 정비방침이 확정된 과제에 대한 조속한 법령 개정 조치

(2) 현안대처노력 평가결과

1) 상반기 평가결과

① 잘된 점

- 노·사·정 참여 분위기 결성에 적극 대처함
 - 노사 양측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설득 유도하여 제2기 노사정위원회 본격 가동
-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신속·적절하게 대응함
 - 서울 및 부산지하철 파업, 서울대 병원 노조 파업 등에 신속 대응하여 국민불편 해소
- 중소기업 현장애로의 타개반을 운영함
 - 중소기업 유관부처 및 지원기관이 합동으로 중소기업 애로를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

- 생활물가를 철저히 관리함
 -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23개 품목을 생활물가지수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함으로써 체감물가 안정
- 기 타
 - 원자재 수급난, 출판업계 도산, 수입의약품 부족, 대도시 노숙자 문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의 시의적절한 대처 노력으로 사태 수습
 - 컴퓨터 2000년문제(Y2K), 실업대책에 대한 유관기관 협의, 안보위 상임위를 통한 외교안보정책 조정 등 범부처적 과제에 대한 종합조정 노력 경주

② 미흡한 점

- 5개 부실은행 퇴출조치시 대처가 미흡함
 - 퇴출은행의 업무인수 초기에 미흡한 대처로 전산망 파괴 등 혼란 야기, 고용승계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 등
-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사전준비가 미흡함
 -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시 준비기간이 짧아 홍보와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시행초기에 혼란 야기
- 정부정책 홍보노력이 미흡함
 - 기업구조조정, 정리해고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애로
 - 주요 정부정책과제가 관계부처 협의과정 또는 입안과정에서 언론에 사전 보도됨으로써 정부정책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비춰진 사례 발생
- 기 타
 - 탈주범의 장기 미검거, 공공부문의 개혁과 관련된 이해집단에 대한 설득 부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 미흡 등

2) 하반기 평가결과

- IMF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정부조직·인력감축 및 부패척결과 정부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출연·위탁기관 등)의 민영화·경영혁신 등 각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가 본격 가시화 되지 않는 등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
 - 부처별로 자체 추진하도록한 교원, 경찰, 해양경찰, 검사·공안직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성과가 다소 미흡(법무부·교육부·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
 - 공기업 민영화·출연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 일부 지연
 - 조직진단·인센티브제 도입 등 공직사회 내부경영혁신 및 부패척결노력의 전반적 확산 미흡

-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개혁 및 민생관련 입법을 획기적으로 추진(1997년 대비 335%증가)하고, 대규모 실업사태·실물경기 퇴조 등 어려운 국면타개와 대인제도개선·상수원수질개선 등 국정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 그러나 일부 입법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중장기 미해결 정책사안 타결노력 소홀 및 부처간 협조미흡 등 일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각종 개혁대책의 가시적 성과 고양 및 행정환경 변화에 시의성있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필요

(3) 부처 자체평가수행노력 평가결과

1) 상반기 평가결과

- 17개 부(部)에서는 1998년 업무계획 중 자체평가대상으로 143개 과제를 선정하고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나타남

- 대부분의 부처가 기관평가제에 부응하여 자체평가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가 크게 제고되었으며, 시행과정에서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의 신속한 포착 및 시정노력이 나타남
- 그러나 각 부처의 평가인력이 부족하고 외부전문가의 형식적 참여 등으로 평가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실정임
 - 평가내용과 관련하여 시책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 부족하고 평가결과의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2) 하반기 평가결과

① 잘된 점

- 심사평가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함
 - 1998년 기관평가제 도입으로 평가업무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가 제고되고, 내부교육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공감대가 확산되어 각부처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와 평가결과 문제점 발굴 및 개선조치에 대한 노력이 배가
- 심사평가체계의 확립에 노력함
 - 과제별 평가작업반을 구성하여 1차평가를 실시하고, 1차평가결과는 자체심사평가위원회에서 토의·심의하는 등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평가작업반 또는 심사평가위원회에 외부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
- 평가결과의 활용을 강화함
 - 심사평가 결과는 기관장이 참여하는 자체심사평가보고회 또는 간부회의 등에 보고하였으며, 평가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 하여금 사업추진과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 1998년 상반기 평가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

-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함
 - 기관평가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추어 조직운영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시행

② 미흡한 점

- 평가담당부서의 기능이 한계를 나타냄
 - 각 부처의 심사평가업무는 행정관리담당관실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평가담당 인력이 부족(2~3명)하고 또한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심사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곤란한 실정
- 외부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가 미흡함
 - 각 부처가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의 심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활동실적이 1998년중 2~3회에 그쳐 형식적인 운영이 될 우려
 - 심사평가위원회 등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자문기능에 그치고 있어 주요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참여가 미흡
- 자체평가의 내용이 미흡함
 - 각 부처의 과제별 평가결과 내용이 관계기관 협조 미흡, 예산 및 인력부족, 대외여건 변화 등 외부요인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정책방향이나 제도적 문제점등에 대한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의 솔직한 평가와 개선방향 제시가 미흡
- 평가결과의 환류가 미흡함
 - 외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자체적인 문제점 발굴과 이에 대한 개선노력은 아직 미흡

③ 향후 개선과제

- 심사평가 체계를 강화함
 - 평가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앞으로 평가기법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각 부처는 평가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

- 평가업무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노력을 강화함
 - 부처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우선은 민간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여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민간위원이 평가업무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 각종 정책추진과정에서 민원인 또는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측정·분석하여 반영할 수 있는 외부평가 시스템의 활성화 필요

- 평가결과 내용의 충실화 및 환류체계를 확립함
 - 부처 자체평가지 사업이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충실한 분석·평가를 통해 정책방향이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관장의 책임 하에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사업 추진과정에 환류될 수 있는 체계 확립 필요

IV. 특정과제 평가

1998년에는 「실업대책 추진실태 평가」,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 평가」 등 7개 과제를 특정과제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120개의 개선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표 2-43> 과제별 주요 개선조치사항 (1998년)

과제명	주요 개선조치사항	비고
농업투융자사업의 실효성 평가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개선방안 마련, 시달 ○전업농 육성사업 개선방안 마련 ○영농규모화 사업 개선방안 마련 등 총 29개 개선사항 	1998. 8. 5, 상반기 평가보고회
소비자중심의 정책구현실태 평가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추진체계 개선 및 정책범위 재설정 ○상품의 안전성 확보 ○리콜제도의 실효성 확보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 총 30개 개선사항 	1998. 10. 14, 합동보고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 운영실태 평가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사업의 적정화 및 구조조정 검토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 정립 ○정확한 경영수지 분석방안 검토 ○중앙정부차원의 지원기능 강화 등 총 4개 개선사항 	1998. 10. 14, 합동보고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시책 (여성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공직 및 공기업 참여 확대 ○여성 고용안정 지원 ○여성실직자 대책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 총 11개 개선사항 	1998. 11. 21, 합동보고회
대도시 대기오염 개선대책 평가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강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행자동차 정기검사제도 개선 ○대규모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관리 강화 ○천연가스자동차 기술개발 지원 및 가스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총 9개 개선사항 	1998. 11. 21, 합동보고회

과제명	주요 개선조치사항	비고
실업대책 추진실태 평가(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형 공공근로사업개발 및 농촌 일손돕기 임금보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포함 ○ 일용근로자, 저소득실직자를 위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역SOC사업 확대 ○ 교육훈련 바우처제도 도입 ○ 직업훈련 종합정보망 구축 등 총24개 개선사항 	1998. 8. 5, 상반기 평가보고회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 평가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능 강화 방안 마련 ○ 중소기업정책 집행의 효율화 및 중소기업의 지원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방안 마련 ○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성장단계별 지원모형 구축 등 총 13개 개선사항 	1998. 8. 5, 상반기 평가보고회

V. 만족도 조사

1. 조사개요

정부정책의 추진 및 행정서비스에 대해 그 고객인 국민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2가지 측면에서 조사·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첫째, 행정의 실질적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의 주요 시책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둘째,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양태를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청 등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정부업무심사평가및조정예관한규정」 및 「1998년도 정부업무심사평가지침」에 의거하여 기관평가 대상기관을 평가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실제 행정현실에서 느끼는 정책 및 민원서비스의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민의에 부합하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도모하

고, 개별 단위과제로 접근하는 주요정책과제 평가가 갖고있는 평가의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정책집행의 전반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2. 추진내용

(1)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1) 조사범위

정부가 추진하는 각 부처의 주요시책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2) 평가대상과제와 평가대상 기관

1998년은 기관평가제 도입 초년도임을 감안하여 17개 행정각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8년도에 핵심과제로 선정된 39개 과제중 각부의 대표성이 높은 1개 과제 선정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조사대상 및 방법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모집단과 표본추출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중 지역별 인구비례 다단계지역 추출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면접원의 직접방문에 의한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항목
 - 정책의 효과여부
 - 정책의 수용정도
 - 정책추진 의지 및 대응노력 정도
 - 해당과제에 대한 가장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 등

4) 조사결과의 활용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는 개별과제의 정책성과 부분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였다.

(2)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1) 조사범위

각 부처 민원행정 업무의 처리방식 및 절차, 공무원의 태도,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를 1년 전과 달라진 모습을 비교하였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로 국한하고, 조사대상의 고객범위는 일반국민으로서 중앙부처와 접촉하는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국민의 정부」 출범 후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기관인 37개 행정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민원접수대장에 기록된 민원인을 모집단으로 표본 설정하였다.

표본추출은 모집단에 대한 기관별 할당과 체계적 무작위 추출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면접원이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3) 조사지표

1998년은 제도시행 초기로써 7개 차원 33개 설문항목이며, 이를 나타내면 <표 2-44> 다음과 같다. 특히 기관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을 결정하는 설문항목 외에 분석차원에서 상대적 비교를 반영하고 있다.

<표 2-44>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차원별 세부평가항목 (1998년)

차 원	세 부 질 문 항 목
접 근 성	① 행정서비스의 절차에 대한 안내 ②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 ③ 해당 사무실 혹은 창구에 대한 안내 ④ 민원인을 대하는 담당공무원의 안내태도 ⑤ 전화문의시 담당공무원의 태도 ⑥ 전화문의시 담당공무원의 통화 편의성
편 리 성	① 행정서비스 신청시 서식과 신청절차의 간편성 ② 업무처리 과정상 관련 창구 및 부서의 수 ③ 구비해야할 서류의 수량 ④ 특정 민원해소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 ⑤ 민원신청방법의 다양성(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이용가능성) ⑥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지연성
신 속/확 성	①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신속성 ② 민원처리의 정확성 ③ 담당공무원의 일처리 능숙도 ④ 민원서비스의 처리시간
쾌 적 성	① 행정기관내 혹은 근처에 위치한 주차공간 ② 휴식공간(실외포함) ③ 편의시설 ④ 외부와의 연락시설 ⑤ 공간의 청결도
대 응 성	① 민원처리 시간통보 및 준수여부 ② 요구에 대한 대응태도 ③ 요구에 대한 우선순위 ④ 착오시 시정 혹은 해명 여부 및 신속성 ⑤ 정보의 공개여부
형 평 성	① 관련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의 공정성 ② 업무처리의 공평성 ③ 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
환 류 성	① 서비스결과의 합당성 ② 민원처리의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③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여부 ④ 민원미해결시 후속조치
※상대적 비교	① 광역자치단체 행정서비스와의 비교 ② 민간기업 서비스와의 비교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 행정서비스와의 비교 ④ 투자한 노력과 비용과의 대비

4) 조사결과

- 종합만족수준

-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으로서의 민원인의 만족도는 평균 약 55점 즉,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사관련민원을 포함할 경우에는 54.9점임

- 기관간 종합만족 비교

- 전체 : 기상청, 통일부가 각 1, 2위
- 기획(부·처)와 집행기능(외청) 분류측면
 - 기획기능기관 : 통일부, 국가보훈처가 각각 1, 2위
 - 집행기능기관 : 기상청, 병무청이 각각 1, 2 위
- 기능내용 분류측면
 - 국가관리부문 : 통일부, 병무청이 각각 1, 2위
 - 산업경제부문 :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이 각각 1, 2위
 - 사회문화부문 : 국가보훈처, 문화관광부가 각각 1, 2위
- 경제와 비경제기능 분류측면
 - 경제부처 :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1, 2위
 - 비경제부처 : 통일부, 국가보훈처가 각각 1, 2위

VI.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1. 보고대회 개최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는 1998년 8월 5일에 정부세종로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국무위원,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등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실시하였으며, 국정운영의 개괄평가

및 분야별 주요정책과제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하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는 1998년 12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 부 장관, 광역자치단체장, 정책평가위원회위원 등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주재(국무총리 대행)로 실시하였으며, 1998년 정부업무심사평가결과를 보고하였다.

2. 결과조치

1998년 정부업무심사평가결과는 1999년 3월 22일자로 각 부에 송부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였다.

- 1998년 평가결과개선조치 필요사항 : 총 544건
 - 주요정책과제 : 203건
 - 국정추진노력분야 : 183건
 - 민원행정개선 : 18건(각 부처 공통)
 - 특정과제 : 140건

제11절 1999년도 평가

1999년도의 정부업무 심사평가는 1999년도 「국정지표」를 착실하게 구현시키는 과제 중심으로 선정하고, 평가의 주안점을 각 부처가 추진하는 일이 그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한편, 평가대상기관을 17개 부에서 40개 부·처·위원회·청단위 기관으로 확대하였고,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I.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평가의 개요 및 특징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한 평가의 대상영역은 크게 「주요정책과제 평가», 「정책추진역량 평가», 「국민만족도 조사」로 구분하여 1998년도 평가영역과 동일하였으나 평가영역내 평가분야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주요정책과제 평가」는 부·처·위원회는 2~3개 과제를 선정하고 청은 1개를 선정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정책추진역량 평가」는 자체평가 수행노력, 정부운영 혁신노력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요정책,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 실시하였다.

<표 2-45> 평가대상영역 비교

1998년도	1999년도
◇ 기관평가 ① 주요정책과제 평가 - 핵심과제, 특정과제 ② 정책추진역량 평가 - 국정과제 추진 - 규제개혁 추진 - 현안대처 노력 - 자체평가 수행노력 ③ 국민만족도 조사 - 주요시책 - 민원행정서비스	◇ 기관평가 ① 주요정책과제 평가 * 주요시책 만족도조사를 성과평가에 포함 ② 정책추진역량 평가 - 자체평가 수행노력 ·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수행노력 · 정부운영 혁신노력 ③ 국민만족도 조사 - 민원행정서비스
◇ 특정과제 평가 - 국정현안과제	◇ 특정과제 평가 - 필요시 선정 평가
◇ 부처자체 평가	◇ 부처자체 평가
	◇ 지방자치단체 평가(시범실시)

2. 주요정책과제평가

(1) 평가대상과제

평가대상과제의 선정기준은 국정운영목표(국정지표)에 부합하는 과제로서 각 부처의 1999년도 업무계획중 중요도가 높고 그 부처를 대표할 수 있으며, 계획의 집행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치는 과제로서 가급적 정책형성 단계가 아닌 집행단계에 진입되어 있는 과제를 선정토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40개 기관에 총6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2-46> 평가대상 주요정책과제 (1999년)

분야	주관부처	주요정책과제
경제분야	재정경제부	1. 경제활력 희생 대책 추진 2. 외환시장 안정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 국제경제질서 재편 대비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과학기술부	1. 첨단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연구성과 확산 2.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및 평화적 이용 확대
	농림부	1. 농·축산물 유통개혁 본격 추진 2. 농림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산업자원부	1. 무역흑자의 안정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2.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 3.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과 수급안정 철저
	정보통신부	1. 지식정보화 사회의 인프라 구축 2.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3. 우정사업의 경영혁신 지속 추진
	노동부	1. 고용안정대책 추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2. 노사안정을 토대로 신 노사문화 정착
	건설교통부	1. 기간 교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교통체계 개선 2. 지역균형 발전 추진
	해양수산부	1. 해운항만산업 육성 2. 선진 수산업체계 구축
	기획예산처	1. 정부부문 개혁 2. 공기업 및 출연기관 개혁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
	공정거래위원회	1. 대기업 집단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2. 독과점 시장구조와 경쟁제한제도 및 관행개선
	금융감독위원회	1.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 2. 기업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이행
	국세청	1. 세부담의 공정성 제고로 조세정의 실현
	관세청	1. 물류촉진을 위한 통관체제 구축
	조달청	1. 공공구매의 효율화 추진
	통계청	1. 통계의 신뢰성 확보 및 이용 활성화
	기상청	1. 기상예보능력 향상 및 이상기후 대비
	농촌진흥청	1. 친 환경농업 실천기술의 정착
	산림청	1. 산지 소득증대와 혼농임업의 육성

분야	주관부처	주요정책과제
경제분야	중소기업청	1.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및 육성
	특허청	1. 지식재산의 신속·공정한 권리부여 및 보호강화
	철도청	1. 철도경영 합리화
	해양경찰청	1.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 강화
통일·외교·안보	통일부	1. 남북교류 및 화해협력 추진 2.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외교통상부	1. 대외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외교활동 강화 2.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외교 추진
	국방부	1. 확고한 위기관리 및 대비태세 확립 2.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
	병무청	1. 병무행정의 쇄신
사회·문화	교육부	1. 고등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 2.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강화 3. 새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교직사회 활성화
	문화관광부	1. 문화산업의 획기적 육성 2.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보건복지부	1. 보건의료 3대 개혁과제 추진 2. 사회보험 3대 개혁과제 추진
	환경부	1. 맑은물 공급 2.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재활용 추진
	여성특별위원회	1. 여성의 지위향상 추진
	문화재청	1.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체계적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청	1. 식품 등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일반행정	법무부	1. 법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안정 확보 2. 인권의 제도화 생활화
	행정자치부	1. 인사관리제도의 개혁추진 2. 지방재정 확충·건전화로 자치기반 구축 3. 전자정부 구축으로 행정효율의 획기적 향상
	법제처	1. 정부입법 심사기능의 내실화
	국정홍보처	1. 국정홍보시스템의 재구축 및 홍보 강화
	검찰청	1. 부정부패의 근원적 척결
	경찰청	1. 민생치안 활동의 내실화

(2) 평가기준 및 방법

기관평가는 각 부처의 주요업무, 추진주체의 의지·노력, 행정수혜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각 부처 및 개별 평가대상 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시책·사업이 이룩한 성과의 정도 및 문제해결의 정도에 초점을 두는 효과성, 시책·사업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경제적 최적화로 수행되었는가에 관심을 두는 능률성, 추진과정에서의 보완이나 평가결과의 사후관리와 활용여부에 중점을 두는 환류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지표를 구성하였다.

평가는 정책형성, 정책집행과 정책성과를 영역으로 하였으며, 먼저 집행단계와 추진결과에 대한 범주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후, 미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형성 관련부분을 분석하였다.

<표 2-47> 주요정책과제 공통평가기준 (1999년)

구분	평가지표	평가(기술) 착안사항
정책형성	정책의 체계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정책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적시에 제기·수립되었는가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연도별 배분이 적절한가 - 정책목표의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잘 연계되어 있는가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정책내용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추상적 목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 않은가 - 추진계획, 추진일정, 추진수단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정책집행	집행관리의 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로 투입요소·추진수단이 투입·집행되고 있는가 - 추진일정을 설정하여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정책상황의 대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대응하고 있는가
	추진과정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정협조,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는가 - 추진과정에서의 정당한 고객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있는가

구분	평가지표	평가(기술) 착안사항
정책성과	계획목표의 달성도	- 정부의 입장에서 계획목표는 이루어졌는가 (투입지표, 산출지표)
	민본효과성	-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목표와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는가 (국민의 입장에서 성과를 측정·반영하고 있는가)
	환류관리의 효율성	- 정책성과를 새로운 정책형성에 반영해 나가고 있는가

(3) 평가결과

종합보고서의 분야별 평가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분야

- IMF 위기극복을 위해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활성화 및 경제체질의 근본적 개선과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중점 추진한 반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개혁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정책성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 강화가 필요하고,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21세기의 경제도약 기반마련을 위해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

▪ 통일·외교·안보분야

- 확고한 안보와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내외 정책상황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한 반면, 통일·외교에 있어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수단 및 지원·협조체제 개발이 미흡하고 안보역량에 대한 국민신뢰가 저해되었으며, 따라서 통일·외교·안보역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적 전략과 단기적 과제의 유기적 조화를 재구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 사회·문화분야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 확대,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교육개혁, 쾌적한 환경조성, 문화, 관광산업 진흥 등을 추진한 반면, 정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및 국민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정책의 신뢰성이 손상되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은 대부분 전국민의 이해와 관계되는 만큼, 정책개발과 관리능력의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

- 일반행정분야

- 경제난 및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불안요인에 대처하여 사회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및 정부운영 혁신을 추진한 반면, 사회전반에 걸쳐 법준수의식이 부족하여 법질서가 흔들리고 각종 비리·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가기강 해이 현상이 노정되었으며, 따라서 해이된 사회기강을 조속히 회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법질서 준수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3. 정책추진역량 평가

(1) 개요

1998년도에는 각 부처의 정책추진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개별분야를 설정하여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각 부·처·청 스스로 추진역량 분야를 설정, 1차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게 하여 부처차원의 평가역량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서 「부처자체평가」를 대폭 보강하고 이에 대한 상위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다.

(2) 평가분야

각 기관의 정책추진역량과 추진의지를 ①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수행노력과 ②정부혁신에 대한 각 부처의 추진 노력(목표관리제 운영,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 부패척결 노력, 기타 경영혁신노력)을 주요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1차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상위평가를 실시하였다.

(3) 분야별 평가기준

1) 자체평가수행노력

자체평가수행노력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48> 자체평가수행노력 평가기준 (1999년)

평 가 지 표	평 가 기 준
자체평가 대상과제 선정의 적절성	① 1999년 업무계획중 주요사항이 모두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되었는가?
평가과정의 충실성	② 당초 평가계획대로 평가가 충실히 수행되었는가? ③ 평가과정에 있어서 전문성·객관성은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가?
평가내용의 충실성	④ 정책목표(효과)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⑤ 정책목표나 집행 등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점을 적시하고 대응하였는가?
평가결과의 환류	⑥ 정부업무 심사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1999년 업무계획에의 반영 및 개선조치 이행실태 ⑦ 1999년도 자체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정부운영혁신노력

정부운영혁신노력은 목표관리제 운영,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행정정보공개 확대·부패척결노력, 경영혁신노력 등 평가대상별로 각각 계량지표를 구성하였다.

<표 2-49> 목표관리제 운영 (1999년)

평 가 지 표	평 가 기 준
추진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계획의 수립에 있어 외부전문가, 내부직원의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였는지의 여부 ○추진계획의 내용이 적용대상, 목표설정 및 평가방법 등 기본적 준수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
추진과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관리 종합목록 작성, 국장단 회의에서의 목표조정, 업무실적관리 등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추진노력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관리제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표 2-50> 행정서비스 현장 운영

평 가 지 표	평 가 기 준
추진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제정을 위한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여부 ○현장내용이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추진과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현장 실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여부 ○서비스현장에 대한 대국민 홍보실적 등
추진노력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에 대한 자체교육 실적

<표 2-51> 행정정보공개 청구제도 운영

평가 지표	평가 기준
추진과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개 심의회가 적절히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공개에 관한 의의신청시 심의회 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의 여부 ○ 행정정보공개 청구후 법적기일(15일)에 맞게 공개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추진노력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개 청구제도에 관한 직원교육
추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개 청구운영전반에 대한 자체점검·평가 추진실적

<표 2-52> Internet 등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

평가 지표	평가 기준
추진과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정책 및 사업 등을 Internet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수시로 Up-date하고 있는지의 여부
추진노력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 국별 참여율

<표 2-53> 부패척결 노력

평가 항목	평가 지표
공직기강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도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추진지침」에 따른 자체실천계획 내용의 충실성 ○ 잔존부조리 척결대책 및 취약분야 환경·제도 개선 내용 ○ 과다·중복감사 방지노력 등 행정감사운영개선 실적 ○ 공직사회 활성화 및 공직경쟁력 제고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부패방지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 추진에 대한 기관장의 실천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주관과제 및 실천과제에 대한 관심도 - 소속부서 직원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실행독려 ○ 반부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관련 직장교육, 대민 접촉부서 공무원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교육실적(교과목 편성의뢰 및 특강실시 실적) 등 - 금품·향응 거절(반환) 요령 제정, 운영 등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실적

(4) 분야별 평가결과

1) 자체평가수행노력 평가

부·처·청·위원회가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대상과제선정, 평가과정, 평가내용 측면에서 상위평가를 실시

- 자체평가 대상과제 : 총 521개

가) 상반기 평가결과

- 각 기관은 자체평가 수행을 위하여 평가방법을 체계화하고 평가 조직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개선 등 환류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평가대상과제에 대한 정책형성·집행·성과의 추진단계별 평가 접근을 실시하는 등 평가방법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함
 - 주요업무시행계획상 목표의 계량화 및 정책효과를 분석한 부처
 - 농림부, 철도청
 - 책무성과 책임성 측정을 위해 부서별 순위평가 제도를 도입한 곳
 - 국가보훈처, 조달청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작업,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평가조직을 마련하고, 민간위원의 평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 농림부
 - 민간위원이 직접 평가
 - 교육부, 정보통신부
 - 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토의 및 전체위원회 상정 등 단계별로 운영
 -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 1998년도 심사평가결과 지적사항을 1999년 주요업무계획 등에 반영하거나 주요사항으로 관리하여 개선해 나가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으며, 주요정책과제·특정 과제 등 총225개 지적사항에 대해 99%가 정상추진 또는 조치완료
- 자체평가 체계가 정착단계에 있으나, 자체평가내용의 질적측면은 보안·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제기됨
 - 평가결과 선정에 있어서 각 기관은 주요시책 및 사업을 업무의 중요성, 실·국별 업무비중 등을 고려하고, 자체심사평가 문제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중요문제를 자체평가 대상에서 제외
 - 21세기 프론티어 연구사업등 7개(과학기술부),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도입등 3개(식품의약품안전청), 소규모 기업지원 강화 1개(중소기업청)
- 평가과정에 있어서 각 기관은 자체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개최실적이 대부분 1~2회에 불과하고, 민간 위원의 역할도 관련자료수집·분석, 현지확인·점검보다는 제출된 평가결과의 자문기능에 그침
 - 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위원회를 늦게 구성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 불가
 - 통일부 : 평가결과 심의를 위한 회의(6. 26)는 서면평가로 바뀜
- 일부 기관의 경우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여 전문성·객관성 제고가 다소 미흡할 경향 우려
 -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이 비교적 낮은 부처의 경우(예시 : 30%이하) : 외교통상부·법무부 등 2개부, 통계청·검찰청·병무청·기상청 등 4개청
- 심사평가지침상의 공통지표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부처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간 비교평가가 곤란
 - 문화관광부 : 자체기준(9개) 적용

- 평가내용에 있어서 각 기관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목표를 구현화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사업추진배경 및 추진상황을 기술하는 등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함
 - 추진배경·상황기술 : 대학원 교육 연구제도(교육부), 폐기물 부적정 처리 근절(환경부), 민생치안 안정(경찰청) 등
 - 단답식 기술 : 재정관리제도 효율화(재정경제부), 건설산업구조 조정(건설교통부)

- 평가내용에 있어서도 잘된점 위주로 기술하거나, 미흡한 점에 있어서도 예산, 인력부족, 관계부처 협의지연 등 추진과정상의 애로점이나 형식적인 문제점을 기술하는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가 미흡
 - 잘된점 위주로 기술 : 보건복지부(7개 과제), 건설교통부(1개 과제)등
 -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 : 대형유통업체 공정거래 조사(공정거래위원회), 기상행정 경쟁력 강화(기상청)등
 - 관계부처 협조·법령지연 : 조세체계 간소화(재정경제부), 재외동포 권익보호(외교통상부), 공무원 사이버 교육센터설립(행정자치부) 등

- 1999년도 기관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된 기획예산처, 중소기업청, 조달청, 특허청 등에서는 본질적 문제점을 적시하지 못함
 - 자체평가 수행노력에 대한 평가지표인 대상과제선정의 적절성, 평가과정, 평가내용의 충실성 측면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 17개부 중에서
 -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 : 농림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 미흡한 기관 : 통일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 부·청·위원회(금년도 기관평가대상기관에 포함) 중에서
 -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 : 철도청, 금융감독위원회, 법제처 등
 - 미흡한 기관은 기상청, 특허청, 통계청 등

나) 하반기 평가결과

각 기관은 평가방법의 체계화, 평가의 조직체계 구축,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개선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다.

-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정책형성·집행·성과의 추진단계별 평가지표를 적용함
 - 정책목표 및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 : 농림부·국세청·철도청
-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 :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철도청
 - 장관 등 기관장이 직접 평가보고회 개최 : 정보통신부·경찰청
- 심사평가결과 지적사항을 주요업무계획 등에 반영하거나 주요사항으로 관리하여 개선
 - 1998년 및 1999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총 429개 지적사항중 403개(93.9%) 정상추진 또는 조치완료
- 자체평가 체계는 정착단계에 있으나, 자체평가의 질적수준 향상 및 내실화를 위해서 보완·개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점 제기
 - 자체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민간인이 아니거나 부처 공무원이 다수 참여(위원장이 공무원인 부처 : 33개)하는 등으로 인해 위원회 기능수행이 적절치 못할 우려가 내재되어 있으며, 민간위원의 역할도 현지확인·점검을 통한 실제 평가 활동의 수행보다는, 대부분 제출된 평가결과의 토의·자문기능에 의존
 - 각 기관은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효과 등 성과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구체화시키지 못함
 - 정책성과를 충실히 분석한 기관 :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상청, 철도청 등
 - 정책성과 분석이 미흡한 기관 :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통계청 등

-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정책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
 - 본질적 문제점을 충실히 제시한 기관 : 교육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
 - 본질적 문제점 제시가 미흡한 기관 : 통일부, 관세청 등
- 평가결과 지적사항과 관련, 일부기관은 지적사항의 이행조치가 부진하거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지 못한 경우
 - 1998년 및 1999년 상반기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이 부진한 기관 : 통일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 자체평가 수행노력을 종합하여 평정한 결과
 - 부·처·위원회(23개 기관) 중에서
 -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교육부, 농림부 등
 - 미흡한 기관은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 청단위 기관(16개 기관) 중에서
 -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기상청, 국세청
 - 미흡한 기관은 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 개선방향
 - 부처 자체평가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등 심의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효과분석 위주의 평가체제로 더욱 발전할 필요

2) 정부운영혁신노력 평가

가) 상반기 평가결과

정부운영혁신노력 평가 분야인 목표관리제 운영, 행정서비스 현장 운영, 행정정보공개, 부패척결노력 및 경영혁신노력 등에 대한 상반기 평가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① 목표관리제 운영 평가결과

공직사회내 경쟁촉진 및 엄정한 성과관리를 위하여 1998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 행정자치부의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조직단위별로 목표설정
- 부처별 자체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등 목표관리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
 -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 확대: 외교통상부, 국방부
 - 5급 이하로 확대: 행정자치부, 국세청, 철도청, 통계청, 기상청
 - 외부전문가들과의 토의를 통해 목표설정: 기상청
 - 부처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교육부, 법제처, 관세청, 철도청
- 행정자치부의 목표관리제 기본지침에 평가지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부처가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혼선이 초래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상당수 부처가 1999. 6월에야 개인목표설정을 완료하는 등 추진이 지연되고, 설정목표의 구체성 미흡 등으로 제도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이 발생
 - 시행계획 수립후 목표설정 단계: 재정경제부 등 10개 기관
 - 목표설정후 운영단계: 행정자치부 등 26개 기관
- 목표관리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후, 200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②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평가결과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 내용 및 이행기준 등을 규정하는 “행정서비스 현장제도”를 도입하였다.

- 1998년 정보통신부 등 9개 기관 시범운영, 나머지 26개 기관은 1999년 6월 ~ 7월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공포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서비스헌장을 미제정함
- 시범운영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헌장공포에 따른 자체교육 강화,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비교적 내실있게 운영됨
 - 철도고객서비스 : “고객만족경영대상” 수상(한국능률협회 주관)
 - 우편서비스헌장 : 특급우편을 약속시간내에 배달하지 못하는 경우 우편요금을 반환하는 “서비스리콜제”등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명시 및 실천
- 집행기관이 아닌 중앙부처의 경우 부처특성에 맞는 헌장보다는 일반적·선언적 성격의 헌장을 제정하였으며, 구체성이 다소 결여됨
 - 일반적 헌장보다는 건설교통부의 경우 주택건축 관련 헌장, 외교통상부의 경우 여권업무관련 헌장제정이 바람직
- 대부분의 부처가 헌장제정기간 촉박 등의 이유로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의 자문만을 받고 고객 의견수렴은 미흡한 편이었으며,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해당기관의 헌장제정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음
 -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직원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

③ 행정정보 공개 평가결과

각 부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선, 주요정책 및 사업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등 행정정보 공개 확대에 노력하였다.

- 1998년 전 중앙행정기관이 홈페이지 개설
 - 행정정보공개 청구제도의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정(1998. 1)이후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건수가 증가하는

- 등 공개행정을 위한 제도로 정착(1998년 41% 증가)
- 인터넷 홈페이지운영에 있어 일부 기관은 일방 통행적 자료 제공에 치중하여, 국민의 의견제시가 어렵거나 정책공개가 특정부서에 편중
 - 홈페이지 정책소개 양호부처 :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양호부처 : 교육부,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 일부부처는 행정정보공개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공개편람 및 주요문서목록을 비치하지 않거나 문서목록의 충실성이 미흡함
 - 대부분의 부처가 민원인용 열람좌석 및 컴퓨터 단말기 등 편의시설 설치 미흡
 - 기관장의 관심 제고, 정보제공에 대한 직원교육 강화 등 적극적인 추진노력을 경주할 필요

④ 부패척결노력 평가결과

부정부패 및 관행적 부조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하여 부처별로 다각적인 제도개선노력을 경주하였다.

- 부패고리의 사전차단 대책마련
 - 경찰자체사정 첩보처리규칙 제정(경찰청)
 - 부서별 『부정방지제도 개선반』 설치운영(노동부)
- 공직자 자정 노력 강화
 - 윤리헌장, 준수사항 제정(법무부, 농림부, 국세청)
 - 복무기강확립 기관평가제 실시(검찰청)
 - 우수경찰관서 선발시 자정노력을 평가항목으로 선정(경찰청)
- 부서별 취약부분의 집중관리
 - 교수임용, 예·체능계 대입부조리예방 대책(교육부)
 - 징병검사제도 개선 등 병무비리 방지대책(병무청)

-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각 부처별로 자체감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1998년에 비해 단속활동 및 적발 실적이 크게 향상(13% 증가)됨
 - 1998년 대비 자체감찰활동 실적이 우수한 기관 : 환경부, 병무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 비현실적 규제 및 불명확한 집행기준 등 부패유발 행정환경이 상존하고, 인허가·계약관련 부조리 등이 근절되지 않는 등 국민들이 느끼는 성과는 미흡함
 - 각 부처 자체감찰활동에 있어서는 단속실적에 비해 조치내용이 주의·경고 등에 그치는 등 다소 미온적
 - 총 적발실적중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는 7.5%에 그침
 - 하반기 확정된 부패방지종합대책에 따라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및 부정비위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제고할 필요

⑤ 경영혁신노력 평가결과

각 기관은 행정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인사, 조직, 정보화, 민원 등 관리시스템 및 행정서비스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을 추진하였다.

- 인사분야에서는 연공서열 위주 인사관행 탈피 등을 위해 성과·능력위주 인사관리시스템 개발에 노력
 - 우수근무자에 대한 인사 가점제 도입(교육부, 보건복지부)

- 조직분야에 있어서는 행정수요 변경에 따른 조직의 탄력적 운영 및 기능·고객위주 조직체계로 전환
 - “군사혁신단”등 6개 task force운영(국방부), 세목별 조직체계에서 기능별 조직체계로 전환(국세청)

- 민원서비스분야는 민원절차 간소화, 주민만족도 조사 등 민원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 민원인을 위한 이동장관실 운영(농림부), 면회예약제도 등 제 소자 면회관련 서비스 개선(법무부)
- 정보화분야는 관련분야 DB 및 지식기반 행정체계 구축에 노력
 - 업무과정에서의 지식·노하우 등을 DB로 구축 활용하는 등의 「종합지식경영시스템」 개발(공정거래위원회)
- 재정(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 정책홍보(정례브리핑 제도 도입 등)분야 등은 전반적으로 각 부처의 혁신노력이 미흡
 - 각 부처 경영혁신 노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사례를 전 부처로 확산시킬 필요

나) 하반기 평가결과

① 목표관리제 운영 평가결과

각 부처는 금년에 도입한 목표관리제의 운영을 위하여 자체 시행계획 수립 및 개인별 목표 등을 설정하였다.

- 개인별 성과측정지표 개발 : 법제처 등 14개 부처
 - 기관장주재 심의위원회(9회)에서 목표검토·조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 객관적 목표 설정, 성과측정지표 마련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 기관에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에 차질이 예상
- 상당수 부처가 구체적 성과측정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금년도 보직변경자에 대한 평가를 유보
 - 합리적 성과측정지표 모델 및 측정방법 등이 포함된 보완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

②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평가결과

- 1999년부터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전 부처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대민접촉이 많은 기관에서는 고객위주 행정서비스문화의 기틀이 마련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나타냄
 - 헌장에 “특급우편 서비스 리콜제”등 서비스 보상방안 규정(정보통신부)
 - 고객만족도조사 및 열차 모니터링제 연4회 실시 (철도청)
 - 대민업무가 적은 대부분의 중앙부처는 헌장 제정시 고객 여려수렴이 미흡하였고, 구체성이 없는 선언적 성격의 내용을 제정하였으며, 홍보가 부족하여 다수 고객들이 헌장제정 사실을 모르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서비스헌장이 미흡한 부처는 내용을 보완하고, 헌장 이행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및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③ 행정정보 공개 평가결과

- 1998년 정보공개청구제도의 법제화 이후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각부처가 인터넷 등을 통한 정책·사업 공개를 확대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됨
 - 정보공개청구건수(37개 중앙행정기관) : 1998년 418건 → 1999년 1,320건(215%증가, 10월말 기준)
 - 재정경제부 등 5개 기관은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가 가능
 - 각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률 : 일평균 9,746회
 - 일부 부처에서는 아직도 정보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나, 정보공개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정보공개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제기 28건중 인용 8건, 기각 8건, 취하·각하 12건 (1998년)
 -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전 부처로 확산시키고, 정보공개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

④ 부패척결노력 평가결과

- 각 부처는 1999년 8월에 확정된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찰노력을 강화함
 - 비위공직자 조치실적 : 1998년 4,982명 → 1999년 5,260명 (5.6%증가, 9월말)
 - 각 부처 기관장의 공직기강 확립의지 부족 등으로 자체감찰활동이 다소 온정주의적이었으며, 공직사회의 부패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미흡하여 공직기강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해
 - 부패방지 종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감사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⑤ 경영혁신노력 평가결과

- 공통추진과제 이외에도 일부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 달성함
 - 기능별 조직체계 전환(국세청) : 세목별 조직을 납세서비스, 징세 등 기능별로 개편, 세무서 감축(134 → 99개) 및 납세자 보호 담당관 신설
 - 이동장관실 운영(농림부) : 80회에 걸쳐 4500명의 농업인 면담
 - 소년원생 외국어·컴퓨터 교육(법무부) : 12개 소년원 어학실 설치 등
 - 공정거래 전자평가위원회 제도운영(공정거래위) : 인터넷 및 전자 메일을 통해 전문가(100명) 여론수렴 및 주요업무 평가에 반영
 - 기관장 의지 및 각 기관의 자율성 부족 등으로 개혁적이고 참신한 경영혁신 사례는 많지 않음
 - 우수경영혁신 사례를 전 부처에 확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 목표관리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행정정보공개 확대, 부패척결노력, 기타 경영혁신노력등을 종합하여 평정한 결과
 - 부·처·위원회(23개 기관) 중에서
 -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국방부, 정보통신부 등
 - 미흡한 기관은 국정홍보처, 통일부 등
 - 청단위 기관(16개 기관) 중에서
 -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국세청, 조달청 등
 - 미흡한 기관은 중소기업청, 문화재청 등
- ※ 하반기 자체평가 수행노력과 정부운영 혁신노력을 종합하여 평정한 결과
 - 부·처·위원회(23개 기관)중
 - 농림부, 노동부, 교육부 등이 우수
 - 청단위 기관(16개 기관)중
 - 기상청, 국세청, 철도청 등이 우수

4. 특정과제 평가

1999년에는 「사회취약계층 복지시책 평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평가」 등 6개 과제를 특정과제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72개의 개선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표 2-54> 과제별 주요 개선조치사항 (1999년)

과제명	주요 개선조치사항	비고
사회취약계층 복지시책 평가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생계비의 정확한 계측조사를 바탕으로 한 생보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 노숙장기화 방지 및 쉼터 입소기피 노숙자 관리대책 수립 ○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위한 후견인 제도 강화 등 총 8개 개선사항 	1999.1.29 국무총리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평가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시책의 이행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 재정상의 인센티브제도 도입 방안 강구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의 활성화 등 총 13개 개선사항 	1999.1.29 국무총리 보고

과제명	주요 개선조치사항	비고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시책 평가 (농림부, 식약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안전관리대책 협의회 구성, 운영 ○국민 다소비 수입식품 검사강화방안 마련 ○식품관련 안전사고 발생시의 상황별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총 17개 개선사항 	1999. 6.11 합동보고회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효성 평가 (보건복지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장애인 범주 확대계획 수립 및 추진 ○민간기업 및 공공기업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마련 등 총 18개 개선사항 	1999. 6.29 합동보고회
일자리창출계획의 실효성 평가 (노동부, 재정경제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적 일자리 창출계획의 조정 ○중기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일자리 창출관련 기본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5개 개선사항 	1999. 6.29 합동보고회
화재예방·진화·구조체계 구축실태 평가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소방인력 전문화 등 총 11개 개선사항 	1999.12.16 안전관리기획단 통보

5.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는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로 이루어졌다.

(1)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1) 조사목적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정부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의에 입각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도모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는 평가대상인 40개 중앙행정기관의 66개 주요정책 과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의 20세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다단비례확률 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3,600명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조사방법

조사대상에 대하여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외부전문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였다.

- 조사항목
 - 국민의견수렴 정도
 - 정책의 적절성
 - 정책의 추진상황
 - 정책의 효과성
 - 개별정책에 대한 만족도

4점 척도의 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확정된 평가항목의 3개 차원이 정책의 종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도출하여 이를 차원별 가중치로 삼아 각 정책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4) 조사결과 분석내용 및 활용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의 전체 정책만족도
- 경제·비경제 분야별 만족도
- 주요정책과제별 만족도
- 정부의 전체 정책만족도와 정책의 3개 차원(적절성, 효과성, 추진의지)별 만족도와의 관계분석 등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결과는 개별과제의 정책성과 부분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였다.

(2)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1) 조사목적

각 부처 민원행정 업무의 처리방식 및 절차, 공무원의 태도,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여 기관간 및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평가함으로써 각 기관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민원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추진체계

설문개발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가 공동 참여하고, 조사결과를 공동활용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기관평가에 반영하였으며, 행정자치부는 조사결과 지적된 문제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민원행정 제도개선에 반영하였다.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대행은 현대리서치에서 수행하였다.

3) 조사대상

조사대상기관은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조사대상의 고객범위는 일반국민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을 이용한 개인 및 집단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평가대상 40개기관중 여성특위, 국정홍보처 제외

4) 조사방법

조사는 조사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1999년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기관인 38개 중앙행정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모집단(민

원접수대장에 기록된 민원인)으로 규정하고 그로부터 표본을 설정하였고,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본수를 확대하고(1998년 60개 → 100개) 조사대상기간을 연장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모집단에 대한 기관별 할당과 체계적 무작위 추출 기법을 활용하였다.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면접원이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5) 조사항목

1999년도 만족도 조사항목은 1998년도에 실시한 7개 차원 33개 항목이 구성차원 및 설문항목이 너무 많고 다소 중복된 점이 있어 부처간 및 연도별 비교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차별성이 없는 구성차원 및 설문항목을 통합하여 6개 차원 26개 항목으로 단순화하였다.

<표 2-55>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차원별 세부평가항목 (1999년)

차 원	세 부 질 문 항 목
접 근 용 이 성	①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 ② 해당 사무실 혹은 창구에 대한 안내 ③ 전화 혹은 창구 문의시 공무원의 안내태도 ④ 담당공무원과 면담 혹은 전화통화 편의성
편 리 성	① 행정서비스 신청시 서식과 신청절차의 간편성 ② 업무처리 과정상 관련 창구 및 부서의 수 ③ 구비해야할 서류의 수량 ④ 특정 민원해소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 ⑤ 민원신청방법의 다양성(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이용가능성)
신 속/ 정 확 성	①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즉시성 ② 민원처리의 정확성 ③ 담당공무원의 일처리 능숙도 ④ 민원서비스의 처리시간 ⑤ 민원처리 기간통보 및 준수여부

차 원	세 부 질 문 항 목
쾌 적 성	① 행정기관내 혹은 근처에 위치한 주차공간 ② 휴식공간(실외포함) ③ 대기실내 편의 및 연락시설 ④ 공간의 청결도
대 환 류 성	① 문의나 요구에 대한 적극적 수용태도 ② 민원해결시 이유 설명 ③ 이의제시시 신속한 시정 혹은 해명여부 ④ 민원처리의 진행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⑤ 정보의 공개여부
형 평 성	① 민원 처리결과의 합당성 ② 업무처리의 공평성 ③ 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
※상대적 비교	① 광역자치단체 서비스수준과의 비교 ② 민간기업 서비스수준과의 비교

6) 조사결과

· 종합 만족도

-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민원인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61.0점(100점 만점)으로서 “약간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국민의 정부 첫해인 1998년도(54.9점)에 비해 대폭상승(+6.1)한 것으로써, 각 기관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한 결과이며, 특히 1998년에 비해 접근용이성(+8.2)과 신속·정확성(+6.3) 측면의 만족도가 가장 많이 상승

<표 2-56> 만족도 향상 추이

(단위 : 점)

	1998년	1999년	향상도
·접근용이성	56.7	64.9	8.2
·편 리 성	58.0	63.5	5.5
·신속·정확성	53.4	59.7	6.3
·쾌 적 성	62.6	62.7	0.1
·대응·환류성	53.6	57.1	3.5
·형 평 성	61.5	65.7	4.2
종합만족도	54.9	61.0	6.1

- 각 부처별 만족도
 - 부·처·위원회(22개 기관)중 만족도가 높은 기관은
 - 공정거래위원회(74.6점), 산업자원부(71.8점), 과학기술부(71.6점) 등이며
 - 청단위 기관(16개 기관)중 만족도가 높은 기관은
 - 기상청(85.5점), 해양경찰청(78.2점), 특허청(76.4점) 등이고,
 - 1998년 대비 만족도가 가장 많이 향상된 기관은
 - 법제처(+25.4), 과학기술부(+20.1), 특허청(+19.1) 등이었다.

II.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평가의 개요 및 특징

(1) 시범평가 실시

국정지표에 부합하고 중앙과 지방이 보편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되는 주요시책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시행 최초 년도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과제를 광역자치단체에 한하여 시범 실시하였다.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조정실의 자치단체평가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시책 및 기본역량분야에 대한 평가영역 등 지표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평가단 및 평가반을 구성·운영하고, 평가결과는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하반기 정부업무심사평가 결과에 반영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 평가단 구성·운영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무적인 평가작업을 수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평가단 구성 현황(14명)
 - 행정자치부 차관(단장),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민방위 재난통제본부장, 자치행정국장, 지방재정세재국장, 민방위방재국장, 소방국장, 행정정보화계획관
 - 지방행정연구원장, 경기대교수 김익식, 외국어대교수 김인철, 서울대교수 이승중, 중앙대 행정대학원장 황운원

또한, 평가단을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24명의 평가실시반을 구성·운영하였다.

2. 평가의 주요내용

(1) 평가대상 및 분야

광역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를 평가대상기관으로 하고, 1999년 상반기에 평가기법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평가를 시행하였다.

평가분야는 「국정과제」, 「1999년 정부 및 시·도 주요업무계획」내용 중 전체 시·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각종시책을 대상으로 주요시책 및 기본역량 평가후보과제를 선정하고, 평가의 목적·취지, 평가요소로서의 적합성, 평가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시책분야(3개부문 9개영역), 기본역량분야(2개부문 4개영역) 총 21개 시책을 최종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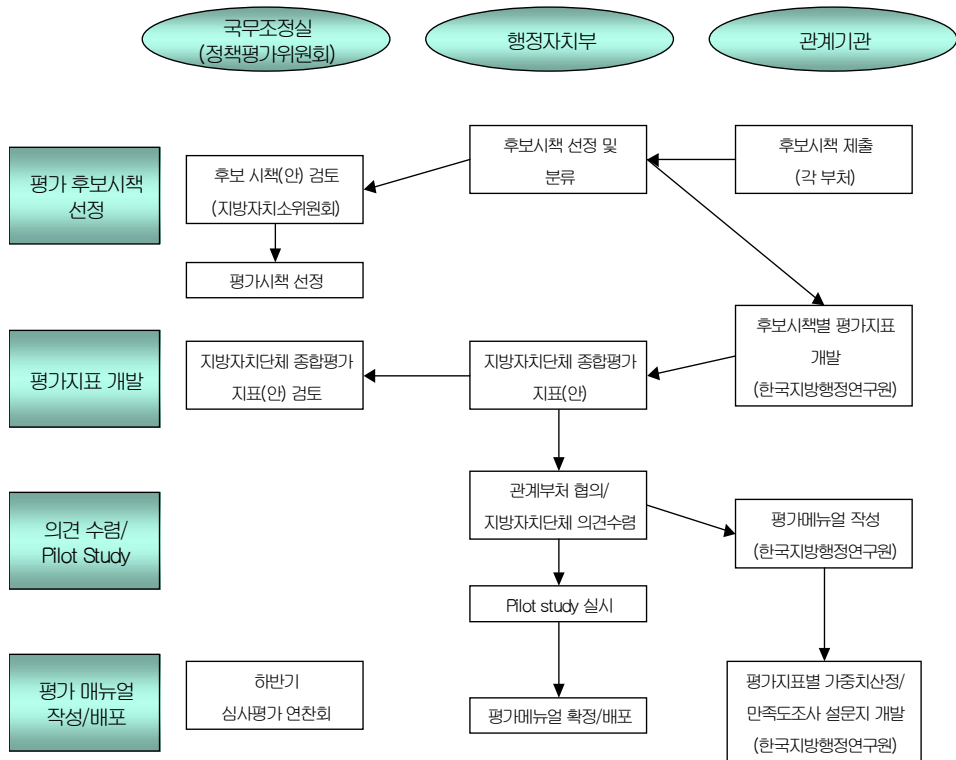
- 평가분야
 - 주요시책 분야(3개 부문)
 - 지방공공혁신, 지역경제활성화, 주민안전관리
 - 기본역량 분야(2개 부문)
 - 재정 역량, 정보화 역량

(2) 평가도구의 개발

평가지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후보시책을 기준으로 개발하였

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Pilot study(모의실험) 실시하였으며, 정책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66개 세부지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그림 2-5>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도구개발단계 (1999년)



※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주요시책분야(지방공공혁신부문, 지역경제활성화부문, 주민안전관리부문 등), 기본역량분야(재정역량부문, 정보화역량부문 등) 등 2개분야 5개 부문으로 구분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는 참고자료(표 2-1, 2-2, 2-3, 2-4, 2-5)

(3) 평가의 실행

지방자치단체에 평가매뉴얼 및 세부시행지침을 9월초에 시달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배포된 평가매뉴얼에 의거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면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함. 각 시·도의 자체평가는 9월~10월의 기간동안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기초로 10월에 서면평가를 실시하였다.

서면평가는 대학교수, 전문가(연구원),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평가반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지역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반(市班)과 도반(道班)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서면평가 결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개 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4)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및 활용

평가결과는 수집된 정보의 요약 및 분석, 평가보고서 및 수범사례 작성, 평가결과 보고 및 발표 등과 함께 평가결과 및 우수사례를 시·도 및 관련기관에 배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각 시·도별 우수사례를 담은 자료집은 각 시·도에 배포하여 벤치마킹에 활용하였다.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시책개선계획을 마련하여 다음 해의 사업추진시 반영토록 조치하였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시책별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게 하였다.

1999년도의 지방자치단체평가는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기관평가이기 때문에 종합순위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는 실시하지 않았다.

<표 2-57>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영역별 우수단체 (1999년)

구 분		시	도
지방공공혁신부문		대전, 부산, 서울	경남, 전북, 전남
요약	조직인력 정비·강축	서울, 대전, 광주	경남, 전남, 제주
	행정관리혁신	대전, 광주, 부산	전남, 충남, 전북
	민원행정체제 개선	울산, 부산, 인천	전남, 전북, 충북
	지방재정운영혁신	부산, 대전, 서울	제주, 경남, 경북

구 분		시	도
지역경제 활성화부문		서울, 부산, 인천	경남, 경기, 경북
포 요	지방기업육성지원	서울, 부산, 인천	경남, 경기, 전남
	환경친화적 경제운영	대구, 울산, 인천	경남, 전북, 충북
	지역실업문제 해소	부산, 서울, 광주	전남, 경북, 충남·경남 *충남, 경남은 동률
주민안전관리부문		광주, 부산	강원, 충북
포 요	재난·재해관리	광주, 부산	강원, 전남
	소방관리	광주, 서울	전북, 충북
지방재정역량 부문		울산, 서울	경남, 경기
포 요	재정여건	서울, 인천	경기, 경남
	재정운영노력	울산, 부산	제주, 경남
정보화역량 부문		대구, 서울	충북, 충남
포 요	정보화여건	부산, 대구	경남, 충남
	정보화능력 개선	대전, 서울	충북, 전북

Ⅲ.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1. 보고대회 개최

상반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를 1999년 7월 28일 정부세종로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국무위원,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등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실시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과제 평가 및 정책추진역량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하반기 평가결과는 보고회를 개최하지 않고, 12월 23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하였다.

2. 결과조치

1999년 정부업무심사평가결과는 1999년 12월 29일자로 각 기관에 송부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 개선토록하고 2000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였다.

- 1999년도 평가결과 조치사항 : 430건
 - 주요정책과제 관련 : 258건
 - 자체평가수행노력 관련 : 77건
 - 정부운영혁신노력 관련 : 95건

<참고자료>

- 주요시책분야(3개부문, 9영역, 15시책, 36지표, 50세부지표)

<표 2-58> 1999년 지방공공혁신부문(4영역, 6시책, 12지표, 16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부지표
조직·인력의 정비 및 감축	조직·기능 정비	조직·인력의 정비성과	- 기구정비건수 - 인력감축율
		민간위탁 추진노력	- 민간위탁 대상선정의 적정성
행정 관리의 혁신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실천노력	- 정책자료집 발간실적
	규제정비	규제정비노력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실적 - 규제신설시 심의실적
		규제정비추진성과	- 규제정비건수
민원행정 체제의 개선	민원행정 절차개선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의 홍보노력	-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의 홍보건수
		서비스현장 실천노력	- 서비스현장 실천실적
		민원처리속도	- 팩스민원처리 신속도 - 재택전자민원처리 신속도
		민원행정 절차개선 성과	- 팩스·재택전자민원 처리 비중
	주민등록 일제갱신	주민등록일제갱신 홍보 노력	- 홍보건수
		추진성과	- 계획기간별 화상자료 입력실적
지방재정 운영혁신	예산 절감	경비절감도	- 선심성·행사성 경비 절감율 - 예산절감 특수시책 개발

<표 2-59> 1999년 지역경제활성화부문(3영역, 4시책, 17지표, 22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부지표
지방기업 육성지원	기업애로 해소지원	자금지원수단의 적정성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방비 확보율 -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실적
		기술, 판로지원수단의 적정성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실적 - 산학연 협력건수
		애로해소 지원성과	- 애로해소 실적
	투자유치	전문가의견 반영도	- 투자유치관련 회의 건수
		투자기반 조성노력	- 투자지역 지정실적
		투자유치의 적극성	- 홍보 실적
		투자유치 성과	- 투자유치실적
	환경 친화적 경제 운영	자원·환경 관리	환경투자수준
관리감독 노력			- 지도단속건수
목표달성도			- 자원재활용율
지역 실업 문제 해소	공공근로 사업	선발기준의 적정성	- 공공근로자중 30-55세 비율 - 세대주 선발인원비율
		선발배치의 효율성	- 공공근로자중 포기자 비율
		사업선정의 합리성	- 주민의견수렴 실적
		재원확보노력	- 지방비 부담액 확보율
		관리감독 충실도	- 사업장 대비 관리요원수 - 참여인원 대비 사고 발생비율
		목표달성도	- 계획인원대비 선발· 투입비율
		사업의 효과	- 특수(우수)사업의 발굴 실적

<표 2-60> 1999년 주민안전관리부문(2영역, 5시책, 7지표, 12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부지표
재난·재해관리	재난관리	재난관리기반조성노력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재난관리노력	- 재난대비 점검실적 -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실적
	재해관리	재해관리기반조성노력	- 재해대책기금 확보율 - 재해위험지구 정비실적 - 재해취약시설 점검실적
		수해복구	- 지방비 확보비율 - 복구사업추진 실적
소방관리	화재예방	화재예방활동의 적극성	- 소방사범 단속건수 - 소방교육실적
	구조구급	구조구급의 대응성	- 119 수혜자수
	소방력 보강	소방력 확충노력	- 소방력 기준대비 보유율

· 기본역량분야(2개부문, 4영역, 6시책, 13지표, 16세부지표)

<표 2-61> 1999년 재정역량부문(2영역, 3시책, 6지표, 6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부지표
재정여건	재정력	재정력수준	- 재정력 지수
		재정자주성	- 재정자립도
	재정구조	재정탄력성	- 투자비 비율
		재정안정성	- 지방채 상환비 비율
재정운용	재원관리	세입확충노력	- 자체수입증가율
		세출감소노력	- 경상경비절감율

<표 2-62> 1999년 정보화역량부문(2영역, 3시책, 7지표, 10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부지표
정보화여건	정보인프라	정보화설비 수준	- 공무원 1인당 PC보급율 - E-mail 보급율
		정보화조직·인력수준	- CIO의 운영실적 - 정보화 공인자격증 보유율
	정보내부활용	정보시스템활용도	- 전자결재 활용율 - 인터넷활용율
		정보공동이용도	- 게시판 게시건수
정보화능력개선	정보화 촉진	정보화마인드	-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능력개발실적	- 공무원 1인당 교육시간
		홍보실적	- 정보화 행사개최실적

제12절 2000년도 평가

I. 중앙행정기관 평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요시책등의 합동평가를 실시하였다.

1. 평가의 개요

(1) 개요 및 특징

2000년도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40개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정책과제, 기관운영 혁신노력,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등 3개 평가영역을 설정하여 평가하였고 특히 국민의 정부 국정1기의 마무리로서 3년간 성과와 반성을 포함하여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대통령 주제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2) 정책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1기 정책평가위원(1998년~1999년) 임기만료에 따라 제2기 정책평가위원회를 재구성(2000.2.8)하였다.

국민입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정부부문에 기업가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단체, 여성, 기업가 등으로 확대하였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29명으로써 학계 12명, 연구기관 4명, 민간단체 5명, 언론계 1명, 법조계 1명, 기업 6명(여성위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2-63> 제2기 정책평가위원 구성현황 (2000년)

구분	성명	소속 및 경력	비고
위원장	이세중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前) 정부조직개편위 부위원장	
평가 제도 (3명)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나기산	국방대학원 교수 (前)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임종근	한국생산성본부컨설팅사업단장 (前)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평가위원	국정홍보처
경제 I (7명)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수석 논설위원 문화비전 21위원회 위원	재정부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前) 한국재정학회 회장	기획예산처
	이양자	여성인력개발원 이사 한국세무사회 제도개선추진위원	국제청 관세청
	조왕하	코오롱그룹 부회장 (前) 동양종합금융 부회장	금감위
	김기혁	아더앤더슨코리아 전무이사 (前) 안진회계법인 마케팅전략본부 전무이사	조달청 통계청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前)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노동부
	신광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공정위
경제 II (7명)	문희화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前) 산업연구원 원장	산자부 중기청
	심갑보	삼익공업(주)부회장 (前) 삼익물산 대표	특허청 산림청
	홍성원	시스코시스템코리아 사장 (前) KAIST설계공학과 교수	정통부
	박호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과학연구부 부장	과기부 기상청
	장원석	WTO범국민연대 집행위원장 단국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농림부 농진청
	조경원	(주)유신코퍼레이션 부회장 (前)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	건교부 철도청
	이진애	인제대 환경시스템학부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해수부 해경청

구분	성명	소속 및 경력	비고
사회 문화 (5명)	유승흠	연세대 의대교수 (前)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복지부 식약청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보훈처 여성특위
	문국현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이사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환경부
	홍사광	UN.NGO.IAEWP(세계평화국제 교육연합)평화대사 동서문화협회 회장	문광부 문화재청
	최운실	아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前)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연구부 부장	교육부
일반 행정 (6명)	연하청	명지대 법정대학교 교수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통일부
	송대성	세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前) 공군준장 예편	국방부 병무청
	김일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고려대 법대교수	법무부 검찰청
	윤영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동아일보 2000년 자문위원회	외통부
	김덕현	법무법인호민 변호사 (前)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법제처 경찰청
(지방자치)	김현구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前) 성균관대 양현관장	행자부

2. 주요정책과제 평가

(1) 평가과제

2000년도 국정운영 목표(국정지표)에 부합하는 과제로서 각 부처별로 중요도가 높고 그 부처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로서 특히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정보화와 지식사회 관련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정책평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62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2-64> 부처별 주요정책과제 (2000년)

부 처 명	주 요 정 책 과 제
< 部(17)> 재정경제부	1.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및 성장잠재력 확충 2. 세제의 공정성·효율성 제고와 재정의 효율적 운용
통 일 부	1.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방안 추진 2. 통일기반 확충을 위한 국민적 역량강화
외교통상부	1.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외교강화 2. 국제협력관계의 다변화에 능동적 대처
법 무 부 (*)	1. 준법풍토 확립과 국가기강 쇄신 추진 2. 교정·보호행정의 혁신 3. 부정부패의 지속적 척결
국 방 부	1. 미래전 대비 국방정보화 추진 2. 필승의 정신무장 강화
행정자치부	1. 정부개혁의 차질없는 완수 2. 전자정부 조기 구축 3.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선진지방자치 정착
교 육 부	1. 국민 기초학력의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2.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체제 개편
과학기술부	1. 핵심·원천기술의 지속적 개발 및 기초연구 활성화 2.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및 평화적 이용 확대
문화관광부	1. 지식사회의 기반구축을 위한 문화역량 제고 2.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농 립 부	1. 농축산물 유통개혁의 가속화 2. 주국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
산업자원부	1. 무역흑자기조 정착 및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2.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3. 에너지 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과 에너지 소비절약
정보통신부	1. 지식정보화사회의 인프라 구축 2. 통신과 전파자원의 이용 촉진
보건복지부	1.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2.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혁
환 경 부	1. 4대강의 특별종합대책 등 수질개선 대책 추진 2. 깨끗한 공기확보
노 동 부	1.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의 내실화 2. 신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자 권익·복지 확충
건설교통부	1. 지역균형 개발시책의 추진 2. 도시교통난 완화시책 추진

부 처 명	주 요 정 책 과 제
해양수산부	1. 해양환경관리 및 기르는 어업 육성 2. 한태평양 물류중심기지 구축
< 委員會(3) > 공정거래위원회	1. 독과점시장구조 및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의 개선 2.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반 확충
금융감독위원회	1. 금융산업의 건전성 강화 2.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내실화
여성특별위원회	1. 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향상 추진
< 處(4) > 기획예산처	1. 공공부문 개혁 지속 추진 2. 재정운영 및 제도의 합리화
법 제 처	1. 행정심판 활성화를 통한 국민권리 구제 강화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향상
국정홍보처	1. 범정부적 홍보효율의 획기적 제고
< 廳(15) > 국 세 청	1. 과세의 공평성과 납세서비스 수준 제고
관 세 청	1. 신속통관체제 운영 및 불법행위 차단
조 달 청	1. 선진 공공구매체계 구축
통 계 청	1.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생산 및 이용 활성화
병 무 청	1. 새로운 병무행정 관리체제 구축
경 찰 청	1. 효율적인 민생치안대책으로 국민생활 보호
기 상 청	1. 기상 예보능력 및 서비스 체계 향상
문 화 재 청	1. 문화재 보존 기반 구축
농촌진흥청	1.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기반기술의 체계화
산 림 청	1. 경제림 육성 및 산림경영 기반확충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특 허 청	1. 지식재산의 정확·신속한 권리부여 및 보호강화
식품의약품 안전청	1. 식품·의약품 등 안전 및 유통관리 강화
철 도 청	1. 철도경영혁신
해양경찰청	1. 해상경계·경비 및 해양안전체계 선진화

※ 검찰청 평가과제는 법무부(3번과제)로 포함하여 평가

(2) 평가기준 및 방법

주요정책과제로 선정된 정책·사업 등을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3단계로 구분하여 6개의 평가기준 및 10개의 평가착안사항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표 2-65> 주요정책과제 평가기준 (2000년)

구분	평가기준	평가 착안사항
정책 형성	① 정책목표의 타당성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연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정책 집행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정책 성과	⑤ 목표의 달성도	- 사업추진결과 당초 설정한 계획목표는 달성되었는가
	⑥ 정책효과	-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 동 착안사항은 시범 평가착안사항으로서 평가시 가점 부여항목으로 활용

상반기에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연계성 등 정책형성부분과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고 하반기에는 정책의 행정목표 달성도와 대국민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평가주관위원(정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주관위원 책임하에 평가를 추진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30명의 각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지점검, 평가보고서 작성 등 평가과정 전반에 참여하였다.

(3) 평가결과

종합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성과 >

-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 나가는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구축
 -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 분단 55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냄
 - 이산가족, 경제협력, 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적 지지 속에 평화공존을 위한 화해 협력관계가 형성
- 구조개혁과 경제의 안정성장기반 마련에 노력
 -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부문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고 경제의 안정성장이 기대
 - 물가, 금리,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가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었으며 외환보유고도 확충
- 정보화의 촉진과 첨단기술의 육성으로 지식기반사회의 기틀 마련
 -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조기 구축(2010년 → 2005년)과 정보기술 및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에 투자 확대
 -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지식기반화 촉진으로 부가가치 제고에 노력
 - 경쟁력있는 정부구현을 위한 인프라로서 전자정부의 조기구현 기반도 빠르게 조성
- 생산적 복지에 중점을 둔 복지국가 기반 구축
 -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의료보험 통합,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등 사회보험제도개혁 및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토대 마련

< 미흡한 점 >

- 바람직한 정책 방향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실히 실행하도록 하는 사전준비 및 점검체계가 미흡하여 일부 혼선 초래
 - 의약분업 등 주요한 국가적 개혁시책이 과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없이 추진되어 조기정착에 애로
 -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일부 도덕적 해이 사례 발생
- 선진 일류국가의 기본인 법과 질서의 존중과 책임지는 풍토의 확립도 부족
 -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불법집단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의 확보가 미흡
 - 잘못된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미비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는 현상 발생
-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을 단기적으로 더 많이 겪게된 계층의 상실감으로 국민적 통합이 약화되는 현상 발생

< 개선방향 >

- 당면 현안인 「4대개혁」을 마무리하고 경제·사회의 안정회복에 주력
 - 개혁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고 자신감을 고취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
 - 금년 2월까지 4대개혁의 기본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하고, 원칙과 정도를 중시하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 확립

- 구조개혁이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의식·관행의 개혁도 병행 추진
 -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과 개혁의 결실이 고르게 분담·확산되도록 하여 국민동참 속에서 개혁 추진
- 국가발전과 민족번영을 위한 제도약에 국가역량 결집
 - 확고한 안보태세 위에 남북간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키고 남북평화협력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
 - 지식기반경제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전통산업, 정보통신산업, 생물산업 등을 조화롭게 육성·발전
 - 지역간 균형발전과 형평성 제고로 지역·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대화합을 도모하는 실천적 방안 수립·추진
 -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욱 튼튼히 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정착
- 정부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내각의 팀워크 국정관리능력 강화
 - 경제, 교육·인적자원개발, 통일·외교·안보, 사회·복지·문화 등 4대분야 장관회의 활성화로 사전적·적극적 조정기능 강화 및 공동 책임운영제 정착
 - 정책수립·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대비
 - 정책의 일관성·투명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율점검과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며 외부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위기관리능력 제고
 - 시민사회·기업·정부가 국정개혁과제를 함께 협의하고 상호 공감대를 갖고 실천해 나가는 협력문화 정립
- 국정개혁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국가기강 확립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직업윤리 확립
 -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법 집행으로 엄정한 사회기강 확립
 - 공직사회의 쇄신과 활력회복 및 책임지는 행정풍토 조성

3. 정책추진역량 평가

(1) 개요 및 평가대상

2000년도에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정운영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평가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지식기반정부 구현 및 국정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기관운영 혁신노력」과 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체평가 수행노력」을 대상으로 하여 각 기관의 정책추진역량 평가를 추진하였다.

(2) 기관운영 혁신노력 평가

1) 평가개요

중앙행정기관(39개 기관 : 17부, 4처, 16청, 2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을 대상으로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여성특별위원회는 기관의 성격상 대상기관에서 제외하였다.

각 부처는 평가대상분야의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지표에 의한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무조정실 평가담당관이 1차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주관위원이 이에 대한 검토·조정을 실시하였다.

각 기관에서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지출장 등을 통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각 평가지표별 배점에 의거 평정 실시하였으며 관련소위, 전체회의에서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였다.

2000년도에 처음 도입한 평가영역이어서 평가의 질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는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하반기는 상반기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지표를 최종 확정후 평가를 추진하였다.

2) 평가대상분야

지식기반정부 구현노력(DB구축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 마인드 확산, 정보화 활용 등), 정책추진의 범제화, 부패방지 노력, 국정홍보 강화노력 등 4개분야를 설정·평가하였다.

3) 분야별 평가기준 및 평가실시 방법

가) 지식기반정부 구현노력

정책평가위원회 제도소위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관계관, 민간전문가(한국전산원) 등으로 「지식기반정부 구현노력 평가팀」을 구성하고 평가팀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실무는 한국전산원에서 담당하였다.

지식기반정부구현노력의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았다.

<표 2-66> 지식기반정부구현노력 평가지표 (2000년)

평가항목	평가지표
DB구축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의 지식·정보관련 DB구축 실적 - 인터넷 홈페이지 메뉴의 충실성 및 각 부서의 참여율, 갱신주기 등
정보화 마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의 정보환경 변환에 대한 대응노력 ·CIO의 정보화 사업 조정권 여부 ·선진 정보화 사례의 벤치마킹 및 활용여부 등 - 정보화 공인자격증 보유율 ·정보화 관련 공인자격증 보유자/전체공무원수 - 정보화 교육실적 ·공무원 1인당 연평균 교육실적
정보화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정보 공동이용도 ·그룹웨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내부정보 공개 건수(공무원 1인당 평균 게시건수)등 - 전자결재 활용율 ·전자결재 건수/전체 결재건수 - 웹기반 대민서비스 제공 ·온라인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민원응답율 및 응답시간) ·법률, 정책, 사업등 행정정보 제공 정도

나) 정책추진의 법제화

법제처의 협조를 받아 각 기관의 추진실적 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았다.

<표 2-67> 정책추진의 법제화 평가지표 (2000년)

평가항목	평가지표
각 부처 입법계획의 내실화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입법계획 건수대비 8월이전 국회제출건수 ○ 당초 입법계획 수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계획 수정건수 ○ 정부입법계획대로 적기제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기제출, 1월이내, 2월이내 등
하위법령 정비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법령의 적기 정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위법령은 법시행에 필요한 각종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포함 - 시행일이 지난후 1월이내, 3월이내, 3월초과 정비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 정부입법 제출기관(청단위기관 제외)을 대상으로 평가

다) 부패방지 노력

부패방지업무를 수행하는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과 협조하여 평가지표 마련, 현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각 부처의 실적을 비교 평가하였다.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았다.

<표 2-68> 부패방지노력 평가지표 (2000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공직기강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도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추진지침에 따른 자체 실천계획 내용의 충실성 ○ 5대 중점과제에 대한 감찰활동 및 비위공직자 조치내용 ○ 잔존부조리 척결대책 및 취약분야 환경·제도 개선 내용 ○ 과다·중복감사 방지노력 등 행정감사운영개선 실적 ○ 공직사회 활성화 및 공직경쟁력 제고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평가항목	평가지표
부패방지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책 추진에 대한 기관장의 실천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주관과제 및 실천과제에 대한 관심도 - 소속부서 직원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실행독려 ○ 부방대책 100대 실천과제의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분야 30개과제(부패방지인프라 구축) - 경찰, 세무, 환경, 건설, 건축, 위생 등 6대취약분야 100대 실천과제 추진실적(제도개선 부진과제수, 지연사유, 당초일정 대비 지연기간) ○ 반부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관련 직장교육, 대민 접촉부서 공무원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교육실적(교과목 편성의뢰 및 특강실시 실적) 등 - 금품·향응 거절(반환) 요령 제정, 운영 등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실적

라) 국정홍보 강화노력

국정홍보처의 협조를 받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았다.

<표 2-69> 국정홍보 평가지표 (2000년)

평가항목	평가지표
보도자료 배포실적	○ 정책·사업홍보관련 보도자료
기관장, 부기관장 홍보활동 실적	○ 방송출연, 신문기고, 인터뷰, 언론간담회 등 대언론 홍보활동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한 시정노력	○ 내용해명 및 시정노력, 독자투고, 반론 및 정정보도
우수홍보사례 및 홍보미흡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홍보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장등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킴으로써 정책효과를 거둔 사례 - 새로운 홍보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실제적인 홍보효과가 발생한 상황 등

4) 분야별 평가결과

가) 지식기반정부 구현노력 평가결과

- 온라인 정보공개·민원신청서비스 확대 및 전자결제·메일 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기술 도입하였으며, PC 경진대회 개최 등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노력
 - 지식관리시스템 구축(10개 기관), 자격증 취득시 승진가점(통계청)
 - ⇒ 종합우수기관 : 특허청, 조달청,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민원 확산 및 정보기술의 활용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전자민원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추가서류의 첨부이 필요 없는 단순민원 등에 한정 (20%이상의 민원사무 온라인 신청 가능 : 15개 기관(39.4%))
 - 기관장의 관심부족 및 대면결제 관행 등으로 전자결제의 활용도(59%)는 다소 미흡하며, 정보공유 노력도 부족
 - 전자게시건수 1인1건(월) 이하 : 19개 기관(49%)

나) 정책추진의 법제화 평가결과

- 2000년도에는 임시국회 99건, 정기국회 106건 등 총205건의 입법을 계획(국회제출 법률은 200건)
 - ⇒ 종합우수기관 : 노동부,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 법률안 적기제출 우수 : 과학기술부, 환경부
 - 하위법령 적기마련 우수 : 법무부, 국방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 입법계획의 이행 저조 및 하위법령의 적기마련 미흡 등으로 신뢰성이 저하
 - 부처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연 등으로 8월이전 임시국회에 법안제출이 저조(24건)하고, 입법계획의 수정사례도 많이 발생
 - 205개 입법계획중 철회(61건), 추가(83건) 등으로 227건 입법추진

- 시행령이 법률 시행일에 맞춰 제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41%), 개혁정책 등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다) 부패방지 노력

- 세무공무원 지역담당제 폐지, 신용카드 사용확대, 민원처리과정의 인터넷 공개 등 주요과제는 국민들의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경찰, 세무, 식품위생, 환경분야는 정상추진, 건설분야는 다소 미흡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기관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대국민 취약분야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
- ⇒ 부패방지 노력 우수기관
 - 국세청(부패방지 제도개선), 관세청(공직기강 확립대책), 국방부(반부패 교육·홍보)
 - 「반부패기본법」의 제정 지연, 민간단체·기업·정부 등 관계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으로 부패방지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는데 한계
 - 일부 부처는 공직내부 부조리 유발요인의 개선노력이 미흡하고 자체 감찰활동도 온정주의를 탈피하지 못함

라) 국정홍보 강화노력

- 보도자료 배포(연평균 348건, 1일 1건), 기관장 방송출연 등 홍보 활동(연평균 92건, 4일 1건)
- 우수 홍보사례
 - 한전 구조조정(산업자원부) : 기관장 방송출연 등 적극적 언론홍보
 - 경찰개혁 100일 작전(경찰청) : 포돌이 등 캐릭터 활용 국민체감 홍보
- 기관장이 직접 소관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아직 부족하고, 홍보효과 제고를 위한 과학적 홍보기법 개발이 미흡

- 정책형성 단계에서 적극적인 여론수렴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이 미약하고, 정책수립후 집행과정 및 성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노력도 부족
-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는 경우 기관장 등이 언론매체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정책 불신을 초래

(3)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

1) 평가개요

기관운영 혁신노력 평가대상기관과 동일하게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추진하였다.

평가는 각 부처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에서 제시된 시책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한 노력에 대해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에서 상·하반기 2회 상위평가를 실시하였다.

2) 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각 부처별로 수립한 자체평가계획과 자체평가 추진노력에 대하여 다음의 평가기준과 착안사항을 토대로 평가하였다.

<표 2-70> 자체평가수행노력 평가기준 (2000년)

구 분	평가기준	평가 착안사항
(1) 과제 선정 및 계획수립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 선정의 적절성	- 2000년 업무계획중 주요업무를 모두 선정하였는가 * 주요업무계획 수립이후 국정현안으로 대두되거나 새로운 계획이 수립·추진되는 주요업무의 추가 선정시 가점
	② 자체평가계획의 충실성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의 명료화·구체화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여부 - 사업추진계획의 충실성에 대한 평가계획 수립여부

구 분	평가기준	평가 착안사항
(2)평가 과정	③ 평가수행의 충실성	- 공통평가기준의 적용여부 - 민간위원의 실질적 평가활동 수행 여부
	④ 전문성·객관성 확보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전문가 참여비율 ·민간위원 구성의 중립성 확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정도
(3)평가 내용	⑤ 정책목표 및 효과 평가	-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여부 및 적절성(상반기) -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여부 및 적절성(하반기)
	⑥ 본질적 문제점 적시 및 대응	- 자체평가결과 본질적 문제점을 얼마나 제시하고 있는가 -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는가
(4)평가 결과 환류	⑦ 평가결과 환류	- 1999년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1998년, 1999년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3)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각 부처는 주요정책과제 평가기준과 착안사항에 의거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로 제출(상반기 : 6. 30, 하반기 : 11. 10까지)하였고 국무조정실은 부처 제출자료 내용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 등을 통해 확인평가 실시하였으며 평가주관위원은 평가담당관의 확인평가를 토대로 검토·조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기준과 착안사항에 의거 평가기준별 배점기준을 설정하여 상위평가를 실시하였다.

4) 자체평가수행노력 평가결과

가) 상반기 평가결과

각 부처는 자체평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 있는 평가수행과 평가결과의 환류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대부분의 부처에서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등 1999년보다 평가체계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민간인 위촉 : 농림부, 철도청 등 5개 기관
- 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세미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평가활동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
 - 분과(소)위원회 10회이상 개최 : 정보통신부(15회), 건설교통부(10회) 등
 - 간담회·세미나, 현장점검 등 : 철도청(13회), 관세청(9회) 등
-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정책추진상의 본질적 문제점 적시 및 대안제시가 1999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평가수행이 내실화 되어감
 - 본질적 문제 및 대안 제시 우수기관 : 국방부, 철도청, 문화관광부 등
 - 정책목표-수단간 연계분석 우수 기관 : 기상청, 교육부 등
- 1999년 심사평가결과 지적사항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거나 주요사항으로 관리·추진해 나가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이 높아짐
 - 총441개 지적사항에 대해 대부분(96.6%) 정상추진 또는 완료(426개)
- 대부분의 부처에서 자체평가 체계 및 평가수행의 내용면에서 많은 향상이 있었지만, 자체평가의 질향상을 위해 대폭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과제선정 및 계획수립면에 있어서 대다수 부처가 평가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등 충실성이 미흡하고, 주요과제가 자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 평가대상과제 누락 :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제의 구축(중소기업청) 등

- 평가과정면에 있어서는 자체평가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거나,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한 부처
 - 민간위원 참여가 낮은 부처 : 외교통상부(44.5%) 등 3개 기관
 - 위원회 개최실적 1회 : 건설교통부 등 3개 기관
- 평가내용면에 있어서는 단순히 사업추진배경과 추진상황을 기술하거나 본질적인 문제점 적시 및 대안제시가 미흡한 부처
 - 본질적 문제 제시 미흡 :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
- 평가결과의 환류면에 있어서는 일부부처에서는 1998년, 1999년 평가결과 지적사항의 이행조치가 부진하거나, 조치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지 않았음
 - 이행상황 부진 : 외교통상부 등 13개기관
 - 조치계획수립 미흡 : 과학기술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10개 기관
- 평가과제 선정 및 계획수립, 평가과정,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의 환류 측면에서 부처별 자체평가수행노력을 종합평가한 결과
 - 부·처·청·위원회(38개 기관) 중에서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철도청, 농림부,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기상청 등이며 미흡한 기관은 외교통상부, 통일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 1999년 하반기에 비해 자체평가 수행노력이 대폭 향상된 기관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나) 하반기 평가결과

- 그간 자체평가가 충실히 수행되도록 자체평가 추진체계, 평가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자체평가가 많이 개선됨
 - 자체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확대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하였으며, 주요업무를 모두 평가에 포함하여 정책형성부터 집행성과까지 연계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평가결과를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

- 자기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개발 노력 및 정책효과 분석 미흡 등 평가의 전문성과 개혁성에 있어서는 보완·발전이 필요함

◇ 2000년 부처 자체평가수행노력 우수기관
○ 부처 :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국정홍보처, 외교통상부, 통일부
○ 청 : 병무청, 특허청, 국세청, 관세청, 철도청

4. 특정과제 평가

2000년에는 「어업구조 개선사업의 효율성 평가」,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실태 평가」 등 5개 과제를 특정과제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80개의 개선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표 2-71> 과제별 주요 개선조치사항 (2000년)

과제명	주요 개선조치사항	비고
어업구조 개선 사업의 효율성 평가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우선순위 및 연계성 등을 포함한 어업구조 개선사업 종합추진계획 마련 ○ 수산종합DB구축 및 정보화교육 등 어촌 정보화 촉진 ○ 어항·어촌개발의 연계추진 강화 방안 마련 등 총 17개 개선사항 	2000.4.19, 합동보고회
과학기술 인력 육성 및 활용실태 평가 (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국가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 수립 ○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공급 여건 구축 ○ 양성된 기존인력의 활용도 제고 ○ 과학기술인력 정책조정시스템 구축 등 총 10개 개선사항 	2000.4.19, 합동보고회
수도권 매립지 운영개선방안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자율 폐기물 회수, 재활용체계 구축방안 마련 ○ 수도권매립지 운영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 및 매립지 전공구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 민간참여 운영위원회 운영 등 총 26개 개선사항 	2000.6.16, 합동보고회

과제명	주요 개선조치사항	비고
벤처기업 해외진출 효율화 전략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해외진출 대상기업 선정 및 집중 지원 ○ 종합·체계적 국제협력 인프라의 구축 ○ 일반 중소기업형 해외진출의 효율화 ○ 효율적인 지원체제의 구축 등 총 12개 개선사항 	2000.6.16, 합동보고회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방안 (국무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청의 책임민원처리체제 구축 ○ 다수인민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제 구축 ○ 각급기관별 적극적 민원처리여건 조성 등 총 15개 개선사항 	2000.12, 국무총리보고

5.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는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각각 하반기에 1회 실시하였다.

(1)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1) 조사목적

40개 중앙행정기관의 62개 주요정책과제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하여 정책만족도를 측정(정책에 대한 인지도, 의견수렴도, 적절성, 추진상황, 효과성)함과 아울러 1998년, 1999년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정책의 수정·보완 및 환류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었다.

조사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외부전문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였다.

2)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일부 경제분야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범조사도 실시하였다.

- 일반인 조사
 - 조사대상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제주도 및 도서지방 제외)중 3,000명(Master Sample 구성)의 표본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다단비례확률 추출법(PPS)에 따라 추출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면접을 실시하였고 약 9주 동안에 걸쳐 실시
 - 자료수집 기간 : 2000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2일간
- 전문가 조사 (시범적 조사, 경제분야에 한정)
 - 조사대상자는 경제분야 여론선도층(정계, 학계, 재계, 언론계, 민간단체) 50명을 임의할당한 추출법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루 분포하도록 추출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면접을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정책은 경제분야 정책중 일반국민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는 아래 정책 4개로 한정
 - 환태평양 물류중심기지 구축(해양수산부)
 - 신속 통관체제 운영 및 불법행위 차단(관세청)
 - 선진 공공구매체계 구축(조달청)
 -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생산 및 이용 활성화(통계청)

3) 조사항목

- 일반인 조사
 - 62개 정책에 대한 인지도(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정책의 의견수렴도(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어느 정도 수렴되었는지), 정책의 적절성(현 시점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적절한 정책인지), 정책 추진상황(정책 담당부서의 정책에 대한 추진의지), 정책의 효과성(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국정전반에 대한 만족도(가중치 산출을 위한 문항)를 조사
- 전문가 조사
 - 정책의 의견수렴도, 정책의 적절성, 정책의 추진상황, 정책의 효과성,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정책을 조사

4) 조사결과

▪ 조사결과의 특징

- 주요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
 - 62개 주요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균 인지도가 39.9%에 불과하여 각 기관의 정책 홍보가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됨
- 인지집단과 비인지집단간 차이
 - 주요 정책에 대해 인지집단이 비인지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8.9점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분야별 평가: 일반행정 > 사회문화 > 경제 순
 - 분야별로 평가 점수가 상이하였으며, 경제분야의 점수가 타 분야에 비해 낮게 나타남
- 항목별로 중요도와 만족도에서 차이 발생
 - 중요도에서는 효과성 > 추진상황 > 의견수렴 > 적절성 순인데 비해, 만족도에서는 적절성 > 효과성 > 의견수렴 > 추진상황 순으로 나타남
- 논란이 되었던 일부 정책은 하위로 평가됨
 - 언론에서 논란이 되었던 의약분업과 세제의 공평성문제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혁 정책, 세제의 공평성과 납세서비스 수준 제고 정책, 세제의 공평성·효율성 제고와 재정의 효율적 운용 정책 등이 다른 정책에 비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음
- 가시적 성과가 높았던 일부 정책은 상위로 평가됨
 - 남북정상회담 성사 및 남북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인해 통일부의 정책이 상위권에 속했고, 언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철도청의 경우에도 철도경영혁신 정책이 상위권 평가 정책으로 분류됨

정책과제별 만족도는 주요정책과제의 정책성과 부분에 반영하였다.

(2)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1) 조사목적

각 부처 민원행정 업무의 처리방식 및 절차, 공무원의 태도,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여 기관간 및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평가함으로써 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개선과 민의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추진체계

설문개발 및 보완사항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가 공동 참여하고 조사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로 추진되었으며, 국무조정실은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행정자치부는 조사결과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민원행정 제도개선사항에 반영하여 사후관리하였다.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대행은 현대리서치에서 수행하였다.

3) 조사대상

조사대상기관은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4) 조사방법

모집단은 각 기관의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된 민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중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직접 민원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동 기관에서 접수·처리된 민원을 모집단에 포함하되 그 범위는 1차 지방청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민원중 수사민원에 한하여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만족도를 산정하였다.

5) 조사항목

부처간 및 연도별 비교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1999년도의 설문항목(6개 차원 26개 항목)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즉, 접근용이성, 편리성, 신속·정확성, 쾌적성, 대응·환류성, 형평성을 설문항목으로 사용하였다.

6) 조사결과

· 종합만족도 수준 비교

- 2000년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민원인의 종합적인 만족도는 62.3점(100점 만점)으로서 “보통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이는 1999년 61.0점에 비해 다소 향상된 것으로서 조사항목별로는 쾌적성, 편리성, 대응·환류성 등 대부분 측면에서 만족도 상승

<표 2-72> 만족도 상승추이 (2000년)

	1999년	2000년	향상도
○접근용이성	64.9	65.0	+0.1
○편리성	63.5	66.9	+3.4
○신속·정확성	59.7	62.1	+2.4
○쾌적성	62.7	66.3	+3.5
○대응·환류성	57.1	58.3	+1.2
○형평성	65.7	68.5	-0.2
종합만족도	61.0	62.3	+1.3

- 1999년도 만족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원행정서비스 쇄신에 관한 국무총리 특별지시”(2000.1.19.)를 시달하여 전 부·처·청

이 대책을 수립·추진하였고, 각 기관별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노력한 결과라고 분석되며 「국민의 정부」 첫해인 1998년이래 상승세를 계속 유지

- 기관별 1999년 순위와의 비교
 - 2000년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우수기관은 법제처, 통일부, 문화관광부, 기상청, 조달청, 해양경찰청 등이며, 1999년 대비 향상도가 높았던 기관은 노동부, 금융감독위원회, 외교통상부, 산림청, 검찰청, 관세청 등임

II.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평가의 개요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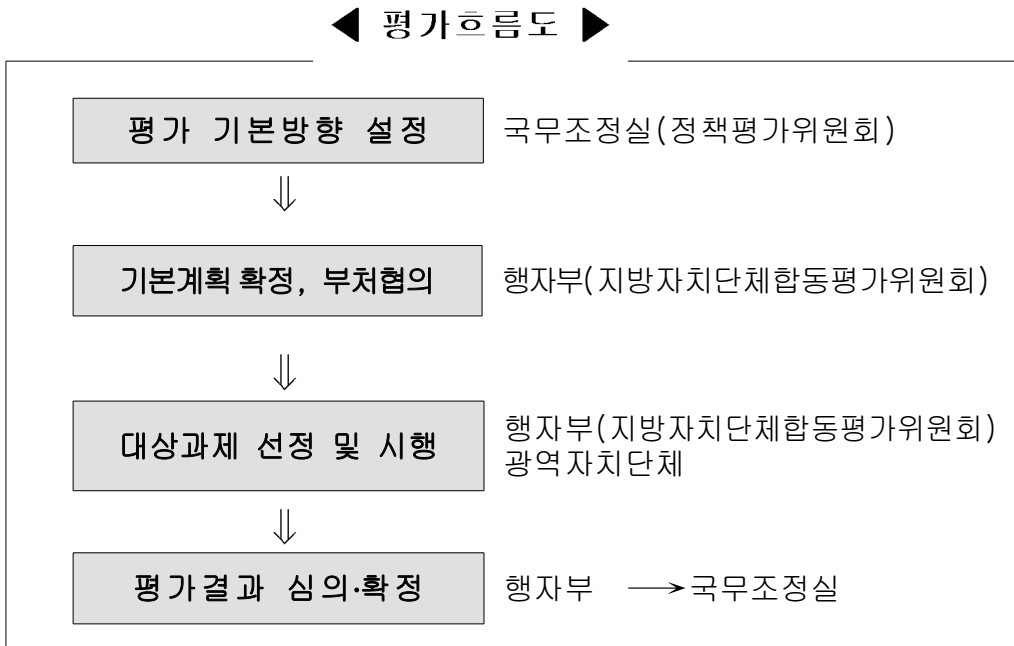
(1) 인센티브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의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성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적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추진되는 주요 국가시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국정지표에 부합하고 지방에 연계되어 시행되는 주요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업무의 일원화 및 행정력 절감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객관성과 신뢰성있는 지표개발 및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평가대상 확정 및 지표개발을 추진하였고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확립을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및 재정인센티브제를 시행하였다.

<그림 2-6> 평가흐름도 (2000년)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제 17,220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해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었다. 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인 위원을 제외)으로 구성되었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었다.

<표 2-7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명단 (2000년)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지 위	비 고
위원장	김재영	행정자치부 차관	
부위원장	조영택	행정자치부 차관보	
외부위원 (6명)	김성태	성균관대 교수	추진역량분야
	이규환	중앙대 교수	지역경제진흥부문
	임도빈	서울대 교수	일반행정혁신
	최홍석	고려대 교수	지역개발확충부문
	한영수	강남대 교수	복지·환경부문
	허준행	연세대 교수	주민안전관리부문
부처위원 (9명)	김지순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오지철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	
	김종갑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장	
	김창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회관	
	곽결호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이종근	노동부 노정국장	
	이재욱	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회관	
	이수철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장	
	최중수	산림청 기획관리관	

2. 평가의 주요내용

(1) 평가대상 및 분야

평가대상기관은 광역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시·군·구 집행상황 점검이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시 현지점검에 포함하였다.

평가분야는 「국정과제」, 「2000년 정부 및 시도 업무계획」 내용중 전체 시·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각종시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평가의 목적·취지, 평가요소로서의 적합성, 평가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도 담당계장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시책분야(5개부문 13개영역), 추진역량분야(3개부문 5개영역) 총 50개 시책을 선정하였다.

· 평가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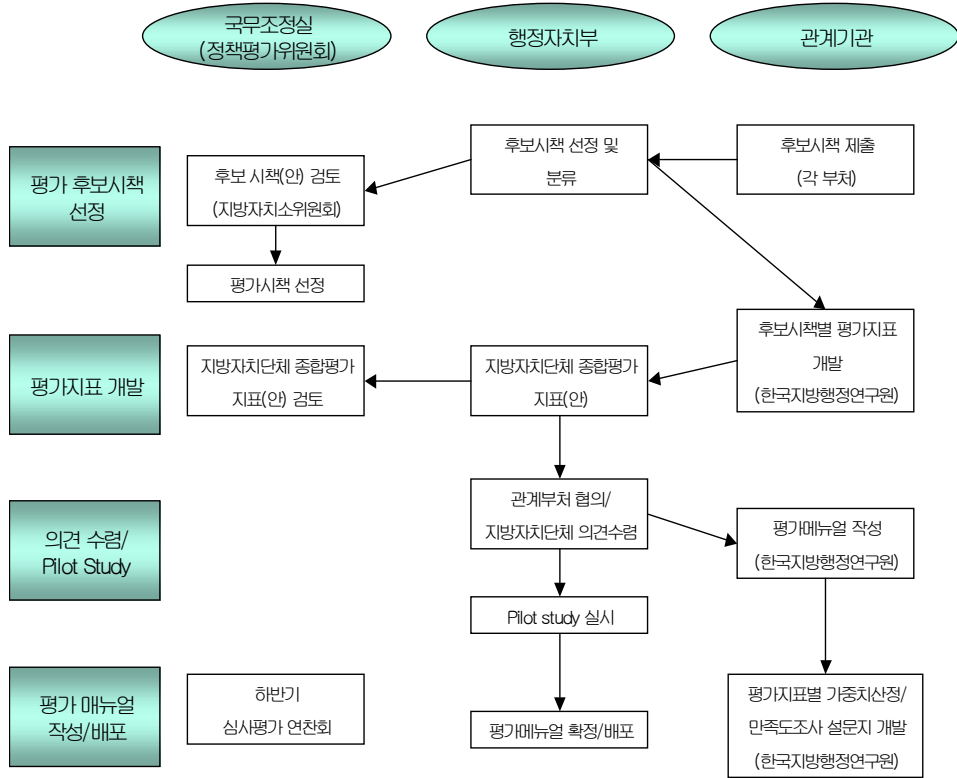
- 주요시책, 추진역량, 주민만족도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시책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추진역량 분야는 재정, 정보화, 조직, 인사, 사무관리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민만족도 조사는 평가대상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조사·반영

(2) 평가도구의 개발

전문연구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후보시책을 기준으로 개별 평가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Pilot study(모의실험)를 실시하여 정책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261개 세부 지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 세부평가지표는 자료<표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참조

<그림 2-7>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도구개발 절차 (2000년)



(3) 평가의 실시

평가는 상반기중 평가지표 및 체계를 구축하여 하반기에 평가자료 수집 및 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요시책 소관부처(부서) 및 전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심사위원회 및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도 자체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 실시하였고 충분한 협의와 검증(모의실험)을 거쳐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평가매뉴얼 및 세부시행지침을 9월초에 시달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배포된 평가매뉴얼에 의거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면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제출된 증빙자료를 기초로 10월에 대학교수, 전문가(연구원), 관련 중

양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평가반에 의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이어 지역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반(市班)과 도반(道班)을 별도로 편성·운영하였고 서면평가 결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개 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주민만족도조사는 $\pm 2.5\%$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의 크기를 약 3,500 표본 정도로 하였고 각 지역별 인구를 고려하여 각 시·도별로 할당추출방식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방법은 자료의 획득가능성, 예산제약 등을 고려해 전화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의 시행은 별도의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 2000년도 평가실행 세부일정

- 평가지표 조정 및 매뉴얼 작성 : 2000년 6월 22일
- 종합평가 지표시안에 대한 모의실험(Pilot study) : 2000년 8월 8일 ~ 8월 9일
-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세부지침 시달 : 2000년 9월 1일
- 현장평가단 및 평가반 구성·운영계획 마련 : 2000년 10월 7일
- 종합평가 시책 및 지표간 가중치설문조사 : 2000년 10월 4일
- 시도평가반 현지평가 실시 : 2000년 10월 10일 ~ 10월 23일

(4)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및 활용

평가결과는 수집된 정보의 요약 및 분석, 평가보고서 및 수범사례 작성, 평가결과 보고 및 발표 등과 함께 평가결과 및 우수사례를 시·도 및 관련기관에 배부하였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해 2000년 평가결과 확정후 종합보고서와 시·도별 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도와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환류토록 하고 각 시·도별 시책의 우수사례를 담은 자료집은 각 시·도에 배포하여 벤치마킹에 활용하였으며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시책개선계획을 마련하여 다음 해의 사업추진시 반영토록 조치하였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시책별로 개선조치가 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또한 평가결과 부문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부문별 최우수, 우수)된 기관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재정인센티브를 부여(48억원)하였으며, 우수기관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48명에게 시상하여 격려하였다.

<표 2-74> 자치단체 종합평가 부문별 우수기관 현황 (2000년)

부문별	우수 자치단체	비고
일반행정혁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최우수기관은 2억원, 우수기관 1억원 부여
복지·환경개선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지역경제진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경제확충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주민안전관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행정관리역량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재정관리역량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정보화촉진역량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제주도	

※ 부문별 최우수기관은 시·도를 분리하여 최우수·우수로 선정

Ⅲ.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1. 보고대회 개최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는 2000년 7월 26일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제로 실시하였으며, 주요정책과제 평가 및 정책추진역량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하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는 2001년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제로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였다.

2. 결과조치

2000년 정부업무 평가결과(상·하반기)로 각 기관에 송부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조치계획의 이행여부를 국무조정실에서 점검하였으며, 이행실태 정도를 차기 평가에 반영하였다.

- 2000년도 상반기 평가결과 조치사항 : 349건
 - 주요정책과제 관련 : 140건
 - 자체평가수행 노력관련 : 53건
 - 정책추진관련 : 156건

- 2000년도 하반기 평가결과 조치사항 : 399건
 - 주요정책과제 관련 : 150건
 - 기관운영혁신노력 관련 : 135건
 - 자체평가수행노력 관련 : 106건
 - 종합평가(분야별) 관련 : 8건

<참고자료>

· 주요시책분야(13영역, 38시책, 92지표, 192세부지표)

<표 2-75> 2000년 일반행정혁신부문(2영역, 5시책, 12지표, 24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편의 행정	민원행정 제도운영	민원행정 기반조성 노력	- 재택전자민원 전담인력 확보율	
		민원행정 추진성과	- 자체 민원사무간소화실적 - 민원모니터제 운영실적	
		특수민원 시책성과	- 주민불편·생활민원전담처리반 운영실적 - 지역특수민원시책개발실적	
	행정서비스 현장 실천	현장제정의 적정성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내용구체화 실적	
		현장실천 노력	- 조례·훈령 정비실적 - 홍보 및 공무원교육실적 - 고객만족도 및 인센티브실적	
	주민등록 제도운영	주민등록 관리 추진 기반	- 주민등록업무 추진인력 확보율 - 주민등록자료 정비실적	
		주민등록 업무운영 성과	- 주민등록증 발급·관리실적	
	지적사무 정비추진	지적관리 기반조성	- 지적전산자료 정비율 - 지적공무원 교육훈련참가율	
		지적업무 추진성과	- 지적공부등록사항정비실적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정비율 -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추진율 - 대행법인 지도감독 시행율 - 건축물대장 관리실적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성과	- 지적측량기준점·삼각점 정비율 - 도근점표석대장 정리율	
	규제 개혁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추진의지	- 규제신설·강화시 심사실적 - 규제개혁추진실적
			규제정비관 리성과	- 규제정비실적

<표 2-76> 2000년 복지·환경개선부문(2영역, 7시책, 16지표, 47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복지향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확립	기반조성 노력	- 사회복지전문요원 1인당 수급자수 - 생활보호대상 데이터 초기 입력율	
		자활지원 성과	- 자활지원 네트워크 회의개최 실적 - 기초생활보장기금 조건부수급자 대비 조성비율	
	장애인 복지시책실천	기반조성 노력	- 전체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비율 - 장애인관련 홍보실적	
		장애인 복지증진 성과	- 장애인공무원 고용율 - 장애인 우선허가사업 허가율 -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 등록장애인 대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정신보건 및 방문간호사업관리	정신보건 사업기반 조성노력	- 정신보건관련기관 설치실적 - 정신보건사업예산 비율 - 보건소당 정신보건전문인력 확보율 - 편견해소 홍보실적	
		정신보건 사업성과	- 지역정신보건사업 활용실적 - 정신보건가족협회의 추진실적 -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지원실적	
		방문간호 사업기반 조성	- 방문간호 담당인력 1인당 관리대상자수 - 방문간호 담당인력의 전문교육실적 - 예산총액대비 방문간호사업비 비율	
		방문간호 사업성과	- 대상자별 방문간호서비스 수혜율	
	환경관리	환경관리 역량시책	기반조성 노력	- 환경분야 관련조례 제·개정실적 - 지방의제 21 수립·운영실적 - 인구1인당 환경관련 예산액 - 녹지 및 보전지역 확보율
		물관리 시책실천	기반조성 노력	- 취·정수시설 개량사업비율 - 톤당 운영·관리인력 확보율 - 관거정비 소요예산확보율 - 수도요금 현실화율 - 물절약 홍보실적 - 분노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가동률(도 대상)
물관리 성과			- 절수기기 보급율 - 유수율 - 하수처리율 -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 하수처리 및 분노·축산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율	
배출업소관리 성과			- 폐수배출업소 및 불법업소 지도단속율 - 폐수배출부과금 징수율	
폐기물관리 시책실천		기반조성 노력	- 쓰레기종량제 관리실적 - 쓰레기투기·신고처리실적 -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을	
		폐기물관리 성과	- 1회용품 감량실적 - 재활용품 재활용실적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율	
대기관리 시책실천		기반조성 노력	- 배출업소단속율 - 배출부과금 징수율	
		대기관리 성과	-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표 2-77> 2000년 지역경제진흥부문(3영역, 10시책, 30지표, 48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산업 지원	지방물가 관리	단체장 관심도	- 소비자단체당 지원예산액
		대인협력 유도노력	- 모범업소 인센티브부여 실적
		물가안정 성과	- 전년도 동기 대비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률
	원산지 표시관리	원산지표시 홍보노력	- 교육실적 - 홍보실적
		원산지표시 관리성과	- 담당공무원 1인당 단속건수
	지역기술 혁신지원	사업기반 조성	- R&D 예산관리실적
		계획추진 노력	- 대학·연구소 총수 대비 참여율 - 산학관 공동연구 결성 비율 - 전년도 동기 대비 벤처창업 증감률 - 벤처중소기업 보증 실적 - 벤처중소기업 애로해소 실적
			지원성과
	에너지 절약	정책추진 노력	- 에너지절약 시책·예산 확보율 - 홍보실적
		에너지 절약성과	- 공공기관 ESCO사업 추진실적 - 전년 동기 대비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증감율
고용 촉진	공공근로 사업추진	사업 기반조성	- 지방비 의무부담액 확보율
		홍보 및 관리 노력	- 홍보실적
		목표달성도	- 생산성사업 발굴실적 - 참여대상연인원 대비 참여연인원 비율
	고용촉진 훈련	훈련계획의 적절성	- 훈련기관 지정현황 - 교육훈련 우선선정직종 지정비율
		훈련성과	- 훈련수료비율 - 자격취득률 - 취업률
	주민 밀착형 고용서비스제 공	실업자 DB 활용도 제고	- 실업자 DB(공공근로 DB) 입력비율 - 실업자 DB 담당자수
		서비스 지원노력	- 중복수해조회결과 활용
	신노사 문화정착 실천	교육·홍보노 력	- 교육실적
		신노사문화 정착성과	- 지역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실적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농림 육성	농촌지도 사업	지도사업 기반조성	- 농촌지도사업 조례·규칙 제정실적 - 지도공무원수 대비 기술자격 취득인원비율
		지도사업 홍보노력	- 전년 동기 대비 기술보급 홍보 증가율 - 농가 경영컨설팅 실적
		지도사업 추진성과	- 농가수 대비 농업전문교육 수료자 비율 - 농가수 대비 시범사업 실적
		연구사업 기반조성	- 연구사업 투자비 증감률
		연구사업 추진성과	- 연구투자비 대비 연구실적
	숲가꾸기 및 임도사업	숲가꾸기 사업계획 적절성	- 사업계획서 작성실적
		추진노력	- 기술교육 이수율
		사업 추진성과	- 사업면적당 연고용인원 - 사업면적당 산물수집실적
		임도관리 계획수립 적절성	- 전문가 참여실적
		예산사용 적절성	- 산주 자부담경비 총액 대비 자치단체 예산 지원 비율 - 설계기준 준수실적 - 파종녹화·노면·사면 안정보강 실적
		사업추진 성과	- 임도사업목표 대비 실적

<표 2-78> 2000년 지역개발확충부문(3영역, 11시책, 23지표, 45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국토 관리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실적	도시계획 운영성과	- 도시계획 수립실적 - 불법개발행위 사전조치 및 적발실적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행정 기반조성	- 시군구별 건축관련조례 정비실적 - 건축행정공무원 교육실적 - 건축공무원 대비 특수시책 개발건수
		건축행정 운영성과	- 건축공무원 1인당 점검·단속실적
	국토공원화 사업	사업성과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시공 및 유지관리 실적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생활 기반	주거환경 개선	정책관심도	- 지방비목표 대비 확보율 - 전체물량 대비 시·군·구물량 확보율
		사업추진의 적절성	- 계획 대비 추진진도율 - 행정사항 이행실태
		사업 추진성과	- 특수시책추진 및 사례발굴실적 - 농어촌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실적(도만 평가)
	소도읍 개발 (도만 대상)	정책관심도	- 지방비 목표 대비 확보율 - 전체물량 대비 시·군물량 확보율
		사업추진의 적절성	- 계획대비 추진 진도율 - 행정사항 이행실태
	지방도로 정비 (도만대상)	사업계획의 적정성	- 지방비부담액 대비 확보율 - 신기술(재료)도입 실적 - 사리도 확·포장사업 공사적정율
		공사관리의 적정성	- 도로공사 착공 관리실적
		도로유지 관리성과	- 교량안전점검율
	옥외 광고물 관리	광고업무 관리의 적절성	- 시군구 광고물 민원처리 점검실적 - 교육·안전도검사 실적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옥외광고물 정비성과	- 불법광고물정비·단속실적 - 옥외광고물 시범정비 사업실적
		옥외광고물 관리성과	- 특수시책·수범사례 발굴건수 - 행정·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설치·관리실적
	문화 관광	문화기반 시설운영	문화기반 시설조성
관광표지판 설치·관리		관광지 설치 기반조성	- 표지판설치사업비 대비 지방비 집행비율 - 표지판설치 이행실적 - 표지판설치기준 준수실적
		표지판사후 관리의 적정성	- 표지판 사후관리실적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시설 운영능력	- 청소년 100명당 수련시설배치 청소년지도사 비율 - 청소년수련시설 100㎡당 투자 및 운영예산비율
		시설 확보성과	- 청소년 100인당 청소년수련관 시설면적규모
		시설 운영성과	- 청소년시설운영예산 대비 시설 총이용자수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추진의 적정성	- 연간 사업건수 대비 공사발주율 - 지방비 확보율
		문화재보존 관리성과	- 지정문화재 안전진단 및 점검율 - 전년대비 문화재위원회 회의 증가율

<표 2-79> 2000년 주민안전관리 부문(3영역, 5시책, 11지표, 28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민방위·소방	민방위 시책추진	기반조성 노력	- 인구대비 비상대피시설 확보 및 정비·점검실적 - 민방위사업 예산비율 - 민방위 홍보실적 - 경보시설 정비·점검 실적 - 민방위대 자원관리
		민방위시책 추진성과	- 민방위교육·훈련 대비 추진실적
	소방행정 관리	기반조성 노력	- 소방력 강화계획 대비 실천율 - 소방력 기준대비 소방인력확보율 - 의용소방대원 1인당 예산액 - 소방서수 대비 특수시책 개발실적
		구조구급 대응성	- 인구대비 구급활동 수혜자비율 - 구조대원수대비 구조활동 비율
		화재예방 활동성과	- 소방통로 정비대상대비 확보율 - 총검사회수대비 입건·과태료 부과실적 - 소방공무원수 대비 민생지원활동회수
	재해 관리	재해대책	기반조성
수해복구 성과			- 수해복구 사업량 및 사업비 - 수해복구사업 지방비 예산확보율 - 수해복구 조기발주 및 완공실적
재난 관리	재난대책	기반조성 노력	- 법정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 총예산대비 취약시설 정비예산 확보율
		재난관리 추진성과	- 홍보실적 - 안전점검실시 실적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확보 노력	- 안전진단 예산확보율
		안전진단 성과	- 안전진단 대상시설대비 시행회수 - 유지관리계획 시행실적

· 추진역량분야(5영역, 12시책, 33지표, 69세부지표)

<표 2-80> 2000년 행정관리부문(2영역, 4시책, 14지표, 24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조직 · 인사 운영	지방조직 개편	정책관심도	- 시·군·구 인허가전담기구 설치실적	
		조직정비 성과	- 기구정비비율	
		기능정비 성과	- 민간위탁 집행비율	
		인력정비 성과	- 정원감축비율 - 비정규직원 감축비율	
	남녀평등 인사관리	채용관리 노력	- 5급이상 여성공무원비율	
		보직관리 노력	- 여성공무원 평균초과 배치과율 - 시도전입 여성공무원 비율	
		승진관리 노력	- 여성공무원 승진비율 - 인사관련위원회 여성공무원비율	
		교육훈련 노력	- 해외훈련 여성공무원 참여비율	
	공무원 교육훈련	교육훈련 시책의 적정성	- 교육발전시책의 수립률	
		교육훈련의 활성화	- 국내·외 위탁교육 이수자율 - 교육훈련예산 확보율 - 교육훈련이수자율	
		교육과정· 방법의 적정성	- 신규교육방법 개발실적 - 참여식 교육방법비율 -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실적	
		우수교수 요원확보 노력	- 자격요건구비 교수요원 비율 - 교수요원 전보제한 준수율	
	광역 행정	광역행정 강화	광역사무 관리노력	- 광역사업예산 확보율 - 행정협의회 개최실적
			광역사무 관리성과	- 갈등분쟁 해소실적 - 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표 2-81> 2000년 재정관리부문(2영역, 5시책, 12지표, 23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재정 운영	재정상태· 재원관리	재정자주성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재정안정성	- 경상수지비율 - 세입세출총당비율	
		재정계획성	- 재정계획운영비율 - 세입예산반영율	
		세입확충· 세출 절감노력	- 자체수입증가율 - 경상경비절감율	
	투융자심사	투자심사 이행	- 예산편성전 투자심사율 - 부적격사업추진율	
		투자심사 사후관리	- 예산반영율 - 조건이행율	
	지방채관리	발행적정성	- 기채승인조건이행율 - 중기자금 확보율	
		상환대책	- 채무상환비율 - 감채재원확보율	
	세정 운영	세수관리	징세노력	- 부과 대비 징수율 - 체납세 징수율
			세외수입 증대	- 부과 대비 징수율 - 체납액정리율
경영수익 관리		사업추진	- 사업증감율	
		경영성과	- 투자수익율 - 공영개발사업분양율	

<표 2-82> 2000년 정보화촉진 부문(1영역, 3시책, 7지표, 22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정보화 촉진	정보화 인프라구축	정보화 설비기반	- 586이상 PC보급률 - E-mail 보급률 - 공무원1인당 서버보유수준 - LAN연결 PC비율 - DB 구축실적
		조직/인력 수준	- 정보화인력비율 - CIO운영실적 - 정보화공인자격증 보유율
	정보활용 시책	정책 관심도	- 정보화관련 단체장 지시사항비율 - 정보화예산비율
		시책추진 지원	-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지원팀 구성 및 지원실적 - 지방행정정보망광역화 추진팀 구성 및 지원실적 - 호적정보화지원팀 구성 및 지원실적 - 건축행정정보화추진현황 및 운영실적
		정보 활용도	- 전자결재율 - 공무원1인당 전자게시판 게시건수 - 공무원1인당 전자민원 접수건수
		홈페이지 유용성	- 홈페이지 접속속도 - 주민1인당 월평균 홈페이지 접속자수 - 제공정보 종수
		정보화 교육시책	정보화 교육성과

· 2000년 지방자치단체 주민만족도조사의 설문항목

<표 2-83> 2000년 설문항목

영역	시책	문항지표
편의행정	민원서비스	- 공무원의 친절성 - 민원업무의 처리시간 - 시설환경의 쾌적성
복지향상	장애인복지	- 장애인시설 만족도
	보건서비스	- 보건소진료서비스 - 보건소시설 만족도
환경관리	자연환경보전	- 산림, 녹지 등 자연환경보전 만족도
	물관리	- 수돗물의 수량 만족도 - 수돗물의 수질 만족도
	폐기물관리	- 쓰레기수거 및 거리청소 만족도
산업지원	산업유치	- 산업유치 지원 만족도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	- 공공근로사업의 적절성
농림육성	농촌지도사업	- 농촌지도사업 만족도
생활기반	농어촌주택개량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만족도
	지방도로 정비	- 도로보수 및 관리 만족도
	옥외광고물 관리	- 옥외광고물관리 만족도
문화관광	문화기반시설	- 문화시설 만족도
	관광표지판	- 관광표지판 설치 및 관리 만족도
국토관리	도시계획	- 도시계획 만족도
	공원	- 공원면적 만족도 - 공원관리 만족도
소방	소방시설	- 소방시설 만족도
재해관리	재해대책	- 재해시 대응능력
재난관리	시설물관리	-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 만족도

제13절 2001년도 평가

I.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평가의 개요

(1) 개요 및 특징

2001년도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40개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정책과제, 기관역량,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등 3개 평가영역을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기관평가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주요정책과제에도 계량평가적인 요소를 보다 강화하였으며 기본법에 의거 정책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평가하고 대통령 주재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각 평가영역의 평가결과를 계량점수화하는 종합평정작업을 거쳐 평가영역별 및 종합적인 우수기관을 산정하여 공개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2) 정책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정부업무평가등에관한기본법」의 시행(2001.5.1)으로 기존의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규정에 근거한 제2기 정책평가위원회도 자동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평가기본법에 근거한 제3기 정책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2001. 5. 1일부로 운영하였다.

위원회는 대학교수 14명, 연구기관 5명, 시민단체 6명, 기업인 2명, 언론인 2명(여성위원 7명)등으로 구성되었다.

<표 2-84> 제3기 정책평가위원 구성현황 (2001년)

구분	성명	소속 및 경력	비고
위원장	조완규	한국생물산업협회 회장 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제도운영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행정학회 회장	
	김병창	한국자치경영협회 본부장	
경제 I (7명)	김동건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前) 한국재정학회 회장	기획예산처
	송위섭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노동부
	조왕하	코오롱그룹 부회장 (前) 동양종합금융 부회장	금감위
	신광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공정위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재경부
	이상경	(주)현대리서치연구소 대표이사 (YMCA지도력양성위원회 실행위원)	조달청 통계청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연구실장	국세청 관세청
	경제 II (7명)	김충섭	한국화학연구소 소장
홍성원		시스코시스템코리아 사장 (前) KAIST설계공학과 교수	정통부
민경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자부 중기청
이제호		성균관대 의대교수	과기부 기상청
하성규		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교부 철도청
유명숙		부경대 해양생물학 교수	해수부 해경청
김진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 교수	농림부 농진청

구 분	성 명	소 속 및 경 력	비 고
사회 문화 (6명)	박선희	경희대 관광경영학 교수	문광부 문화재청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국가보훈처 여성부
	문국현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이사	환경부
	임영숙	대한매일 논설위원	청소년보호위 국정홍보처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복지부 식약청
	최운실	아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前)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연구부장	교육부
일반 행정 (6명)	이호승	한남대 초빙교수	국방부 병무청
	연하청	명지대 법정대학교 교수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통일부
	김일수	고려대 법대교수 경실련 대의원대회 부의장	법무부 검찰청
	김현구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前) 성균관대 양현관장	행정자치부
	윤영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동아일보 2000년 자문위원회	외교통상부
	신동운	서울대 법대교수	법제처 경찰청

2. 주요정책과제 평가

(1) 평가대상과제

2001년도 국정운영 목표(국정지표)에 부합하는 과제로서, 연초에 국무총리가 발표한 ‘20대 주요국정과제’를 포함하고 실제 평가대상이 되는 단위사업까지 미리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정책평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63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2-85> 부처별 주요정책과제 (2001년)

부 처 명	주 요 정 책 과 제
< 部(18)>	
재정경제부	1. 효율적 경제운용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외환부문 안정유지 및 대외경제협력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1.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활용체제 구축 2. 생애단계별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개혁 지속추진
통 일 부	1.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본격 추진 2.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민족동질성 회복방안 추진
외교통상부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강화 2.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처한 통상외교 강화
법 무 부(*)	1. 국민인권신장 및 국가·사회기강 확립 추진 2. 선진 교정·보호행정 구현 3. 부정부패 척결 및 신뢰받는 검찰상 정립
국 방 부	1. 미래지향적 방위력 개선 및 국방조달 업무 개혁 2. 장병 사기증진 및 인사·교육제도 개선
행정자치부	1. 전자정부 구축 2.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부개혁 추진 3.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 구축
과학기술부	1. 첨단기술 개발의 전략적 추진 2. 원자력 기술개발 추진과 안전성 강화
문화관광부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2.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계기 관광 진흥 3.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태세 완비 추진
농 립 부	1. 농가경영의 안정 및 소득증대기반 확대 2. 농업관련 조직 구조개혁의 지속 추진
산업자원부	1.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화 촉진 2. 안정적 무역흑자기반 구축 및 외국인 투자의 질적 고도화 3.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에너지수급 시스템 혁신
정보통신부	1. 지식정보기반의 활용 촉진 2. IT산업의 적극 육성
보건복지부	1.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내실화와 국민연금의 건설한 운영 2.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개혁과 의료보장제도의 건설한 운영
환 경 부	1.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에코-2 프로젝트』 추진 2. 물, 공기,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의 선진화
노 동 부	1. 고용안정대책 추진 2.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여 성 부	1.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권익증진
건설교통부	1. 동북아 교통물류강국 기반 조성 2. 균형있는 지역개발 및 서민의 주거안정 추진
해양수산부	1. 동북아 중심항만 건설 및 운영 효율화 2.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구축

부 처 명	주 요 정 책 과 제
< 委員會(2) >	
공정거래 위원회	1. 독과점시장구조 개선 및 경쟁원리 확산 2. 소비자 보호시책의 강화
금융감독위원회	1.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 2.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본격 추진
< 處(4) >	
기획예산처	1. 공공부문 개혁의 차질없는 추진과 상시 개혁체계 구축 2.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
법 제 처	1. 정부 입법지원 및 국민참여 확대
국가보훈처	1.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향상과 보훈문화 확산
국정홍보처	1. 대내·외 정부 홍보역량의 획기적 제고
< 廳(15) >	
국 세 청	1. 공평과세의 기반구축과 조세정의의 구현
관 세 청	1. 통관운영의 신속화 및 효율화
조 달 청	1. 전자조달체계의 정착과 조달서비스 수준 제고
통 계 청	1. 경제사회변화에 부응한 통계 개발 및 활용 촉진
병 무 청	1. 병무행정의 투명성·효율성 강화
경 찰 청	1. 효율적인 민생치안체계 구축
기 상 청	1. 고객만족 기상서비스 실현 및 기상감시체계 보강
문 화 재 청	1. 문화재 보존체계 강화
농 촌 진 흥 청	1. 농업생명공학의 적극 육성
산 림 청	1. 환경친화적인 산림자원 관리·개발
중 소 기 업 청	1. 중소·벤처기업의 정보화 촉진 및 성장기반 내실화
특 허 청	1. 특허기술활용도 제고를 통한 지식기반사회화 선도
식품의약품 안전청	1.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철 도 청	1. 철도경영혁신 지속 추진
해양경찰청	1. 해상치안질서 확립 및 해양오염 방지역량 제고

※ 검찰청 평가과제는 법무부(3번과제)에 포함하여 평가

(2) 평가기준 및 방법

주요정책과제로 선정된 정책·사업 등을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의 3단계로 구분하여 6개의 평가기준 및 10개의 평가착안사항을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표 2-86> 주요정책과제 평가기준 (2001년)

구분	평가기준	평가 착안사항
정책 형성	①정책목표의 타당성	- 정책목표(전체목표 및 당해년도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정책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②계획내용의 충실성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정책 집행	③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④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대응하고 있는가 -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정책 성과	⑤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⑥정책효과성	-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공통 평가기준은 2000년도와 큰 틀은 같으나, 시행과정의 효율성에 있어 투입자원의 효율성에 대한 착안사항을 추가하는 등 평가착안사항을 보완하였다.

상반기에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연계성 등 정책형성부분과 정책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고 하반기에는 정책의 행정목표 달성도와 대국민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제별로 평가주관위원(정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주관위원 책임하에 평가를 추진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30명의 각 분야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지점검, 평가보고서 작성 등 평가과정 전반에 참여하였다.

또한 주요정책과제 평가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평가를 도모하고자 평가보고서를 중과제 단위로 서술하도록 하였으며 각 중과제별로 6개 평가기준에 따라 4개 평가등급(우수, 적절, 보통, 미흡)을 부여하여 객관화되고 비교 가능한 평가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3) 평가결과

종합평가보고서에서 각 분야별로 제시한 평가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분야

- 주요성과
 -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 운용을 통해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성장세를 유지
 - 금융·기업·공공·노사 등 4대 부문의 상시적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우리경제의 위기 대응능력이 향상됨
 - 지식경제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
 - 지속적인 SOC 투자 확충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지향
 - 중산·서민층을 위한 생활안정대책 추진
 - 소비자보호시책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적극 유도
- 개선보완할 사항
 -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에 따른 수출·투자감소세 지속에 적극적인 대처 필요
 -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미흡 및 일부 공공부문의 개혁 추진 일정 지연
 - 첨단산업분야의 체계적인 기술축적과 지원정책의 부처간 업무 연계가 다소 미흡
 - 주요 경제현안과제에 대한 신속한 정책대응 필요

② 통일·외교·안보분야

- 주요성과
 - 남북관계 상황 변화 속에서도 화해·협력정책 기조를 견지하여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한반도 안정유지에 기여

- 정상외교를 통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제적 위상 제고
 - 지역주의 확산 등 국제 경제·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전방위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예산 및 인력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한 통합전투력 관리기반 구축
- 개선보완할 사항
 - 남북관계에 대한 대국민 이해제고 노력 미흡
 - 재외국민 보호 등 일부 외교현안에 대한 신중한 대처와 충분한 대국민 홍보 부족
 - 일부 국방조달관련 투명성 부족

③ 일반행정분야

- 주요성과
 - 인권보장 강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전자정부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민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부의 경쟁력 제고
 - 성과중심·고객지향적인 선진 행정기법 적극 도입 시행
 - 교정효과 제고를 위해 집중보호관찰 제도 도입 등 교정교육 체계를 개선
 - 교통안전 및 예방위주의 재해·재난 대책과 테러대비 범정부 비상대책 수립 추진 등 국가안전관리체계 강화
- 개선보완할 사항
 - 공무원 인력관리정책 및 공직 경쟁력 강화방안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인터넷 이용 범죄 등 신(新)경제사범과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대책강구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④ 사회·문화분야

▪ 주요성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본격 시행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생산적 복지의 기본틀 마련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
- 문화·관광산업의 체계적 육성대책 추진을 통해 경쟁력 강화
-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노력 경주
- 여성정책 추진체제 확립 및 여성권의 신장 도모

▪ 개선보완할 사항

- 사회보험의 내실화 및 보건의료 제도개혁의 정착을 위한 보완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 체감에는 미흡
- 일부 교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현실여건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고, 인적자원 정책 관련 종합조정 기능이 아직 미흡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일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지연
- 월드컵의 전략적 활용 및 개최도시의 적극적 참여방안 강화 필요
- 관계부처간 연계·협조 부족으로 일부 여성정책의 실효성 미흡

3. 기관역량 평가

(1) 개요 및 평가대상

기관장의 리더십에 의해 추진되는 운영시스템의 개선 등 「기관운영 혁신노력」과 주요시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체평가 수행노력」을 평가하였다.

(2) 기관운영 혁신노력 평가

1) 평가개요

40개 중앙행정기관(18부, 4처, 16청, 2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을 대상으로 하반기 1회 실시하였다.

각 부처는 평가대상분야의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지표에 의한 추진실적을 작성·제출하였다.(추진실적에 대한 서술적 자체평가는 생략)

국무조정실 평가담당관이 각 기관에서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지출장 등을 통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각 평가지표별 배점에 의거하여 평정을 실시하였고, 정책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였다.

2) 평가대상분야

전자민원 등 온라인 대민서비스 제공·정보화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 강화·조직내부 정보화 및 지식기반 업무체계 구축을 평가하는 전자정부 구현노력, 인사행정의 효율성·국정홍보 강화노력을 평가하는 조직 및 정책관리 역량강화,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부패방지대책 추진을 평가하는 깨끗한 정부구현 노력 등 3대 분야로 구성하였다.

3) 분야별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가) 전자정부구현노력 평가

‘전자정부 구현노력 평가설문’에 의한 부처별 제출실적을 기준으로 홈페이지 확인, 현지점검 등을 거쳐 기관별로 계량평가하였는데 현지 확인은 국무조정실에서 부처별 홈페이지 확인 및 계량화 작업은 한국전산원에서 수행하였다.

전자정부구현노력의 평가지표는 다음 <표 2-87>과 같다.

<표 2-87> 전자정부구현노력 평가지표 (2001년)

평가항목	평가지표
열린정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정보의 전자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료, 발간자료, 영문정보 제공수준 ○ 온라인 정보공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청구매체, 온라인 조회정도, 공개수수료 온라인 납부방법, 정보공개율 등 ○ 전자적 민의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포럼 건수, 정책포럼 활용정도, 전자투표 건수 ○ Q/A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변 제공율, 영문홈페이지 Q/A
서비스정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담당자 공개, 민원별 정보제공 ○ 민원처리의 전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별 온라인 민원처리율, 온라인 민원처리실적, 민원수수료 온라인 납부 ○ 민원처리결과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시스템 운영방식,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실적 ○ 민원인 피해 구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인 피해구제제도 홍보, 피해구제제도의 구체화 정도
생산적 정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정보 공동활용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정보 ○ 지식공유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방 운영수준, 지식정보방 활용수준, 지식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결재율, 전자문서 유통율 ○ 조직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촉진실적, 법·제도개선 실적, 업무처리절차 개선 실적, 조직구조 개선 실적

나) 조직 및 정책관리 역량평가

인사행정의 효율성은 중앙인사위의 인사운영실태 점검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였고 국정홍보 강화노력은 주관부처인 국정홍보처의 협조하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았다.

<표 2-88> 조직 및 정책관리 역량평가 지표 (2001년)

평가항목	평가지표
인사행정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운영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임용등 인사권한 위임정도, 승진등에 있어 다면평가 실시여부, 개방형직위 총원비율 등 ○ 소속직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관리기준 이행정도, 승진시 능력 및 실적의 영향도, 삶의질 개선방안 추진실적 등
국정홍보 강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자료 배포실적 ○ 기관장 및 부기관장 홍보활동 실적 ○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시정노력 ○ 우수홍보 및 홍보미흡 사례

다) 깨끗한 정부 구현노력 평가

2001년도초 전 부처에 지침을 시달한 공직기강 확립대책 및 부패방지 추진대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였는데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과 협조하여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2001년 11월 27일 ~ 12월 1일까지 현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각 부처의 실적을 비교평가하였다.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았다.

<표 2-89> 깨끗한정부 구현노력 평가지표 (2001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공직기강 확립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추진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여부, 실천 가능성, 추진일정의 구체성·적정성 ○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상황에 대한 자체평가 여부, 공직기강관련 직원교육의 충실성 ○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저해 요인제거 및 근무여건 개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 문서 및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자체 보안대책 수립의 충실성, 주기적인 보안점검 및 부실사례에 대한 조치실태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개 확대(공통필수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참신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대내외적인 시행독려 노력 등 ○ 중점관리과제(부처선택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참신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대내외적인 시행독려 노력 등 ○ 자체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제도개선기획단 구성·운영, 기관차원의 추진노력, 자체관리과제 추진실태

4) 분야별 평가결과

가) 전자정부 구현노력 평가결과

- 각 기관은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행정업무의 전자화 처리 등 전자정부 구현에 노력하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책정보가 다양화되고 온라인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도 확산추세(온라인 행정정보 공개비율 : 76.5%)
 - 전자결재율이 90%이상인 기관이 22개(55%)에 이르고 타 기관과의 전자문서 유통도 시스템 호환 노력을 통하여 점차 개선되는 등 행정의 능률성도 향상
- 중앙행정기관의 전자결재율(2001년 11월 현재) : 87.6%

- 온라인을 통한 실질적 민의수렴은 미흡하여 전자민원처리의 확충과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의 내실화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
- 민원처리과정의 온라인 공개비율 : 45.3%

나) 조직 및 정책관리역량 평가결과

- 각 부처 인사행정의 효율성 정도를 평가한 결과 승진·전보 등 인사 운영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과장급 이상의 기술직 점유율도 향상되는 등 인사행정의 투명성·전문성이 제고되고 있으나, 개방형 직위에의 외부인사 채용(외부인사 채용 비율 16.2%)이나 직위공모제 운영 등이 미흡하여 공직인사의 개방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정부의 주요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국정홍보 활동은 각 기관장이 정책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전년도에 비해 홍보실적이 증가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해명·시정 노력도 향상
- 정책·사업관련 홍보활동 실적 (2001년 1월 ~ 11월)
 - : 기관 보도자료 배포실적(평균 309건), 기관장 홍보실적(평균 117회)
 - 우수 홍보사례
 - ① 에너지 절약(산업자원부) : 인터넷 등을 통한 퀴즈행사 실시
 - ② 친근한 경찰상 정립(경찰청) : 포돌이 홍보단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실시
- 대부분의 홍보가 결정된 정책이나 집행성과에 치중하고, 정책 형성이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의 국정 홍보 기능은 미약한 실정

다) 깨끗한정부 구현노력 평가결과

- 각 기관은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감찰을 강화하고, 사전적·자발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나 입찰, 단속실명제 등 부패 방지를 위한 자체 제

도개선이 형식적이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도 공직자의 자율적 참여보다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3) 자체평가수행노력 평가

1) 평가개요

40개 중앙행정기관(18부, 4처, 16청, 2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평가하였다.

2) 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별로 수립한 자체평가계획과 자체평가 추진노력에 대하여 다음의 평가기준과 착안사항을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표 2-90>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기준 (2001년)

구분	평가기준	평가 착안사항
(1)과제선정 및 계획 수립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 선정의 적절성	- 2001년 업무계획중 주요업무를 모두 선정하였는가 ※ 국별로 1~2개이하의 과제로 묶어서 평가 -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충실성
	② 자체평가계획의 충실성	- 평가계획 수립 및 충실성 여부
(2)평가과정	③ 평가수행의 충실성	- 공통평가기준의 적용여부 - 과제별 별도착안사항 적용여부(가점)
	④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전문가 참여 수준 ·민간위원 구성의 중립성 확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정도

구 분	평가기준	평가 착안사항
(3)평가내용	⑤ 정책목표 및 정책성과 평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에 대한 평가여부 및 적절성(상반기) ※ 목표의 구체화, 목표-수단간의 적절성, 여론수렴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여부 -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여부 및 적절성(하반기) ※ 목표의 달성도 및 국민에게 미치는 정책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여부
	⑥ 문제점 적시 및 대응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질적 문제점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본질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는가 -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여부
(4)평가결과 환류	⑦ 평가결과 환류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1999년, 2000년 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1998년 이후 실시된 특정과제 평가결과 조치사항 이행실태 포함)

3)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각 부처는 주요정책과제 공통평가기준과 착안사항에 의거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로 제출(상반기 : 6. 30, 하반기 : 11. 10까지)하면 국무조정실은 자체평가 수행노력 평가기준과 착안사항에 의거 각 부처 제출자료 내용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 등을 통해 확인·점검을 실시하였고 제시된 평가기준별로 배점기준을 설정하여 평정하였다.

4) 평가결과

가) 상반기 평가결과

평가결과, 대다수의 부처가 민간위원 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기법으로 정책추진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등 자체평가를 내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대부분의 부처가 민간평가위원을 중심으로 분과(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세미나 개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평가활동의 객관성·전문성 제고에 노력
 - 자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 총 593명의 위원 중 466명(78.5%)
- 다양한 평가기법 및 업무관리 방법을 개발하여 당초 설정한 업무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생산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목표관리·성과급 등 인사제도와 연계·운영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제고에 적극 노력
 - 전문가들과 함께 상설 Cyber 평가체제 구축 : 산업자원부
 - 단위사업별로 매주 철저한 실적관리 실시 : 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
 -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기관장 주재 중간평가보고회 실시 : 관세청
 - 평가결과의 목표관리·성과급등과의 반영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
- 평가내용과 관련하여 정책추진상의 본질적인 문제점 적시 및 대안제시 등 평가수행이 내실화 되어가고 있고, 지난해 평가 지적사항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거나 주요과제로 중점관리해 나가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도 강화함
 - 본질적 문제점 적시 및 대안제시 우수 : 국방부·관세청·외교통상부 등
 - 정책목표, 계획내용의 충실성 분석 우수 : 특허청·통일부·철도청 등
 -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적절 : 법제처 등 26개 기관
 - 총 451개 지적사항의 대부분(96.2%)이 추진완료 또는 정상추진(434개)
 - 일부부처의 경우는 자체평가에 대한 관심과 평가과제 선정·평가과정·평가내용 등에 있어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더 필요

- 과제선정 및 계획수립면에 있어서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에 대한 계량적인 설정이 부족하고, 평가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하는 등 충실성이 미흡한 경우
 -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구체화, 평가계획 수립 미흡 : 병무청 등
- 평가과정면에 있어서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민간평가위원의 실질적 평가참여(소위원회, 간담회, 현장점검 등)가 부족한 경우
 - 소위원회 미구성 등 위원회 활성화 미흡 : 법제처·기상청 등
- 평가내용면에 있어서는 정책형성과 관련한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계획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분석이 형식적이거나, 본질적인 문제점 적시 및 대안제시에 있어서도 단순한 사업추진 배경과 추진상황을 기술하는등 문제점 발굴 노력이 미흡한 기관
 - 정책목표 타당성, 충실성 등 분석 미흡 : 통계청 등
 - 본질적 문제점 적시 및 대응책 마련 미흡 : 식품의약품안전청·재정경제부 등
- 평가결과의 환류면에 있어서 일부 부처는 1999년, 2000년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상황이 부진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기관
 -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부진 : 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 등 14개 기관

나) 하반기 평가결과

- 잘된 점
 - 1998년 자체평가제도 도입 이후 평가추진체계, 평가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자체평가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이 확대되고(평균 78.9%),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정책을 분석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이 크게 제고
 -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성과급 등 인사제도를 연계·운영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 증가로 이제는 자체평가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흡한 점

- 이러한 자체평가의 운영을 통해, 정책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집행 및 성과까지 연계 분석하고 결과를 업무 계획에 반영·환류함에 따라 정책의 효율성도 점차 제고되고 있었으나, 일부기관의 경우, 민간평가위원의 실질적 평가 참여가 부족하거나, 정책내용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체평가 노력이 미흡한 경우도 있어 기관장의 관심과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특정과제 평가

(1) 개 요

2001년도에는 「신기술 활용 증진방안」,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 보건·복지정책 평가」 등 6개 과제를 특정과제로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국무총리 주재 합동보고회 등을 통해 평가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총 129개의 개선조치사항을 제시하였다.

<표 2-91> 과제별 주요 개선조치사항 (2001년)

과제명	주요 개선조치사항	비고
신기술 활용증진방안 (과학기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 지정심사제도 개선을 통한 신기술의 신뢰성 제고 ○신기술 활용 및 지원제도 강화 ○신기술 사후관리체계 확립 등 총 15개 개선사항 	2001.2.8, 합동보고회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정책 평가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추진체계 강화 ○노인취업촉진정책의 실효성 제고 ○장기요양 보호서비스 제공기반 확충 ○노인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체계 확립 등 총 27개 개선사항 	2001.4.6, 합동보고회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실태 평가 (청소년보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청소년 유해시설 관련제도 개선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청소년 보호정책의 조정 및 연계 체계 강화 등 총 15개 개선사항 	2001.4.6, 합동보고회

과제명	주요 개선조치사항	비고
마약류의 관리 및 단속실태 평가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약류대책을 위한 범정부기구 설치 ○ 마약사범 관리 및 치료·재활기능 강화 ○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대한 효율적 관리 강화 ○ 마약사범 수사 및 단속체계 강화 ○ 마약류의 수요감축 및 확산 예방 ○ 국제협력 및 정책연구기능 강화 등 총 21개 개선사항 	2001.11.1, 합동보고회
21C 동북아 항만물류중심국 도약을 위한 항만정책 평가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다각적 투자재원 확보방안 강구 ○ 항만물동량 확보전략 추진 ○ 제3세대 항만으로의 기능확보방안 강구 ○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한 노력 강화 ○ 연안해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등 총 18개 개선사항 	2001.12.11, 합동보고회
벤처기업 육성시책 평가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 창업보육시책 체계화 등 창업지원제도 개선 ○ 자금지원제도 개선 ○ 입지·기술·인력 지원 개선 ○ 정책추진체계 개선 등 총 33개 개선사항 	2001.12.28, 합동보고회

(2) 특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1998년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특정과제로 선정·평가한 17개 과제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17개 과제중 국정현안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의성이 있는 5개 과제(1999년 평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시책, 2000년 상반기 평가한 4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12개 과제는 서면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미흡한 개선조치과제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토록 조치하고, 1998년~1999년 평가과제에 대해서는 2년의 관리기한이 경과되어 관리를 종결하였다.

5. 만족도 조사

만족도조사는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각각 하반기에 1회 실시하였다.

(1)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1) 조사목적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여 주요정책과제 평가에 반영하고 만족도 조사결과를 향후 정부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의에 입각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도모하고자 조사를 추진하였다.

2) 조사대상

조사대상기관은 40개 중앙행정기관의 63개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는 일반국민인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제주도 및 도서지방 제외)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다단층화 비례확률 추출법(PPS)에 따라 총 2,800명(7개 조사집단에게 각 9개 과제를 그룹화하여 조사)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2-92> 2000년도 조사방식과의 비교 (2001년)

구분	평가집단	평가집단별 표본수 (총표본수)	평가집단별 평가정책	평가집단별 설문문항
2000년도	3	1,000명 (3,000명)	20 ~ 21개	120여개
2001년도	7	400명 (2,800명)	9개	50여개

3) 조사방법

설문대상 정책에 대한 인지·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지자의 만족도 점수만 조사결과에 반영하였고, 비인지자에 대한 조사결과는 해당 정책의 인지율, 인지집단 및 비인지집단의 만족도 비교분석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만족도 측정척도는 중간값이 없는 4점 척도(2000년도)에서 중간값(보통)이 있는 5점 척도로 개선하여 응답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척도간 점수차가 25점으로 4점 척도에 비해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지 않는 안정적인 결과를 획득하였다.

하반기 1회(2001년 10월 9일~11월 2일 : 25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외부전문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였다.

4) 조사항목

-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전반적인 체감만족도, 항목별 만족도(정책의 적절성, 정책의 효과성)를 조사
 - 산출식 : [전반적인 체감만족도(50%)] + [항목 만족도(50%)]
→ [적절성(25%) + 효과성(25%)]
- 만족도 조사설문 내용
 -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항목을 보다 쉽고 가볍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다소 어려운 정부정책에 대해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정책명을 일반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로 대체하고 설명문(보기카드)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

5) 조사결과

-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인지도
 - 63개 정책의 인지도 평균이 52.9%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가 정책이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미흡한 수준임
- 인지도와 종합만족도간의 낮은 상관관계
 - 일부 정책의 경우 인지도와 종합만족도 모두 높은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정책은 각 정책의 내용이나 추진상황에 따라 종합만족도가 결정되었고 인지도와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음
- 정책분야간 비슷한 수준의 평가점수
 - 종합만족도에서 경제분야, 사회문화분야, 일반행정분야간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각 항목에 있어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임
- 체감만족도에 대한 낮은 평가
 - 응답자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만족도가 정책의 적절성이나 효과성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음
- 서비스 중심 정책이 상위로 평가
 - 서비스 중심의 정책집행기구인 기상청, 철도청, 통계청, 조달청, 산림청 등 청단위의 부처가 상위권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 정보/문화산업 정책이 상위로 평가
 -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정보화 정책과 문화관련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음
- 쟁점화된 일부 정책이 하위로 평가
 - 언론매체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국민연금, 의약분업, 부정부패 척결 문제 등의 정책이 타 정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음

(2) 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2001년도부터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인터넷으로 실시하는 조사가 추가됨에 따라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일반과 인터넷조사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조사목적

각 부처 민원행정 업무의 처리방식 및 절차, 공무원의 태도,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여 기관간 및 전년도 조사결과와 비교 평가함으로써 각 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의 개선과 민의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대상

조사대상기관은 40개 중앙행정기관(18부, 4처, 2위원회, 16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일반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와 인터넷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따라 일반민원인과 인터넷사용민원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실시하였고 설문조사대행은 현대리서치에서 수행하였다.

3) 추진내용

가) 일반민원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조사방법 측면에 있어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모집단

- 2001년 1월~9월간 중앙행정기관 본청 및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각 1개)의 민원접수대장에 기록된 민원인

▪ 표본규모 및 기관별 할당

- 조사가 행해지는 표본규모는 2000년도 조사의 4,032개보다 800여개 많은 4,889개로 이러한 표본규모는 전체 모집단 규모인 301,480개의 약1.6%에 해당
- 기관당 평균 100개 표본(총 4,889개)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하되 최소 유효표본(30여개)을 상회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중 상당수를 처리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민원의 포함비중을 2000년 10%에서 20%로 확대
- 인터넷을 통해 접수·처리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당해 기관의 만족도 점수에 반영

조사는 민원인과의 직접면접조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2001년 10월 1일~11월 10일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항목

- 1998년~2000년까지의 조사결과 가중치가 떨어지는 차원과 유사·중복적인 설문문항을 조정
- 6개 차원, 26개 설문문항(2000년) → 5개 차원, 20개 설문문항으로 조정

<표 2-93> 일반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차원별 세부평가항목 (2001년)

차원	세 부 질 문 항 목
접근용이성	①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 ② 해당 사무실 혹은 창구에 대한 안내 ③ 전화 혹은 창구 문의시 공무원의 안내태도 ④ 담당공무원과 면담 혹은 전화통화 편이성
편 의 성	① 민원 신청시 서식과 신청절차의 간편성 ② 업무처리 과정상 관련 창구 및 부서의 수 ③ 구비해야 할 서류의 수량 ④ 특정 민원해소를 위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 ⑤ 민원신청방법의 다양성(전화, 팩스, 인터넷 등)

차원	세 부 질 문 항 목
신 속/ 정확성	①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의 즉시성 ② 담당 공무원의 정확하고 능숙한 민원처리 ③ 민원서비스의 처리시간 ④ 민원처리 기간통보 및 준수여부
대 응/ 환류성	① 민원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문의 등의 수용태도 ②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근거나 이유 제시여부 ③ 민원처리의 진행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④ 정보의 공개여부
형평성	① 민원 처리결과의 합당성 ② 업무처리의 공정성 ③ 담당공무원의 부정행위

나) 인터넷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 조사방법

- 모집단은 일반민원과 동일한 기간동안 해당 부처 홈페이지(인터넷)를 통해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으로 설정하였고 기관별로 할당된 유효표본 규모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전화를 기본으로 하되 부가적으로 e-mail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율을 강화

▪ 조사항목

- 민원인들이 사이버상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접점 및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대상으로 만족정도를 조사하고자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별도로 설정함

<표 2-94> 인터넷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2001년)

측면	항 목	세 부 설 문 항 목
접근 과정	접근용이성	① 인터넷으로 민원처리를 위해 해당 부처의 홈페이지로부터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란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관련정보 제공	② 해당 부처가 홈페이지내 민원관련 란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지니고 있는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신청용이성	③ 사이버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거나 갖추어야 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처리과정 및 결과	신속성	④ 인터넷을 통해 신청된 민원이 처리되는 소요기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대 응/ 환류성	⑤ 인터넷을 통해 신청된 민원의 처리과정이나 상태에 관해 제공되는 정보나 검색 가능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민원처리 결과	⑥ 인터넷을 통해 신청된 민원에 대한 해당 부처의 처리결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반적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⑦ 인터넷으로 처리한 민원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다) 종합만족도 산정

- 종합만족도 산정방식은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설문문항이 지니는 가중치를 계산한 후 이를 적용하여 만족도를 산출하였고 일반민원과 인터넷 민원을 종합하여 기관별로 단일한 만족도를 산출하기 위해 기관별로 전체 유효표본에서 차지하는 일반민원과 인터넷 민원의 비중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만족도를 산정하였다
- 종합만족도 = (일반민원인 만족도 × 표본내 구성비) + (인터넷 민원인 만족도 × 표본내 구성비)

4) 조사결과

- 종합 만족수준
 - 40개 중앙행정기관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수준은 65.5점으로 이는 “보통”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66.4점, 인터넷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60.4점으로 나타남
- 기관간의 만족수준 비교
 - I 그룹(정책·기획기관)/ II 그룹(집행기관)간 종합만족도를 비교하면 I 그룹(총21개 기관)에서는 과기부, 해수부가 가장 높았고, 법무부, 복지부가 가장 낮았으며(평균 61.4점), II 그룹(19개)에서는 기상청, 조달청이 가장 높고 검찰청, 보훈처가 가장 낮음(평균 68.2점)
- 일반민원 및 인터넷 민원의 각 차원별 비교
 - 일반민원의 각 차원별 만족도
 - 신속·정확성 : 과기부(72.6)/ 기상청(88.8)이 가장 우수(평균 65.4)
 - 대응·환류성 : 해수부(73.7)/ 기상청(92.6)이 가장 우수(평균 63.4)
 - 형평성 : 과기부(77.9)/ 기상청(92.6)이 가장 우수(평균 67.6)
 - 인터넷 민원의 각 차원별 만족도 비교
 - 접근용이성 : 예산처(83.9)/ 법제처(83.0)가 가장 우수(평균 70.0)
 - 관련정보제공 : 예산처(75.1)/ 기상청(76.1)이 가장 우수(평균 60.0)
 - 민원처리결과 : 산자부(64.5)/ 기상청(73.8)이 가장 우수(평균 53.3)
- 기관별 종합만족도의 2000년 순위와의 비교
 - 전체적으로 보아 만족수준이 향상된 기관이 21개, 하락한 기관이 18개이었으며 이중 기획예산처, 환경부 및 통계청, 중기청이 가장 상승
 - 기획예산처의 경우 인터넷 민원서비스의 개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통계청은 접근용이성, 민원처리의 신속성이 획기적으로 개선
 - 통일부, 문화관광부 및 법제처, 국가보훈처가 가장 하락하였으며 통일부는 접근용이성, 편리성 측면의 하락이 컸고, 국가보훈처는 민원처리의 대응·환류성, 형평성 측면의 하락이 크게 나타남

6. 종합평정 및 우수기관 선정

(1) 추진개요

정부평가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부처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1년도말 기관평가의 결과를 계량점수화 하여 기관간 우열을 상호비교하는 종합평정을 실시하였으며, 평정기준과 평정결과의 공개 범위는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1) 평정 대상기관 및 영역

- 2001년도 평가대상인 40개 중앙행정기관을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비교 평정을 실시
 - I 그룹(21개 기관) : 18부, 1처(기획예산처), 2위원회(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 II 그룹(19개 기관) : 16청, 3처(국가보훈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 주요정책과제, 기관역량,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등 3개 평가영역별로 구분, 평정기준에 따라 평정하고 3개 영역을 종합한 종합적인 평정도 실시

2) 평정결과의 공개범위

평정 대상영역별 특성과 평정방법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범위를 설정하였으며 기관별로 특성이 상이하고 정성적 평점이 불가피한 주요정책과 기관역량 영역은 전체기관간 비교보다 우수기관만 선정 공개하였다.

- 2001년도 공개범위
 - 주요정책과제 : 우수기관 선정 공개
 - 기관역량평정 : 우수기관 선정 공개
 - 민원행정서비스조사 : 3등급으로 전 기관순위 공개
 - 종합평정 : 우수기관(그룹별 2개 기관)선정 공개

(2) 영역별 평정방법 및 우수기관 선정결과

1) 주요정책과제 평정

가) 배점기준

<표 2-95> 배점기준 (2001년)

구분	가중치(%)	세부내역
정책평가위원 평정	70	- 정책형성 20% - 정책집행 30% - 정책성과 50%
국민 정책만족도	30	- 전문조사기관 조사
합계	100	

나) 평정방법

- 평가위원 평정은 주요정책과제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정책형성·집행·성과 등 단계별로 기준에 따라 평정
 - 전체 평가위원이 총 4개의 소위별로 소관 과제에 대해 각자 5등급으로 평정하고 합산 평균
- 국민만족도 평정은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해 정책별 만족도 점수를 조사
 -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2,800명 직접 면접조사

다) 평정결과 우수기관

- I 그룹 : 국방부, 환경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 II 그룹 : 철도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통계청

2) 기관역량 평정

가) 평정대상 및 배점기준

<표 2-96> 평정대상 및 배점기준 (2001년)

구분	가중치 (%)	항목 · 가중치(%)	세부지표
기관운영 혁신노력	50		
①전자정부 구현노력	(20)	-열린정부 구현노력: 30 -서비스정부 구현노력: 30 -생산적정부 구현노력: 40	4개지표 · 17요소 4개지표 · 15요소 4개지표 · 12요소
②조직 및 정책관리역량	(20)	-인사행정의 효율성: 60 -국정홍보노력: 40	2개지표 · 17요소 4개지표 · 4요소
③깨끗한정부 구현 노력	(10)	-공직기강확립 추진: 50 -부패방지 추진: 50	5개지표 · 19요소 3개지표 · 11요소
자체평가 수행노력	50	-상반기 평가결과: 20 -하반기 평가결과: 80	
합계	100		

나) 평정방법

- 각 평가분야 · 항목에 대해 세부지표와 요소를 마련, 현지확인을 거쳐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일부 평가항목의 경우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문성을 제고함
 - 인사행정의 효율성 : 중앙인사위원회
 - 전자정부 구현노력 : 한국전산원
 - 깨끗한 정부 구현노력 : 국무조정실(조사심의관실)

다) 평정결과 우수기관

- I 그룹 : 농림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 II 그룹 : 농촌진흥청, 조달청, 특허청, 관세청

3) 민원 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정

가) 배점기준

외부 용역 조사결과에 의한 2001년 만족도 종합점수와 전년대비 향상지수를 종합하여 평정하였다.

- 가중치 : 2001만족도 종합점수(80%), 향상지수(20%)

나) 평정방법

40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일반 및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 총 4,889개(기관평균 120개)의 민원에 대해 해당 민원인을 직접 면접조사

다) 평정결과

- I 그룹(21개 기관)

<표 2-97> I 그룹

구분	부 처 명
상위기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중위기관	농림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행정자치부, 통일부, 정부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
하위기관	건설교통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 II 그룹(19개 기관)

<표 2-98> II 그룹

구분	부 처 명
상위기관	기상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중위기관	법제처, 농촌진흥청, 국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문화재청
하위기관	특허청, 국정홍보처, 경찰청, 철도청, 대검찰청, 국가보훈처

4) 종합평정

가) 배점기준

<표 2-99> 종합평정 배점기준 (2001년)

영역별	가중치(%)	비고
주요정책과제	50	
기관역량	30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20	
합계	100	

나) 평정방법 : 3개 영역별 평정결과를 가중치에 의거 합산 취합

다) 평정결과 우수기관

- I 그룹 : 환경부, 정보통신부
- II 그룹 : 농촌진흥청, 조달청

II. 지방자치단체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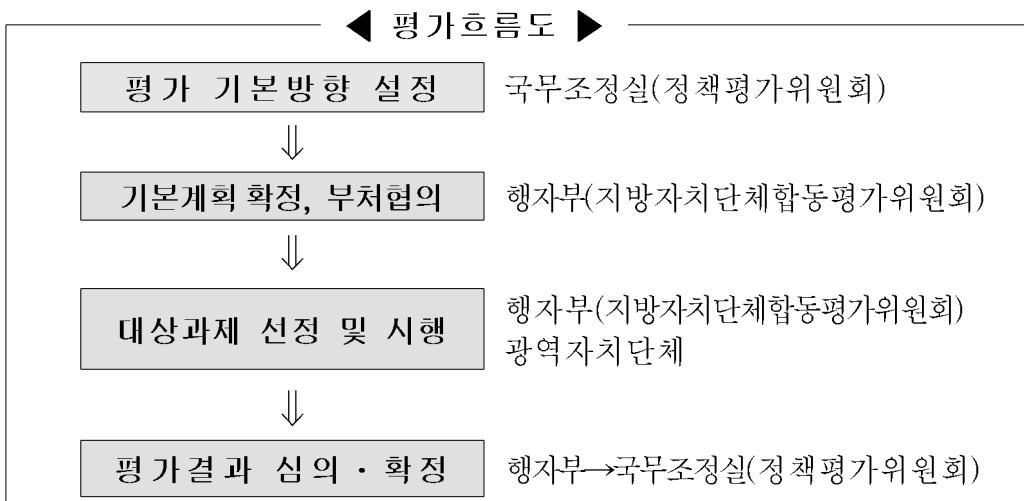
1. 평가의 개요 및 특징

(1) 평가의 목적 및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의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효율성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정책결정 지원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처별 각종 행정평가의 통합·운영으로 자치단체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고자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및 「합동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주요시책, 추진역량, 주민만족도 조사 등 3개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지역실정을 감안 市部와 道部로 구분하여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종합순위제 등 서열중심의 평가방식을 배제하고, 부문별 우수기관 선정 및 우수시책의 발굴·전파에 역점을 두었다.

<그림 2-8> 평가흐름도 (2001년)



(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220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해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었다. 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인 위원을 제외)으로 구성되었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었다.

<표 2-10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명단(2001년)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허범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	김미경	상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상렬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심의관
	김성태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김양희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김통원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소장
	문태훈	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염재호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원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이은재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창수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장인태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장
	정재희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교수
허준행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2. 평가 추진내용

(1) 평가대상 및 분야

평가대상기관은 광역 지방자치단체(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
되 시·군·구 집행상황 점검이 필요한 경우 현장 평가시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다.

평가분야는 주요시책 분야(6개 부문 27개영역), 추진역량 분야(3개
부문 10개영역) 총 62개 시책과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 합동평가 참여시책 : 12개 기관, 62개 시책(2000년 대비 2개부처
12개 시책 증가)
 - 행자부 32, 건교부·환경부 각 6, 복지부 5, 산자부·여성부 각 3,
노동부 2, 문화부·식약청·중기청·특허청·문화재청 각 1개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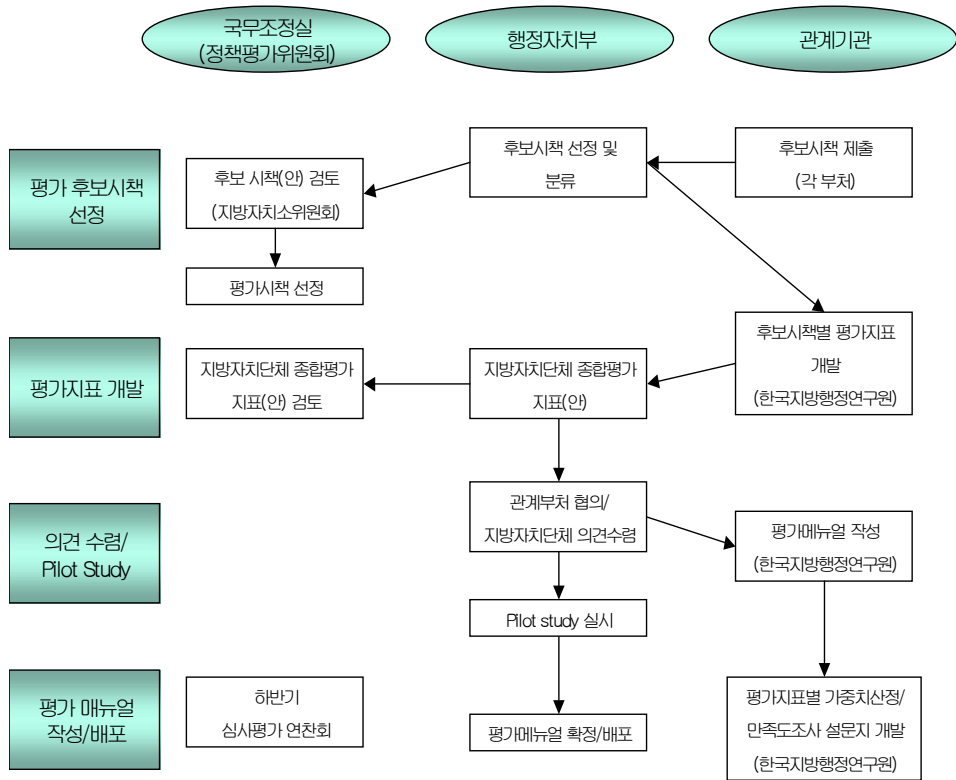
(2) 평가도구의 개발

주요시책 및 기본역량 평가후보과제 선정은 「국정과제」, 「2001년
정부 및 시도 업무계획」내용 중 전체 시·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각종시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의 목적·취지, 평가요소로서의 적
합성, 평가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시책 선정을 위한
시·도 평가업무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전문연구기관(한국지방행
정연구원)에서 후보시책을 기준으로 개별평가 지표를 개발하였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Pilot
study(모의실험)를 실시하고 정책평가위원회(지방자치소위)에서 평가
지표(261개 세부지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 세부지표는 자료(표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참조

<그림 2-9> 지방자치단체 평가도구 개발절차 (2001년)



(3) 평가의 실시

지방자치단체에 평가매뉴얼 및 세부시행지침을 9월초에 시달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배포된 평가매뉴얼에 의거하여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면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으며 각 시·도의 자체평가는 9월 ~ 10월의 기간동안 실시하였다.

주요시책 소관부처(부서) 및 전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심사위원회 및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시·도 자체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충분한 협의와 검증(모의실험)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기초로 11월에 서면평가를 실시하였고 서면평가는 대학교수, 전문가(연구원), 관련 중앙부처 공무원

원들로 구성된 평가반에 의해 수행하였으며 지역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반(市班)과 도반(道班)을 별도로 편성·운영하였다.

서면평가 결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개 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주민만족도 조사는 10월에 실시하였는데 표본의 크기는 $\pm 2.5\%$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 3,500표본 정도로 하되 각 지역별 인구를 고려하여 각 시·도별로 할당추출방식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자료의 획득가능성, 예산제약 등을 고려해 전화조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의 시행은 별도의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였다.

(4) 평가가중치 산정 및 평점방법

· 가중치 산정기법

-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 계층분석 또는 상대비교법)를 사용하였는데 평가지표를 계층화한 후, 지표간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기법임
-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2001년 11월 5일 ~ 12월 5일중 평가부문별로 평가영역, 평가시책, 평가지표 순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상호비교가 가능토록 작성 설문을 작성하여 각 부처 추천 전문가(270명), 중앙부처 공무원(200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720명) 등 총 1,190명에게 실시
- 우편조사(전문가)와 행정계통조사(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를 병행하였으며 가중치 산정은 설문조사결과를 D/B화한 후, AHP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평가영역·시책·지표별로 산정
- 지역개발부분과 환경관리부문은 시·도별 가중치를 별도로 산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의 가중치 편익(bias)를 시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을 반영한 평균가중치를 도출
- 평균가중치 = (전문가가중치 + 지방자치단체 가중치 + 중앙부처 가중치)/3
- 세부지표별로 산정된 평균가중치를 적용하여 평점을 산출하였는데 평점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세부지표별 가중치 : 별첨)

▪ 평점방법

제 1 단계 시·도제출자료 확인

- 각 시·도에서 평가매뉴얼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제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민간전문가와 중앙부처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에서 세부지표별 평가요소(평가착안사항)에 대한 서면·현장평가 실시
- 전문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방재연구소,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등

제 2 단계 세부지표별 평점

- 세부지표별 만점은 100점으로 하고 평가매뉴얼에 제시된 평가요소별로 실적을 확인하되, 평가자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적의 배분
- (예, 70 : 30 또는 80 : 20)하여 각각 평점한 후 합산
- 자치단체의 실적치가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상회한 경우, 평가자 판단 하에 전부 만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치를 기초로 등급평점
- 특정지표의 평점결과가 타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한점수를 60점으로 하여 일정간격으로 100점까지 배점
- 단, 각 시·도의 실적이 좋을 경우 하한점수를 60점 이상 설정도 가능

제 3 단계 평가부문별 최종 평점

- 평가지표별 평점 = $\sum(\text{세부지표별 평점} \times \text{세부지표별 가중치})$
- 평가시책별 평점 = $\sum \text{평가지표별 평점}$
- 평가영역별 평점 = $\sum \text{평가시책별 평점}$
- 평가부문별 평점 = $\sum \text{평가영역별 평점}$

3. 평가결과 및 결과활용

(1)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 2001년도의 지방자치단체평가 결과는 9개 부문별로 시부와 도부로 구분,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부문별 최우수, 우수)하였으며, 선정된 기관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재정인센티브를 부여(80억원)하였고, 우수기관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도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88명에게 시상하여 격려함
- 2001년 평가결과 확정후 종합보고서와 시·도별 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도와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환류토록 하고 각 시·도별 시책의 우수사례를 담은 자료집은 각 시·도에 배포하여 벤치마킹에 활용하였으며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별로 시책개선계획을 마련하여 다음 해의 사업추진시 반영토록 조치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시책별로 개선조치가 되도록 협조를 요청함

<표 2-10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부문별 우수기관 현황(2001년)

부문별		우수 자치단체
주요 시책	행정혁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기도
	산업경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환경관리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제주도
	지역개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충청북도
	안전관리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충남남도
추진역량	행정역량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재정역량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정보화역량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

※ 부문별 최우수기관은 시·도를 분리하여 최우수·우수로 선정

(2) 지방자치단체 평가실시의 성과

2001년도 성과는 「평가기본법」에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합동평가의 권위와 정당성 확보하였고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를 합동평가에 통합·운영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전문기관이 개발한 지표에 대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보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 지표의 정량화를 추구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 중앙의 정책방향과 자치단체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중앙과 자치단체의 협조체제가 강화되었으며 평가를 자체 진단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전향적 의식 확산
 - 산자부·환경부 등 일부부처에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서울·부산·경남 등 일부 시·도는 금번 평가결과를 「목표관리제」 측정결과 및 「성과급지급」 기초자료로 활용 계획

Ⅲ. 보고대회 및 사후관리

1. 보고대회 개최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는 2001년 7월 23일 정부세종로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제로 실시하였으며, 주요정책과제 평가 및 자체평가수행노력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하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는 2002년 1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정책평가위원회 위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제로 실시하고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였다.

2. 결과조치

2001년 정부업무 평가결과는 (상·하반기)로 각 기관에 송부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개선토록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정기점검 하였다.

- 2001년도 상반기 평가결과 조치사항 : 438건
 - 주요정책과제 관련 : 249건
 - 자체평가수행노력 관련 : 189건

- 2001년도 하반기 평가결과 조치사항 : 805건
 - 주요정책과제 관련 : 323건
 - 자체평가수행노력 관련 : 167건
 - 기관운영혁신노력 관련 : 315건

<참고자료>

· 주요시책분야(28영역, 44시책, 103지표, 199세부지표)

<표 2-102> 2001년 일반행정혁신부문(2영역, 5시책, 12지표, 22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편의행정	민원행정 제도운영	민원제도 운영성과	- 민원줄이기
		민원사무 간소화성과	- 증명민원서류 감축실적 - 민원처리기간 단축실적 - 처리절차 간소화실적
		민원행정 정보화실적	- 사이버민원실운영실적
	민간위탁	순수민간 위탁실적	- 민간위탁 인력감축율 - 민간위탁 예산절감율
		공사·공단위탁 실적	- 공사·공단 위탁실적
	행정서비스 현장	현장홍보 성과	- 교육 및 홍보실적
		현장실천 · 관리노력	- 서비스 개선시책 추진실적
			- 인센티브 부여실적 - 고객만족도 조사 실적 - 시정·보상실적
	지적관리	지적업무 추진성과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실적 - 지적공부등록사항 정비실적 - 지적업무처리율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성과	- 지적측량기준점 정리실적
규제 개혁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 노력	-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개혁위 심사(개최)실적 - 규제정비 이행준수실적 - 규제개혁 교육실적
		잔존규제 발굴·정비성과	- 2000년 미정비규제·2001년 신규 규제·법령 미근거 규제 발굴·정비실적
		규제개혁 홍보실적	- 규제개혁사이트 정비·개선 실적

<표 2-103> 2001년 보건복지·여성부문(7영역, 10시책, 18지표, 44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 적정관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실적 - 보장비용환수 실적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실적 - 기초생활보장담당인력 확보
		자활사업추진 성과	- 자활사업추진실적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증진 성과	- 장애인관련 홍보실적 - 장애인우선허가사업 허가율 - 장애인생산물 구매율
가정복지	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회관 이용 실적	- 노인복지회관별 월평균 이용율 - 지역노인이용면적 비율
		사업별 예산 집행시 기준수	- 사업별 집행예산 배정시기 준수실적
		수급자관리의 적절성	- 경로연금 대상신규수급자 발굴비율 - 경로연금·교통수당 집행 홍보·안내실적
		업무발굴의 적극성	- 시범사업참여 및 자체사업실시실적
	장묘 제도 정착	장사시설 설치·관리 효율화	-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및 집행실적 - 장사시설정비실적 - 적정시설관리실적
		묘지실태 조사 및 정비실적	- 묘지실태조사실적 - 묘지 등 정비실적 - 화장 및 납골증가비율
건강증진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역정신보건사업 내실화	- 지역사회정신보건관련 시설설치실적 -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실적 - 공공기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실적 - 정신보건관련 교육실적
	구강보건사업강화	구강보건사업 추진성과	- 구강보건 전문인력 배치실적 - 구강보건실 설치실적 - 구강보건교육사업 실적
식품안전관리	식품안전관리	식품사전관리성과	- 품목제조보고 적정성판단 실적 - HACCP(위해요소집중관리기준) 활성화 추진실적
		부정·불량 식품감시 활동성과	- 대상업소 감시인력 및 전문성확보 - 지도·단속 실적 - 안정성검사 실적 -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적
		민간감시 기능 강화	- 주민신고보상금제도 운영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적
		식품점업소 관리 및 식중독예방 강화	- 식품점객영업 단속실적 -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점검실적 - 식중독발생건수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여성 참여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위원회여성 참여실적	- 기관별 여성참여율 - 기관별 변동 또는 신설위원회의 여성참여율
여성 권익	성희롱예방 교육 실시	성희롱예방 교육성과	- 성희롱예방교육실적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여성폭력 근절성과	- 여성폭력범죄신고건수증가율 - 여성보호실적 - 지역사회 여성폭력근절활동실적

<표 2-104> 2001년 산업경제부문(4영역, 7시책, 14지표, 27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고용 촉진	취업지원 실적	취업지원 및 고용안정성과	- 취업정보센터 이용률 - 취업률 - 전담인력수 확보
		공공근로 사업 추진 성과	- 상설기동점검단 투입인원비율 - 선발인원비율 - 재해사고 발생인원비율 - 홍보실적
	고용촉진 훈련	훈련계획 적절성	- 우선선정직종위탁율
		훈련성과	- 교육훈련 수수료율 - 자격취득률 - 취업률
지역 산업 진흥	지역기술 혁신지원	계획추진 실적	- 연차별계획 수립 및 집행실적 - 사업참여율
		지원성과	- 지적재산권 출원실적
	지역투자 유치	투자유치활동	- 투자유치 인프라 구축실적 -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실적 - 투자유치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효과
		투자유치 성과	- 투자유치 증가율
소비자 보호 및 물가 관리	상거래 질서 확립	위조상품 추방 홍보제도실적	- 위조상품 추방홍보·제도실적
		위조상품 단속활동 성과	- 위조상품 단속실적
	지방물가 관리	물가안정 성과	- 전년대비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율
		대민협력유도 노력	-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실적 - 심의위원회 민간참여율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정책추진노력	-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에너지절약 홍보·교육실적
		에너지절약 성과	- 산업체 에너지절약실적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실적

<표 2-105> 2001년 환경관리부문(6영역, 6시책, 16지표, 41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환경 관리 일반	환경관리 일반	지방의제 21 추진실적	- 지방의제21 수립율 - 추진협의회 구성율 - 교육홍보실적
		환경시책 추진실적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추진율 - 환경표지제품 구매율
		환경시책 추진실적	- 환경관리중장기계획 수립실적
대기 관리	대기관리 실천시책	대기배출 업소관리 성과	- 배출부과금징수율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실적	- 천연가스버스 보급율 - 천연가스충전소 확보율
		운행차배 출가스 관리강화	- 배출가스 단속율
		도로먼지 저감실적	- 도로청소차량확보율 및 가동율
식음 수관 리	먹는 물 관리시책	물수요 관리실적	- 절수기 보급율 - 절수율 - 수도요금현실화율 - 누수방지율 - 물절약홍보
		수돗물 수질관리 성과	- 정수장 수질관리 실적 - 수질검사민간참여실적 - 간이상수도 관리실적
수질 관리	수질관리 시책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 폐수배출부과금 징수율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개선 성과	- 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실적 -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실적 - 관거유지관리 실적 - 방류수재이용율(도)
		폐수배출 업소 및 불법업소 지도·단 속실적	- 폐수배출업소 및 불법업소 지도·단속비율 - 환경오염등 신고포상금지급율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폐기물관리	폐기물관리시책	폐기물감량 화성과	- 쓰레기종량제 정착실적 - 1회용품·포장폐기물 감량추진 실적
		폐기물재 활용실적	- 재활용용품 분리수거율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증가율 - 재활용품 적체율
		폐기물 안전관리 성과	-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및 신고포상금제 추 진실적 - 폐기물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
		제도개선 및계획수립	- 조례제정실적
자연 환경 보전	자연환경보 전시책	제도개선 및 계획수립	- 자연환경 홍보실적 - 자연보전 중장기계획 수립실적
		자연보전 ·복원 사업성과	-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실적 - 공원지정 및 운영 실적 - 야생동물보호 실적 - 자연보호이용시설설치실적

<표 2-106> 2001년 지역개발부문(5영역, 11시책, 27지표, 36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국토 관리 · 교통 시설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행정 기반 조성	- 건축부조리 근절실적 - 건축행정업무 처리능력 제고 - 특수시책개발 이행 실적
		건축행정 운영성과	- 건축공사현장 적정관리 실적 - 위법건축물관리 실적
	하도정비 및 준설사업	사업추진 성과	- 계획대비 추진실적
		유지관리	- 시설물 등 유지관리실적
	중기교통 시설투자	지방교통 시설투자 실적	- 지방교통시설 지방비확보율
	지방도 정비관리 (도)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수립 적정률 - 신기술 활용실적
		사업추진 적정성	- 공사착공률
		도로유지 관리실적	- 교량 정기점검률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도시 계획 및 관리	도시계획 시설확보	도시계획 시설확보 실적	- 도시계획시설 투자율
		미집행도시 계획시설 해소실적	-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 수립실적
	옥외광고물 관리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실적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기반확충	- 옥외광고물관리업무기반확충 추진실태
		홍보계도 활동실적	- 옥외광고물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전파 실적 - 옥외광고물 홍보계도활동 실적
생활 기반 확충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도)	정책관심도	- 전체물량 대비 확보율
		사업계획 추진의 적절성	-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대비 추진진도율
		사업추진 성과	- 특수시책추진 및 사례발굴 실적
		하수처리 시설 유지 관리성과	- 유지관리비 확보율 - 사후시설보수실적
생활 기반 확충	소도읍 개발(도)	정책관심도	- 전체물량 대비 시군물량 확보율
		사업계획 추진의 적절성	-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대비 추진진도율
		사업추진성과	-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발굴실적
	도시저소득주 민 주거 환경 개선	정책관심도	- 전체물량 대비 시군구물량 확보율
		사업계획 추진의 적절성	-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대비 추진진도율
		사업추진 성과	-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발굴실적
문화 시설	문화기반시 설 관리 운영	문화기반 시설조성	-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예산비율
		문화기반 시설운영 성과	- 전년대비 시설이용자수 증가율
	문화재 보존관리	문화재보존 관리성과	- 문화재 보수정비공사 발주율(설계기준)
		문화재환경 정비	- 문화재안내판 정비비율

<표 2-107> 2001년 안전관리부문(4영역, 5시책, 16지표, 29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소방 관리	소방행정 관리	소방력 확충실적	- 소방력 강화대비 실천력 - 소방인력 확보율
		구조구급 대응성	- 구조·구급활동 실적
		화재예방 활동실적	- 소방검사 및 소방통로 확보
		대국민봉사 소방 행정 구현실적	- 민생지원활동 실적
민방위	민방위 시책	기반조성 노력	- 민방위시설·장비확보 및 점검·정비실적 - 민방위사업 예산비율 - 민방위 홍보실적 - 민방위대 자원관리실적
		민방위 시책추진 성과	- 생활민방위교육실적
재해 관리	재해대책	수해복구 사업성과	- 수해복구 조기발주 및 완공실적
		재해관리 기반조성	- 방재교육 - 법정재해대책기금 확보율 - 방재물자 및 장비비축·지정 확보실적 - 방재전산요원 확보율
재난 관리	재난대책	재난예방 실적	- 사고발생 빈도·규모 등에 따른 벌점제 운영
		재난관리 기반조성	- 재난관리기금 확보(적립)실적
		재난대비· 대응 태세확립	- 재난관리 관심도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의 적정성
		안전문화 운동 추진 실적	- 「시민안전봉사자」 발굴육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전 무료 점검 실시성과 - 대국민 홍보실적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재난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재난위험 시설물해소 사업추진 실적	- 재난위험건축물 정밀진단 실적 - 재난위험건축물 재건축사업 추진성과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점검실적	- 정기점검 이행 실적 - 각종 지시사항 및 긴급특별점검 이행 실적
		예산확보 노력	- 안전진단 예산확보율
		안전진단 성과	- 안전진단 시행비율 - 유지관리계획 시행실적

· 추진역량분야(10영역, 18시책, 39지표, 59세부지표)

<표 2-108> 2001년 행정역량부문(4영역, 7시책, 18지표, 26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조직 인사	지방조직 개편	조직정비 성과	- 기구정비실적	
		인력정비 성과	- 정원감축실적 - 정원감축의 형평성 - 비정규 상근인력 감축실적	
		자체수요 대처성과	- 기구·정원억제 실적	
	남녀평등 인사관리	채용관리 노력	- 5급이상 여성공무원비율	
		보직 및 승진관리 노력	- 시도전입 여성공무원비율 - 핵심부처 여성공무원비율 - 여성공무원 승진비율	
		남녀평등 교육실적	- 양성평등교육 실시비율	
	교육훈련	교육방법 적정성	교육방법 적정성	- 참여식 교육방법 비율
			교육훈련활 성화실적	- 교육훈련 이수자율 - 국내·외 위탁교육이수자율
광역 행정	광역행정 강화	분쟁조정 성과	- 분쟁조정실적	
		행정협의회 운영실적	- 행정협의회 효율성	
		협력사업 추진성과	- 협력사업실적 - 다중협력사업실적	
행정 능률	일하는 방식 개선	결재신속화 실적	- 기관장 전자결재율 - 실무자 전결율	
		전자보고 활성화실적	- 전자서식 활용실적	
	목표관리제	성과목표의 타당성	- 성과목표의 타당성	
		성과지표 개발성과	- 성과지표 계량화실적	
민간 협력	민간협력 추진실태	지원사업 선정의 적정성	- 사업비 교부전 사업포기율	
		민간단체 활동실적	- 등록단체 공익사업 참여율	
		자원봉사 운영실적	- 자원봉사센터 설치비율 - 자원봉사자 등록·활용율	

<표 2-109> 2001년 재정역량부문(3영역, 7시책, 12지표, 12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세입 관리	세수확충 노력	자체수입 확보실적	- 자체수입증가율
		체납세 징수실적	- 체납액정리율
	경영수익 관리	수익률 제고실적	- 투자수익율
세출 관리	경비절감 노력	경비 절감실적	- 경상경비절감율
		인건비 절감실적	- 비정규인건비절감율
	재원부담 관리	지방비 부담실적	- 지방비부담율
재정 관리	재정 투융자 심사관리	투자심사 이행실적	- 예산편성전투자심사율
		투자심사 사후관리	- 예산반영율
	지방채 관리	채무상환 실적	- 채무상환비 비율
		채무부담 적정관리	- 1인당채무부담액
	재정탄력성 제고노력	재정안정 관리	- 경상수지비율
		가용재원 관리	- 가용재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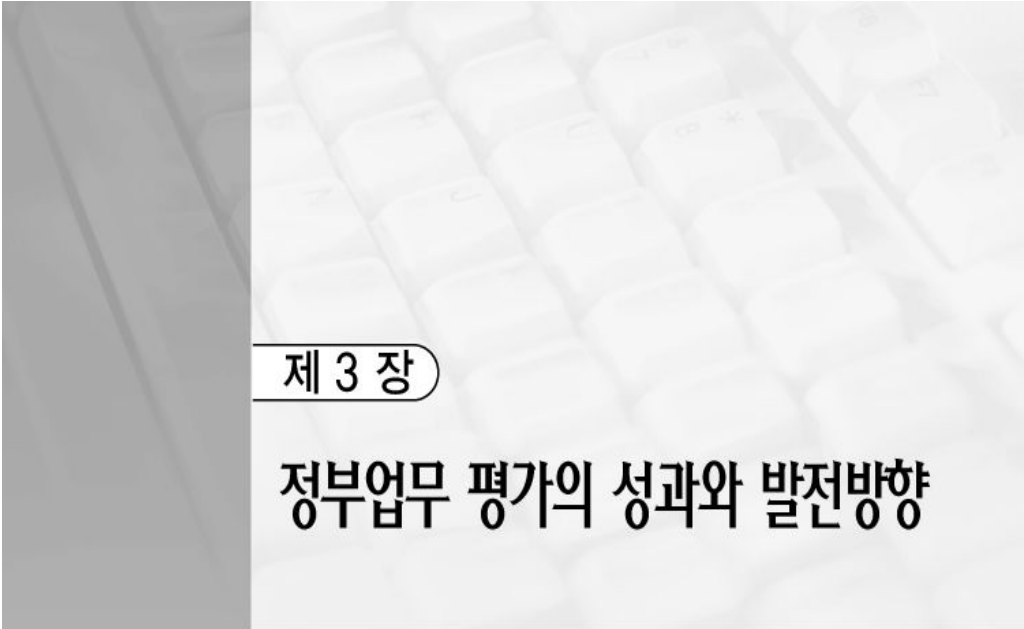
<표 2-110> 2001년 정보화역량부문(3영역, 4시책, 9지표, 21세부지표)

영역	항목(시책)	지표	세 부 지 표
정보화 기반 확충	정보화 추진지원	정보화인력	- 정보화인력비율 - CIO운영실적 - 정보화공인자격증 보유율
		정책추진 지원수준	- 단체장 지시사항비율 - 정보화예산비율
		정보화 교육성과	- 공무원 정보화 교육시간 - 주민 정보화교육 시간
	정보화 기반조성	정보화 설비기반	- 서버보유수준 - DB구축실적
		정보보호 기반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점검실적 - 정보보호환경 조성실적
	행정 능률 향상	내부행정 정보화	행정정보화 수준 (전자행정 수준)
시책추진 지원성과			-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추진 및 지원실적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실적 - 건축행정정보화 추진 및 운영실적
대민 서비 스향 상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전자민원 서비스실적	- 민원처리인터넷공개시스템 운영실적 - 인터넷 민원신청 비율
		전자적 정보제공 실적	- 홈페이지 정보제공 종수 - 홈페이지 접속자수 - 홈페이지 접속속도

• 2001년 지방자치단체 주민만족도 조사의 설문항목

<표 2-111> 2001년 설문항목

영역	시책	문항지표
민원행정	편의행정	- 민원서비스 만족도
보건복지· 여성권익	장애인복지	- 장애인시설 만족도
	가정복지	- 노인복지시설 만족도
	건강증진	- 보건소 진료서비스 만족도
	여성권익보호	- 여성 권익보호 만족도
환경관리	대기관리	- 맑은 공기등 대기관리 만족도
	식음수관리	- 수돗물의 수질 만족도
	수질관리	- 강, 하천등의 수질관리 만족도
	폐기물관리	- 쓰레기 청소, 폐기물관리 만족도
	자연환경보존	- 산림, 녹지(나무숲) 자연환경 보존 노력 만족도
지역경제 발전	고용창출	- 실업자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 만족도
	지역산업진흥	- 외국공장,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발전 만족도
	소비자보호 및 물가관리	- 가짜상품 단속, 바가지 요금 단속 만족도
지역개발	국토관리· 교통시설	- 교통시설과 도로정비 만족도
	도시계획 및 관리	- 간판 등 옥외광고물 관리 만족도 - 공원, 학교, 상가 등 도시계획 만족도
	생활기반 확충	- 도시 : 영세민 주택개량 등 만족도 - 농촌 : 농어촌지역 마을정비 등 만족도
	문화기반 시설공급	- 도민·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만족도
안전관리	소방시설	- 소방서, 소화전 만족도
	재해관리	- 산불, 홍수방지 만족도
	시설물 관리	-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노력 만족도



제 3 장

정부업무 평가의 성과와 발전방향

제1절 기간 평가의 주요성과

제2절 평가제도의 발전방향

제1절 그간 평가의 주요성과

I.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1961.9 ~ 1981.10)

우리 나라 최초로 정부부문에 도입된 심사분석제도는 60년대와 70년대 시대적인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업무추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행정주도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당시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의 시스템은 각 기관 업무계획의 수립에서 성과의 분석까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였다. 매년 정부의 기본정책과 운영계획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부처에 시달하고,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였으며 이러한 운영계획의 성과에 대하여 심사분석하였고 시·도의 경우에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 자체 심사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토록 하였다.

이러한 행정기관 업무계획의 수립에서 분석·평가에 이르기까지 중앙 통제적인 심사분석 시스템은 당시 시대적인 소명인 경제개발, 중화학공업 육성, 새마을 운동 등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하는 수단으로서 효율적 기능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심사분석제도는 단순히 국정의 획일적 통할 수단으로서의 기능만은 아니었으며, 자원의 배분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한정된 국가자원 범위 내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바탕이 되었다. 즉,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하여 자원배정을 축소하든지 혹은 아예 자원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여기에서 절약되는 자원을 보다 효율적인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같은 양의 자원으로 보다 높은 산출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등 경제개발 전개과정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당시 심사분석 과정에는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평가교수단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대성이 갖는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는 데에도 기여하였으며, 정책건의로 제시된 개선방안은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시의 심사분석제도는 평가지표 이용 등의 한계성으로 말미암아 종합적 경제력 판단을 위해 우리 나라 경제를 단순 국제비교로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접근방법, 즉 단순비교를 통한 우리 경제성과에 대한 평가는 국가발전의 질적 제고가 아닌 양적인 성장일변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II. 경제기획원 심사분석 및 행정조정실 정책평가제도 (1981.11~1994.11)

1. 경제기획원 심사분석

경제기획원 심사분석제도는 그간의 추진진도 파악 중심의 일상적인 심사분석에서 탈피하여 정부의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에 대한 집행관리와 성과분석을 통해 '80년대의 경제안정화, 부동산 대책 등 주요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에도 기여하였다. 물론 도로건설 및 지역개발 등 '80년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건설 사업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업의 능률성,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아울러 심사분석제도는 평가제도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사업의 집행관리와 자원의 투입/성과에 대한 분석 노력을 통해 심사분석에 대한 이론적 기초, 심사분석의 유형과 방법, 심사분석의 실시요령 등 심사분석 접근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정부기능이 다원화되면서 공기업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각부

처의 업무통제 이외에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공공부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심사분석은 개별적인 시책과 사업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성, 만족성 등 전정부적 차원의 국정흐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련사업과 시책간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2. 행정조정실 정책평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는 기존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이 개별사업·시책에 대한 분석으로 전정부적 차원의 정책흐름과 조정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도입 이후 경제안정과 성장기반 확충, 농어촌 발전대책, 산업경쟁력제고 및 국제수지 개선 등 전정부적이고 중요한 정책을 선정하여 현장 점검·분석 평가하여 6공화국 중반이후 국정운영이 가일층 전향적, 역동적이 되도록 하였으며 정부정책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기여하였고,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의 제도 발전 면에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도도입 초기(1990)에는 소규모의 한정된 인력과 실질적 평가수행 경험 부족 등으로 내실 있는 평가기능을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으나 공공부문에서 안고 있는 비효율, 저생산성을 타개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개발하여 종합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는 매년 평가대상과제가 20~40개 범위내에서 선정되었으며 처음으로 평가의 단계적 검토를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 각 부처 자체평가를 1차적 기초자료로 하여 총리실에서 상위 평가를 실시하는 종합평가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도에 2차례의 평가제도 개선과정을 통해 시대적 환경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종합평가제」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하여 정부부문의 평가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한 것은 평가제도사에 큰 발전의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인 여론조사를 실시

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수요자적 입장에서의 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피평가기관에게 사전에 평가의 기준과 평가사항을 분명하게 제공한 것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평가제도의 출현을 열어 놓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 시기는 정책평가(론)의 제도적 발달사에 비추어 볼 때 정부내에서 뚜렷한 평가의 체계와 방향 등의 설정을 확실히 규명되지 못한 채 이원적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총리실의 정책평가제도 운영 속에서 시도되었던 여러 상황만을 한정하여 종합한다면 ‘진통기 또는 탐색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Ⅲ. 행정조정실 심사평가(1994.12 ~ 1998.2)

경제기획원의 개별 사업·시책에 대한 심사분석과 행정조정실의 종합적 정책평가의 2원적 체계에서 다시 새로운 일원적인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심사평가는 종래 2개 제도의 단점이 어느정도 보완되어 정부기관의 국정통합과 정부 정책간의 연계성 하에서 개별 정책의 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당시 제도에서 강화된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권으로 정책의 개선·보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정기적인 정책평가 외에 행정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이 시행된 수시심사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수시평가제도는 정기평가가 갖는 사후관리적 한계성을 벗어나 행정의 집행과정에서의 수시적인 평가, 즉 ‘집행과정평가’로서 투입여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95년부터 ’97년까지 민원소지 예방, 각종 제도의 관리실태 점검 등 시대변화에 따라 정비·개혁이 필요한 시책 및 사업(동 기간 52건의 과제 수행)의 개선과 효율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수시평가제도는 정부 정책평가제도에서 최초로 단기적 집행과정평가가 실행되는 사례를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의 심사평가제도는 선진국 대부분이 1990년대 초부터 정부 혁신과 개혁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평가기능을 강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러한 기능수행이 이루어지지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새로운 제도 모색이 절실하였는데도 평가과정에서의 부분적 개선은 시도하고 이행하였으나 평가체계의 전반적 전환추구를 도모해야 할 인식이 부족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전환기 도래가 필요한 ‘잠복기적 도약단계’라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IV. 국무조정실 심사평가(1998.2~현재) - 기관평가제

「기관평가」라는 제도가 정부부문에 도입된 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관평가제는 각 부처의 업무 추진과 관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평가제도 자체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업무추진 면에서는, 먼저 기관평가제의 도입취지 중 하나인 경쟁성과 책임성으로 기관 업무추진의 성과를 제고시켰으며 이러한 기관간의 경쟁 도모 및 책임 확보에 따른 노력은 제도 도입시점 당시 정부의 최대목적인 외환위기 극복에도 기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의 성과관리와 경쟁성은 기관내부간에도 확산되어 각 기관 스스로 산하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을 정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늘어가고 있어 정부기관의 전반의 정책관리 능력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종료이후 또는 일정시점 기준의 사후평가 위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평가와는 달리, 시책·사업의 수립에서 집행과정까지 평가함에 따라 각 부처는 시책·사업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목표를 명료히 하고 구체화하여 뚜렷한 목표를 갖고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케 하여 책무성을 높이는 효과를 증과 동시에 유형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설정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억제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셋째, 국민만족도 조사에 의한 평가에 크게 역점을 두고 있어 각 기관이 국민 또는 고객을 위한 업무처리에 관심을 제고하는 노력을 가속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특히 민원행정서비스에 있어 국민의 만족도가 연차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 종합만족도 향상추이 (1998 : 54.9점, 1999 : 61.0점, 2000 : 62.3점, 2001 : 65.5점)

또한 기관평가제도는 평가제도 자체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제도와 다른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먼저 그간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에서 벗어나 정책의 형성에서 성과까지 전과정을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의 노력과 능력 및 업무 성과에 대한 국민의 만족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범위에 있어 대폭적인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 것은 업무만의 평가가 아닌 기관 자체에 대한 평가라는 새로운 차원의 제도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종래의 평가가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01년 1월 각종 평가에 대한 기본법으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제정(2001.5 시행)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각종 평가를 동 법의 평가절차 등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부평가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평가결과를 국회에 제출·보고하고, 아울러 언론 및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가 상설심의기구로 격상되는 등 기존의 평가자문에서 나아가 대부분의 평가를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평가하는 민간인 평가로 전환되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가 확립되어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을 연계하는 평가가 가능하게 되어 전 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그간 중앙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각종 평가를 관계부처 합동평가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도 크게 경감하였다.

그러나 기관평가제도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방대해진 평가에 비해 평가전담기관의 인력 부족, 평가기법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평가의 신뢰성이나 평가에 따른 기관업무의 개선효과는 제도의 취지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으므로 평가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 2 절 평가제도의 발전방향

* 편집자주 : 본 절은 평가제도 운용상의 문제를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평가활동에 실제 참여했거나 관련분야의 연구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국무조정실의 공식적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

1. 중앙정부 평가제도의 개선과제와 발전방향

황윤원(한국행정연구원장)

1. 서 론

우리나라 정부는 1960년대부터 신속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심사분석제도를 운영하면서 각 부처의 업무들이 얼마나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왔다. 40여 년 동안 평가담당기관과 평가제도 등의 변화가 있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평가제도는 정부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에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업무평가는 1961년부터 실시되어왔으나, 1990년대 말까지 심사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으며, 기관평가라는 이름으로 평가가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도부터이다. 즉 기존의 평가제도를 보완·종합화하는 선상에서 i) 각 부처의 업무추진성과와 추진주체의 행정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평가제도의 도입, ii) 심사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평가위원회의 도입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업무의심사평가 및조정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이때부터 종전의 심사분석 대신 기관평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최근 들어 평가의 중요성과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행정환경변

화에 부응하여 기관평가 도입에 이어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기본법에 준거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평가, 특정과제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평가, 자체평가 가운데 중앙행정기관평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중앙정부 평가제도 운영 현황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는 정부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목표로 이루어지며 부·처·청·위원회를 포함한 전 중앙행정기관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평가대상영역은 매년도 각 부처의 업무계획 중 가장 중요하고 그 부처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주요정책과제 평가와, 평가대상부처의 정책추진역량과 추진의지를 기관운영혁신노력과 자체평가수행노력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관역량평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로 분류가능하다.

(1) 주요정책과제 평가

주요정책과제 평가란 매년도 각 부처의 업무계획 중 핵심시책·사업을 선정하여 연 2회(상·하반기)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업무중 국정지표에 부합하면서 그 부처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를 부처별로 1~3개 씩 선정하여 선정된 과제의 추진 현황 및 집행성과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 기준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단계별로 과제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평가착안사항을 갖는다.

첫째, 정책형성 부문에서는 정책목표의 적합성과 계획내용의 충실성 기준으로, 정책목표의 적합성은 정책의 목표가 상위 국정지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지와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의 두 평가착안사항을 갖는다. 또한 계획내용의 충실성 역시 정책목표달성을 이루기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이 충실히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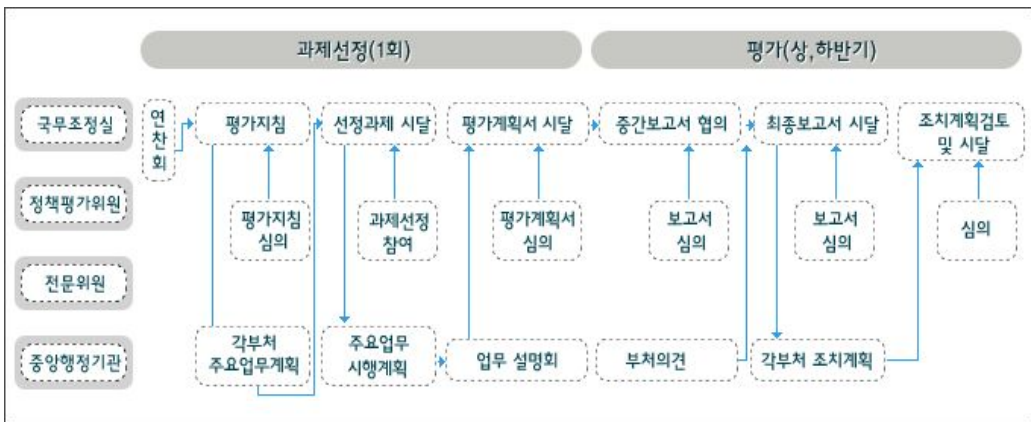
있는가와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의 수렴·관철 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의 평가착안사항을 갖는다.

둘째, 정책집행 부문에서는 시행과정의 효율성과 시행과정의 적절성 기준으로, 시행과정의 효율성은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와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의 평가착안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과정의 적절성은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지와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의 평가착안사항이 있다.

셋째, 정책성과는 목표의 달성도와 정책의 효과성 기준으로, 목표의 달성도는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정책 효과성은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기준으로 한다.

위의 사안들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주요정책과제평가는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 등 부처의견을 수렴하여 평가대상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국무조정실의 검토를 통해 수립하고 과제별 평가계획을 수립한 뒤, 평가를 실시하고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주요정책과제 평가 흐름도 >



(2) 기관역량 평가

1) 기관운영혁신노력 평가

평가목적에 합당한 평가대상 선정여부는 당해연도의 정부혁신분야 중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대상분야를 선정한다. i) 1999년에는 목표관리제 운영, 행정서비스헌장 도입 운영, 행정정보공개 확대, 부패방지 노력, ii) 2000년에는 지식기반정부 구현노력, 정책추진의 법제화, 국정홍보 강화노력, 부패방지노력, iii) 2001년에는 전자정부 구현노력, 국가기강 확립대책 추진, 조직운영 역량강화, 정책관리 역량강화를 선정하였다.

기관운영혁신노력 평가는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 및 기준 등 선정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실적을 제출한 뒤 국무조정실에서 실적 확인·점검한 뒤 다시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상위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2) 자체평가수행노력 평가

각 부처의 주요업무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한 상위평가를 실시하는 평가로, 연 2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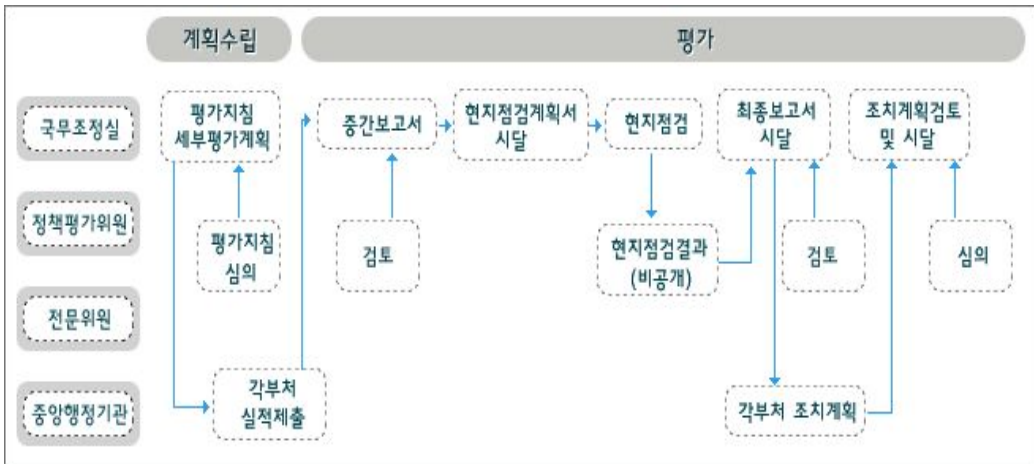
이는 평가과제선정 및 평가계획 수립, 평가과정, 평가내용, 평가결과 환류의 네 가지를 대상으로, 평가기준과 평가착안사항을 선정하여 평가한다(2001년도 기준). 이 중 대상의 분류에 따라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선정 및 평가계획수립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선정의 적절성과 자체평가계획의 충실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한다. 둘째, 평가과정으로, 평가수행의 충실성과 평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기준으로 한다. 셋째, 평가내용으로, 정책목표 및 정책성과평가의 적절성과 문제점 적시 및 대응의 충실성을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결

과 환류는 그 적절성을 기준으로 갖는다.

위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자체수행노력 평가는 각 부처의 과제선정과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확정 과정을 거쳐, 부처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평가결과를 보고하여,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원회에서 상위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기관역량 평가 흐름도 >



(3) 국민만족도 조사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요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추진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의에 입각한 정책의 수립·집행을 도모한다. 조사대상은 전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대상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 및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조사항목은 주요정책과제별로 정책전반에 대한 체감만족도, 정책의 적절성,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의견수렴도를 조사한다.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비교평가함으로써 민의에 입각한 정책수립·집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며, 각 부처 민원행정업무

의 처리방식 및 절차, 공무원의 태도, 처리결과 등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한다. 한편 각 부처의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도 만족도를 조사한다.

3. 중앙정부 평가제도의 발전방향

(1) 기관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 주요정책과제 평가

첫째,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해당기관의 업무 수행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공통기준 외에 기관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과정별로 제시된 현행 공통기준도 일정한 구성 틀에 의해 보다 명료한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 기준은 정책집행의 경우 ‘시행과정의 효율성’과 ‘시행과정의 적절성’이라는 두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이 부문은 정책집행을 ‘자원투입-조직화-서비스 전달’로 구분한 다음 세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평가질문을 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평가과정에 평가성사정(assessment of evaluability)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평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검토지침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검토결과는 평가계획서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넷째, 주요정책과제 중에 몇 개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특정과제로 선정하여 외부용역에 의한 일반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데 다양한 수준의 분석적 평가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다섯째, 기관평가제는 다양한 평가유형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평가운영의 효율성과 진단평가로서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활동이나 결과처리 과정상에 여러 평가 유형들간의 통합적 연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평가유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추진하

려면 평가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2) 임무평가

기관평가에서는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기관의 임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임무에 대한 평가는 매년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정권 교체 직후나 장관 교체 직후 등을 정하여 부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3) 기반 여건

기관평가제도의 기반여건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구축된 기초 여건의 향상은 중앙평가기구에 필요한 권한을 제공함과 동시에, 국회의원들에게도 기관평가에서 획득된 정보를 그들의 기능 수행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의 평가결과에 대한 산출물이 정상적 평가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어서 정상적 평가로 이루어진 내용물에 근거하여 계량적 평가 산출물이 모든 분야에 동시에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 평가중심의 기관간 차별화 된 기술적 평가만으로는 경쟁유인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보다 더 발전된 기관평가의 계량화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4) 자체평가

정부업무 평가는 행정의 투명성 유지, 정책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업무운영의 실질적 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순기능을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이 자체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업무 평가를 내실 있게 수행하도록 각 부처 자체의 평가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앙평가기구의 평가개선방안

1) 국무조정실의 역할 정립

중앙평가기구로서의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중앙평가기구란 정부 내에서 정부업무 평가활동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최고평가기구를 의미한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들의 자체평가활동을 종합할 뿐만 아니라 특정정책과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역할은 직접평가와 상위평가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평가기본법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정부업무 평가는 평가기관과 평가대상기관이 구별되어 있어 국무조정실과 각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의 명확한 역할설정 및 분담이 요구된다. 이런 기능배분모형에 따라 정부업무평가에 있어 국무총리실은 통제 및 감시기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업무개선을 조력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평가의 절차와 운영

성공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과제 선정에 있어서 보다 합당한 기준과 절차가 요청된다. 따라서 그 선정 기준과 시기, 적절한 평가 유형과 기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우선 평가 시기와 기준의 선택 면에서는 평가기준의 신축적인 적용과 평가시기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평가시기는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기준은 평가대상기관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작용한다. 한 예로서, 평가결과가 예산에 반영되거나 부처의 평가를 나타낼 때에는 평가기준의 충족이 평가대상기관의 업무수행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평가는 관리의 한 도구이므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평가제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가유형의 정확한 정립과 평가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향후 유사한 유형의 성과평가가 있을 때

자체적인 평가지침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기법을 체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평가가 끝나면 평가결과의 적극적 환류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업무의 평가결과는 정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방식으로는 차년도의 업무계획, 기존의 제도·절차·업무수행방법 및 개선, 예산편성 또는 예산배정 및 포상제도의 운영 등에 반영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평가정보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업무 평가는 업무의 수행과정과 결과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성된 평가정보는 국가적 자원으로써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번 수행된 평가는 정부업무의 효과성을 위해 다시금 재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잘 관리되어야 한다.

3) 평가의 연계

첫째, 부처간 평가사이의 연계로, 평가체제의 정립을 필요로 한다. 정부업무 평가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5개의 평가간에 유기적인 평가체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즉, 평가의 주체가 국무조정실,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으로 맞추고, 각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와 자치단체의 평가 및 소속기관의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 초점을 맞추는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평가들이 상호간 유기적인 연계를 갖도록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평가활동들이 중앙행정기관의 평가활동에 바탕이 되고,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자치단체의 평가 및 소속기관의 평가활동이 국무조정실의 중앙행정기관의 평가와 특정정책대상과제 평가활동의 바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사와 평가의 연계로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및 정부업무 평가와의 합리적인 기능조정을 말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행정부

에 대한 정치적 의미의 평가기능을 수행하며, 감사원 감사는 준사법적 행위로서 당해 업무의 합법성 기준 하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하는데, 이에 반해 정부업무평가는 행정행위로서 정부시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평가하는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범규상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및 정부업무 평가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나, 정부업무 평가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가결과는 평가보고회에 보고하는 것으로만 한정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평가결과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청되는 바이다.

셋째, 평가 결과와 예산간의 연계이다. 현행 기관평가제의 가장 큰 약점은 평가결과를 예산과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데, 기관평가제의 정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예산배정과 원활히 연계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현행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의 활용으로는 한계가 있고,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위해 보다 구체화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정부업무 분석활동과 평가활동에 대한 연계시스템개발의 필요성이다. 정부업무의 평가는 정부업무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위해 유용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한 정부업무를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정부사업의 존속여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평가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업무가 결정되는 단계에서 얼마나 잘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정부업무 분석과정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인식차원의 평가개선방안

1)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인식 개선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는 정책오류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담당자의 의식 및 태도가 소극성을 탈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담당자들에게 그 순기능을 홍보하고, 평가이론 및 기법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대상과제의 선정, 평가사항 및 기준의 결정에 있어서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정치적·사회적 지지기반의 확충을 통해 심사평가 수행에 필요한 기본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2) 정치적 요인에 의한 평가극복

정치적 요인에 의한 평가극복이 필요하다. 평가담당자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지위상의 취약성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으면 평가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고, 긍정적 평가 일변도나 적당히 넘어가기 식의 평가를 행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강력한 정치적 지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평가업무가 형식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으며, 정부업무평가 시에 많은 저항과 반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평가방법의 과학성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기능 강화 방안

1) 평가 인력의 전문성

평가전문 인력의 보충이 요청된다. 각 중앙 행정기관의 평가업무는 평가담당자가 대부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담당자의 전문화 수준은 미약하여 평가의 본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평가담당자의 전문직화와 평가관련 교육의 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기관평가의 지속적 발전

평가제도의 무리 없는 정착유도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주요정책과제 평가는 객관

적·과학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 및 분석방법을 지속 개발·보완하고, 기관간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계량화된 지표를 개발·적용해야 한다. 또한 기관역량 평가의 경우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정립, 비교·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발굴·보완하며 기관장의 리더십·재정·인사·조직·정보화 등 기관핵심역량에 대한 평가요소들도 도입·보완해야 한다. 또한 자체평가모델 개발·보급, 평가기법교육, 모범사례 확산 등 자체평가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자체평가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자체평가 추진체계, 평가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자체평가가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자기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 지적 및 정책개발 노력, 정책효과 분석 미흡 등 평가의 전문성과 평가내용의 개혁성에 있어서 보완·발전이 필요하다. 자체평가가 내실화 되고 평가의 실효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보다 많은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3) 정부 업무평가에 대한 협의·조정 강화

정부업무 평가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의 평가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개별평가는 각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공개·환류하는 체제로 운영하되, 국무조정실에서는 전반적인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평가제도간의 기능적 연계, 평가의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정부업무평가기능 활성화에 노력하고, 개별 평가제도간의 중복해소, 평가부담 경감 등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정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감사에의 환류기능을 대폭 제고하여야 한다.

4) 평가 연구기능 강화

평가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평가수요의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평가결과의 수용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연구기관

의 강화가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제도 및 평가내용과 관련된 연구·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성 강화와 인력의 소수정예제로 평가업무에 대한 각 구성원의 책임의식을 확고히 하며, 기관평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기관평가 기법개발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OECD 국가 등 선진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평가기법, 모범사례 등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해 평가제도를 한 단계 높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전문연수원의 설립·운영을 통한 재교육 강화, 외국 정책 평가기관에서의 연수실시, 현행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의 평가과정 강화, 외부 전문가 채용 및 공무원의 위탁교육 등 전문평가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5) 국민 참여기능의 강화

정책평가에 대한 국민참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일반국민들은 그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성과를 알 권리가 있다. 참여는 알 권리가 구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정책평가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면 견제와 균형의 체계가 형성된다. 그리하여 그러한 체계는 정책집행공무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을 사용한 이상 어떤 성과를 산출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일반국민들은 정책평가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아주 고도로 전문적이고 세련된 평가기법을 습득할 수는 없다고 해도 평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에의 참여는 평가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도 평가에의 국민참여를 정당화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국민만족도 조사를 통한 조사대상집단,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의 지속 보완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만족도 조사의 경우는 일반 국민 외에 전문가, 이해집단 등도 조사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민원만족도 조사의 경우에도 인터넷 민원 등 새로운 민원형태에 대한 만족도 반영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정책집행공무원의 시각에서 볼 때에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 그 첫째는 일선국민을 정책평가에 참여시킴으로써 정책집행담당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차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의 정보는 상이한 시각을 가진 집단에게서 보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라고 보여진다. 정책평가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제공하는 이러한 추가적 정보는 분명히 평가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는 일반국민을 정책평가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부와 국민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신뢰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것의 부분적인 이유는 이제까지 정책과정에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그러한 과정의 산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기를 꺼려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평가과정에 일반국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대국민 관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6) 기관평가결과 활용시 평가자·이용자 공동 책임

기관평가결과 활용은 평가자와 이용자의 공동 책임임을 인식하고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의 기관평가결과 활용은 설문조사 결과 등의 정책평가결과, 이용자의 개인적 요소뿐만 아니라 평가결과는 물론 평가과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자의 공동노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5) 평가의 활용성 증진 방안

1) 의사결정자와 평가

평가자는 의사결정자의 인식 스타일을 이해해야 한다. 보고서나 구두의 보고는 모두 학술지 등에 발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형식보다 좀더 듣는 사람에게 알맞은 형태로 변형되고 맞추어져야 한다.

2) 시기의 적절성

평가결과는 필요한 때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아무리 과학적인 절차에 의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산출해 낸다 할지라도, 만일 의사결정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러한 연구는 물론 학술적인 가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책결정과정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고, 또 이러한 평가결과는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된다.

3) 이해관계자의 의견 존중

평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여를 존중해야 한다. 평가는 특정한 개인들과 조직들의 집합체에 대하여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결과의 유용성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의 설계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4) 평가 설계시 활용과 배포 계획의 고려

활용과 배포계획은 평가설계의 일부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평가결과 발견될 사실들을 통합하여 자료를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과 양식 등, 의사결정자들에게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활용계획을 세우고, 연구의 강점과 약점 등에 관한 정보를 미래의 활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활용자가 평가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평가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5) 정보통신기술 역할 확장

기관평가결과 활용에 정보통신기술(ICT)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이다. 기관평가활용에서 ICT를 이용하지 않았던 평가결과 활용에 ICT

를 활용하게 되면 다른 유형의 기관평가결과 활용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업무담당자들이 ICT 활용을 배척하지 않는다면 평가결과 활용 저조문제를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ICT를 평가결과 활용에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ICT활용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6) 정책 평가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

평가결과에 의해 부진기관으로 판명되면 문제의 분야별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책사업개선을 위한 환류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가결과에 대한 처리수단으로 재정 인센티브 부여, 훈·포장 부여, 우수사례 확산 등이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실적이 부진한 업무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하며, 필요하면 기술적 지원이나 훈련 프로그램 제공 등의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기관평가가 컨설팅 기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또한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사후관리제도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서는 평가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자료관례제도의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앞에서 말한 평가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과학정보연구원은 바로 이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과학정보연구원은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개인들에게 사회과학인용 인덱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과학의 연구결과들뿐만 아니라 사회프로그램의 평가들도 수록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평가결과들을 수집하여 문서화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프로그램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던 것이다. 위의 사례는 우리보다 먼저 정책평가제도를 정착시킨 미국의 경우 정책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예시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를 정착시키고, 그

활용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다.

4. 결 론

위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 정책평가에 대한 현황 및 발전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정부업무평가에 기관평가제의 도입은 새로운 평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기관평가제의 도입으로 정부업무평가의 질적수준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평가제도 전반에 관해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잡은 국정 기본방향에 대한 집행실태를 총점검 했다는 점과 기관평가의 결과가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관평가의 의미는 크다. 중앙정부 정책평가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정책적 함의는 현재의 법·제도적 측면의 강화장치에 관한 실질적인 성과평가의 실시와 함께, 정책평가는 단일의 분리된 문제가 아닌 평가환경과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 평가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과정에서 평가의 체계화, 평가자들간의 유기적 연계, 평가기관과 피평가기관과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모색, 평가대상과제 선정의 적실성 등의 핵심사항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행정발전에 기관평가제도가 기여한 정도, 기여한 부문의 우선순위에 관해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평가정보시스템도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다각적인 차원의 발전전략을 정책평가의 대전제인 평가의 객관성·신뢰성·공정성 제고와 연계하는 방안도 꾸준히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I.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우서(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서 론

평가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지만 체계적인 현황 조사(research)에 근거한 평가는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평가가 활성화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연방정부에서 「위대한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하나는 1960년대 후반에 시도되었던 PPBS의¹⁾ 도입실패에서 평가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평가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정책이나 시책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과정 중에 그리고 사후에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류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분권적 행정체제의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지도·감독은 현저하게 축소되어 왔는 바, 자치이념을 살리면서 국가적 통합성을 유지하는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에 의한 통제보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에 근거한 관리조정 단계로의 전환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정책이나 시책들에 대하여 해당 부처가 개별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피평가대상기관에

1) PPBS란 계획예산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의 예산배정을 포괄적인 계획과 연결시키려는 예산제도이다.

서는 1년 내내 평가준비를 위하여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본래기능인 대 주민서비스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정부적인 차원의 통합적인 평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정부는 과거 총리실에서 주관하던 우리나라의 심사평가가 국회차원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예관한규정)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 못하였다는 판단하에 1998년 4월 15일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예관한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실의 심사평가를 평가의 형태로 발전시켰다(김명수·박경효, 1996; 김병진, 1997). 또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다. 법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1999년 정부는 중앙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과거의 심사평가를 16개 광역자치단체에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1999년의 광역자치단체 평가는 시범적인 차원의 평가로 시행되었고 2000년 평가는 대상범위나 내용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으며, 2001년의 평가는 그 보다 더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예관한규정」에서는 평가의 대상을 중앙행정으로 한정시키고 있어 1999, 2000년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사실 명시적 법적 근거없이 시행된 셈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으며 종전의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개별평가도 사실은 대부분 법령의 근거없이 산발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마침내 정부는 심사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장치로 2001. 1. 8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제정·공표하여 2001. 5. 1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2002년에는 10월부터 전면적 실시 예정으로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평가제도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논의의 틀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순서에 입각하여 논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논리적 틀을 가지고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분석방법에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겠지만 본 고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와 실제 제도가 추진되어 온 과정과 내용을 종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쟁점을 도출하여 각각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접근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명확한 평가의 목적이 설정되어야 후에 제시되는 다양한 쟁점들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위임사무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적이 국정의 통합성유지 및 피평가기관의 비용과 시간적 측면을 포함한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모든 기능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어떤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입부터 과정, 산출물까지 모두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부분만을 평가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투입, 과정 그리고 산출물까지를 모두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주체가 누구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주체에 따라 내부평가, 외부평가가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먼저 외부평가는 제3자에 의한 평가로 지역대학,

평가관련 전문기관, 지방연구원 등과 같은 외부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평가를 말한다. 반면 내부평가는 사업이나 정책 또는 시책 등을 추진하는 주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평가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내부평가는 집행전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중 어떤 평가가 더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평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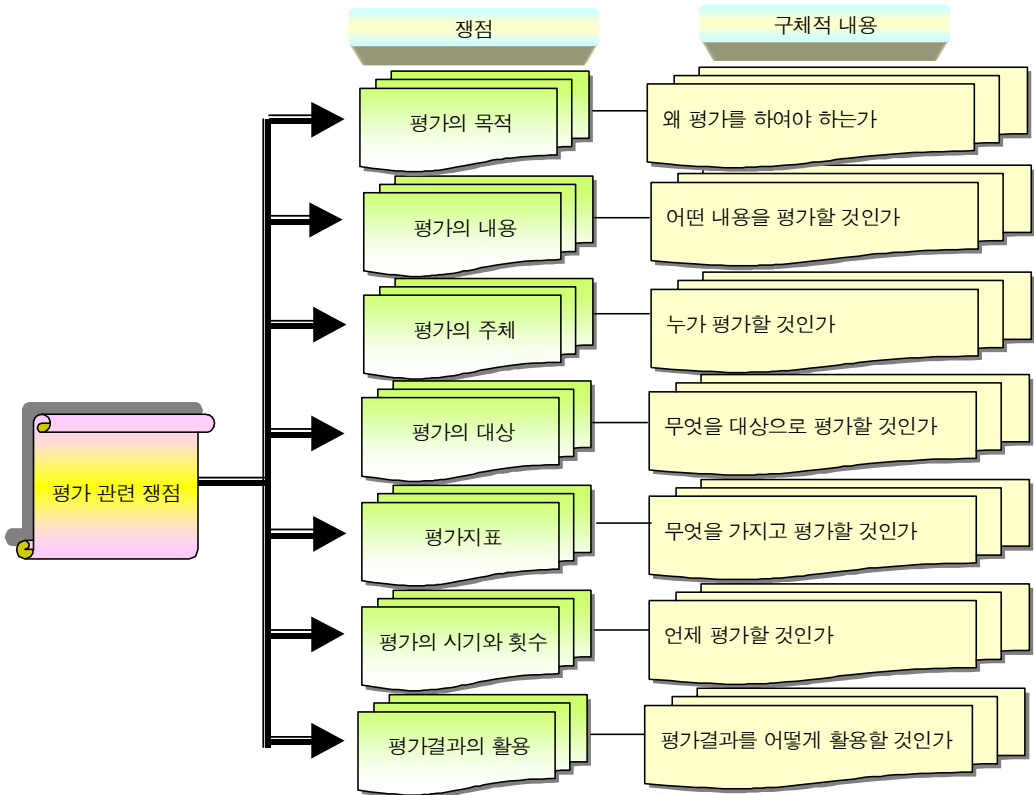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지표는 자료를 중심으로 할 때 객관적(양적)지표와 주관적(질적)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바람직한 모습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지표와 주관적지표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가의 시기에 따라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의 평가를 모두 수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적·비용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일곱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평가결과는 인센티브,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평가결과의 주민공시,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모형과 관련한 주요 평가요소별 쟁점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쟁점들



3.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현황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목적은 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목적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 관한 기본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평가계획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가능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주요시책의 효과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당해 정책과정을 개선하는데 있다. 즉, 추진시책의 문제점은 시정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시킴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²⁾

둘째, 평가결과를 예산배정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다. 즉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관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은 지역주민이나 지도감독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즉, Cooper(Cooper, P. J., Brady, L. P., Hidalgo-Hardeman, O., Hyde, A., Naff, K. C., Ott, J. S. & White, H. 1998) 등이 지적하였듯이 책임성의 확보는 민주행정의 중요한 이념적 기초가 된다.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내부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지만, 외부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다.³⁾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다양한 평가를 통합함으로써 정부평가 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민간 영리단체가 주관하는 평가를 배제시켜 상업적 목적에 의한 평가나 평가의 정치적 이용을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다. 종전에는 행정자치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96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단편적이고 비능률적이라는 비판

2) 미국의 대표적인 기관평가제도중 하나인 대통령 품질상(President's Quality Award)도 연방정부 조직의 성과와 능력 향상, 우수사례의 공유 촉진, 고객지향적 자체평가, 변화 대응능력등을 목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다(U. 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00).

3)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대체로 비교지표를 통해 해당 기관의 성과를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책임성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

을 면하기 어려웠다.⁴⁾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이들 중 상당 부분을 통합한 ‘종합적 평가’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김현구·박희정, 2000).

2) 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이란 무엇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즉, 위임사무에 한정하는가, 아니면 고유사무를 포함하는 가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평가의 대상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장 평가의 종류 및 대상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의 실제평가대상을 보면 추진시책, 추진역량 그리고 주민만족도조사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추진역량을 제외하는 대신 해당 내용들을 추진시책에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2002년에는 주요시책과 주민만족도조사로⁵⁾ 구성되었다.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과 실제평가내용을 토대로 할 때 평가의 대상은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평가의 대상을 부처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도의 참여시책은 12개 부처에서 62개 시책이며, 2002년도에는 12개 부처 68개 시책이다. 행정자치부가 가장 많은 32개 시책이고 그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10개 시책이다. 이외에도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다양함에도 평가의 대상시책에는 일부만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 4) 정부평가 외에 능률협회의 「지방자치경영대상」과 「서비스만족도조사」나 중앙일보의 「전국자원 봉사축제」와 같이 민간단체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가 그 예이다.
- 5) 주민만족도는 2001년에 시작되었으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2년도에는 민원만족도에 한정하기로 하였다.

< 표1 > 평가의 대상

부처별	2002년도 참여 시책	2001년도 참여 시책	비고
합 계	12부처 68시책	12부처 62시책	증6
문화관광부(1)	· 문화기반 시설 운영 (*)	· 문화기반 시설 운영	
산업자원부(3)	①원산지 표시 관리 ②지역투자 유치 ③에너지 절약	①원산지 표시 관리 ②지역투자 유치 ③에너지 절약	
보건복지부(10)	①국민기초생활보장 ②노인복지사업 ③장사제도정착의 합리화 ④매점등 장애인 우선구매 ⑤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⑥방문간호사업 활성화 ⑦정신보건사업 내실화 ⑧구강보건사업 강화 ⑨자활사업의 활성화(*) ⑩의료급여제도의 내실화(*)	①국민기초생활보장 ②노인복지사업 ③장사제도정착의 합리화 ④구강보건사업 강화 ⑤지역정신보건사업	증5
환 경 부(9)	①환경관리일반 ②대기관리 ③먹는물관리 ④수질관리 ⑤폐기물관리 ⑥자연환경보전 ⑦배출업소관리 ⑧환경친화적 음식문화 ⑨재활용 제품 우선구매(*)	①환경관리일반 ②대기관리 ③먹는물관리 ④수질관리 ⑤폐기물관리 ⑥자연환경관리	증3
노 동 부(1)	· 고용촉진훈련	· 고용촉진훈련	
여 성 부(4)	①위원회 여성참여 ②성희롱 예방 ③여성폭력방지 ④여성자원봉사 활성화	①위원회 여성참여 ②성희롱 예방 ③여성폭력방지	증1
건설교통부(4)	①건축행정건실화 ②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③시설물 안전관리 ④7대도시 교통정책평가	①건축행정건실화 ②중기교통시설투자 ③시설물 안전관리 ④하도정비,준설사업 ⑤도시계획시설확보 ⑥장기미집행도시계획 ⑦7대도시 교통정책평가	감3
문 화 재 청(1)	· 문화재보존관리	· 문화재보존관리	
중소기업청(1)	· 지역기술혁신 지원	· 지역기술혁신 지원	
특 허 청(1)	· 부정경쟁방지업무	· 건전한 상거래질서	
식품의약품안전청 (1)	· 식품안전관리	· 식품안전관리	

부처별	2002년도 참여 시책	2001년도 참여 시책	비고
행정자치부(32)	①정보화 추진지원 ②정보화 기반조성 ③내부행정정보화 ④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⑤남여평등인사관리 ⑥행정서비스 현장제(*) ⑦민원행정제도 운영 ⑧목표관리제 운영 ⑨일하는 방식 개선 ⑩광역행정강화 ⑪국제화 시책 ⑫지방조직 개편 ⑬규제개혁 추진 ⑭옥외광고물 관리 ⑮경비절감 노력 ⑯재원부담 관리 ⑰재정투융자심사 관리 ⑱지방채 관리 ⑲재정탄력성 제고노력 ⑳지방물가관리(*) ㉑공공근로사업추진(*) ㉒경영수입 관리 ㉓농어촌주거환경(*) ㉔도시주거환경(*) ㉕지방소도읍육성(*) ㉖지방도로정비(*) ㉗세수관리 ㉘지적관리 ㉙민방위시책 평가 ㉚재난관리 시책평가 ㉛재해대책(*) ㉜소방행정관리	①정보화 추진지원 ②정보화 기반조성 ③내부행정정보화 ④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⑤남여평등인사관리 ⑥행정서비스 현장제 ⑦민원행정제도 운영 ⑧목표관리제 운영 ⑨일하는 방식 개선 ⑩광역행정강화 ⑪지방조직 개편 ⑫민간위탁 ⑬규제개혁 추진 ⑭공무원교육훈련 ⑮옥외광고물 관리 ⑯경비절감 노력 ⑰재원부담 관리 ⑱재정투융자심사 관리 ⑲지방채 관리 ⑲재정탄력성 제고노력 ㉑지방물가관리 실적 ㉒경영수입 관리 ㉓농어촌주거환경 ㉔도시주거환경개선 ㉕소도읍개발 ㉖지방도로정비 ㉗세수관리 ㉘지적관리 ㉙민방위시책 평가 ㉚재난관리 시책평가 ㉛재해대책 ㉜소방행정관리	

주: (*) 개별평가 병행

자료 : 행정자치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 관계관 연찬회」 자료.

3) 평가의 내용

평가의 내용이란 투입, 과정, 산출물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의미한다.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조는 평가를 “정부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 분석, 평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할 때 평가의 내용은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투입, 과정, 산출물을 모두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실제 평가지표를 보면 대다수가 산출물에 초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투입을 반영하는 예산, 인력 등의 내용은 해당 지표에 분모로서 작용하여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비정규상근인력보유율의 경우 (비정규상근인력의 수/시·도 정원규모) × 100으로 측정하고 있어 투입을 반영하는 지표의 간접적 영향만을 평가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할 때 현행 평가는 산출물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투입에 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평가의 주체

평가의 주체는 실제로 누가 평가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21조(평가단 등의 구성, 운영)는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 또는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 제7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는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합동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가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한 평가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평가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주체를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평가의 지침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에 발송하면 행정자치부는 이를 토대로 합동평가위원회에 회의를 통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지표개발용역을 발주한다. 수탁기관에서는 중앙부처의 주요시책 등 확정된 평가의 대상을 토대로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를 개발하며 이 과정에서 2-3회에 걸쳐 합동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합동평가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을 심의한 후 확정한다. 그 후 중앙부처의 해당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 합동평가위원회 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하여 실제 평가를 수행한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할 때 평가의 주체는 최광의로 볼 경우 중앙부처, 최협의로 볼 경우 평가반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평가의 지표

평가지표는 평가를 하고자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평가지표는 자료의 출처를 기준으로 할 때 객관적 평가지표와 주관적 평가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는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지표를 보면 객관적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주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6) 평가의 시기

평가의 시기는 언제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평가의 시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적으로는 당해연도 10월부터 평가를 시작하여 당해연도 12월 또는 익년도 1월경에 종료하는 것으로 되었다.

7)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의 활용은 평가한 결과를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14조(평가결과의 보고)」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등)는 "① 국무총리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업무등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확인, 점검 및 보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는 "① 국무총리는 제5조 내지 제7조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 중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정부업무평가보고회의 개최)는 "정부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평가결과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그리고 제18조(국회에의 보고)는 "정부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평가결과의 공개)는 "평가실시기관은 해당 정부업무등의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동법 제20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는 "① 정부는 각 기관의 업무추진의 향

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부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결과활용노력을 보면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한 노력에 한정되어 있다.

(2)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문제점

1) 평가의 목적

평가의 목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 주요시책의 효과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당해 정책과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평가결과를 예산배정에 연계시킴으로써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의 확보와,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관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국가발전의 도모하며,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다양한 평가를 통합함으로써 정부평가 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민간 영리단체가 주관하는 평가를 배제시켜 상업적 목적에 의한 평가나 평가의 정치적 이용을 차단하는 효과의 기대 등이다.

현행평가는 내부관리효율성의 도모뿐만 아니라 민주성의 확보라는 평가목적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성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성의 확보는 해당 시책의 성과가 주민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때 그 존재 의의가 크다고 본다.

2) 평가의 대상

평가의 대상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뿐만 아니라 실

제 집행과정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국가의 주요시책, 추진역량 그리고 주민만족도조사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추진역량은 법제도상의 미비로 인하여 2002년부터는 제외되었으며, 주민만족도조사는 민원만족도조사로 대체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고유한 사무에 대해서는 평가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고유사무에 대한 평가는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비용상, 시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가에서 위임한 주요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동 시책이 국가의 시책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시책인지의 구분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즉 국가에서 위임한 시책이라 하더라도 수행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화 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위임한 주요시책에 한정하여 평가한다면 구분도 되지 않는 시책을 별도로 도출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며, 또한 고유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3) 평가의 내용

평가의 내용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거할 경우 투입, 과정, 산출물을 모두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 타당하나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투입요소인 노동(인력; 공무원수)과 자본(예산)은 주어진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모형에 의하여 결정되며, 예산은 자체적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 등에 의하여 일정부분 충당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입요소의 고려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산출물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지방자치단체 심사평가와 자체평가모형이 개발되어 보급된 바, 투입, 과정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인 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평가의 주체

평가의 주체는 협의에 의할 경우 해당 부처 공무원, 합동평가위원회 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타당한 접근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제 평가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주민, 시민단체, 언론사 등의 참여없이 평가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평가의 지표

현행 평가지표는 평가의 객관성을 위하여 객관적인 지표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시책의 성과가 100% 객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인 평가지표로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평가지표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시책의 주요 성과를 포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6) 평가의 시기

지방자치단체평가는 연초에 지표작업을 하고 11월부터 실사를 하여 결과를 12월에 제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히 2002년의 경우에는 과거보다 1개월 빨라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이 2월말에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정부 중심의 평가일정으로 당해 연도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익년도 정책 또는 예산에 환류·반영시키기 위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중앙의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적 성격이 많기 때문에 1년간의 정책집행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⁶⁾

7) 평가결과의 활용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결과는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로 한정되어 있다. 평가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Business Excellence Model과 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제도⁷⁾를 통하여 지방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 부진한 지방정부로 판명될 경우 추가적인 정밀진단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성과검토 결과 우수단체로 판정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 역시 이러한 점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해 몇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평가의 목적에서는 민주성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의 대상에서는 고유사무에 대한 포함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평가의 내용에서는 투입과 과정을 제외한 산출물에 초점을 맞춘 평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평가의 주체상 문제점으로는 평가반의 구성시 민간부문의 활용이 미흡한 점이 제기되었다. 평가의 지표에서는 객관적인 지표만을 활용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평가의 시기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평가결과의 활용에서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그 결과가 활용되어 평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 6) 정부예산지원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경우에는 중앙부처로부터 자금배정절차가 선행되어야만 정책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한표환 외, 2001: 88)
- 7) 영국사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및 매뉴얼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①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업무등의 평가에관한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평가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적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4가지와 민주성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대한 개정작업을 통하여 평가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② 평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주요 시책 등에 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체 기능을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기능을 평가하지 못하고 일부 시책에만 한정할 경우 국정통합성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내용이 시책위주로 이루어지는 바, 평가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연도별·시책별 성과를 도출하고자 할 경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책을 기능별로 유형화한 후 각 시책을 기능속에 포함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기능속에 포함되어 있는 시책은 변경될 지라도 기능별 점수화가 가능하여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된 특정시책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시책에 비하여 그 성과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것이다.

③ 평가의 내용을 산출물에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출물은 1차적인 산출(output)과 2차적인 산출(outcome)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차적인 산출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의 양과 질만 측정하기 때문에 2차적인 산출에 대한 평가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단순하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책임소재의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

나 1차적인 산출이 가져온 2차적인 산출의 양과 질을 평가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이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측정도구의 개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활동의 최종결과가 관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있는 경우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확해지지 않을 것이다(박재완·김신, 2000: 63).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책집행자는 1차적인 산출의 평가결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할 것이며, 정책결정자는 2차적인 산출에 대한 평가결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할 것이다. 영국은 1차적인 산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고 미국은 1차적인 산출에 초점을 맞춘 듯 하지만 2차적인 산출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단기적으로는 현행제도와 같이 1차적인 산출에 초점을 맞춘 평가를 하되 장기적으로는 2차적인 산출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④ 평가반에 민간부문의 위원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반에는 민간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민간부문은 합동평가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명확한 의미의 민간부문이라기 보다는 관련분야 전문가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해당 시책의 추진성과가 주민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때 실제적인 수혜자는 주민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시책에 대한 실제적인 수혜자인 주민들이 평가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민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인력풀을 구성하고 합동평가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⑤ 평가의 지표개발시 주관적인 평가지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순위비교에 목적이 있는 바, 주관적인 지표보다는 객관적인 지표에 한정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시책의 성과가 100% 객관화된다면 타당한 접근방법이나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관적인 지표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순위비교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3명의 평가관이 평가하도록 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확보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⑥ 평가의 시기를 익년도 상반기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당해 연도 하반기까지 평가를 종료하고 있어, 사업의 추진과정속에 평가가 시행되어 평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당해 연도 상반기에는 평가대상시책을 취합 정리하고, 다음으로는 취합 정리된 시책들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작업에 착수한 후 개발된 지표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의 평가시기는 사업이 종료되는 익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평가결과를 보다 확대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는 우수사례발굴 및 전파, 인센티브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바, 이는 투입된 비용에 비하여 성과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책별 평가지표별 측정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진행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다양한 진단 등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는 1999년 시범기간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동안 조금씩 변화하면서 그 틀을 형성해 오고 있다. 예를 들면 법적 미비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평가지표 역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평가의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점, 평가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평가의 내

용이 포괄적이라는 점, 평가반에 민간부문의 구성원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 평가지표가 객관적인 지표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평가시기와 사업 추진상 시기의 불일치 문제 그리고 평가결과 활용상의 제한점 등이 문제들로 제기되었다.

앞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가하면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하여야 하는 것들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는 합동평가를 통하여 피평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대 주민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동제도를 존속하되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명수·박경효, “한국정부의 심사평가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1996.
- 김병진, “우리 나라 정부 정책평가제도의 활성화 방안,” 「정책분석학회보」, 1997.
- 김현구·박희정.(2000).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평가 제도와 운영,”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재완·김신.(2000).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14권 제2호(통권 49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2).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및 매뉴얼개발」.
- 한표환외.(2001). 「평가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모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정자치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2).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 관계관 연찬회」 자료.
- Cooper, P. J., Brady, L. P., Hidalgo-Hardeman, O., Hyde, A., Naff, K. C., Ott, J. S. & White, H. (1998). *Public Administr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Fort Worth: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U. 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000). Presidential Award for Quality - Model of the 2000 Award.

Ⅲ. 정책평가의 활용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

김명수(한국의국어대 교수, 전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1. 평가결과의 활용이 의미하는 것과 추구하는 가치

(1) 평가결과의 활용의 의미

평가의 결과는, 그것이 잘 짜여진 평가설계에 따라 이루어진 체계적인 평가의 결과이건, 아니면 신속히 이루어진 상대적으로 덜 체계적인 평가의 결과이건 간에, 활용되어야 한다. 평가의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정책의 효율성과 책무성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활용되지 않을 평가라면, 처음부터 평가는 이루어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평가 결과의 활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서는 약간의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활용의 개념을 수단적 활용(instrumental use)과 개념적 활용(conceptual use)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그 하나이다 (Rich, 1977:). 수단적 활용이란 평가에서 제시된 결론이 어떤 특정한 결정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를 가리키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즉시적인 성격을 갖는다. 한편, 개념적 활용이란 평가의 결과가 곧바로 어떤 특정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평가결과의 잠재적 이용자들의 평가대상 정책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평가의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른 하나의 논의는 평가결과가 활용된다거나 활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논한다든지, 수단적 활용이나 개념적 활용으로 구분하여 논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평가결과의 활용현상은 오히려 완전한 활용과 완전한 불용이라는 양극단 사이의 연속선상에서 관찰될 수 있는 상대적인 성질의 것으로서, 평가결과의 활용 여부를 정도의 문제로 본다는 것이다. (Weiss, 1972: 23)

그러나 정책평가를 정책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을 수단적 활용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활용에 가깝게 상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평가결과의 활용이 추구하는 가치 : 효율성 및 책무성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을 통해 확보하려고 하는 가치는 정책의 효율성과 책무성의 증진이다. 그리고 효율성의 핵심은 효과성과 능률성이다. 효과성은 정부업무가 원래 달성하려고 의도했던 목표의 달성을 중요시한다. 능률성은 정부업무의 수행에 있어 예산의 사용이 낭비가 없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한다. 한편, 책무성은 행정기관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효율성과 책무성은 이념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평가는 합리적 정책운용의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정책결정자는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제기 되는데, 이 때 평가 결과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해당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중단할 것인가
- 해당 정책에 투입할 예산의 규모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
- 정책 적용의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
- 정책의 구성 요소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등등

이러한 정보는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정책평가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무성 이행의 주요 요소가 된다 (김명수: 2000: 12~13).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책의 시행을 포함

한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은 그들의 활동과 결과에 대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야 한다. 정당화되지 못하는 예산 지출, 결정, 노력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그것이 입안·시행하는 각종 정책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예전에는, 배정된 예산을 법규에 따라 사용했다는 회계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부 활동의 정당성을 증명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으며,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예산을 사용한 결과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Scriven, 1981: 1~2) 결국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평가는 필수 불가결한 과정으로 등장한다. 정부 기관들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그들이 수행하고 있거나, 이미 그 수행이 완료된 정책의 집행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창출할 수 있어 책무성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osavac and Carey, 1985: 45)

2.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

(1) 올바르지 못한 방식의 활용

정책평가는 항상 위와 같은 합리적 이유에서만 수행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되고 있다. (Weiss, 1972: 11~12; 김명수, 2000: 17~18) 정책결정자가 자신이 내려야 하는 결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평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를 위탁함으로써 시간을 버는 방안이 있기는 하나, 그 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평가연구를 맡주하여 결정을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책결정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평가 결과에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결정자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관련 집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관찰되나, 이 또한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정책결정자나 사업관리자가 자신들의 책임 하에 결정되고 실시되어온 정책/사업이 성공적이었음을 이미 확신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성공적임이 분명한 정책은 계속적으로 시행하며, 그 규모와 적용 범위의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뒤따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 결과가 자명한 평가에 자금과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평가결과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평가 결과는 건전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 결과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의해 지적되고 있다. (Wholey, Scanlon, Duffy, Fukumoto and Vogt, 1973: 50; Alkin, Daillak and White, 1979: 231~256)

평가 결과의 이용자가 평가에서 다루어 주기를 바랐던 정책의 특정 측면이 평가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평가의 결과가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것은 평가의 적실성의 문제(relevance)로서, 이러한 문제는 평가자가 평가 결과의 이용자의 정보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시킨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들 평가자와 그 결과 이용자 양 집단 사이에 평가의 목적과 평가 범위 등에 관하여 충분한 합의가 필요함을 나타내준다.

적시성(timeliness) 또한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정책평가 결과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책과 관련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평가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무리 훌륭한 평가라도 필요한 시기에 그 결과가 제출되지

못하면, 그 사용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한 적시성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주장이 존재한다. Guba(1975: 42~54)는 평가 결과가 어떤 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적시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Patton(1978)은 적시에 평가보고서를 받는 일이 그것의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Young과 Comptois (1979: 63~4)는 즉각 어떤 특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단기적인 수단적 활용에는 적시성이 중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개념적 활용에는 적시성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한다. 평가 결과가 그 활용자의 사고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2000: 220)

평가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은(Wholey 등, 1973: 50) 평가연구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평가연구의 질이 높아야 평가 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떤 학자들은 (Patton, Grimes, Guthrie, Brennan, French and Blyth, 1975: 150) 평가연구의 질은 평가 결과의 활용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평가연구에 동원된 방법론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 결과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도외시할 수 없다. 평가연구의 질이 평가 결과의 활용에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 해도 그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의 활용도는 평가 결과 이용자의 태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평가 결과를 이용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평가작업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지지·지원할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가 제출되었을 때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평가 결과의 활용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Patton 등은 이러한 평가 결과 이용자의 태도가 평가의 활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은 분명 평가 결과의 활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어느 요인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논점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들 요인 하나 하나가 모두 평가 결과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심을 가지는 평가자라면 질 높은, 적실성 있는 평가 결과를 적시에 완료하여, 이를 평가 결과의 잠재적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3. 한국정부 내에서의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실제

한국정부 내에서 정책평가의 결과는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활용되는가?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경우, 평가 결과를 활용할 것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였다는 점이다. 2001년 5월 1일 발효된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14~19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평가 결과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정 요구: 국무총리는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업무 등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조치 통보: 국무총리는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감사 요구: 국무총리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 중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의 예산 반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기관의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보고회 개최: 정부는 평가결과와 평가결과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평가보고서의 공개: 정부는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한다. 뿐만 아니라 평가실시기관에게는 해당 정부업무 등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무총리는 주요 평가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와 기관역량 평가에서도 출된 개선사항을 지적한다. 후자인 기관역량평가 부문은 ① 기관운영혁신 노력 관련사항, ② 조직 및 정책관리역량 관련사항, ③ 자체평가 수행노력 관련사항으로 나누어 개선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각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 완료되어야 할 시한을 명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협조를 얻어야 할 기관까지 제시한다.

개선사항의 지적은 “---을 조사·분석 추진”할 것;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노력을 강화”할 것; “--을 마련·시달”할 것; “효율성을 확보”할 것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평가결과에 따라 국무총리가 취하는 조치는 평가 대상 정책 자체의 폐지라든지, 그 수정 등, 정책의 운명에 관한 것은 아니며, 그 집행과정에서 관찰된 잘못 혹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평가 결과 활용의 개선방향

우리는 여기에서 현재 국무총리실과 정책평가위원회가 수행하는 정부업무 등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무총리실과 정책평가위원회가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집행의 결과

인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정책형성부분에 대한 평가는, 그것이 행정기관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받아드려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정책형성부분에 대한 평가는 정책집행부분과 성과부분에 대한 평가 결과, 정책 자체에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어찌 되었건, 이러한 정책관련 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의 사후조치로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결과 활용의 실제에서는 정책집행과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말은 정책형성부분과 성과부분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더 나아가 그런 두 가지 주요부분에 대한 평가 노력은 낭비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러한 평가결과의 활용 관행은 평가의 목적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직도 많은 미흡한 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책평가의 목적은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책무성의 개선에 있다. 정책의 효율성은 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을 절감하고, 계획했던 활동의 수행과 이를 통한 국민 편익의 증진을 통해 확보된다. 한편, 정책의 책무성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관련 법규 준수, 계획된 활동의 정확한 수행, 정책의 효율성 향상, 이러한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확보된다.

그렇다면 정책평가결과의 활용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책무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상의 논의는 분명해진다. 먼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다음으로 평가결과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결과를 활용한들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정책평가의 개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평가과정의 체계적이어서 거기에서 도출된 결론이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 평가 실체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바,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첫째, 현행 정책평가는 개별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여러 사업으로 구성된 정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정책의 평가는 엄밀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평가는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 요소 하나 하나에 대한 체계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세련된 종합평정을 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개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정책평가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단순히 정책이 의도하는 분야에서 나타난 성과를 반기별로 측정하고 있다. 성과측정(performance measurement)은 정책평가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평가가 여기에서 그친다면 정책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성과평가는 성과측정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선택적일망정 체계적인 효과평가의 수행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평가에서는 투입과 연계된 산출과 성과에 관한 언급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특정 정책에 투입된 예산이 어떤 일에 얼마만큼 사용되어,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현재 직접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평가위원과 국무총리실의 평가담당관의 상당 인원이 평가의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에 관한 전문성의 결여는 평가자들로 하여금 정책의

효과 측정과 같은 평가작업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기보다는, 평가대상 정책의 장점과 단점의 발견과 단점의 보완을 위한 방안의 건의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평가위원과 국무조정실 평가담당관들의 선정에 있어 평가 관련 전문성이 중요시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행 평가는 1년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평가대상 선정에 있어서 해당 정책이 의도했던 효과를 나타낼 만큼 시간이 경과했는지의 여부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그 이전에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가대상 정책의 진정한 가치를 잘못 나타내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특정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해야 한다.

(2) 평가결과 활용의 개선

한편, 평가결과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정책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책무성 향상을 위해 모두 이용한다는 뜻이다.

먼저, 정책형성부분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획득되는 정보는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그 하위 정책수단(세부사업 등)사이의 논리적 연계성이라든지, 계획수립을 위한 여론수렴 여부 및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등이다.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 2000: 11) 정책목표와 수단간의 논리성에 관한 정보는 정책 자체의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며, 여론수렴과 행정절차의 이행에 관한 정보는 정책수립과정의 적절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도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집행부분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어지는 정보는

계획에 따른 예산 사용 여부, 계획에 따른 활동 수행 여부, 일정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능률적 사업 시행 여부 등이다. 이러한 정보는 정책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설정되었던 사항들이 제대로 실현되었는가의 여부를 알게 해주는 것으로, 정책 운영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의도했던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와 사용된 예산의 가치에 관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는 정책의 성패 여부를 판단케 해주는 것으로서, 정책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해당 정책의 계속시행 여부, 정책 규모의 확대 혹은 축소, 예산 배분의 변경, 정책 구조의 변화, 또 다른 평가의 건의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5. 결 론

한국 정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그 운영의 책무성을 증진시킨다는 취지에서 정책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만으로 이러한 취지가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다음으로, 평가결과를 제도의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 있어서의 정책평가는 2001년 5월부터 법적인 뒷받침을 얻어 시행되고 있고, 평가결과의 활용 또한 법적 틀 속에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운영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적 요건은 충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도 평가 결과로 도출되는 평가 결론의 질과 설득력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평가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평가제도 운용의 개선 가능성은 많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도 운영 책임자들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 2000년도 정부업무 심사평가 지침, 2000. 2. 29.

김명수, 공공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2000.

Marvin Alkin, R. Daillak and P. White, *Using Evaluations: Does Evaluation Make a Difference?*,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1979.

E. G. Guba, "Problems in Utilizing the Results of Evaluation,"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8(3), Spring 1975.

M. Q. Patton, *Utilization-Focused Evaluation*,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978.

M. Q. Patton, P. S. Grimes, K. Guthrie, N. Brennan, B. French and D. Blyth, "In Search of Impact: An Analysis of Utilization of Federal Evaluation Research," in Carol Weiss, ed., *Using Social Research in Public Policy-making*, Lexington, Mass.: D. C. Heath and Company, 1977.

Emil Posavac and Raymond Carey, *Program Evaluation: Methods and Case Studie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5, 45쪽 참조.

Robert F. Rich, "Uses of Social Science Information by Federal Bureaucrats: Knowledge for Action versus Knowledge for Understanding," in Carol Weiss, ed., *Using Social Research in Public Policy Making*, Lexington, Mass.: D. C. Heath and Company, 1977.

Michael Scriven, *Evaluation Thesaurus*, Third Ed., Inverness, California: Edge-press, 1981.

Carol Weiss, *Evaluation Research: Methods of Assessing Program Effectivenes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2.

_____, ed., *Using Social Research in Public Policy Making*, Lexington, Mass.: D. C. Heath and Company, 1977.

Joseph Wholey, John Scanlon, Hugh Duffy, James Fukumoto and Leona Vogt, *Federal Evaluation Policy: Analyzing the Effects of Public Programs*,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1973.

Ⅳ. 정책평가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

문희화 경희대 교수(전 정책평가위원)

약 4년에 걸쳐 정책평가위원으로서 일 해본 자랑스런 경험에서 느낀 바가 많지만 평가업무 자체와 관련된 점만 정리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998년부터 시작된 국무조정실에서의 정책평가 업무가 그간 이에 참여한 국무조정실의 공무원과 1,2,3기에 걸친 평가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이제 이 제도가 정착, 발전되고 있음을 먼저 축하 드리고 싶다. 사실 초창기에 엄청난 분량의 업무를 정리, 분석, 평가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참여한 모든 분들의 마음과 노력을 합쳐 이를 극복한 것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특히 국무조정실 공직자들의 밤, 낮도 없고 주말도 없는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던들 오늘날의 이와 같은 성과는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사회각계 각층의 인사들의 훌륭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이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한 단계 높이고 그 실적 또한 훌륭하게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향후 이제도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소지는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을 건의 겸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기억에 의하면 약 두 번 정도,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만든 평가보고서가 정부 최고책임자의 바쁜 일정으로 보고회를 거치지 않고 언론 매체를 통하여 또는 각 부처에 송부되어 그 내용이 공개된 것은 그간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투입된 정책평가위원회 참여자들의 인력과 예산뿐 아니라 각 부처관계직원들의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평가로 인하여 정부 각 부처가 보다 성실히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느꼈고 또 이렇게 성실한 이유는 최고통치권자가 평가결과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응분의 포상과 책임을 물은 것이었다고 본다면 이 업무는 반드시 대통령 주재 하에 보고회를 열어 그 내용에 대하여 참

여한 모든 국무위원과 산하기관장이 평가위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홍보하는 전통이 확립되어야 된다고 느꼈다.

둘째, 최종보고서는 평가위원들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으므로 그 결과는 당연히 수정 없이 최고통치권자에게 보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제3자가 개입하여 대통령 보고 전에 그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 것은 정책평가 본래의 취지에 다소 훼손이 되지 않나 생각된다.

셋째, 각 부처 내부에 설립된 자체평가팀의 업무가 관계장관의 무관심으로 가끔 걸돌고 있는 것을 느낀바 있다. 만약 장관이 내부 평가팀의 업무를 원활하고 훌륭한 정책집행을 위해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관이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만큼 각 실, 국, 과장들도 국정을 더욱 성실히 집행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워낙 광범한 국정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본 회의에서의 심사는 형식적인데 치우친 감이 많았다. 심지어는 관계 분과위원회에서도 분과위 소관과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본회의에 상정시킨 예가 있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볼 때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분과위원회 토의 시에는 보다 충분하고 진지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개선하는 한 가지 방안은 분과위원회 개최를 야간에 함으로써 충분한 질적 토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토의 때에는 중요 핵심이슈에 대한 토론에 국한함으로써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최종보고서에서 지적된 시정사항에 대하여 정책평가위원회 또는 부처별 자체 평가위원회의 사후 모니터링이 보다 충실히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후 모니터링이 충실히 시행 될 때, 각 부처는 정책평가 제도에 대하여 보다 충실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국정수행을 보다 충실히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 록

제1절 정부업무 평가관련 법령

제2절 주요 외국의 평가제도

제1절 정부업무 평가관련 법령

1.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6143호, 1972.4.14)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계획"이라 함은 6년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정부의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이라 함은 2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에 걸치는 정부의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3. "기본운영계획"이라 함은 장기 또는 중기계획에 의한 연차적 사업을 포함하는 각 행정기관의 연간사업계획을 말한다.
4. "전시운영계획"이라 함은 전시 및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비한 각 행정기관의 가상적 연간사업계획을 말한다.

제2장 계획의 수립

제3조 (장·중기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기 계획 또는 중기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그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기본운영계획) ①국무총리는 매년 다음연도의 정부의 기본정책 및 기본운영계획지침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해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기본운영계획지침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 및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최초기본운영계획을 매년 3월 20일까지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본운영계획을 종합조정하여 4월 30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야 한다.

⑤경제기획원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기본운영계획의 사업내용과 사업목표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성립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소관업무 및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한 최종 기본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운영계획수정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예비비사용등에 따른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의 사용등의 필요에 의하여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미리 기본운영계획 수정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전시운영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전시운영계획지침에 의하여 매년 그 소관업무 및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전시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한다.

②전시운영계획의 작성등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심사분석

제8조 (심사분석)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업무 및 소속기관의 기본운영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그 분기가 끝난 40일 이내에 스스로 심사분석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하고, 연도심사분석 및 평가는 그 연도가 끝난 5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의 의한 심사분석 및 평가의 결과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분기별 심사분석 및 평가의 결과와 기획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시행하는 심사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그 때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분석결과의 처리) 국무총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의 결과 그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정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라 시정조치를 강구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교수단의 설치) ①국무총리가 정부의 기본운영계획의 집행결과를 종합평가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사계의 권위자로 구성된 평가교수단을 둘 수 있다.

②전항의 평가교수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서울특별시·부산시및도의기본운영계획의수립및심사분석

제11조 (시·도의 기본운영계획)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매년 시·도의 기본운영계획지침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최초기본운영계획을 그해 9월 30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시·도기본운영계획지침은 매년 7월31일까지 작성하여 시달하되,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작성 시달하고, 부산시 및 각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조정을 받아 이를 작

성 시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시·도의 기본운영계획은 서울특별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부산시 및 각 도의 경우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내무부장관은 그 승인한
시·도의 기본운영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④제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서울특별시·부산시장 및 도
지사가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예산이 성립된 경우의 최종기본운영계
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4조제4항중 "대
통령"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부산시 및 도의 경우
에는 "내무부장관"으로 보며, 제4조제5항중 "대통령"은 서울특별시
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로, 부산시 및 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으로 보고, 제4조제6항중 "대통령"은 "국무총리"로, "국무총리"는 부
산시 및 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⑤서울특별시·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또
는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의 사용등의 필요에 의하여 기본운영계
획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운영계획수정안을 작성
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부산시 및 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내무부장관은 그가
승인한 기본운영계획의 수정내용을 종합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2조 (시·도의 전시운영계획) 제7조의 규정은 서울특별시·부산
시장 및 도지사가 전시운영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심사분석) ①서울특별시·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그 소관업
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분기별로 그 분기가
끝난 30일이내에 스스로 심사분석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 및 평가의 결과는 서울특별시의 경
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부산시 및 도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이
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내무부장관은 그 보고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8조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은 국무총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항의 처리에 이를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14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국무총리는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정부주요정책의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국무총리령 제364호, 1990.4.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주요정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주요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평가"라 함은 2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정부주요정책의 적합성·시의성·정책추진의 효과성·능률성과 사업진도 및 국민의 만족도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정책과제"라 함은 정책평가의 대상과제를 말한다.

제3조 (정책평가계획의 수립) ①국무총리는 매년 2월말까지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주요정책과 제명 및 정책평가의 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정책평가) ①국무총리는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②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평가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평가전담관의 지명) 국무총리는 정책평가업무를 담당할 담당관을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 (평가자문위원의 위촉) ①국무총리는 정책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평가자문위원

을 위촉할 수 있다.

②평가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자문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훈령으로 정한다.

제7조 (조사·연구위원) ①국무총리는 정책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자원연구기관의 지정) 국무총리는 정책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자원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여론의 수렴) 국무총리는 정책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제출등의 요구) 국무총리는 정책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훈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64호, 1990.4.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531호, 1995.2.2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평가”라 함은 정부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 분석·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정부업무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중 당해연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3. “정기심사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당해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총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평가를 말한다.
4. “수시심사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심사평가를 말한다.

제3조(심사평가지침의 시달) 국무총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심사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심사평가 실시 방향
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4.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평가 방법
5. 기타 심사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1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

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변경이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심사평가의 실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자체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심사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평가의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분기별 자체심사평가의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수시심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작업반의 구성 및 조사·연구의뢰) ①국무총리는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기타 관계전문가 등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요청 등) ①국무총리는 심사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평가결과의 처리) ①국무총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중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재정경제원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국무회의에서 보고) 국무총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결과를 반기별로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수시로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대통령에의 보고) 국무총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결과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상황을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995년도 심사평가지침등에관한경과조치) ①1995년도 심사평가지침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시달한다.

②1995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지침이 시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어관한규정(대통령령 제5774호, 1998.4.15)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평가"라 함은 정부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매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중 당해연도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3. "특정과제"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국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현행 제도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4. "기관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주요업무와 특정과제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행정체제의 추진역량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부처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당해기관의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자체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심사평가지침의 시달) 국무총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다음 연도의 심사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심사평가의 실시방향
2. 기관평가의 대상기관·평가방법 기타 기관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3. 부처자체평가의 방법 기타 부처자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4. 주요업무의 선정기준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5. 기타 심사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

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 1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당해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변경이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기관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특정과제에 대한 심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정부업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특정과제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부처자체평가의 실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심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위원회는 자체심사평가의 실시계획, 심사평가결과 기타 자체심사평가에 관한 주요사항등을 심의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심사평가의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및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평가의 실시결과와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정부업무의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연도별 심사평가기본계획 및 심사평가지침의 심의

2. 정부업무의 심사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3. 기관평가와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주요업무와 특정과제 등에 대한 평가
4. 심사평가제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기타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은 국무조정실장과 정부업무의 심사평가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⑤국무조정실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평가작업반의 구성 및 조사·연구의뢰) ①국무총리는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전문가등으로 평가작업반을 구성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국무총리는 전문분야의 심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 관계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작업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제출의 요청등) ①국무총리는 심사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등

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등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부업무심사평가보고회의 개최) ①국무총리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결과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결과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정부업무심사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업무심사평가보고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평가결과의 처리) ①국무총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매반기 종료후 30일이내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중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및 예산청장에게 예산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국무총리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결과의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5774호, 1998.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1998년도 심사평가지침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도 심사평가지침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0일이내에 시달한다.

③(1998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지침이 시달된 날부터 20일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6347호, 2001.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정부업무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업무등”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정부업무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관평가”라 함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국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과제평가”라 함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자체평가”라 함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평가의 실시에 있어 그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평가의 종류 및 대상

제5조(중앙행정기관평가)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이하 “중앙행정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평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국고보조사업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이하 “지방자치단체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평가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특정과제평가)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업무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과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평가의 절차

제10조(평가지침의 시달 및 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국무총리는 매년 당해 연도의 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 등에 관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평가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평가계획을 지체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평가지침의 작성, 평가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평가의 실시) 평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 및 평가 계획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평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평가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료 등의 요청) ①평가실시기관은 정부업무등의 평가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4조(평가결과의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등) ①국무총리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업무등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상황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및 보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국무총리는 제5조 내지 제7조 규정에 의

한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②국무총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 중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한다.

제17조(정부업무평가보고회의 개최) 정부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평가결과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개최한다.

제18조(국회에의 보고) 정부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한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한다.

제19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실시기관은 해당 정부업무등의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정부는 각 기관의 업무추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부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정책평가위원회 등

제21조(설치) 정부업무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업무등에 대한 평가기본방향 및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평가에 관한 사항
4. 특정과제평가에 관한 사항
5. 평가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6.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

7. 그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제2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은 국무조정실장과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국무조정실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이 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체평가위원회) 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 소속하에 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평가계획·평가결과 그밖에 당해 기관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 ①정부업무등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간의 원활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가관련기관간의 평가업무의 조정 및 협조방안
2. 평가결과의 실효성 확보방안

3. 기타 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과제평가 또는 이 법에서 정한 평가의 종류 이외의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④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전문가가 된다.
- ⑤협의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정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이 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평가제도의 발전

제26조(자체평가활동의 지원 등) ①정부는 자체평가의 활성화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개발·제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평가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평가관련 조직·예산 등의 지원) 정부는 평가업무 분야의 확대에 따른 평가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업무등의 평가관련 조직·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평가관련 교육훈련 등) ①정부는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관련 부서의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다양한 평가기법·제도 등을 습득하고 평가업무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가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은 이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으로 본다.

6.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제 17220호, 2001.4.3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인사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평가의 종류 및 대상

제3조 (중앙행정기관평가의 대상 등) ①국무총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주요업무를 중앙행정기관평가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평가대상기관의 특성, 업무의 성격과 전년도 평가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국가의 주요시책등)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등"이라 함은 국가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로서 다음 각호의 시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시책 또는 사업
2. 국정지표 및 국정과제와 관련되어 추진중인 시책 또는 사업

제5조 (지방자치단체평가계획의 보고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3월 1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7. 평가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의 수립 후에 추가적으로 평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실시 3월 이전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합동평가의 실시 등) ①국무총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평가계획을 검토하여 2월 이내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평가 실시 여부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실시 3월 이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평가실시계획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합동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합동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한 평가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평가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2. 합동평가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④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것 외에 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합동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특정과제평가계획의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과제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정과제평가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체평가의 실시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종료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종료 후 그 평가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의 절차

제12조 (평가지침의 작성 및 평가계획의 수립)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정부업무등의 평가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4. 특정과제평가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평가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수행되는 평가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9. 평가계획의 조정 및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평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자체평가계획
2. 소속기관평가계획
3. 특정과제평가계획
4. 지방자치단체평가계획
5.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③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자체평가 및 특정과제평가의 대상과제로 선정된 업무의 시행계획(성과목표와 성과달성계획을 포함한다)
6.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한다)
7.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중앙행정기관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국무총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주요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계획의 조정·수정 등) ①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평가계획에 대하여 이를 조정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계획을 변경하여 2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평가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때에는 제11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평가계획의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요업무의 시행계획에 변경사유 및 그 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지체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4조 (시정요구 등) ①국무총리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업무등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요업무의 시행계획 변경·보완등을 포함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조치계획의 수정·변경 등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무총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정부업무평가보고회의 개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개최하되, 개최시기는 국무총리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한 평가지침에 정한다.

제5장 정책평가위원회등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③소위원회에는 간사위원 1인을 둘 수 있다.

④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전문위원) 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평가단 등의 구성·운영)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 또는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은 소관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한 것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4조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의 구성 등) ①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 및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을 말한다.

②대통령비서실 및 감사원의 관계공무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의장은 안건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을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이 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25조 (회의) 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 (정부업무평가실무협의회 설치)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정부업무평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협의·조정
2. 협의회 또는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이 되며, 위원은 상정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④실무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것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27조 (자료요청 등) 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수당 등) 합동평가위원회·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과 합동평가위원회·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평가제도의 발전

제29조 (자체평가활동의 지원 등) ①국무총리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평가의 활성화 및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체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의 개발·보급
2. 평가제도 및 평가기법의 교육
3. 자체평가 모범사례의 확산 등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국무총리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연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평가제도 및 평가내용과 관련된 연구·지원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심사평가위원회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체평가위원회로 본다.

7. 정책평가위원회 운영세칙(2001.5.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한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본세칙 제7조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순위에 따라 해당 소위원회의 간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간사)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간사 1인을 둔다.

②행정간사는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으로 한다.

제5조(의안의 제출) ①의안은 위원장, 행정간사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중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구성) ①법 제23조 6항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둔다.

1. 제도·운영소위원회
2. 경제 I 소위원회
3. 경제 II 소위원회
4. 사회·문화소위원회
5. 일반행정소위원회
6. 지방자치소위원회

②각 소위원회에는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도·운영소위원회는 제도총괄, 지방자치총괄, 위원장, 각 소위원회간사, 안전관련 주관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소관) 각 소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도·운영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가.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
 - 나. 평가제도 발전, 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 다. 평가방향 설정 및 평가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 라. 정부업무평가와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정책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제 I 소위원회는 재정경제부,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들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경제 II 소위원회는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들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사회·문화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부,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그 소속기관들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일반행정소위원회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와 그 소속기관들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7. 지방자치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9조(기능) ①각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소관업무의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2. 소관업무의 조사·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소위원회 회의) ①각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간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1조(평가작업반 구성) ①평가작업반은 평가과제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②평가작업반의 주관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12조(평가과제) 정부업무평가과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제13조(위원회보고등) 각 소위원회 간사위원은 소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1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절 주요 외국의 평가제도

1. 미 국

(1) 개 요

- 미국 연방정부 수준에서의 정책평가는 GPRA 시스템에 의거하여 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과 대통령실의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 미국 감사원은 의회 내에서의 정책평가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대통령실의 관리예산처는 행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 주도기관임

- 미국은 의회측과 행정부측에서 모두 심사분석을 실시
 - 의회측은 의회소속의 회계감사원에서 회계감사와 함께 정부주요 사업 및 시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한 후 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고 관련부처에 시정방안을 권고
 - 행정부측은 주로 각 부처에서 소관사업에 대해 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차기사업이나 시책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예산담당기구인 관리예산처에서는 전반적인 행정관리개선을 위해 각 부처 예산관련제도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

(2) 역사적 개관

- 1960년대 중반 Johnson행정부가 계획예산제도(planning - programming - budgeting system)를 도입

- Nixon정부가 실시한 목표에 의한 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나 Carter정부에서 실시한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도 모두 그 내부에 평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음
 - 관리예산처가 1979년에 지침 A-117호를 공표함에 따라 최고조에 달함

- Reagan행정부하에서 평가기능이 위축됨
- 1993년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시스템을 도입, 시범운영을 거쳐 연방정부에 적용되고 있음

(3) 관리예산처(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1) 관리예산처의 담당기구

미국의 예산기구로 알려져 있는 관리예산처는 예산심사뿐만 아니라 행정관리 및 법제기능도 수행한다.

- 관리담당 차장 밑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개선 평가과(Management Improvement and Evaluation)에서 심사분석제도 운영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실제 심사분석업무는 예산담당 차장 밑에 있는 12개 과에서 필요시 35개 기동반을 조직하여 심사분석 실시

2) 관리예산처의 심사분석제도 운영

미국 행정부에서는 각부처 소관업무중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부처 자체적으로 심사분석 실시한다. 이러한 심사분석은 부처내 요원 또는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 관리예산처에서는 이러한 심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예산사업을 심사하며 아울러 경제실태, 구매제도등 예산과 연관되는 각 부처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실시

(4)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미국의 감사원이라 할 수 있는 회계감사원에서는 회계감사와 아울

러 의회에산심의 및 법률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실시한다.

1) 회계감사원의 담당기구

회계감사원은 의회가 요청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지만, 의회에 도움이 되고 또 정부행정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하여는 스스로 문제를 선정하여 연구 진행한다.

- 현재 이 기관은 사후적(ex post)인 정책평가와 사전적 연구(ex ante)인 정책분석을 수행
 - 실제로 수행하는 과업의 많은 부분은 전자에 해당
 - 후자는 최근에 들어와서야 수행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함. 미국 감사원에 의한 정책평가활동은 의원들이 이를 통해 행정을 개선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반영
- 미국 감사원이 수행하는 정책평가활동의 두 가지 형태
 - 의회가 요청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정책평가를 수행하는 경우로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평가대상정책이나 사업을 실시한(혹은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획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획득할 수 없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자료를 독자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 상위평가(meta-evaluation) 주로 기존평가들의 내용을 종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대상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여러 평가기관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를 종합하여 그 정책이나 사업의 성패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임
- 사업담당원장보의 밑에 사업평가원(Institute for Program Evaluation)에서 심사분석업무를 담당

2) 회계감사원의 심사분석

의회소속의 회계감사원에서는 전통적인 회계 검사와 아울러 정부의

주요사업 및 시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심사분석에 필요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사업
 - 향후 2년내 중요성이 높은 사업
 - 시급한 사업
 - 문제점이 부각된 사업
 - 의원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업
 - 정치적 도덕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사업 등
- 심사분석은 주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의원들에게 제공
 - 정부의 주요사업들은 대개 한시법의 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한시법의 시행 도래시 당해 법률의 존폐 여부를 의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제공을 위하여 심사 분석 실시

(5) 심사분석 결과의 활용

행정부 각 부처의 자체심사분석 결과는 관리예산처에서 예산편성시 참고자료가 되며 대상 의회 예산요구시 예산요구내용을 뒷받침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 관리예산처의 심사분석 결과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정부조직개편 기타 행정관리업무에도 활용
- 회계감사원의 심사분석 결과는 관련의원들에게 보고되며 동시에 관련부처에 시정방안을 권고
 - 권고 받은 사업(시책)에 대하여는 각 부처가 그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
- GPRA제도의 올바른 활용
 - 조직 전체와 외부의 주요 이해관계자간의 적극적인 참여
 -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건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
 - 성과평가와 관련된 정책 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

(6) 미국의 GPRA제도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란 성과지향적 관리시스템의 하나로 기관의 기본 사명과 목표의 명확화, 기본 사명 및 목표와 연계된 계획과 성과척도의 개발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성과정보의 활용을 포함하는 다면적이고 다단계적인 제도이다.

1) GPRA의 도입 배경

GPRA의 성과지향적 개혁안은 1990년대에 들어 독창적인 정부개혁 노력이라기 보다는 역사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제도이다. 60년대의 PPBS의 도입부터 90년대에 GPRA가 도입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왔다.

- 1960년대의 PPBS도입
 - PPBS(Programing, Planing, and Budgeting System)는 GPRA의 선조격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연방정부는 DoD(Department of Defence)에서 활용된 제도를 전 부처에 확산시키려 했으나 실패함
- 1970년대의 MBO와 ZBB
 - PPBS의 실패는 MBO(Management by Objective)와 ZBB(Zero-Base Budgeting)로 이어지지만 이 두 제도 역시 성공적이지 못함
- 1980년대의 MBO재도입
 - 생산성 향상운동(productivity improvement)과 질적 관리(quality management)와 MBO의 재도입 노력이 있었는데 이 역시 측정의 문제와 정부관리 시스템 중 특히 정부의 부적절한 회계관련 관리 시스템 때문에 성공하지 못함
- 1990년대 GPRA의 도입
 - 1990년에 도입된 CFO법(the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은 연방기구에 CFO를 설치하여 매년 재정적 상황에 대해

보고토록 하였고 1996년에 제정된 정보기술관리개혁법(the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은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조직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일련의 성과지향적 제도인 GPRA를 도입함

▪ GPRA의 집행 전략

- 먼저 GPRA는 이전의 개혁움직임과는 달리 법으로 제도화 됨
 - 첫째로 강제성의 정도가 보다 커진 점
 - 둘째로 대통령만의 개혁노력이 아닌 대통령과 의회가 합의한 개혁안이라는 점
- 다음으로 GPRA는 이전의 개혁움직임과 달리 급격한 변화를 이 루려 하지 않음
 - GPRA는 1993년에 도입된 이후 수차례의 시험운영사업을 통하 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였음(아래의 <표> 참조)

< GPRA의 주요 추진일정 >

일 시	조 치 내 용
1993년10월	최소한 10개의 연방행정기관을 지정하여 1994, 1995 및 1996년의 성과계획(performance plan)과 성과보고서(performance report)의 시험운영(pilot projects)
1994년10월	위의 10개 연방행정기관 중 최소한 5개의 연방행정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책무성 및 유연성에 대한 시험 운영
1997년5월	OMB가 대통령과 의회에 시험운영에 대한 보고(시험운영의 마지막 단계)
1997년6월	GAO가 의회에 GPRA의 전면적 실시를 위한 각 연방 행정 기관의 준비상황 보고
1997년9월	연방행정기관들이 1999년도 성과계획을 OMB에 제출
1997년9월31일	모든 연방행정기관은 5개년 전략계획을 수립완료 (전략 계획은 이후 매 3년마다 내용 갱신)
1997년10월	최소한 5개 연방행정기관을 지정하여 1998년과 1999년 성과 예산 시험 운영
1998년1월	OMB가 각 연방행정기관의 계획에 기초한 연방정부계획(Federal Government plan)을 1999년 대통령 예산에 포함하여 제출(이후 매년 반복됨)
2000년3월	연방행정기관은 1999년 성과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이후 매년 반복)
2001년3월	OMB가 대통령과 의회에 성과예산 시험운영의 결과 보고

-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의 발달과 광범위한 활용 등 기술의 발전이 GPRA도입에 긍정적으로 작용

- 정보기술의 발달은 이전의 PPBS나 MBO의 경우와 달리 성과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성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주 정부는 국민에 대한 책무성 확보함
- 또한 정부의 관리에 있어서 유연성 확보하는 관리시스템을 확립함

2) GPRA의 주요 내용

GPRA는 연방정부의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소 때문에 추락한 국민의 연방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성과에 대한 강조가 있기 이전의 연방정부는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투입면에 대한 관리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GPRA의 도입은 각 연방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각 조직의 존립근거에 대한 다음의 기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 우리 조직의 사명(mission)은 무엇인가?
- 달성할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성과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 성과관련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면 미래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 GPRA의 목적

- 연방행정기관이 집행하는 정책의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연방정부의 능력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신뢰수준을 높임
- 정책의 목적을 정하고 정해진 목적의 정과를 측정하여 정책의 진행과정을 국민에게 공표하는 일련의 시험운영사업(pilot project)을 통하여 정책성과에 대한 개혁을 추진
- 결과, 서비스의 질, 고객만족도의 향상에 초점을 둠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공공정책성을 향상
- 관리자들로 하여금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정책의 결과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법적인 목적의 달성여부와 연방정책과 예산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켜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킴
 - 연방정부의 내부관리 향상
- GPRA의 적용대상

GPRA의 적용대상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음. 국가보안상 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방행정기관은 GPRA의 적용대상으로 전략계획의 수립과 성과보고의 의무가 있음

 - 연방정부의 14개 부처(departments)
 - 모든 독립행정기관(agencies)
 - 모든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 ※ 약 60여개의 소규모기관(연간 지출이 2천만불 이하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OMB가 GPRA의 의무 중 일부를 면제하고 있음
 - 집행을 위하여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거나 특정 하위조직에 집행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GPRA의 성과측정
 - 각 부처가 갖는 업무의 질적인 차이 때문에 전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엄격한 성과기준의 개발과 적용은 바람직하지 못함
 - 각 부처가 GPRA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엄격하게 정하지 않고 유연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각 부처의 업무와 처리과정이 일반적인 성과평가 틀에 맞도록 유도함
 - 정부활동의 측정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출과 성과의 두 가지 형태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산출과 성과도 넓은 의미로 파악하여 영향(impact)이나 속성(attribute)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함
- GPRA의 구성 요소

GPRA는 크게 전략계획,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의 세 부문과 관리의 책무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략 계획(strategic plan) : 연방 행정기관들은 의회와 OMB에 최소한 5개년을 포괄하는 전략계획을 제출해야 함. 전략계획은 3년을 주기로 갱신되어야 함. 그 내용은 기관의 설립 및 존재이

유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언제 어떤 내용을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해당기관의 주요 기능과 업무와 관련된 포괄적인 기본 사명 (missionstatement)
 - 구체적 목표에 대한 설명과 각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 목표달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 운영계획(연간계획)에 포함된 성과목표와 전략계획에 포함된 목표와의 관계
 - 조직의 목표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외생변수의 확인
 - 일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개정하는데 사용한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설명과 추후 평가 계획
- 연간성과계획(annual performance plan) : 연방행정기관들은 OMB에 성과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성과계획은 각 프로그램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OMB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연방성과계획을 준비하여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포함시킴. 따라서 연간성과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함
- 활동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수준을 정의한 목표
 - 객관적이고 양적이며 측정 가능한 형태의 목표
 -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수행과정, 활용기술과 인적 정보 등 필요한 자원에 대한 기술
 - 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산출물, 서비스 수준, 성과의 측정지표
 - 프로그램의 실제 결과와 목표의 비교 준거
 - 측정된 값을 입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수단
 - 관리자에게 관리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의무면제사항
- 연간프로그램 성과보고서(annual program performance report) : 연방기구는 매년 이전 회계연도의 성과를 정리한 프로그램 성과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함. 이 성과보고서는

기획, 집행, 측정, 평가 및 결과보고의 GPRA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성과목표 달성에 관한 개관(review)
 - 지난해의 성과달성에 근거한 올해 성과계획의 평가
 - 목표달성이 안된 경우
 - 달성이 안된 이유
 - 목표 달성하기 위한 추후 계획
 - 목표가 비현실적인 경우 그 원인과 해결대안
 - 행정절차와 의무사항의 면세조항이 있는 경우 이들 면세조항의 효과
 - 프로그램 평가의 요약과 시사점
-
- 관리책무성과 유연성(managerial accountability and flexibility)
 - : 성과의 달성에 대한 책무성을 관리자들에게 부여하는 대신에 보다 쉽게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 자율성의 확보는 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행정적 및 절차적 규정과 통제규정의 면제를 통해 이루어짐.
 - 여기서 규제의 면제 혹은 적용제외는 각 부처에서 면제적용의 이유, 기대되는 효과 등을 OMB에 제시하면 OMB의 장이 검토하여 면제를 승인하는 방식임
 - GPRA가 면제해 줄 수 있는 행정적 및 절차적 규정과 통제규정은 연방기관규정과 명령(non statutory administrative procedural requirements)에 한함
 - 주요 면제 규정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총무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OMB 및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등이 전 정부적으로 규정한 재무, 인사 및 조달관련사항임

2. 일 본

(1) 개 요

일본의 정책평가제도는 각 부처에서 정책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총무성이 정책평가에 대한 전담 부서로서 정부 전반적인 통일성을 꾀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책평가에 관한 표준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고 이후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 방침」으로 개정되었으며,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2001년 제정·시행하고 있다.

■ 총무성

- 각 부처의 자체평가에 대한 전정부적인 통일성을 꾀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에 근거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통지함
- 평가는 정부가 지향하는 일정한 방향에 맞춰 공통되는 측면을 통일된 관점에서 횡단평가 함

■ 각 부처

- 내각의 기본적 방침을 근거로, 해당 행정기관이 소장하는 주요 정책이나 내외의 정세 변화에 입각해 자체평가를 실시함
- 자체평가의 대상은 재검토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주요 정책이나 국민으로부터 평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함

(2) 역 사

일본의 정책 평가 제도는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의 실현과 성과중시의 행정으로의 전환, 국민에 대한 행정 설명책임이라는 세가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헤세이 13년 (2001) 1월부터 도입되었다.

■ 「정책 평가에 관한 표준적 가이드 라인」

- 헤세이 13년 1월 15일 정책 평가 각 부처 연락회의의 승낙을 받음

- 「행정 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
 - 동년 6월 제정
- 「정책 평가에 관한 기본 방침」 제정 (동년 12월)
 - 「정책 평가에 관한 표준적 가이드 라인」을 수정하여 헤세이 14년 4월 1일 시행

(3) 「정책 평가에 관한 표준적 가이드 라인」

‘정책 평가에 관한 표준적 가이드 라인’ 이란, 전 정부가 정책 평가에 임하기 위해서, 각 부성이 시행하는 정책 평가에 관한 실시 요령을 책정하기 위해 만든 표준적인 지침이다.

1) 정책 평가의 목적 및 기본 골조

- 목적
 - 국민에 대한 행정의 설명 책임 이행
 - 국민 분위의 효율적으로 질 높은 행정을 실행
 - 국민적 관점에 선 성과 증시의 행정에의 전환
- 기본 골조
 - 정책 평가의 개념
 - 나라의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책의 효과 등에 관계가 있는 측정 또는 분해 등의 일정한 척도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실시하는 것
 - 정책의 기획 입안이나 거기에 기초를 두는 실시를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평가의 대상
 - 정책 평가의 대상으로 한 정책이 많은 경우, 정책(협약), 시책 및 사무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파악 할 수 있어 서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함

- 평가 실시의 주체
 - 각 부서 : 정책을 기획 입안해 수행하는 입장에서부터 그 정책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실시
 - 총무성 : 평가 전담 조직의 입장에서부터 각 부서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제 삼자 등의 활용의 본연의 자세
 - 각 부서의 경우
 - : 해당 정책에 대해 경험 있는 학자들을 활용하여 표준적인 지표를 마련하도록 함

< 지표가 필요한 측면 >

지표가 필요한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작성 등의 기획과 결과의 활용 측면 - 정책 평가에 관한 기본 방침의 책정과 공표측면 - 사후평가의 실시 계획의 책정과 공표측면 -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거나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사전평가측면
------------	--------------------------------------------------------------------------------------------------------------------------------------------------------------------------------------------------------------

- 총무성의 경우
 - : 총무성의 정책 평가·독립 행정법인 평가위원회는, 총무성의 정책 평가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무 대신 자문을 받아 총무성이 실시하는 정책 평가의 계획, 실시 상황, 주요한 권고 등을 조사 심의하고, 이것이 관계되어 총무 대신에게 의견을 말함

2) 정책 평가의 실시해 해당하는 기본적인 방침

- 평가의 시점
 - 평가의 시점은 기본적으로 사전, 사후의 평가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중간 평가를 하기로 함
- 평가의 관점과 일반 기준 등
 - 일반 기준과 그 예

< 일반 기준과 그 예 >

일반기준	예
필요성	목적의 타당성이나 행정이 담당하는 필요성 여부
효율성	투입된 자원량에 알맞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유효성	기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
공평성	정책의 효과의 수익이나 비용 부담의 공평한 배분 여부
우선성	상기 관점으로부더의 평가를 근거로 해 다른 정책 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지 여부

- 평가의 방식 및 실시의 방침
 - 각 부성은, 이하의 표준적인 세 개의 평가의 방식을 감안하여, 소장하는 정책의 특성이나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 평가에 대한 요청들에 응해 적절한 평가의 방식을 채용·실시

< 표준적 평가 방식 >

표준적 평가방식	내용
사업평가	사무사업을 중심으로 사전의 시점에서 평가를 실시해 도중이나 사후의 시점에서 검증
실적평가	행정의 폭넓은 분야에 있어 미리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해 그에 대한 실적을 측정해 그 달성도 평가
종합 평가	특정의 테마를 설정해 여러 가지 각도로부터 파고들어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 각 부성은 평가 결과가 기획입안 작업에 적시 적확하게 반영되는 구조를 구축

- 총무성
 - 평가 결과를 관계하는 부성에 통지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고를 함.
 - 추후, 정책에의 반영 상황에 대해 적기에 보고를 요구해, 권고 사항에 비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에 대해 의견을 진언 함
- 예산에의 반영에 대해 각 부성은 평가 결과를 예산 요구의 관계 등에서 적절히 반영하고, 재정 당국은 예산 편성의 과정에서 정책 평가 결과를 적절히 활용
- 평가 결과 등의 공표
 - 각 부성 및 총무성은 평가의 결론 뿐 아니라 평가의 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표 해야 함

3) 각 부성의 정책 평가

- 실시 체계·조직
 - 각 부성의 정책 평가 담당 조직은, 소관 행정의 정책 평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기획 입안과 부성에 있어서의 평가 상황의 정리나 공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부성의 평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실시를 확보함
- 정책 평가의 실시 요령의 작성 등

< 실시 요령 >

실시 요령	평가 목적, 평가의 실시 체계, 평가 관점과 일반 기준, 평가 방식, 평가 결과의 정책반영, 평가 결과의 공표, 정책평가에 대한 외부의견·요망 등을 받아들이는 창구의 규정.
--------------	--------------------------------------------------------------------------------------------------

- 각 부성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책 평가의 기본적인 수속, 순서 등을 규정한 실시 요령을 책정함
- 실시 요령을 근거로 해 매년도의 정책 평가의 계획적인 실시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운영의 방침을 제공

4) 총무성의 정책 평가

■ 총무성의 역할

- 각 부성의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의 통일성과 정책 평가의 객관적인 실시를 위한 평가를 실시
- 정부 전체의 평가 결과 및 정책에의 반영 상황 등의 정리·공표
- 「정책 평가 각 부성의 연락 회의」 개최 등의 사무를 실시

■ 정책 평가의 실시 요령의 작성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각 부성에 준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요령과 운영의 방침을 책정

■ 행정 평가·감시의 관계

- 정책 평가와 정책 평가를 제외한 행정 평가·감시는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여, 작업의 중복을 피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배려

■ 기타

- 각 부성의 정책 평가 담당조직으로 구성되는 「정책 평가 각 부성 연락회의」 개최
- 정책 평가를 담당하는 인재양성·확보를 위해 평가분야의 관민 교류와 정책 평가 담당 직원사이의 교류추진
- 행정 내외로부터 유능한 인재를 양성·확보하는 구조 추진
- 평가에 관한 정보를 국민이 일원적이고 용이하게 검색 할 수 있도록 클리어링·하우스 기능을 충실히 함
- 평가 실시에 필요하게 응한 평가 수법의 조사연구 추진
- 정책 평가의 실시 상황, 평가 수법의 연구 개발의 동향 등을 근거로 필요에 따라 표준적인 가이드 라인이나 실시 요령을 개정

5) 표준적인 정책 평가의 방식- 사업평가, 실적평가, 종합평가

- 시기별 평가
 - 사업 시행의 사전에 평가를 실시하고 도중이나 사후의 시점에서 검증 실시하는 것에 따라 행정 활동의 채택 여부, 선택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목적별 달성도 평가
 - 행정의 폭넓은 분야에 있어 미리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해, 그에 대한 실적을 측정해, 그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에 따라 정책의 달성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 테마별 종합평가
 - 특정의 테마를 설정해, 여러 가지 각도로 파고들어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정책의 효과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문제점의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4)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 방침」

- 기본적 방침
 - 정책평가란 기획(plan), 실시(do), 평가(see)를 주요한 요소로 함
 - 정책의 관리의 틀을 제도화된 시스템에 명확하게 짜 넣어 객관적이고 엄격한 실시를 확보
 - 정책평가의 결과를 시작으로 하는 정책 평가에 관한 일련의 정보를 공표하는 것
 - 정책의 부단한 재검토나 개선을 연결함
 - 국민에게 행정의 설명 책임을 철저히 이행 하고자 함
- 정책 평가 관점
 - 정책평가의 관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정책의 특성으

로 그에 맞는 적절한 관점을 선택 구체화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의 세 가지가 법적으로 명시되며 그 외의 관점에는 공평성과 우선성이 있음
- 정책효과 파악의 기본사항
 - 정책평가의 관점의 기본적인 적용의 생각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대해 가리키는 것으로 함
 - 정책효과의 파악에 있어서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특성에 맞게 적용가능하고, 한편 효과 파악에 필요한 비용·결과의 분석 정밀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수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함
- 사전평가의 실시의 기본 사항
 - 정책 결정에 앞서 해당정책에 근거하는 활동에 의해 얻을 수 있다고 전망되는 정책의 효과를 살핌
 - 정책의 채택이나 실시의 가부를 검토하거나 복수의 정책 개체안 중에서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정책 효과가 발생한 단계에 있어 그 결과와 타당성을 검증하여 얻은 내용은 이후 사전평가에 관한 기본 계획에 포함함
- 사후 평가의 실시의 기본적 사항
 - 정책의 결정 후에 정책 효과를 파악해 이것을 기초로 정책의 재검토·개선에 반영함
 - 새로운 정책의 기획입안 및 그것을 기초로 하는 정책 실시에 반영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함
 - 행정의 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염두 하여 정책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단위에 의해 실시함
 - 각 행정 기관의 임무나 그와 불가분인 기본 방침에 대하여는 이것에 비추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임

-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등에 의한 정책의 재검토·개선이 필요하거나 정책 효과가 발현된 상황인 경우를 감안해 적절한 타이밍에 실시하는 것으로 함
- 정책 평가의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 각 행정 기관에 대해 정책 평가의 결과가 정책의 기획 입안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되어 적시에 활용되어, 해당 정책에 적절히 반영 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실효성 향상을 위한 구조마련이 필요함
- 실시 체제
 - 정책 평가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확보를 위해 각 행정 기관에 대해, 정책 평가 담당 조직과 정책 소관부국 등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 아래서 각 행정 기관의 실정에 따라 정책평가의 대전제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함
- 국민의 의견·요망을 받아들이기 위한 창구의 정비
 - 해당창구의 홈페이지를 활용 해 적극적인 주지를 피하고 이렇게 전해진 의견·요망에 대해서 관계하는 부국 등에 대해 적절히 활용하는 것으로 함
- 지방 공공단체와의 제휴·협력
 - 중앙정부와 지방 공공단체 사이는 각각 역할 분담 하에 서로 협력적인 관계에서 행정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각각의 활동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것을 근거로 기관특성에 맞춰 정보나 의견의 교환을 실시함

(5) 총무성

1) 총무성 행정 평가 등 프로그램 (헤세이 14년 4월)

행정 평가 등 프로그램은, 총무성 행정 평가국이 정책의 평가 및

행정 평가·감시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헤세이 14년부터 16년까지의 3년간에 있어 실시한 예정의 테마 등을 정한 것이다.

행정평가국은 국민에게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시하고 간소하고 효율적인 질 높은 행정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정책의 평가 및 행정 평가·감시를 착실하게 실시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행정을 둘러싸는 정세의 변화에 입각하여야 하고, 매년도 롤링 방식에 의한 재검토와 개정을 행한다.

가) 정책 평가

- 평가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 정책 평가 제도는 법과 「정책 평가에 관한 기본 방침」에 근거한 새로운 범위를 정해,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을 요구함
- 평가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 정책 평가·독립 행정법인 평가 위원회는 심의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학식 경험자의 식견을 활용하고, 평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함
 - 행정 평가·감시로 얻어진 정보·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행정평가국으로서 정책의 평가와 행정 평가·감시와의 제휴를 도모하고 양자를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진행함

나) 행정 평가·감시

정부는 중요 행정 과제의 해결 촉진하고, 국민 본위의 행정 실현과 행정개혁의 추진·실효의 확보 등을 위해 각 행정 기관의 업무 실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따라서 행정의 평가·감시는 규정에 합당한지와 능률성 여부 등의 관점에서 업무 운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 행정 평가·감시의 테마 >

헤세이 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실시한 테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안전, 치안의 확보에 관한 것 - 경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것 - 안정되고 충실한 국민 생활의 실현에 관한 것 - 행정의 조직·운영의 합리화, 효율화, 경비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것 - 기왕의 권고에 의한 개선 상황의 모니터링 - 규제 제도의 전체상의 파악

※ 상기에 관계없이 국민으로부터 불평, 사고·재해 등을 계기로 한 긴급한 과제는 정부가 중요 과제로 인식하여 필요에 따라 기동적으로 포함시킨다

< 객관성 담보 평가의 해당 범위 >

명 칭	범 위
객관성 담보 평가 등	각 행정 기관에 있어서 정책 평가의 실시 상황의 파악
	각 행정 기관이 실시한 정책 평가의 실시 형식에 있어서 객관성·엄격성의 심사
	행정 기관에 의한 재평가 등의 실시 필요성의 인정
	재평가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실시를 담보하기 위한 평가

< 통일성 평가 및 종합성 평가 >

명 칭	테마설정 정책 범위
통일성 평가 및 종합성 평가	법령이나 각의 결정 등에 근거하고 정부 전체로서의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주요한 행정 과제에 관계된 각 행정 기관의 정책
	행정 기관에 공통적인 행정 제도·시스템을 활용한 정책
	여러 행정 기관의 소장에 관계된 정책이고 법령이나 각의 결정 등에 근거하고 정책의 종합성 확보에 관한 목적 등이 밝혀지고 있는 주요한 것

나) 정책 평가제도의 추진에 관한 업무

정책 평가제도의 원활하고 효과·효율적인 실시와 정책 평가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이다.

- 정부 전체의 정책 평가 실시 상황 등의 종합 정리·공표
- 평가 수법 등의 선도적 조사 연구
- 정책 평가에 관한 전 정부적인 연수 실시
- 정책 평가 등 지원 시스템의 정비
- 정책 평가 등에 관한 환류 기능의 충실

라) 정책 평가·독립 행정법인 평가 위원회에 관한 업무

- 정책 평가 관계
 - 정책 평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조사
 - 통일성·종합성 평가와 객관성 담보 평가의 실시에 관계된 중요 사항의 조사
- 독립 행정법인 평가 관계
 - 업무실적에 관한 평가 결과 심의 내용
 - 각 부성 독립 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을 파악하고, 개별의 독립 행정법인에 관계된 평가방침을 사전 검토하는 등, 평가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심의
 - 각 부성의 독립 행정법인 평가위원회로부터 지시 받았던 독립 행정법인의 평가 결과에 관한 심의
 - 필요하다고 인정된 의견의 결정
 - 정책 평가·독립 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 평가 상황 등에 관한 내역을 모아 종합하고 공표
 - 각 부성의 독립 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 평가의 실시 상황을 파악
 - 전 정부적인 입장에서 독립 행정법인의 평가제도의 실효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한 견해 등에 관한 검토와 심의를 함

- 주요 사무 및 사업의 개폐에 관한 권고에 관한 심의
 - 독립 행정법인의 평가기간 종료시에 행한 주요한 사무 및 사업의 개폐에 관련된 권고에 관한 대응방침 심의
 - 독립 행정법인의 평가기간 종료시에 행한 것에 대한 개별적인 권고에 관한 심의
 - 상기권고의 검토를 위해 행하면서 각 부성의 독립 행정법인 평가위원회가 실시한 권고· 심의· 답신 등을 주시· 파악
- 기타
 - 독립행정법인이 행한 것으로 되어있는 공포 자료의 종합 정리·공표

2) 총무성 정책 평가 실시 계획

헤세이 13년 이후의 정책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매년도 재평가를 행하기로 한다.

가) 실적 평가

총무성이 행한 주요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미리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측정하여 실적 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실적 평가의 실시에 관해서는 총무성의 정책평가 실시 요령에 근거하고 발생한 것으로 한다.

나) 사업 평가 및 종합 평가

그 평가 수법 등에 관해서는 헤세이 13년부터 「총무성 정책평가연구회」에서 연구하였고 단계적으로 시행 실시한다.

3) 총무성 정책 평가 실시요령

가) 정책 평가의 목적

총무성의 행정에 관계된 직제에 관하여 정책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행정 서비스를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행정의 설

명 책임을 지키는 등, 평가에 따른 성과의 정도를 행정에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정책 평가 방식 및 대상 범위

- 사업 평가
 - 공공 사업, 연구 개발, ODA, 규제, 나라의 보조사업 및 신규에 행한 사무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평가를 행하고 도중, 또는 사후에 검증하는 평가 방식
- 실적 평가
 - 총무성이 행한 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미리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실적을 측정하는 평가 방식
- 종합 평가
 - 사업평가의 대상이 된 여러 사무사업과 행정 분야와 실적 평가 및 사업 평가의 어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분야의 사무 사업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정한 테마를 선정하고 다양한 각도로부터 깊이 파고 종합적으로 행한 평가 방식

다) 정책 평가의 실시 계획, 실시 체제 및 실시

- 실시 계획
 - 체계적이고 계속적으로 정책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평가의 구체적인 대상, 평가의 방식 및 순서, 평가의 실시에 관한 스케줄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임
 - 매년도 공표함
- 사업 평가
 - 사업 평가의 대상으로 된 사업을 소장하고 있는 각 부분 국 등은 「정책 평가의 관점 및 기준등」에 따라야 함
 - 「사업 평가 조서」를 총무성 정책 평가 실시 계획에 정한 양식에 의해 작성하고 6월말까지 정책평가홍보과에 제출함

- 정책평가홍보과
 - 사업 상호간의 정확성, 객관성과 국민의 이해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
 - 매년 8월말까지 평가결과 확정 후 신속하게 해당 부국 등의 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공표

- 실적 평가
 - 사업 평가의 대상으로 된 사업을 소장하고 있는 각 부분 국 등은 「정책 평가의 관점 및 기준등」에 따라야 함
 - 「사업 평가 조서」를 총무성 정책 평가 실시 계획에 정한 양식에 의해 작성함
 - 5월말까지 정책평가홍보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함
 - 정책평가홍보과
 - 사업 상호간의 정확성, 객관성과 국민의 이해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
 - 매년 8월말까지 평가결과 확정 후 신속하게 해당 부국 등의 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공표

- 종합 평가
 - 홍보과의 기준
 - 제도의 신설, 폐지에 관계된 사항
 - 실적 평가, 사업 평가의 대상 사항중 다양한 각도로부터 통합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
 - 실적 평가, 사업 평가의 어느 대상도 되지 않는 사항 중 다양한 각도로 통합 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
 - 종합 평가의 종합 관리에 있어서 정책 평가 홍보과는 부국 등과 협의하여 결과 확정 후 신속하게 통지, 공표 함

- 평가 수법 등의 개발
 - 현 단계에서 확립되지 않은 사업 평가 및 종합 평가에 대해서는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함

라) 정책 평가의 관점 및 기준 등

- 정책 평가관점의 일반적 기준

< 일반 기준과 내용 >

일반 기준	내용
필요성	- 정책의 국민과 사회에 대한 타당성 - 행정관여의 위상에 비하여 행정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효율성	- 투입된 자원에 비한 산출의 실제적 결과는 - 기타 효율적인 방법인가
유효성	- 정책에 실시예 의하고 기대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공평성	- 행정의 목적에 비추어 효과의 수익이나 비용부담이 공평한지 여부
우선성	- 다른 업무·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마) 정책 평가 결과 등의 공표

- 정책의 홍보과는 매년도 당초에 해당 연도이후 정책 평가의 운영 방침을 정한 총무성의 정책 평가 실시 계획을 공표하고, 정책평가 결과에 관하여도 확정후 신속하게 부국 등에 통지하고 공표함
- 정책 평가 결과 공표에 있어서는 총무성 정책 평가 실시 요령과 계획, 사업 평가와 실적 평가의 조서를 「총무성 정책 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책 평가 홍보 과로 배포, 기자에게 발표하는 등 국민이 용이하게 입수 할 수 있도록 함

바) 정책평가 결과의 정책 등에의 반영

위의 내역 등에 대하여 정책 홍보과는 평가결과를 정책 및 예산 등의 기획입안에 반영 상황을 심사한다.

또한 이들의 반영에 관하여 각 부처 등과 협의 한 후 이를 종합하여 공표한다.

사) 정책평가에 관한 외부에서의 의견·요망 등의 창구 및 정책 평가기법 등의 개선

공표한 정책평가 결과 등의 내용에 관한 내용과 각계 각 층으로부터 전해진 다양한 의견에 의해서 평가의 질 향상이 가능해지고 정책 평가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정책평가에 관하여 국민으로부터 전해진 의견과 요망 등의 창구는 정책평가 홍보과에서 해당 창구에 전해진 의견과 요망 등을 정책 평가의 기법 등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한다.

아) 제 삼자 등의 활용

정책평가의 실시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나 실천적인 식견이 요구되는 경우나 객관성의 확보 및 다양한 의견의 반영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학식 경험자, 민간 등의 제 삼자의 활용을 도모한다.

자) 기타

- 연구 개발 등의 평가에 관하여는 「나라의 연구개발 전반에 공통된 평가의 실시 방법의 위상에 관한 대강적 지침」 역시 참고함
- 우정사업청
 - 우정사업청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측정하는 방식을 이용함
 - 우정기획관리국은 우정사업청의 효율성 시점에서 실적 평가 조서를 작성함
 - 8월 중순까지 우정사업청에 통지하고 정책 평가 홍보과에 제출하여 총무성의 정책평가 결과 공표시에 함께 공표 및 배포함

(7) 정책 평가·독립 행정법인 평가위원회

1) 정책 평가·독립 행정법인 평가위원회령의 조직

· 조직

- 위원 7인(임기 2년,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의해 특별 사항 조사를 위한 임시위원과 전문 사항 조사를 위한 전문위원을 두는데 이들은 비상근이라 함
 - 위원 및 임시 위원은 학식이 있는 경험자 중 총무장관이 임명함(임기 : 그 해당 조사 심의가 종료할 때를 임기 만료로 봄)
 - 전문위원은 해당 전문사항에 관하고 학식이 있는 경험자 중 총무장관이 임명함(임기 : 그 해당 조사 심의가 종료할 때를 임기 만료로 봄)
- 위원장 : 위원의 호선에 의하고 선임하며 회무를 총리 대신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고가 생길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함

- 분과회

- 총무장관의 자문에 따르고 정책평가에 관한 기본사항과 종합평가 및 행정기관이 행한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사 심사함
- 분과회의 모임장은 위원, 임시 위원, 전문 위원에 의해 지명되며 해당 부서 모임의 사무를 관리하고 부서 모임장의 사고 시에도 역시 미리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리함

· 의사결정

- 위원 및 의사에 관계가 있는 임시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고 의결 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만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함

· 사무

- 총무성의 행정평가국 총무과에서 총괄 처리하며, 정책평가 분과회의에 관계 된 것은 행정평가국의 정책평가관에서, 독립 행정법인 평가분과회에서 관계된 것은 평가감시관에서 처리함

(8) 재무성의 정책 평가(헤세이 13년도 실적 평가서 예시)

1) 종합 목표

통화에 대해 신임을 확보하면서 건전하고 활력있는 경제 및 안심으로 풍부한 사회를 실현해 나감과 동시에 세계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 기간별 종합목표와 내용 >

기간	목표	내용
장기 목표	종합목표 1	지속 가능한 재정균형의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재정 재건에의 대처
	종합목표 2	중장기적인 시점에 선 바람직한 세제의 구축
	종합목표 3	재정 투융자 개혁의 취지를 감안한 중점적·효율적인 자금 공급
	종합목표 4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의 확보
	종합목표 5	국제적인 협력 등에서의 적극적인 대처
13년 당해 목표	종합목표 6	재정·경제의 구조개혁에의 적극적인 대처
	종합목표 7	세출 전반에 걸친 철저한 재검토·대당한 감축과 적극적인 배분
	종합목표 8	조세특별조치의 철저한 재검토 등 사회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대응한 세제 개정
	종합목표 9	재정투융자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의 대상사업의 중점화와 전체 규모의 감축

2) 각 부국 공통의 조직운영의 방침

고도의 전문성을 보장받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한편 투명성이 높은 행정의 운영을 실시하기 위해 조직을 유지·구축한다.

특히 정책의 입안과 조정 기능과 인재의 육성과 확보, 전자정부의 실현과 행정의 정보화 추진, 정책 평가의 착실한 실시 등에 의한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 등을 조직 운영의 방침으로 한다.

3) 각 분야마다의 정책 목표

- 정책 목표 1
 - 건전한 재정의 확보

< 정책 목표 1 >

정책 목표	내용
정책 목표 1-1	중점적인 예산의 배분을 통한 재정의 효율화·질적 개선의 추진
정책 목표 1-2	필요한 세입의 확보
정책 목표 1-3	지방의 세입·세출, 중앙정부·지방간의 재정이전에 관한 사무의 적절한 수행
정책 목표 1-4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재정·회계와 관련되는 제도의 구축 및 그 적절한 운영
정책 목표 1-5	안정적으로 효율적인 국가 공무원 공제 제도의 구축 및 관리

▪ 정책 목표 2

-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

< 정책 목표 2 >

목표	내용
정책 목표 2-1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등에 대응하면서 공평·중립·간소라고 하는 조세 원칙에 준거한 세제의 실현
실적 목표 2-2	내국세의 적정하고 공평한 부과 및 징수
실적 목표 2-3	주류업의 건전한 발달의 촉진
실적 목표 2-4	세무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의 확보
정책 목표 2-5	관세등의 적정하고 효과적인 실시

▪ 정책 목표 3

- 재정투융자의 적정하고 효과적인 실시

< 정책 목표 3 >

목표	내용
정책 목표 3-1	민간에서는 실시 곤란하지만 정책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의 자금 공급의 확보
정책 목표 3-1	자금 공급의 중점화·효율화

▪ 정책 목표 4

- 국가자산·부채 및 국고의 적절한 관리 및 통화에 대한 신뢰유지

< 정책 목표 4 >

정책 목표	내용
정책 목표 4-1	재무성의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관리 및 처분
정책 목표 4-2	각 부처의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유효 활용의 촉진
정책 목표 4-3	국유재산의 정확한 현상 파악과 적극적인 정보 제공
정책 목표 4-4	적절한 예산집행의 확보
정책 목표 4-5	결산의 작성을 통한 국가 재정상황의 정확한 제공
정책 목표 4-6	국고수지의 적절한 조정 등 국고금의 정확한 관리
정책 목표 4-7	국채의 확실하고 원활한 발행 및 적절한 관리
정책 목표 4-8	화폐의 적절한 발행, 일본 은행권 제조계획의 적절한 책정, 위조·변조 방지 등
정책 목표 4-9	조폐사업의 건전한 운영
정책 목표 4-10	인쇄사업의 건전한 운영
정책 목표 4-11	일본 은행의 업무 및 조직의 적절한 운영의 확보
정책 목표 4-12	금융 파탄 처리 제도의 적절한 정비 및 신속·적절한 금융위기 관리
정책 목표 4-13	정부 관계 금융기관의 적정 또한 효율적인 운영의 확보
정책 목표 4-14	담배·소금 사업의 건전한 발달의 촉진
정책 목표 4-15	지진 재보험사업의 건전한 경영

▪ 정책 목표 5

- 무역의 질서 유지와 건전한 발전

< 정책 목표 5 >

목표	내용
정책 목표 5-1	내외 경제 사정을 감안한 적절한 관세율의 설정·관세 제도의 개선
정책 목표 5-2	세관 수속에 있어서의 이용자 편리성의 향상
정책 목표 5-3	사회악 물품 등의 밀수 저지
정책 목표 5-4	사회악 물품 등의 국제적 조화·간소화

- 정책 목표 6
 - 국제통화 시스템의 안정과 국제협력·교류의 추진

< 정책 목표 6 >

목표	내용
정책 목표 6-1	외환 및 국제통화 시스템의 안정
정책 목표 6-2	개발 도상국 등에 있어서의 안정적인 경제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다국간·2국간의 협력
정책 목표 6-3	국제 협력·교류의 추진

3. 호 주

(1) 개 요

호주정부에서는 1987년과 1988년에 걸쳐 범정부적으로 정책평가를 활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정책평가를 공공부문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었다. 현재 각 부처는 사업관리와 평가를 긴밀하게 연계시키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때에도 평가결과가 제시되도록 의무화시켰다.

호주의 정책평가는 기본적으로 각 부처에 의한 자체평가(self evaluation)를 중심으로 수행하고있으며 재정행정부(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는 각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감사원은 부처의 자체평가와 개별적으로 각 부처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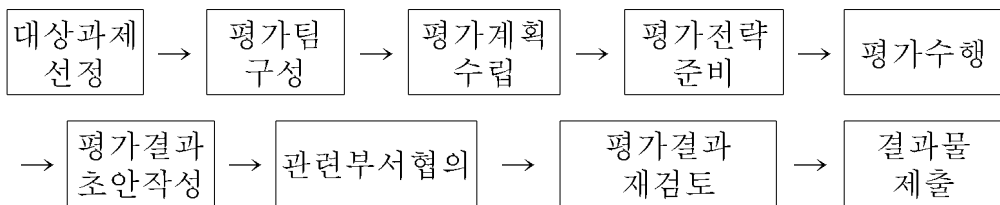
(2) 재정행정부

각 부처는 평가의 중앙기관인 재정행정부(Departm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와 협의하여 부처 내에서의 평가활동이 범정부적

우선순위와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 모든 행정기관은 매년 평가계획을 재정행정부에 제출하고 재정행정부에서는 평가계획을 심사
 - 각 부처의 평가계획이 정부방침에 부합되고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에 적합한가를 평가 조정
- 호주정부에서는 각 부처가 실시하는 모든 사업(혹은 각 주요사업의 주요구성요소)에 대해 매 3년에서 5년 주기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각 부처에서는 매 3년 주기로 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수행의 진도를 점검
- 평가의 유형
 - 과정평가와 효과평가, 능률성평가 및 적절성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과정평가보다는 효과평가와 능률성평가 및 적절성평가에 더 많은 역점

<평가절차>



- 평가의 결과
 -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재무부에서는 평가보고서의 배포형식과 시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을 개발
 - 평가의 결과는 사업의 운영에 반영되어 정책과 사업의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예산결정을 포함한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기여
- 개별적인 평가연구과제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관한 책임은 평가대상이 된 사업의 관리자가 짐
 - 평가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라든지, 전략기획,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에 대하여는 평가 및 감사위원회(Evaluation and Audit Committee)가 책임(보건 주택 지역사회부의 경우)

- 재무부가 각 부처의 1991~1992년 회계년도 예산안과 결정내용을 분석한 것을 보면, 평가결과가 예산관련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 새로운 정책제안을 한 것 중 약 50%가 평가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했으며, 예산결정의 60%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음

(3) 자체평가(교육부와 원주민 및 토레스島 위원회)

과거에는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에 의한 평가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재정부가 재정행정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부처의 자체평가를 강화하였다. 부처자체평가를 강화하게 된 것은 재무부에 의한 평가가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비하여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1) 평가조직

- 각 부처의 자체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부처내에 독립적인 조직으로 설치하여 운영
- 교육부
 - 평가 및 모니터링국(Evaluation and Monitoring Branch)에서 평가담당(26명)
 - 다른 사업부서와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의 독립성 확보
- 원주민 및 토레스島 위원회
 - 평가 및 감사실(Office of Evaluation and Audit)에서 평가담당

2) 평가절차

가) 대상과제 선정

- 정부(내각)의 지시가 있는 경우와 평가담당조직의 자체적인 선택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2가지 경우가 있음
- 정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자원의 규모, 해당정책에 대한 이전평가 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나) 평가팀(조정위원회 등) 구성

- 평가수행을 위해 과제별로 평가팀 구성
- 주로 평가담당 조직내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나 필요시에 는 외부전문가도 평가팀에 참여
- 평가조직내의 구성원은 한사람이 여러 과제의 평가팀 구성원으로 참여
- 효과적인 평가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과제별로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설치하여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를 작성
- 평가담당조직의 직원, 재정부, 감사원, 정책수행부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전략의 수립을 위해 보통 3회정도 회합

다) 평가계획 수립

- 평가계획에는 평가의 목적, 범위, 평가과정에서 조사하여야 할 핵심사항, 평가결과의 활용의도 등을 결정

- 사업계획 수립시 작성한 평가계획에 포함된 평가기준, 이전 평가 과정에서 사용된 평가기준 등을 보완하여 평가계획 수립
-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평가관련 문건 등을 수집하고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협의

라) 평가전략 수립

- 평가전략에는 평가에 사용될 방법과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
- 평가방법, 질적·양적 평가를 위한 정보의 수집범위, 세부평가방법 등을 결정하여 조정위원회에 보고
-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조직은 일반부서와 분리하여 운영하고 당해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관, 일반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지표 및 전략 수립

마) 평가수행

- 평가는 과정평가와 효과평가, 능률성평가 및 적절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정평가보다는 효과평가와 능률성평가 및 적절성 평가에 더 많은 역점이 두어져 있음
- 구체적인 평가지표의 구성은 이해당사자와 정책집행부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상세하게 작성

바) 평가서 작성 등

- 평가계획에 기술된 핵심사항, 다음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어 평가결과 초안 작성

- 평가초안 작성후 조정위원회, 부처내의 고위관리자, 정책(사업) 부서 관리자 등과 협의
- 최종적으로 평가결과 각 정책(사업)의 잘된 점과 이유, 잘못된 점과 이유, 고쳐야 할 점, 평가수행 과정에서의 잘된 사례 등에 초점을 두어 검토
- 결과물 제출

사) 평가결과의 처리

- 평가결과는 사업운영에 반영되어 시책과 사업의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예산결정을 포함한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기여
- 평가결과는 장관과 내각에 보고
- 각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특정 사업을 중지하거나 변경시키기도 하나 이는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 재량적 사항임

(4) 지방자치단체 대한 정책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각 주정부에서 담당한다. New South Wales州의 경우에는 주정부 내의 地方政府部(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에서 산하의 177개 시나 군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주정부에 의한 평가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공통핵심영역에 대한 비교평가와 지방자치단체별 관리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리고 주정부 산하의 시나 군에 대한 평가는 주정부와 각 시나 군에서 이중적으로 평가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대하여 예산상의 지원은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1) 핵심영역에 대한 비교평가

- 평가대상과제(영역)의 선정
 -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되는 핵심사업에 대하여 비교평가 실시
 - 1996년부터 1997년까지 회계년도의 경우 8개 과제 평가
- 평가지표 선정 및 실시
 - 쉽게 구할 수 있고 검증된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여건, 인구수, 일반환경 등에 따라 22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여건이 상이한 기관에 대한 평가의 형평성 확보(뉴사우스 웨일즈주의 경우에는 11개 그룹으로 구분)

2) 지방자치단체 관리평가

- 추진경위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세밀한 검사 및 조사를 대신하여 1987년부터 포괄적인 관리평가 실시
 - 1995년까지는 재정지출에 초점을 둔 문서감사 위주의 성과평가를 수행
 - 1995년 이후 자치단체의 효율적, 효과적 정책추진 능력과 자원 관리에 중점을 두고 평가 실시
- 평가대상 자치단체의 선정기준
 - 최근의 관리 평가 실시여부
 - 재정위험성
 -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 높은 수준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 움부즈맨 등으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자치단체 스스로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장관이나 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 주요평가지표
 능률성, 효과성, 책무성

- 평가영역(13개 영역)
 - 장기관리 계획,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공동체에 대한 책무성, 대표성, 조직체계의 효과성, 의회와의 관계, 정보기술의 적정성, 인력관리, 주요기능에 대한 자원, 재정관리의 건전성, 효과적인 체계 및 정책, 승인과정의 간결성, 지방정부법의 준수정도 등

- 평가절차
 - 대상자치단체의 선정
 - 자치단체의 장에게 선정사실과 질문서 통보
 - 제출받은 답변서, 서류, 관련 정보 등을 참고로 하여 지방정부 부내의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기초조사(Background Research) 실시
 -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실시
 - 초안작성 및 해당자치단체 의견수렴
 - 최종보고서 작성 및 공표

-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는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평가결과의 환류도모
 - 지방자치단체는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필요는 없으나 여러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결과가 함께 공표되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임

(5) 감사원의 정책평가

감사원은 의회, 장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결과의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성과감사는 자원, 정보시스템, 성과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법률적 적합성 등에 대한 검사와 시험을 통하여 공공 부분관리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을 평가한다.

- 주요 정책평가 영역(1998~1999 회계년도)
 - 용역제공 및 계약의 경쟁력

- 고객서비스의 질
 - 정보기술의 이용정도
 - 인적자원의 관리
 - 중요한 새로운 정책의 수행실태
- 평가지표
 - 정책(사업) 운영의 경제적, 효율적, 효과적 수행여부
 -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점검하고 촉진시키는 부처의 내부절차
 - 관리의 개선 여부
- 평가전략
 - 제한된 감사자원의 범위내에서 성과향상, 공공행정의 건전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감사프로그램의 수행
 - 의회와의 밀접한 관계유지
 - 감사대상인 공공기관과의 생산적 관계유지
 - 평가관련 유관기관 업무를 벤치마킹
- 평가절차
 - 대상과제의 선정(연간 35 ~ 50개 내외)
 - 감사원의 자체판단 및 의회, 장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선정
 - 성과감사를 통해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한정된 감사자원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범위내의 과제 선정
 - 예비기초조사 실시
 - 이슈의 확인 및 성과감사의 필요성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 수집 목적의 조사 실시
 - 예비조사결과 감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비조사 결과는 의회에 제출
 - 평가실시
 - 성과감사 보고서가 확정되기전 먼저 각 장관에게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결과보고
 - 의회에 보고, 해당부처에 통보 및 공표(의무적)

4. 캐나다

(1) 개 요

캐나다는 정책평가에 관한 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즉 캐나다는 심사분석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서 심사분석제도 운영 및 업무분석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

- 사업(시책)에 대한 심사분석은 각 소관부처에서 실시하며, 그러한 심사분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내각예산처 산하의 사업평가국에서 심사분석지침 및 편람 등을 작성 시달
 - 그밖에 내각예산처는 회람(circular)을 작성 시달하여 각 부처의 심사분석업무를 지도 조정
 - 내각예산처 자체에서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각 부처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 실시

(2) 역사적 개관

캐나다 정부에서의 정책평가는 1960년대 말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정책평가가 범정부적으로 수행되지는 않고, 재무원 비서실(Treasury Board Secretariat)과 같은 중앙기구(central agencies)의 지원 하에 몇몇 중앙부처에서 간헐적으로 수행되었다.

- 1970년대 중반에는 재무원 비서실의 기획부에서 여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
 - 이 당시의 정책평가는 성공적으로 수행되지는 못하여, 캐나다 감사원장이 보다 많은 정책평가의 수행과 그 개선을 반복적으로 요구

- 이러한 과정에서 1977년 캐나다정부는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아주 획기적인 조치를 취함
 - 재무원이 정부부처에 의한 정책/사업의 평가(Evaluation of programs by departments and agencies)라는 정책평가에 관한 정책(Policy Circular TB 1977~47)을 발표
 - 이 정책에서 재무원은 연방정부 내의 평가기능을 확립하고, 3~5년의 순기에 따라 모든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 이러한 정책의 발표와 더불어 캐나다 정부는 1978~79년에 재무행정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을 개정하여 통제총감실(Office of the Comptroller General)을 설치하고, 재무원 부원장 격인 통제총감에게 정부 내에서의 정책평가의 운영에 관한 총괄적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재무원장에게 보고
 - 그 이후 통제총감실은 사업평가부(PEB: Program Evaluation Branch)를 신설하고(Mueller-Clemm, 1995: 14), 함께 정책평가에 관한 각종의 지침을 작성·배포함과 동시에 조언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부처에서의 정책평가기능을 지원

- 1983년까지는 캐나다정부 내에 평가의 제도화가 확립되었음
 - 1989년도 통제총감실은 정부부처 내에서의 사업평가를 위한 실무표준(Working Standards for the Evaluation of Program in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을 발표하여 정부의 평가기능을 지원

- 재무원은 1991년 정책평가에 관한 정책 1977~47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여, 평가활동의 초점을 순기에 의한 모든 사업의 평가에 두던 것을 바꾸어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있어서의 전략적 평가에 두는 조치를 취하였음
 - 1993년 통제총감실의 평가총괄기능이 재무원 비서실로 흡수되면서 중앙기구 수준에서 정책평가에 기울이던 관심을 상당히 약화하기 시작했음

- 캐나다정부 내에서는 모든 부처가 성과에 기초한 관리(results - based management)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성과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효과성평가를 정부 운영과정의 주류 속에 통합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
- 1998년에 들어서는 중앙기구 차원에서 정책평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재무원 비서실 내에 정책평가를 관장할 인물을 임명하면서 다시 정책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어떤 조치는 없었음
 - 연방정부의 중앙기구차원에서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개별부처에서는 재무원의 지침에 따라 실질적 평가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었음
- 1994년 리뷰정책(Review Policy)이 도입되고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평가기능 및 역량에 대한 연구(1999.12~)를 실시하였음
 - 동 연구결과의 초안을 토대로 2001년부터 새로운 평가정책(New Evaluation Policy)을 도입하여 각 부처에 전파시키고 있는 중
- 재무원(Treasury Board of Canada)
 - 캐나다에서의 정책평가는 재무원이 제시한 평가관련정책에 따라 각 중앙부처가 수행
 - 이러한 정책은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대체적으로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평가제도를 운영
 - 따라서 인력개발부와 법무부와 같이 평가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음
- 연방감사원(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 연방부처가 실시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과 동시에 연방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의회에 보

고하는 기능을 수행

- 예산절감, 의회관심사정책 및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제공
 - 그런 의미에서 정책평가에 관한 한 감사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3) 회계감사국

1) 심사분석 담당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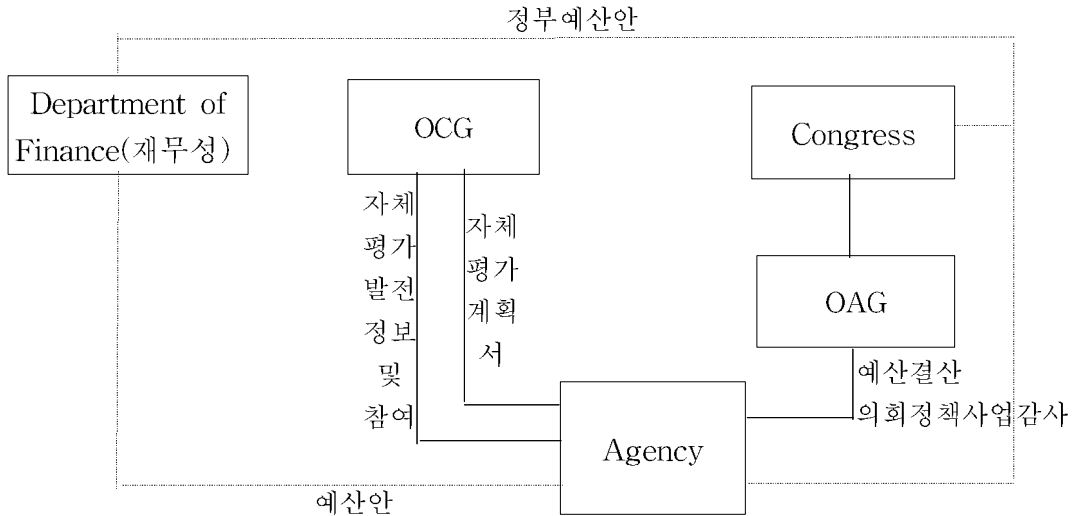
캐나다의 심사분석업무는 각료들이 겸직하고 있는 내각의 한 위원회인 내각예산처에서 주관하고 있다. 내각예산처 산하에는 사무국 및 회계감사국이 설치되어 있다.

- 회계감사국
 - 사업평가부가 설치되어 있어 심사분석제도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내각예산처 사무국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부에서는 각 부처에서 심사분석한 결과를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
 - 각 기관의 정책평가기능 유지·향상 및 정책평가 연구수행, 각 기관의 정책평가 수행 적절성 점검

2) 심사분석제도 운용

- 심사분석제도 운용은 내각예산처 산하 회계감사국의 사업평가부에서 담당
 - 사업평가부에서는 심사분석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고 지침서 및 편람을 만들어 각 부처에 배포하고 있음. 또 필요시 심사분석 업무에 관한 회람을 작성시달
 -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편람을 자체적으로 작성 보유
 - 각 부처는 소관사업을 5년에 나누어 매년 1/5씩 자체심사분석
 - 이러한 심사분석결과는 내각예산처로 제출되며 내각예산처사무국 산하 사업부에서는 이러한 심사분석 결과를 심사하여 예산편성에 활용

<정책평가 체계도>



(4) 캐나다 중앙정부부처에서의 정책평가 수행 실태

1) 평가의 수용 정도

캐나다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평가는 범정부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처음부터 행정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도입한 것은 아니며, 중앙행정조정기관의 하나인 재무원에서 수행해 오다가 현재는 각 부처에 전담부서를 두어 평가제도가 완전히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 중앙부처 수준에서 평가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고, 부처에 따라 조금씩 다름
 - 인력개발부, 법무부, 원주민부 등에서는 평가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원자력통제원이나 시민이민부 등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음

2) 평가담당기구 및 평가예산

캐나다정부에서는 정책평가가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처가 평가담당부서를 두고 있다. 다만, 부처에 따라 평가담당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부감사 부서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 재무원 비서실 (TBS : Treasury Board Secretariat)
 - 전체적인 평가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부처전체의 평가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
 - 각 부처 및 기관은 TBS 지침에 따라 평가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실제 평가는 부처실정에 맞게 평가팀 또는 고위관리자를 중심으로 부처내에서 직접 평가하거나, 외부단체에 위탁하여 평가
 - 운영지원 6명과 인력개발지원 2명의 계약직공무원과 행정관 1명으로 구성(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공공자산관리 및 조달 장관 등)
 - 평가운영지원(Operational Support)과 평가인력개발지원(Professional Development)의 기능을 함
- 1978년 정책평가제도가 범정부적으로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거의 모든 부처가 정책평가 부서를 별도로 운영해 왔으나, 그간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현재는 많은 부처들이 정책평가 부서를 내부감사 부서와 통합하여 운영
 - 인력개발부는 정책평가와 내부감사를 별도 부서에서 수행
 - 인력개발부의 정책평가부서는 전략정책실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인력은 45명, 1998년 평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은 2000만불임
 - 이 중 약 1300만불은 외부계약에 의한 평가에 사용되며, 약 700만불은 내부에서의 평가에 사용하고 있음

- 한편, 법무부의 평가과에는 총 9명의 평가요원이 있으며,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사업비의 2%까지 평가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 양 기관의 이러한 규모의 평가인력과 예산은 1991~1992년에 연방부처 전체에서 평가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이 2,850만불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증액된 것임
- 인력개발부
-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감사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구는 부의 평가계획을 검토하며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평가자와 피평가기관간에 이견이 있는 평가보고서를 검토하기도 함
 - 이 위원회에는 재무원과 감사원 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협조를 얻기도 하는데, 이들의 협조가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양 기관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인력개발부의 희망 등 정치적 이유에서 이들을 참여시키고 있음
 - 그리고 다른 부처와 연관된 사업을 평가할 때에는 관계기관을 참여시키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운영
- 법무부
- 법무부 내에도 인력개발부와 마찬가지로 감사 및 평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평가과장도 참여
 - 다른 부처와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평가할 때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력개발부의 경우와 같음. 평가결과는 평가과장이 정책국장→차관보→차관으로 이어지는 계선을 따라 보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과장이 직접 차관에게 보고

(예시)**< 부처에서의 평가사례 >****사례 1**

- 인력개발부 평가국, Survivor Benefits and Other Features of the Canada Pension Plan에 대한 평가
- 정책: 은퇴직원, 일 못하게 된 직원, 사망직원의 배우자와 고아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
- 평가의 유형: 총괄평가
- 평가의 초점: 유족에게 계속적으로 편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 검토
- 방법: 유족과 일반 국민대사의 서베이; 시뮬레이션; 행정자료의 분석; 이 분야 전문가의 의견
- 평가자: 인력개발부, 재무부 및 여성지위실 직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주관하에 외부 용역회사가 평가

사례 2

- 인력개발부 평가국, Canada Student Loans Program에 대한 평가
- 평가의 유형: 총괄평가
- 평가의 초점: 사업의 적실성; 사업구조와 전달; 영향; 대안
- 방법: 문헌검토, 행정자료분석, 주요 사업관련자 면담, 사업수혜자 서베이
- 평가자: 평가위원회의 주관하에 외부 용역회사가 평가

사례 3

- 법무부 정책평가과, Interdepartmental Child Development Initiative
- 정책: Brighter Futures for Children의 일환으로서, 부처간 Child Development Initiative 보건부의 주도하에 법무부, 인력개발부, 캐나다 유산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법무부관련 사업부문만 평가
- 평가문제: 사업의 존재의의가 있는가? 집행과정이 적절한가? 사업의 효과는 무엇인가? 기대했던 것, 즉 목표를 달성했는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는가?
- 방법: 법무부직원과 해당분야 전문가의 면접, 사업수혜자의 면접; 문서조사; 여론조사

사례 4

- 법무부 정책평가과, 1977 Firearms Control Legislation의 영향에 관한 통계분석
- 평가자: 법무부 평가과의 주관으로 외부 용역연구기관에 의뢰함. 그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결론 도출
- 평가문제: 총기류관련 사망사건이 1978년 이후 얼마나 발생했는가? 총기류관련 사망사건의 변화가 1977년에 제정된 총기류통제법이 야기한 효과라고 할 수 있는가? 총기류관련 범죄발생이 1978년 이후 얼마나 변화했는가? 그러한 변화가 1977년에 제정된 총기류통제법이 야기한 효과라고 할 수 있는가?
- 방법: 탐색적 분석; 시계열분석; 구조적 모델링
- 현재 정부부처 내에서의 정책평가는 재무원의 평가정책에 따라 수행
 - 부처 내에서의 정책평가가 제도화되어 있는 단계임
 - 부처에 따라 정책평가가 수행되는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즉, 정책평가가 활성화되어 있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기관도 있음

- 정부부처 내에는 정책/사업평가 담당기구가 별도로 설치
 - 이러한 평가기구가 내부감사기구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평가대상 사업과 정책의 수, 즉 평가대상 커버리지(coverage)가 비교적 많은 편임
 - 대상선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평가는 대체로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로 대별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양 평가유형이 모두 수행
 - 특히 총괄평가의 경우에는 외부 평가전문기관의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음
-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고급의 과학적 방법이 채택
 - 평가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수행되고 있음

3) 평가대상의 범위

-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평가의 대상이 될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그것이 중요해야 된다는 점임. 인력개발부의 경우나 법무부의 경우 모두 이 기준을 적용
-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
 - 인력개발부는 사업의 정치적 중요성에 평가대상 선정의 우선순위를 부여
 - 법무부는 장관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이라든지,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업,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부서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업이 평가대상이 됨
 - 후자의 경우에는 감사 및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음
 - 어느 경우든 이러한 중요성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는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이 거기에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크거나,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크거나, 그것이 국정운영의 중요한 측면을 대표할 것이 요구됨
- 평가계획에 의한 평가의 주기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인력개발부나 법무부 모두 마찬가지임

- 예를 들어, 다년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라면, 그 중요도에 상관없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
 - 법무부는 평가 3개년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가능한 한 평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
- 연방감사원에서 1993년에 작성한 부처 내 정책평가활동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5년간에 걸쳐 모든 정부사업과 활동이 평가되도록 의무화되었지만, 1985-1986년~1991-1992년 5년 동안에 걸쳐 정부지출의 25%에 대해서만 평가되었음
 - 규제사업들은 7년간에 걸쳐 모두 평가되도록 의무화되었지만, 실제로는 53%만 평가
 - 이러한 사정은 최근에 들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임. 근래에 들어 인력개발부는 연간 거의 100개의 과제들을 평가한다고 하며, 법무부도 1998년에 35개 정도의 과제를 평가
 - 인력개발부는 이 중 약 80%는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평가하도록 하며, 나머지 20%의 사업에 대하여는 내부에서 평가
 - 이러한 사정은 법무부의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4) 유형 및 초점

- 여기에서의 관심사는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와 만일 효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임.
 - 일반적인 경향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거의 모든 부처가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 양자를 모두 수행
 - 이 가운데 특히 총괄평가는 거의 모두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 있으며, 인력개발부는 형성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외부에 용역을 의뢰한 예도 있음

- 법무부의 경우도 형성평가는 내부에서 평가하기도 하고, 외부에 용역을 주기도 하나, 총괄평가는 대부분 외부 용역평가이며, 평가과에서는 이들을 관리만 함
- 총괄평가와 관련하여, 1978년 감사원법 통과 직후에는 효과성평가나 보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 1983년에 정부는 효과성평가를 위한 정책을 확립하고 효과성평가를 위한 자원을 지원했으며, 높은 수준의 효과성평가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캐나다 연방감사원은 1993년의 보고서에서 부처 내에서의 정책평가가 보다 작은 사업단위나 하위예산활동의 운영상의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업의 존폐에 관한 검토나 비용-효과성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 그러나 1996년의 보고서에는 범정부적으로 결과에 기초한 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효과성평가를 정부의 주류관리과정에 통합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지적

(5) 심사분석 결과의 활용

- 캐나다의 심사분석제도는 자체심사분석제도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 부처의 자체적 심사분석을 통한 소관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주목적
 - 회계감사국(OCG)은 부처자체평가기능 발전을 위한 정보제공, 각 부처 평가인력 교육·훈련, 평가기준 및 요소의 부처간 일관성 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
 - 각 부처는 자체평가지침서에 따라 평가계획·평가목표·평가요소를 선정·공개하고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수행 및 평가보고서 작성 후 공포
- 그밖에 심사분석결과를 내각예산처에서 예산편성시 활용

(6) 신평가제도 (New Evaluation Policy)

- 2000년도 연구의 주요결과 캐나다 정부는 평가기능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신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기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도입
 - 2000년도 연구 결과
 - 평가는 책임성 확보수단 외에 정책발전을 위한 도구로도 중요
 - 평가가 정책관리과정에 현재보다 더 통합되어 운용될 필요
 - 평가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할 필요
- 신평가제도 주요 내용
 - 평가기능을 부처별로 융통성 있고 전략적으로 활용
 - 개별정책 평가에서 부처간 관련정책 연계평가로 평가범위 확대
 - 평가기능을 성과관리·성과모니터링 결과와 연계
 - 평가를 정책 사이클(Life cycle of programs)의 한부분으로 정착
 - 평가기능이 부처에서 독립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수행될 필요
 - 평가관리 기준(Management standards for Evaluation)마련 필요
 - TBS 역할의 강화 필요
- 평가기능 강화 추진
 - 평가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
 - 2001년에서 2002년간 11.4백만불(부처지원 8.6, TBS 2.8)
 - 2003년에서 2004년간 예산은 2년간의 평가정책 시행을 보아 추후 확보
 - 향후 5년간 연방정부전체 평가인력 확대 추진
 - (2000) 220명 → (2005) 350명
 - TBS내에 CEE(Centre of Excellence for Evaluation) 설치
 - 평가기능 개선 및 재구축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평가정책의 실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위해 TBS내에 설치

(예시) 평가표준(Evaluation Standard)

- 평가계획 및 이슈(Planning and Issues)
 - 표준 : 부처내 최우선 사항 및 관련부처의 최우선 사항을 고려하면서 평가규칙(discipline of evaluation)을 적용해야함
 - 지침
 - 평가자는 정책중요도, 위험성 평가에 기초하여 평가계획을 마련
 - 평가계획단계에서 다양한 평가이슈를 고려(정책의 적정성, 정책의 성공가능성, 정책의 비용효과 타당성 등)

- 능력(Competency)
 - 표준 : 평가수행자 및 평가관련자는 특정 평가작업을 완성하기 위한 관련 지식과 능력을 보유해야함
 - 지침 : 평가자는 다음과 같은 지식, 기술 및 경험을 보유해야함
 - 선택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설계 능력
 - 정량적/정성적 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능력
 - 타당성있고 믿을만한 결론과 조언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 객관성과 완결성(Objectivity and Integrity)
 - 기준 : 평가자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완결성을 확보해야함
 - 지침 : 평가자는
 - 평가자의 기술과 지식수준을 정확히 공개해야함
 - 평가과정에서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밝혀야함
 - 평가성과 및 산출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
 - 평가시 정책우선순위 및 정책 책임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
 - 평가결과의 충실성, 프라이버시, 소유권등에 관한 결정을 이해관계자와 상의
 - 재무적 정책결정(fiscal decision-making)이 가능하도록 평가
 - 평가위탁자와 합의한 적정시간내에 평가작업을 완료

- 상담과 조언(Consultation and Advice)
 - 표준 : 평가작업시 충분하고 적절한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 등의 조언을 들어야함
 - 지침 : 평가자는 평가수행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자와 상담해야 하고 필요시 리뷰그룹을 조직하여 평가결과를 리뷰하여 평가의 질을 향상시켜야함

- 측정과 분석(Measurement and Analysis)
 - 표준 : 평가작업은 적기에 적절하고 믿을만한 결과를 관리자와 이해관계자에 제공해야하고 평가결과는 실제적이고 비용편익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수집 및 분석에 기초해야함
 - 지침 :
 - 평가결과는 관리의사결정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용가능해야함
 - 의사결정 내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평가근거가 있어야하고 평가결과는 평가근거에 따른 이슈에 적절해야함
 - 평가결과는 정책성과 향상과 성과보고에 유용하게 기술되어야함
 - 평가작업은 자료 수집·활용·보존·전파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부합해야함

- 보고(Reporting)
 - 표준 : 평가보고서는 평가결과를 분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표현해야함
 - 지침 : 평가보고서는 고위관리자 및 외부독자가 중요한 이슈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함
 - 간결하고 분명하게 작성
 - 평가결론 및 개선점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포함
 - 평가결과로부터 평가결론 및 개선점이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 평가 범위 · 방법 · 결론의 작성시 평가의 한계를 분명히 표현
 - 가능하면 내각과 외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작성
 - 부수적으로 정책의 개요, 목적, 성과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

(7) RMAF(Results-based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Frameworks)

1) 배경

- 2000년 6월부터 예산요구시 transfer payments에 관한 RMAF를 제출토록 요구됨에 따라 각 부처에서 RMAF를 작성·제출

- TBS에서는 2001년 8월 RMAF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각 부처에 배포하고 RMAF작성에 관한 조언과 지원을 수행
- 정책의 진행과정 전반에 걸쳐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① 정책의 구조 및 개요 ② 성과기반 논리모델 ③ 성과측정 전략 ④ 평가전략 ⑤ 보고전략으로 구성
- RMAF는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작성하고 실행하며 10~15페이지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작성

2) 구성요소

① 정책개요(Profile)

- 정책배경, 요구, 목표집단, 집행방법, 자원, 관리구조, 예상결과 등 정책에 관한 간단한 기술

② 논리모델(Logic Model)

- 정책활동과 최종성과간의 논리적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

③ 성과측정 전략(Ongoing Performance Measurement Strategy)

- 결과 및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도출하고 동지표의 수집·측정 방법을 설계

④ 평가전략(Evaluation Strategy)

- 중간·마무리 평가의 이슈 및 질문 작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목록 작성 및 수집전략 설계

⑤ 보고전략(Reporting Strategy)

- 평가와 성과측정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계획

(8) 평가대상 과제 선정

농무부는 평가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타 기관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평가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99년부터 사용하였다.

· 판단기준

판단기준은 5가지 지표로 구성되며, 각 정책에 대해 5가지 지표별로 점수(1~5점)를 산정하여 총점이 어느 정도 이상인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여부를 결정하였다.

- 중요 기능(Critical Function) : 부처의 주요 사업목표를 성취하는데 기여하는 정도
- 법적 평가(Legal Assessment) : 동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소송제기를 받을 가능성
- 투입 자원(Resources) : 사업계획에 나타난 예산 및 인력 투입 규모
- 민감도(Sensitivity) : 장관·부처·정부에 대한 영향
-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ies) : 공공/민간 부문의 활동(정책)과 연계(조정)되는 정도

(9) 특 성

1) 부처 자율에 의한 평가체제

정책평가는 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부처 평가팀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고 부처별로 융통성있고 전략적으로 운용한다.

- 부처 평가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직접 평가하고 사업부에서 직접 평가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팀의 리뷰를 받도록 하거나
- 정부기관에서 수행하기 곤란한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간 비교 조사 등은 민간기관을 이용

2) 총괄평가 조직의 기능 강화

총괄부처(TBS)는 각 부처 정책의 평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부처의 평가역량 강화를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평가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를 위해 2.8백만불을 2년에 걸쳐 활용
- 각 부처의 평가계획을 검토하여 8.6백만불을 배분하고 점검
- 각 부처 및 TBS의 평가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 개발 추진

3) 평가와 예산/정책간 연계

예산과 평가의 연계를 위하여 매년 새로운 정책의 예산요구시 평가계획을 포함한 RMAF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RMAF를 통하여 평가과정을 정책의 한 요소로 의무화시킴으로써 평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개선에 활용되도록 유도
- 새로운 정책의 예산에 평가관련 예산을 포함시켜 평가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함

4)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설계

정책을 매년 평가하지 않고 정책 성격에 따라 평가주기(3년 또는 5년)를 다양화하고 최소한 2회(초기평가와 최종평가)에 걸친 평가 실시한다.

- 성과중심의 평가를 위해 RMAF 작성을 통해 성과지표 제시, 성과측정 전략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제시
-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여 평가대상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평가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5) 평가정보에 대한 공개 및 연계

부처의 평가보고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DB화하여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정책수행자 및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강화에 따라 각 부처에서 유리하게 평가하려는 경향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장치가 부족
- 부처장관이 평가결과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 평가결과 때문에 평가팀원들에 대한 사퇴압력이 행사되기도 함

5. 영 국

(1) 개 요

영국정부에 있어서도 미국, 캐나다, 그리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 중반 계획예산제도의 영향으로 평가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도 본격적인 평가활동은 가동되지 않았다.

-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걸쳐 부처수준에서의 지출결정을 통제하고 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해야겠다는 결의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집합적 의사결정을 하려는 정치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서 Heath 수상 정부는 ‘중앙정부구조개편’이라는 백서를 발간하여, 영국중앙정부의 평가역량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결과로 탄생된 것이 내각수준의 전문가집단인 중앙정책평가단(Central Policy Review Staff)이었음
 - 이 기구는 공무원과 학자들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내각수준에서 보다 많은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고무하는 것을 그의 과업으로 하였음

- 모든 주요 부처에서는 사업심사분석(program analysis and review)이라고 하는 정규적 정책평가사업이 행해졌는데, 재무부와 중앙정책평가단이 이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정부의 각 부처가 평가활동을 수행하여 이러한 평가결과를 공공지출결정에 환류시키려 했던 원래의 의도는 실현되지 못했음
 - 실패의 이유
 - 기술적인 면에서 필요한 정보가 부족했는데 즉 기초자료체계가 취약했고, 이러한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
 - 조직의 면에서, 내각과 개별부처 모두 기획기구의 부재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았음
 - 정치적인 면에서, 부처나 정당들이 평가를 실시하는 데 대해 아무런 유인도 제공하지 않았음
- 1979년 Thatcher정부가 들어서자 바로 그 해에 사업심사분석제도를 폐지시켰으며, 1983년에는 중앙정책평가단도 해체되었고, 결과적으로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등장함
 - 능률전략(Efficiency Strategy)
 - 재무관리 이니셔티브(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2) 능률전략

- 능률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함
 - 정부지출이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하도록 장려
 - 관리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
 - 실현 가능한 변화를 조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하도록 장려
- 이 전략은 정부운영의 능률성제고에 그 목표가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공직자의 행태와 태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체평가(self-evaluation)를 정상적인 행정관행으로 발전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처에서 실시한 특정한 활동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
 - 전략은 정부의 최고관리자의 지지를 받았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

- 능률전략은 중앙정부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추구하는 하원특별위원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고 또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음
 - 그 위원회는 정부와 의회가 관여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업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믿었으며,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정부가 채택한 것이 재무관리 이니셔티브임

(3) 재무관리 이니셔티브

정부의 모든 부처 관리자들이 목표를 명확히 하고 또 가능한 한 이러한 목표와 관련하여 산출과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을 명확히 하며, 자원의 활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정하고,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문을 포함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특히 초기에는 비용에 대한 통제와 능률성을 확보하면서 부처 내에 정보 및 점검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 재무관리 이니셔티브의 지도기능과 조정기능
 -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재무관리부(Financial Management Unit)에서 담당했으며, 이 기관의 지도하에 각 부처는 부처에서 추진하는 계획의 우선순위와 목표 및 비용관리전략, 사용하는 자원에 대한 책임배분상태 그리고 성과지표와 산출척도를 개발
- 이 제도는 1985년 말경 완전히 확립된 단계에 이르렀으며, 1987년 말에는 이 제도를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재무부의 재무관리단(financial management group)에 맡겨졌음

6. 프랑스

(1) 개 요

프랑스는 OECD 가입국 중 미국, 영국 등과 더불어 행정개혁과 정부혁신과정에서 무엇보다 평가업무 수행을 중요시한 국가이다.

프랑스의 평가제도는 크게 2개의 전환점을 분기로 하여 발달되고 있다. 첫째로 '80년대 평가수행업무 영역의 확대에서 알 수 있으며, 둘째는 '90년대 공공서비스 개혁정책에서 그 실상을 찾을 수 있다.

- 행정부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는 원칙적으로 각 부처의 감찰총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 경제재무예산성내 재무감찰총국의 자체평가기능을 확대하여 타 부처 사업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여 실시하게 함
- 회계검사원은 회계검사에서 평가기능을 강화
- 평가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평가제도의 경쟁력 강화
 -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범부처 평가위원회를 주축으로 과학적 평가위원회가 자문적·전문적 성격의 역할을 수행하고 평화발전기금을 통해 효율성을 높임

(2) 역사적 개관

- 1980년대 이전까지 각 부처의 감찰총국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후 경제재무예산성내 재무감찰총국에서 자체심사평가의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타 부처 업무까지 평가 실시
- 1990년대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평가위원회, 과학적 평가위원회, 평화발전기금의 평가전담기구를 구성

(3) 1980년대 전후의 평가제도

중앙집권 성향이 강한 프랑스는 심사평가기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경제재무예산성내 재무감찰총국이 행정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각 부처도 자체감찰총국에서 심사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당시 회계검사원도 회계검사에서 평가기능을 강화시키는 추세에 있었다.

- 자체심사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여 '80년 이후 경제재무예산성내 재무감찰총국의 자체평가기능을 외연적으로 확대하여 타부처 사업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여 실시
 - 각 부처 감찰총국의 심사평가기능은 그대로 유지
 - 각 부처의 감찰총국이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에 그치는 반면 경제재무 예산성 감찰총국은 성내 자체평가뿐만 아니라 타부처 업무까지 평가함
- 독립기관인 회계검사원도 종래의 회계검사에서 탈피하여 각 부처 업무심사평가를 경제재무예산성과 경쟁·보완적으로 실시

1) 경제재무예산성 재무감찰총국

- 구성
 - 재무감찰총국은 30명의 총괄감찰관(Inspecteur Général)과 100명의 감찰관(Inspecteu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행정학원(ENA) 출신 신규 채용자는 감찰총국 감찰관으로 보임하여 4년 이상 감찰총국 근무를 하게 한 후 경제재무예산성내 타부처로 진출
 - 재무감찰총국의 자체평가와 부처평가의 업무비중은 경제재무예산성 자체평가에 1/3의 인력을 배분하고, 여타 부처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에 2/3를 배분하여 업무를 수행
- 심사평가 대상과제의 선정

연간 40~50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심사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사업
 - 예산성에서 심사평가를 요청하는 사업
 - 예산규모가 큰 신규사업
 - 각 부처가 경제재무예산성에 심사평가를 의뢰하는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심사평가 실시
 - 심사평가는 사실에 입각한 현황파악을 중요시하며 현지출장,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한 객관적 자료확보에 주력함
 - 심사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은 법률에 의해 강제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재무예산성의 예산편성권으로 인해 자료협조는 용이하게 이루어짐
 - 평가방법에는 특별한 지침이 없으나 평가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량적 기법도 활용
 -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으나, 상설 또는 비상설의 자문그룹을 운영하지는 않음
- 심사평가 결과의 처리
 - 심사평가 결과는 행정부 내부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의회에 보고하거나 대외에 공포하지는 않음
 - 예산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경제재무예산성이 예산편성시에 반영하고 예산과 관련없는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장관의 판단에 맡김
 - 관계부처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재무예산성의 권고내용과 시정조치상황을 각료회의에 보고

2) 각 부처 자체심사평가제도 (농림부의 사례)

- 심사평가 담당부서 현황
 - 농림성의 심사평가부서는 「감찰조정상임위원회」에서 수행중이며 이는 농무감찰총국, 농림수자원위원회, 농업경제위원회, 축산위생위원회의 4개의 분과 위원회로 구성
 - 농림감찰총국은 농림성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며, 경제재무예산성이 농림성의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지에 협조업무를 하는 등 총괄기능을 수행
 - 나머지 3개 분과위원회는 관련분야 실무집행부서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성내 각 집행기관의 전문적·기술적 활동에 대하여 평가활동을 수행

- 심사평가결과 처리
 - 심사평가결과는 장관에게 보고되며 장관은 지적사항을 해당 집행부서에 통고하여 시정토록 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각료회의에 보고
- ※ 농림성의 자체심사분석은 194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농림성과 같이 대규모 조직으로서 전문적·기술적 평가를 요하는 일부 부처에서도 별도의 심사평가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4) 1990년대 전후의 평가제도

프랑스는 1990년대를 전후로 하여 평가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진다.

- 국가수준
 - 1989년에 Patrick Viveret가 수상실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거 1990.1.22 수상령 발효로 각 부서의 공공정책평가의 규정(법령) 마련
- 지방정부 수준
 - 칼레, 브르타뉴 지방에서 나타난 새로운 시도는 중앙정부만큼 지방의 법안들도 새로운 경쟁력과 책무성에 투자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

1) 평가제도 개혁의 배경

1990년 로카드(M. Rocard) 수상 재임시 ‘공공서비스 개혁정책(Renewal of the Public Service)’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통적인 평가체계의 문제점 해소방안’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라는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취지가 내제되어 있다. 즉 ‘올바른 평가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추진되었으며, 여기에서 지적된 이전의 전통적인 평가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참고자료로서의 유용성에 국한됨에 따라 정책추진과정상의 투입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는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확보가 미약
- 과거의 평가는 정책추진주체들이 의도했던 효과의 평가에 역점을 두어 왔으나 의도했던 효과만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효과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회적 영향까지 함께 평가할 필요성이 높아짐
- 체계적인 접근방법과 기법개발의 미흡으로 객관성,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상존하였고, 또한 평가주체가 산만하게 흩어져 간헐적으로 이루어짐
- 사후평가결과에 대한 체계적 이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평가활용도가 저조하여 평가결과의 기여도 강구를 위한 환류성 체계화 마련이 긴요하게 됨

2) 평가제도 개혁의 핵심

평가제도 개혁의 주안점은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의 역할과 이를 통한 행정적 책임성 강조에 있다. 그러나 당초에 의도한 ‘평가를 통한 실효성 확보달성의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었다.

- 평가제도 개선시도의 주안점
 - 공공정책평가 개념의 새로운 정의 도출
 - 평가의 제도적·절차적 구조를 체계화
 - 정책평가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
- 평가의 관리모델(Managerial model of evaluation)마련
 - 공공서비스에서 작업관계(working relations) 재정의
 - 공공서비스의 질 및 제공과정의 효율성 제고
 - 예산과정의 분권화와 성과의 평가를 통한 행정적 책임의 강조
 - 공공정책과정의 평가 중시

3) 정책평가의 추진체계

프랑스의 정책평가 추진체계는 범부처 평가위원회를 주축으로 평가의 자문적·전문적 성격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적 평가위원회와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평화발전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기타수행기관이 있다.

- 범부처 평가위원회(Le 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évaluation: CIME)
 - 평가업무 총괄
 - 평가의 목표를 정의하고 이에 맞는 평가대상 정책과제선정에 자문(CSE와 함께 자문 수행)
 - 기금배분 후 평가 예산이 확보되면 주관하여 평가를 실시
 - 추가적 조치 및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모색
- 과학적 평가위원회(Le Conseil Scientifique de l'évaluation: CSE)
 - 인적구성
 - 사회각 분야를 대변하는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6년 임기, 단임제로서 대통령이 임명
 - 기능
 - CIME에 조언하는 역할
 - 평가공무원 교육
 - 평가활동과 문서관리기능 수행
 - 대상 정책과제에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안
 - CIME의 평가과정을 다시 평가
- 평가발전기금(Le Fonds national du développement de l'évaluation: FNDE)
 - 정책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전체예산의 80%는 CIME의 지시에 의거 집행
 - 전체예산의 20%는 경제사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
 - CSE의 적절한 평가방법을 제안하면 CINE가 기금을 배분 결정

- 기타 평가수행기관
 - 평가발전기금 배분에 의존하지 않고 행하여지는 평가활동을 하는 별도의 기관
 - 각 기관들의 역할 분담이나 수행에는 아직 상충되거나 비공식적인 것이 많음

4) 정책평가제도의 특성

1990년의 개혁은 프랑스에서의 정책평가절차를 공식화하고 정책평가가 유용한 기능으로 인식시키는 데는 공헌하였으나 실질적인 평가업무 체계화는 아직 미흡하다.

- 다른 선진국들과의 차이점
 - 프랑스는 집권화되고 엄격한 통제를 받는 정책평가시스템의 집권성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일반적인 발전추세와는 차이를 가짐
 - 정책대안들간의 선택수단으로서의 정책평가 강조나 비용요인에 관심을 집중하여 공공부문의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평가형태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음
- 차이의 요인

프랑스의 정책평가가 다른 선진국들과의 차이를 갖는 요인은 크게 구조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있음

 - 구조적 요인
 - 프랑스의 관료들의 특성이 정책평가를 취약화 시킴
 - 비슷한 성장환경과 교육환경을 갖고 육성되는 관료엘리트들이 새로운 기법의 정책평가도입에 거부감을 가짐
 - 사회에 대한 국가우위의 이념적 전통이 정책평가의 제도적 개선과 활성화를 차단함
 - 정치적 요인
 - 전통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관리효율화 노력은 곧바로 정부지출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

- 으며 평가결과가 예산배정과도 연계되지 않음
- 보수정당 집권 때보다는 진보정당 집권시 평가업무에 관심이 고조

(5) 프랑스 평가제도에 대한 조명

- 프랑스는 관료권이 강한 행정문화 속에서 지시 및 통제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며 다만 정치적 요인보다는 행정적 측면에서 더욱 강조됨
- 90년대에 개혁된 정책평가조직에 있어 ‘평가관리모델’에 의하면 역할과 기능을 명료히 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범부처 평가위원회 : 평가수행과 평가결과의 사후관리 활용 등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평가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
 - 과학적 평가위원회 : 평가기법과 접근방법 등 평가의 이론적, 제도적 뒷받침을 수행
 - 평가발전기금 : 평가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비용개념의 원칙을 준수
- 평가의 범위에 있어서 전통적 평가영역에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음
 - 당초에 의도한 효과 이외의 부수적 영향에 의한 사회적 파급영향 까지도 포함
 - 정책추진과정상의 투입요소평가까지를 범주로 함을 분명히 하여 효과성 평가와 과정평가를 동시에 추구
- 평가의 활용면에서 예산배분과의 연계성을 포함한 사후관리 활용장치를 명백히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미약함
- 프랑스의 평가제도 역시 행정개혁(행정서비스의 질 제고)을 위한 실질적 확보 수단으로 강화하고 있음

7. 독 일

(1) 개 요

정부업무평가만을 전담하는 기구는 두고 있지 않으며 독일감사원에서 성과감사 및 사안별 정책평가(FCEPA)제도 등을 통해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2) 감사원(Bundesrechnungshof, FCA)의 성과감사

매년의 성과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 외에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FCEPA(Federal Commissioner for Efficiency in Public Administration)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감사대상
 - 연방예산의 집행기관은 모두 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민영기업이라도 연방예산이 들어가면 감사
 -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이나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성과 및 정책감사(연례성과감사)
 - 매년 기관의 감사과정에서 회계감사와 함께 정책의 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주로 회계감사에 치중하고 성과감사는 30%정도임
 - 성과감사는 부분적으로 사안을 뽑아 목적, 필요성, 진행과정, 왜 안 되었는가 등을 감사하게됨
- 사안별 정책평가(감사원장의 FCEPA)제도
 - 법적인 사항이 아니며 '69년 정부(브란트 수상)와 상원과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로 정부의 요청등으로 감사원에서 특정한 정책의 평가를 수행하는 제도임
- Advisory function of the Federal Commissioner for Effici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 적법성의 평가가 아닌 정책의 형성에서부터 성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석 평가하고 효과성 제고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외부 민간인 자문 없이 직원의 전문성에 의해 감사원에서 평가를 수행함
- 결과의 처리 및 외부공개
 - 감사결과 처리는 해당부처에 통보하나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음
 - 부처에서 수용하면 종료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로 가서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
 - 감사원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감사권으로 인한 권한으로 사실상 거의 부처에서 수용하고 있음
 - 결과는 정책에 관한 해당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언론에 공개적인 공개는 하지 않고 있음

8. 스웨덴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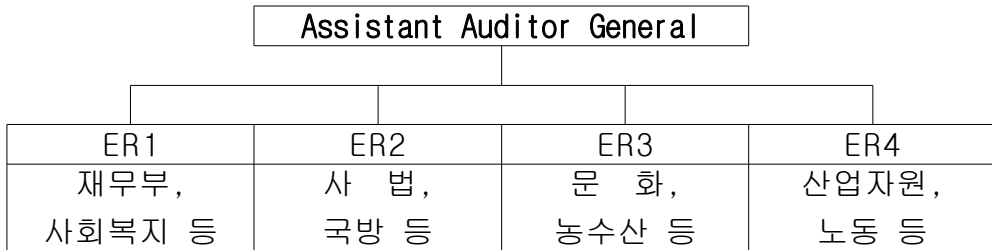
스웨덴은 별도의 평가기관은 없으나 역사적, 전통적으로 의회가 정부보다 우위에 있어 의회의 정부 통제기능 일환으로 의회 감사실에서 정부 기관을 평가(감사)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원(RRV)에서도 광범위하게 성과를 평가하는 중복성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감사원의 성과감사(평가)

감사원장은 정부에서 임명(임기 4년)하나 업무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감사원장과 부감사원장 밑에 275명의 직원이 있으며 회계 감사와 성과감사 부서가 별도로 구성되어있다.

▪ 담당 조직의 구성

- 감사원장 밑의 성과감사국은 담당 부처로 구분하여 4개의 세부 조직(Division)으로 구성



▪ 감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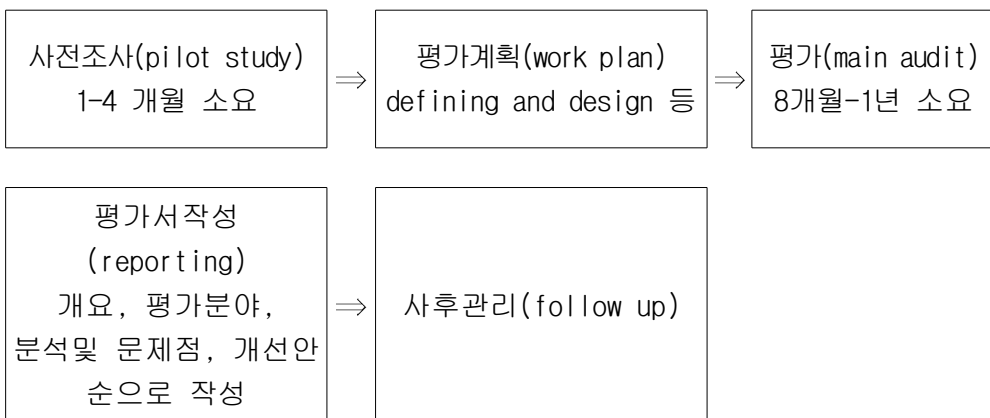
- 연방기관, 공공조직, 연방기금, 국영기업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는 없으나, 교육체제등 전반적인 국가 위임사항에 대한 성과감사는 가능
- 입법부, 사법부에 대하여도 매년 제출하는 보고서에 대한 분석 등의 방법으로 부분적인 감사도 가능

▪ 성과감사(평가)

- 성과감사의 목적
 - 중앙정부의 정책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목표달성 및 질적 수준제고와 자원의 경제적 사용을 촉구하는 수단
 - 중앙정부의 정책과 다양한 기능에 대한 민주성, 책임성에 대한 관찰
 - 의회, 정부 등의 정책집행이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성과감사의 방법
 - 성과감사에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평가와 유사한 방법이 사용되며, 정부기관의 목표달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
 - 매년 연례적인 성과분석과 주요정책과제 평가가 있음
 - 성과감사 부서의 업무 중 연례적 성과분석은 5%의 비중을 차지하며 95%이상이 사안별 주요정책과제 평가에 치중

- 연례 성과감사
 - 스웨덴은 예산편성 회계지침의 형식으로 각 기관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지시서와 예산을 함께 시달하고 있으며 지침서에는 연말에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의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음
 - 각 기관이 감사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대하여 사실성, 공정성 등 사실여부를 감사

- 사안별 주요정책 평가
 - 성과평가의 절차
 - 성과평가 계획서 수립 ⇒ 평가과제 선정 ⇒ 평가 실시 ⇒ 결과의 처리
 - 평가계획수립
 - 8월경에 수립
 - 어떤 분야, 어떠한 방향으로 과제를 선정·평가할 것인가를 수립
 - 평가과제의 선정
 - 각 과별로 성과감사 과제후보 10개 정도를 선정하여 국장에게 보고
 - 국장은 과장과 회의를 거쳐 압축하고, 최종적으로 감사원장의 결심을 받아 과제를 결정(년간 20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
 - 평가의 실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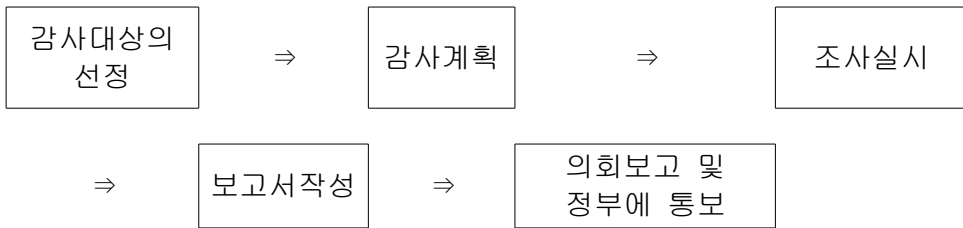
- 평가의 기준
 - 정책의 투입, 집행, 결과, 효과에 이르는 각 단계에 대하여 경제성(econom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등을 집중 분석
- 평가결과의 처리
 - 평가결과는 편지 형식으로 해당부처에 통보하고 6개월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통보
 - 모든 평가결과는 국회에 제출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함

(3) 의회 감사실(The Parlimentary Auditors)

- 기능의 특징
 - 스웨덴은 의회 우월주의국가로 의회 소속의 의회감사실에서 정부의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해 직접적인 감사·평가를 실시
 - 최근 감사원과의 중복 등의 문제로 2개의 기능을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의회 감사실의 구성
 - 12명의 국회의원이 직접 Aditor가 되며 예비 Audit로 12명이 더 있음
 - 12명의 Audit는 3개의 기초위원회를 구성(1개 위원회당 4명, 예비 4명)
 - 26명의 사무국 직원이 Audit를 보좌하여 활동
- 감사의 대상 및 감사의 종류
 -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병행 실시
 - 성과감사는 목표달성도, 생산성과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
 - 회계감사는 회계시스템에 대하여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
 - 국가기관 및 국영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회계감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의회소속 기관(중앙은행 등)과 내각부처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감사의 절차



- 감사대상의 선정은 일반의 여론, 의회 각 위원회, 의회 의원의 개인적 제안, Audit 등이 제안하는 의견을 대상으로 감사대상을 선정
- 감사과제는 사전조사를 거쳐 과거의 기감사 실시여부, RRV와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
- 감사 실시 중에는 외부의 조언을 받기도 하며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에 치중하였고, 재정감사에서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함
- 보고서 작성 전에 인터뷰 및 자료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보고서는 12명의 Auditor와 예비Auditor 등 24명이 3개의 그룹으로 구성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12명의 Auditor가 결정
- 최종보고서는 의회보고 및 외부에 공개하고 일부는 직접 통보하여(해당기관, 노동조합 등) 이에 대한 의견을 주도록 하고 있음
- 호응, 반대 등 의견은 일종의 제안으로 보고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정부에 제시하고 있음

발간에 참여한 사람들

〈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

심사평가1심의관실 류충렬 과 장 (3703-3911)
장상윤 서기관 (3703-3899)
윤순희 서기관 (3703-3905)
장영현 사무관 (3703-3908)
김재철 사무관 (3703-3902)
정용욱 사무관 (3703-3913)
이진원 사무관 (3703-3912)
김동주 사무관 (3703-3914)

심사평가2심의관실 민지홍 과 장 (3703-3919)
박희근 서기관 (3703-3923)
정원석 사무관 (3703-3918)
강동기 사무관 (3703-3917)
최영진 사무관 (3703-3846)

〈 한국행정연구원 정책평가센터 〉

윤수재 수석연구원 (564-7768)

※ 「정부업무평가 백서」는 정책평가위원회 홈페이지(www.pec.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백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국무조정실 심사평가1심의관실(☎3703-3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업무평가 백서

발행일 2002년 11월

편집겸
발행인 국무조정실

인 쇄 서울기획인쇄(☎2272-2531)

발간에 즈음하여...



오

늘날 국내·외의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 행정 수요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인력의 범위 내에서 정부의 업무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추진되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정책의 집행과 성과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을 시정·보완하도록 하는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기능은 책임행정과 정책의 신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부업무 평가시스템이 도입된지도 40년이 지나 적지 않은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5.16 직후인 1961년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가 도입되어 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시작한 이래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행정조정실의 주요정책평가 제도 등으로 이어져 왔으며 1994년말 심사평가제도로 통합되었고, 특히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각 기관의 경쟁과 책임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평가제도」가 도입되고 2001년 5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까지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짧지 않은 평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간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고 평가결과와 정부정책의 연계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어 왔습니다.

이제 「평가기본법」의 시행을 계기로 평가제도의 더 나은 발전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 백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1년 이후 평가제도의 변화, 추진체계, 연도별 평가결과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자료수집의 한계로 일부 충분한 정리가 안된 점이 아쉽지만 그간의 각종 평가기록을 종합적으로 발굴·정리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이 백서가 우리 정부업무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1월

국무조정실장 김진표

